

(債)

2006

김관기

198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사), 1987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석사), 1991 사법연수원 수료, 2001 The University of Virginia School of Law 수료 (LLM)

1991 변호사, 1991 - 1998 판사(서울, 수원, 제주), 1997 - 현재 변호사

다음 카페 김관기변호사의개인파산상담실 <http://cafe.daum.net/CancelDebt> 운영,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회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사법연수원 개인파산 강연

너들이 카드빚을 갚어?(법률정보사 2003), 2003년 여름 미국 동부 가족 여행기(해오름 2003), 개인파산의 이해(해오름 2004), 파산자 면책은 노예 해방(법률신문 2002년 4월 29일자), 경제규제로서의 면책의 정당화 근거에 대하여(대한변협신문 2002년 9월 9일, 23일자), 솔론을 기다리며(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2004년 5,6월호), 개인파산과 변호사, 파산은 법이 아니고 경제규제, 개인파산의 실무(각 대한변협신문 2004년 9월 13일, 10월 4일, 18일)



둥지는 타오르고 새는 불 속에서 타 죽으니
둥지 속 붉은 알에서 또 한 새가 태어나
퍼덕거리며 높이 날아오르니
외로운 한 마리 새 피닉스로다.



- Hans Christian Andersen, The Phoenix Bird (1850)
<http://www.sharebook.co.kr/andersen/054.htm>

우리는 파산법이 재정적 역경에 처한 중산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파산제도 덕분에 왕년에 확실하게 중산층이었던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고 하층 계급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파산을 선언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과거의 채무를 털어버리고 그들의 소득을 해방함으로써 새로이 발생하는 생활필수품, 공공서비스요금, 의료비, 주택담보대출금, 자동차 할부금 그리고 세금을 낼 수 있게 해 준다. 물론 그들은 파산 이후에 재산을 얼마 가지지 못했고 또 몇 년 뒤에는 많은 사람이 여전히 채무에 시달렸으며, 파산이 채무자에게 직장이나 건강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파산의 신청이 채무자에게 제공한 것은 중산층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것이다.

- Sullivan, Warren and Westbrook, The Fragile Middle Class: Americans in Debt(2000) p.5

그러나 준비가 되었건 안 되었건 상관없이 이 미국이라는 모델은 점점 더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비난하고 있다. 왜냐하면 세계화는 결국 미국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 프리드먼, 신동욱 옮김,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637면

IMF 사태로 불리는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많은 기업이 역사가 되었고 또 많은 근로자가 직장을 잃었다. 구조조정, 세계화 같은 말은 더 이상 경제 전문가들의 전유물이 아니게 되었다. 경쟁자가 도태되는 와중에 이불 속에서 웃은 사람도 있겠지만, 자신이 중산층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맞추어 소비를 하던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졌다.

과국을 피하기 위하여 소비를 줄이는 것이 모범적인 태도이겠지만, 생활비를 줄이는 것은 어렵다. 좋은 학교를 나와야 미래가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귀여운 자식의 사교육비 지출을 하지 말라고 기대하기 힘들며, 효성스러운 자식에게 현대의학으로 얼마든지 연명할 수 있는 부모의 병원비 지출에 대하여 비난하기도 쉽지 않다. 일단 빚으로 현재를 누리되 장래 벌어서 갚기로 하는 소비자금융의 조건은 불황을 타고 대량 성숙된 것이다.

기업도 힘들어졌다. 자본주의 사회사에 대기업은 대량생산, 대량판매로 대중에게 봉사하므로 대중의 수요가 없으면 존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기업은 자동차나 휴대폰과 같은 비싼 물건의 할부 판매에 개입하였고, 정부 차원에서도 벤처기업지원, 창업자금, 주택자금과 같은 다양한 총수요 확대가 추구되었다. 기업 여신에 치중하였다가 담보가 있으면서도 돈을 떼이는 황당한 경험을 한 금융기관은 상대적으로 소비자 신용의 위험을 과소평가하였고 공적 자금의 투입으로 자리를 보전한 경험이 있는지라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이 길거리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는 도덕적 해

이를 보였다.

예상되었듯이 신용불량자 400만을 운위할 정도로 채무자가 대량으로 속출하는 와중에, 금융시스템은 규제를 철폐하는 방식으로 급속히 세계화 즉 미국화되었다. 고리대금업이 허용되었고, 신용정보업, 자산유동화라는 말과 함께 추심원이라는 직업이 생겼다. 막대한 이익을 추구하는 이들은 집요하게 채무자를 쫓을 유인이 있었고, 정보기술의 발달은 채무자가 숨을 여지를 좁혔다. 이들의 입력을 받아 사법제도는 채권자 친화적 태도를 유지 발전시켜 채무자를 억압하였다.

채무자는 첫째 채무를 이행하여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비현실적이다. 신용불량을 딛고 일어서 성공한 사례는 언론에 나오지만, 이것은 사람이 개를 물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던 일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쉽게 돈을 벌어 보려고 강도를 하고 몸을 판다. 그리고 복권을 산다. 절망적인 선택이다. 둘째는 피하는 것이다. 어떤 이는 외국으로 가고 또 어떤 이는 다른 세상으로 영원히 피한다.

그런데 문제의 근원에 세계화, 미국화가 있다면, 대처하는 방법이나 해결책도 미국 쪽에 있게 마련이다. 개인채무자가 언제든지 자신이 가진 것을 채권자들에게 내놓고, 아니면 말고, 그 대가로 모든 금융채무를 면할 기회를 부여 받는다면 정부기관이 나서지 않아도 금융소비자는 보호될 수 있다. 그 반사적인 효과로 채권자는 돈을 때일 수 있으니 금융건전성을 위한 사전적 규제가 없다고 해도 금융기관은 조심해서 자금을 운용할 것이다. 이 세번째 탈출구는 미국의 경우처럼 잘 운영되는 파산제도에 호소하는 것이다.

파산제도는 급변하는 세계시장에 가계와 기업이 적응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의 중심에서 파산재단과 파산채권의 범위를 정하고 이를 상계하여 질서 있는 청산과 재건을 추구하는 기술이다. 여기에는 복잡한 금융관계의 이해를 해치는 편견, 즉 실패자에 대한 청교도(puritan)적 멸시나 고리대금업자에 대한 좌파(populist)적인 지탄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우리가 더위로부터의 해방을 위하여 미국인들이 널리 사용하여

은 냉장고나 에어컨 같은 기술을 사용하듯이, 그들이 기업과 개인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파산이라는 기술을 우리가 모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자는 파산제도를 중심으로 한 채무의 정리를 다루는 이 책의 주제로 채(債)테크라는 말을 사용한다. 가진 것을 뜻하는 ‘재’(財)라는 글자에 점 하나 더 하면 빚을 진 것을 뜻하는 ‘채’가 되니 적절한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재산은 그 억압을 받는 반대편에서는 채무이기 때문이다. 즉 파산제도는 가지지 않은 자를 위한 채테크인 것이다.

우리의 전통은 빚을 갚지 않는 것을 도덕상의 결함으로 규탄하여 왔지만, 수백만의 가난한 자가 남의 돈을 떼먹는 부도덕한 죄인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도덕을 재검토할 때가 된 것을 의미한다. 이제 우리는 적어도 채권 채무관계에 있어서는 전통을 지양하고 세계화, 미국화할 때가 된 것이다. 어떤 이들은 죄인들과 함께할 것이다.

1

가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 - 김광균, 추일서정

(1940)

사람이 빚을 지고 있는 상태를 구체적으로 비유하면 그의 무조건적 지급의무를 선언한 채권증서가 발행되어 있는 것이다. 이 채권증서는 차용증서, 현금보관증, 약속어음, 공정증서, 채무이행각서, 수표 등 여러 이름을 가질 수 있고, 보통 종이에 기록되어 있지만, 컴퓨터를 활용한 전자적 기록으로 관리되기도 하고, 채무자의 양심과 채권자의 기억에만 의존하여 아예 물리적 존재가 없을 수도 있다. 통상은 채무자가 자신의 의사로 채권증서를 발행하지만, 조상이 발행한 것을 상속으로 물려받기도 하고, 원인 없는 이득의 상환 또는 불법행위의 배상을 위하여 강제적으로 발행되기도 한다. 또 모든 경제주체의 동업자인 나라는 세금을 받는다. 이 경우는 채권증서가 세법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물물교환 또는 현찰박치기의 수준을 벗어나 시간 선호를 포함하는 경제거래는 이 채권증서의 발행과 회수가 경제주체 사이에 수없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채권증서는 채무자의 행동을 구속하는 것이니 채권증서를 무효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이익이 된다. 첫째, 채무자는 채권증서에 표시되어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증서를 무효화한다. 채무자의 변제를 채권자가 수락할 때에는 보통 물리적 증서를 채무자에게 반환하겠지만, 채무자는 전부 이행의 증거를 보존함으로써 나중에 채권증서 소지자로부터 중복된 청구를 받을 때 대비할 수 있다. 이것은 채권증서의 소지인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이유가 없으니 명예로운 방법이고 법에 의한 의무이기도 하다. 뒤에서 보듯이 채권자가 안 받으면 강제로 받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세상 만사가 어디 법에 정한대로만 되는가. 두번째 방법은 채무자는 자신에 대한 채권증서를 소지인과 협상하여 채권증서에 표시된 가격과 다른 가격에 사들이는 것이다. 그 값은 당연히 액면가 이하로 결정된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제대로 경제계산을 하는 사람이고 특별한 박애주의자가 아니라면 채권증서상의 지급의무보

다 높은 가격에 사지는 않을 것이고, 채권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액면에 상당한 금액을 떼뭇이 지급함으로써 채권증서를 무효로 할 수 있는데, 굳이 소지인과 교섭, 협상하는 비용을 들이고 채면을 손상하면서까지 액면가에 채권증서를 사 들이는 방법으로 회수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용도가 마땅치 않은 낙엽은 가치가 없고 또 관리비용을 발생시키니 오히려 부담으로 되듯이, 액면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증서는 휴지조각일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 부담을 준다. 채권증서의 가치는 채무자가 갚을 의사가 있는 지 또 갚을 능력이 있는 지에 의존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선량하고 소수는 그렇지 않듯이,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채무를 회피하는 자가 그렇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의 가치는 특히 후자에 의존한다.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소송 등 기타 방법으로 채무명 의(집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한다. 그 다음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재산을 매각하여 들어오는 현금에서 일단 집행비용을 회수한 후 그 다음에 남은 금액을 채권에 충당한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서 강제집행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얻으므로 이것이 채권의 실질가치라고 할 수 있다. 강제집행을 해 보았자 집행 비용을 넘어서는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없으면 채권증서는 휴지 이상의 가치를 갖지 못한다. 즉 채권증서의 가치를 정하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상태이고 이것을 신용(credit)이라고도 한다.

전혀 가치가 없는 채권증서는 자산 항목으로 인식할 수 없다. 따라서 공정타당한 회계원칙은 부실채권의 가치를 상각(write off)하도록 요구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분식회계로 규정되며, 채수 없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독촉장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인건비 외에도 영업에 전념하지 못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이런 채권증서는 자산이라기 보다는 무가치한 정도를 넘어서서 아예 부채가 될 수도 있다. 계속 비용을 발생시키는 항목은 마치 오래된 자동차가 빗덩어리로 인식되듯이 자산이 아니고 부채이기 때문이다.



Q 3년 전에 친구가 급전 오백만원을 부탁하여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빌려 주었습니다. 친구는 한달 후에 원리금을 갚더니 며칠 뒤에 다시 돈을 꾸어 달라고 부탁을 해 와서 다시 같은 방법으로 빌려 주기를 반복했는데 2년 전부터는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몇번 입금하더니 몇 달 전부터는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벌면서도 갚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차용증서도 받지 않았는데 돈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어려운 때 도와주었는데 배반 당하였다는 기분이 들어 참을 수 없습니다.

- 신희택 32세

A 차용증서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빚을 지고 있는 상태는 관념적인 것이고, 차용증서는 이를 나타내는 방법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면 굳이 증명도 필요 없을 것이고 장부 책이나 신뢰할만한 사람의 증언도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은행거래기록도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친구가 이자에 해당하는 금전을 보내 온 사실이 있다면, 신희택씨가 돈을 꾸어주었다는 점을 나타내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법적 강제를 위하여는 이와 같은 채권관계를 집행기관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문서가 필요한데 그것을 채무명의라고 합니다. 법원의 판결이 대표적인데, 그밖에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문서를 미리 확보해 놓지 않았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이행의무를 선언한 승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원금 기준 청구금액 2천만원 이하의 사건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재판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간단한 양식에 당사자, 청구금액, 빌려준 날, 원금과 이자 약정을 적어 넣고 약간의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 쉽게 소액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서류만 보았을 때 청구가 맞다고 보면 법원은 심리를 생략하고 이행권고결정을 내리는데, 채무자가 송달 받고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

우와 채무자가 이의한 경우 즉시 재판기일이 지정되고 비교적 간편한 심리를 거쳐 법원은 판결을 내립니다.

다만 막상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빚을 갚을 때까지 노역을 시킬 수도 없고 채무자를 노예로 매각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에게 재산관계를 밝히라고 명할 수도 있고, 이름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릴 수도 있지만 정말로 재산이 없는 채무자에게는 아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물론 월급을 압류하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채권자에게도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압류 당한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면 비용만 날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낙관적이게 마련이고 여기에 “친구니까 믿는다”는 마음 태도를 더하면, 너무나 쉽게 친구, 친족 사이에 돈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틈타 친구를 팔아 넘겨 이득을 얻으려는 나쁜 자들도 있지만, 상환노력을 했으나 세상 일이라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앞의 경우에는 이론상 형사처벌도 가능하겠지만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이 시사하듯이 대부분의 경우 어쩔 수 없이 못갚았다는 것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적으로 돈을 빌려준 친구, 친척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 주면 돈도 친구도 모두 잃는다는 말은 오랜 역사적 경험에 의하여 체득된 지혜가 속담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친구를 누가 돕겠냐고요? 돈 거래는 위험의 평가와 관리에 전문적인 금융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금융기관이 나서서 빌려 주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타당한 사업계획을 이들에게 제시를 못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실패할 가능성이 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친구와의 돈 거래는 친구를 돕는 것이 아니라 망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실패할 사업을 하게 하는 것이니까요. 물론 생존을 위하여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정심에서 돈을 준다면 그것은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주어야 합니다. 나의 능력과 자비심이 부족하다면, 그 사람이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공적인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Q 사업을 하다가 생각보다 잘 안되어서 10여 년 전에 가진 것을 다 털어 세금, 임금, 은행 빚, 밀린 집세, 외상값을 거의 정리하였습니다. 2부 이자로 돈을 주던 사채업자 오 사장에게는 반 밖에 못 갚았는데 나머지 2,000만원은 “오랫동안 거래해 온 마당에 나중에 여건 되면 원금만 갚고 아니면 말아라”면서 사실상 포기해 주었습니다. 어쨌든 고맙게 생각하고 재기를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만, 워낙 가진 것 없이 시작해서 최근에야 간신히 3천만원 주고 지방에서 연립주택을 하나 마련하였습니다.

A 그런데 최근 사망한 오 사장의 상속인이라며 예전의 차용증서를 가지고 아버지가 원금 받은 것도 부인하면서 4,000만원 및 10년 간의 이자(계산해 보니 1억원 정도 됩니다)를 갚으라고 민사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반 갚은 영수증은 일곱번 이사를 다니느라 어디 갔는 지 찾을 길이 없고, 죽은 자가 말이 없으니 받은 갚았고 나머지는 면제해 주었다고 할 증거도 없어 답답할 뿐입니다. - 한만희(45세)

한만희 씨의 채무는 일반 채권에 관하여 적용되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굳이 죽은 오 사장이 2천만원은 받고 나머지는 면제해 주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이자는 받지 않기로 했으니 부당하다는 증거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소멸시효 제도는 채권이 오랫동안 실현되지 않을 때 채무자의 항변에 의하여 그 효력을 없애려는 제도입니다. 본래 법치국가에서는 권리가 실현되지 않는 상태를 시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채무를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갚으라는 판결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역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시행합니다. 그렇지만 권리가 실현되지 않은 채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채무자는 이 상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익을 쌓아 올리게 되고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것을 뒤집으려고 하면 채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그와 거래한 제3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명국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새로이 생기는 이익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소멸시효기간은, 이행기로부터 기산하여 민사상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상사 채권은 5년입니다. 자주 정산을 볼 것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특정 채권에 관하여는 더 짧은 시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물품대금, 공사대금 같은 것은 3년의 시효에 걸리며, 음식 외상 대금이나 수업료는 1년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줄일 수는 있지만 늘릴 수 없습니다. 늘리게 된다면 당사자의 합의로 국가 정책을 좌우하며 사법자원을 낭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효제도는 보통 첫째, 시간이 지나면 재판에 활용할 증거도 없어지게 되고, 둘째, 권리 위에서 잠을 자는 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말로 정당화합니다. 따라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면 다시 재판을 할 필요가 없으니 그때부터 10년 동안은 시효가 완성하지 않고 또 반복할 수 있습니다. 또 소송을 제기하거나 압류를 시행하면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뜻하는 것이므로, 시효가 일단 중단되고 그 사유가 해소되면 처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최고에도 6개월 뒤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조건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또 시효완성 사실이 인정되면, 다른 원고 주장에 대하여는 굳이 심리할 필요도 없지만 재판절차에서 이익을 받는 피고가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한만희 씨가 소멸시효완성으로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는 저쪽에서 걸어온 재판에 응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효를 얼마로 정할 것인가, 어떤 경우에 중단을 시킬 것인가는 특별한 정의관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입법을 하는 사람들이 편의상 어떤 기간을 정하는 기술적인 사항에 속합니다. 따라서 기술적이고 복잡한 판단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만희 씨와 같이 실제로 소송을 당한 이후에는 어떠한 전력을 취할 지에 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Q 3년 전에 자금 사정이 너무 어려운 시점에서 친구 소개로 알게 된 사채업자에게 돈 50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동안 월말에 찾아 오는 채권자에게 이자만 주고 있었는데 말이 이자이지 월 20만원씩 3년이니 720만원이 건너갔습니다. 하도 부담이 되어서 원리금 전체를 갚으려고 하니, “좀 더 쓰라”면서 수령을 거절하더니 두 달동안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강제로라도 갚을 방법이 없는지요. -서영은(47세)

A 공탁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려고 하는데 채권자의 협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채무자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불이익을 받는다면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빚을 지고 있는 것은 채무자에게 불리하고 채권자는 채무자를 돕기 위하여 돈을 빌려 준 것이라고 주장되지만, 이자 수입을 충분히 얻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속 빚을 지고 높은 이자를 지급하기를 기대합니다. 채무자가 이러한 기대에 반하여 신속히 상환한다면 채권자로서는 반가울 리가 없습니다. 비교적 신용이 높은 사람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은행의 경우에도 만기 전에 상환에 별척적인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보면 명백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의사 여하와는 상관없이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행할 것으로 약속된 바를 하면 채권자가 소지하고 있는 채권증서를 회수하지 않더라도 그 채권증서는 무효가 됩니다. 여기에 채권자의 수령이 필요한 상황에서 채권자가 이를 거부할 때에는 채무자가 지급할 금액을 공탁함으로써 변제한 것과 마찬가지로 효력을 부여 받습니다. 말하자면, 채권자에게 강제로 갚는 것입니다.

현재 공탁소의 직무는 채권자 주소지의 법원 직원 중에서 지정된 공탁공무원이 담당하며, 채권자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심지어는 채권자가 누구인 지조차 알 수 없을 때에도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정된 공탁소에서 공탁을 받아 줍니다. 공탁이 시행되면 즉시 변제의 효력이 생깁니다. 채권자는 통지를 받아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탁을 한 채무자도 마음이 변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공탁은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공탁은 채무액 전체를 하여야 하고, 채무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공탁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공탁이 효과 있게 하기 위하여는 명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서영은 씨의 경우에는 원금 500만원과 두달동안 밀린 이자 40만원을 합한 540만원일 것으로 보입니다. 공탁은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시행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수령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탁을 할 때까지는 이자가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앞아서 빌려 주고, 서서 받는다 - 속담

채무자는 채권자가 달라고 하기 전에 스스로 빚을 갚을 것이 기대된다. 이것은 법률상의 원칙(지참채무)이기도 하며, 대부분의 채무자는 그렇게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을 거부한 순간 채권자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채권증서가 휴지라는 것 또는 적어도 곧 휴지가 될 수 있으리라는 상황을 인식하게 된다.

이때가 되면 채권자는 가치가 의심스러운 물건을 고객에게 비싸게 팔아야 하는 방문판매원의 운명에 처하게 된다. 돈을 빌려 줄 당시에는 채무자가 자신이 지급인인 채권증서를 파는 것이었으니 아마도 채무자가 방문판매원의 지위에 처해 있었을 것이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위 속담을 거꾸로 하여 “서서 빌려 오고, 앞아서 갚는다”고 할 수 있다. 채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갚으라고 채무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며, 채무자가 갚는 금액을 보유하는 것도 법률상 정당화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받을 것을 전제로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은 무가치한 것이다.

채권의 실질가치가 없을 경우 채권자가 추심으로 조금이라도 회수하면 이것은 다른 어떤 경제활동과 비교해 보아도 매력적이다. 누구도 사지 않으려는 채권증서를 돈을 받고 파는 것은 돌을 영양가 있는 빵으로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적적이다. 채권자는 집요한 영업사원처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채권증서를 팔려고 즉 빚을 받으려고 한다.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되는 지 여부는 채권자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나중에 벌어서 할부로 갚든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서 또는 얻어서 갚든 추심을 하는 채권자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동차를 사는 사람의 자금 출처가 정당한 지 여부가 판매원의 관심사항이 아니듯이, 변제능력을 잃은 채무자가 부모형제처 자식에게 돈을 얻어서 갚든, 천리마처럼 일을 하거나 복권에 당첨되거나, 강도나 성매매 같은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벌어서 갚든 채권자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추심의 기술은 기본적으로 영업사원의 그것과 같다. 부실한 채권을 팔기 위하여는, 즉 빚을 받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마련

해서 가지고 올 것을 설득해야 한다. 이것은 전화, 우편, 방문을 통하여 직접 또는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 캠페인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구매심리를 자극한다. 건강식품 판매원이 제품을 먹지 않으면 암에 걸린다고 암시하듯이, 추심을 하는 사람은 이 채권증서를 사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어 인생을 슬프게 마치게 된다고 주장한다. 대폭할인도 한 수법이다. 세일이라는 것이 팔리지 않는 재고를 처리하기 위하여 던져 놓은 고전적인 미끼듯이 채권추심에 관하여도 일체정리기간이 조직적으로 또는 추심인 마음대로 설정된다. 세일기간이 지난 후에는 원래의 정상가격으로 회복되니 좋은 조건의 거래를 위하여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듯이, 채권증서에 관하여도, 지금 갚으면 이자를 탕감해 준다고 유혹하며 때에 따라 20%, 30%까지 원금을 탕감해 주지만 20일 뒤에는 이런 혜택은 없다고 선전된다. 관심을 보인 사람이 집중적인 마케팅의 대상이 되듯이, 이 선전에 응하여 전화를 한 채무자는 다시 집중적인 전화와 우편에 시달린다.

둘째는 채권자가 자기 권리를 실현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다. 이행가능성이 여부를 떠나서, 일반의 물품 판매와는 달리 채무자는 본래 채권증서를 상환할 법률적인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고 누구든지 법적 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관한 신용불량사항을 공동의 전산망에 등재할 수 있고, 누구든지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한 채무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특히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 유체동산, 급여를 압류하면 대다수 채무자는 상당히 불편을 겪는다. 채권자가 이런 조치를 취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전문적 식견과 대처요령이 없는 약한 채무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위협으로 작용한다.

법적 조치는 보통 이득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경제적인 약자 배려에서 나오는 압류 금지 등 법적, 윤리적 제약도 받는다. 또 채무자의 대응행동을 촉발한다. 채무자는 회피하며 막다른 곳에 몰리게 되면 이 책의 주된 관심사인 파산절차를 선택하여 채권증서가 공식적으로 무효가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Q (주)근대캐피탈에서 2년 전에 재산도 생활능력도 없는 아버지에게 연 60%의 이자로 500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그 빌린 돈과 자식이 주는 생활비에서 이자를 넣어왔는데, 원금을 훨씬 넘는 금액이 건너갔는데도 남은 채무는 그대로입니다. 최근 생활비가 부족해서 이자를 밀리다가 추심원이 살림살이에 압류를 하고 자식인 저의 월급에도 압류를 하겠다며 독촉을 하는 모양입니다. 안쓰러워 다른 곳에서 빌려서라도 갚아 드리고 싶지만, 금액이 부담이 되고 능력 없는 사람에게 고리대금업을 해서 착취하는 근대캐피탈이 너무나 알밉습니다. 협상하여 일부 금액만 갚아 주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지요. -나효인(34세)

A 물론 가능합니다. 채권의 가치가 예를 들어 30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근대캐피탈은 300만원을 이상을 받으면 거래에 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권의 가치는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그것을 위하여 투입될 비용에 의존할 것이므로, 근대캐피탈이 아버님에게서 받을 금액이 거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원래 채권의 가치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의존하지만, 이 건과 같이 갚을 능력이 없는 따라서 정상적인 금융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상대로 하여 터무니 없는 이자와 수수료 명목의 수입을 챙기는 약탈적 대출행위(predatory loan)에서는 채권증서의 가치가 채무자 자신의 재산 상태보다는 추심의 고통을 받은 채무자가 일을 해서 또는 친족과 친지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채권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지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자식들에게 돈을 얻어 내서 원리금을 상환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근대캐피탈이 스스로 평가하는 채권의 가치는 채무자의 추측보다 훨씬 높을 것입니다. 나효인 님이 근대캐피탈에 대하여 조금 감해 주면 청산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는 경우, 저쪽은 자식으로서 아버님의 빚을 갚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 근대캐피탈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실채권의 값을 높이 평가하여 거래가 쉽게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인 근대캐피탈이 채권의 가치를 낮추어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채무자인 아버님이 연체를 실행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물론 근대캐피탈은 처음에는 추심을 심하게 할 것입니다. 이에 응하면 약탈적 대출행위의 본래 목적을 이루는 것이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으면 근대캐피탈은 이제 받기 힘들다는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값을 받을 때에만 자기의 물건을 팝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부모의 자식에 대한 의존심을 타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공양미 삼백석에 몸을 팔아 아버의 눈을 뜨게 하는 것과 같은 효성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쓴 빚을 자식이 갚는 것은 그러지 않아도 물려 받은 것이 없는 가난한 자식을 더욱 더 가난하게 하고 자식 마저 빚에 빠지게 하니 근절되어야 할 악습입니다. 그 다음, 가진 것이 없는 아버님이 법적으로 조치를 당해 보았자 잃을 것이 없고, 자식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없으니 재산적으로 피해 볼 일은 없습니다. 흔히 갚을 능력이 안 되는데도 돈을 빌려갔으니 사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데, 약탈적인 고리대금행위에서는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대금업자가 잘 아니 사기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혹시 감옥에 가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도 근거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인식 하에 채무자인 아버님이 단호하게 빚 갚는 것을 단념하고 자식 된 입장에서라도 한강에 돌 던지듯 무익하게 빚을 갚아 주지는 않을 태세를 보게 되면, 소지하고 있는 채권증서가 휴지에 불과하다는 점을 채권자는 점차 깨닫게 됩니다. 이 상황까지 이르게 되면 근대캐피탈이 액면가 보다는 훨씬 낮은 그러나 채권의 가치보다는 훨씬 높은 금액 예를 들어 100만원에라도 자신의 채권을 팔 궁리를 하게 됩니다.

한편, 흔히 원리금 탕감을 조건으로 일단 현금을 거두어 들인 다음 나중에 담당자가 바뀐 후에 채무가 모두 해결된 것이 아니고 일부만 변제 받았고 그것도 이자에만 충당되었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문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넘을 때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하는 호랑이에게 떡을 주었어요. 마침내 떡이 떨어지자 호랑이는 어머니를 잡아 먹었어요. 호랑이는 이제 오누이마저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중에서

원래 채무자에게 채권증서에 선언된 금전의 지급을 촉구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이다. 채무자의 의무감과 자존심을 자극하거나, “당신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나는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할 것이다”라고 위협하는 것이나 “10만원이라도 먼저 입금하면 월말까지는 찾아 와서 독촉하지 않겠다”고 회유하는 것 정도는 평화적인 추심기술의 범주에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현대 국가에서 채무자를 감금하거나 신체에 해를 주는 것은 반문명적이고 야만적인 범죄로 다루어진다.

그런데 방법상으로는 평화적으로 보이는 추심 방법도 채무자에 대한 폭력이 되기도 한다. 첫째는 추심행위를 하는 사람의 위력이다. 젊은이가 놀러 와서 인사를 하고 작게나마 굶은 일도 해 준 것에 대하여 용돈을 준 유흥업소 주인은 보호비 명목의 돈을 갈취 당한 선량한 피해자로 인식된다. 현대적인 정보망을 갖추고 통일적인 행동지침에 행동하는 추심조직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보통의 가난한 채무자에게 압박이 된다. 개인이 전하는 메시지는 조직을 대변하는 것이다. 검은 양복을 입은 젊은이 여럿이 실사라는 명목으로 찾아왔을 때 통상의 채무자가 공포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둘째는 반복성이다. 스토킹(stalking)이 형사적으로 처벌될 수 있듯이 하물며 사랑한다는 말도 폭력행위가 될 수 있는데 돈을 갚으라는 독촉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따라다닐 때 채무자는 마음이 흐트러진다. 시간을 빼앗기는 것은 당연하고 일에도 전념하지 못하게 된다.

본질적으로 부실채권의 방문판매에 해당하는 추심행위가 조직적,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상황이 계속되면 당연히 약자의 생존은 부정될 것이므로 마치 호랑이와 아이

들 사이의 관계를 조율하듯이 직업적인 추심을 금지하거나 허용해도 추심원의 행동을 건전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변호사 아닌 자의 제3자의 직업적 추심행위는 금지되었고 위반자는 해결사라며 엄히 처벌 받았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금융자율화 이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직업적인 추심업이 허용되었으며 다만, 신용정보업자가 채권추심업무를 함에 있어 다음의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친족, 가족, 직장동료에게 알려 부담을 주는 방법

다. 채무에 관한 허위 사실을 알리는 방법

라. 심야방문과 같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
그러나 실무상 처벌 빈도나 정도는 실무상 중요성이 문제될 정도는 아닌 것 같으며, 이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개별적 피해자에게는 비용에 대비하면 이익이 없어 집단소송제도가 일반화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품위 없는 추심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이 되기를 기대하기도 힘들다. 사법적인 견제보다는 위법한 추심을 당한 채무자가 인터넷 접속을 통하여 또는 전화와 우편으로 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청와대 등의 국가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정치과정을 통하여 추심 담당자에게 싫은 소리가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실효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한 순간 뿐 채무자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으니 반복된 추심에 대한 반복된 민원의 제기는 발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채무자만 지치게 한다.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가벼운 반면에 행위 자체는 계속 허용된다면,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발본적인 채권추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는, 채무자가 더 이상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할 터이니 독촉하지 말라거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정하였으니 이쪽으로 추심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에는 더 이상 전화, 우편, 방문을 통하여 빚을 추구하지 못하고 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할 필요가 있다.



Q 거의 매일 낮이나 밤이나 수시로 독촉전화를 받습니다. 직장에서도 의욕이 없고 눈치가 보여 마음이 무겁습니다. 양심과 도덕을 거론하면 고양이 앞의 쥐 심정입니다. 얼마만 입금하면 원금 탕감도 해 주겠다면서 언제까지 가능하느냐고 묻기도 하고 남들은 열심히 벌어서 갚는데 당신은 무엇을 하느냐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한밤에 오는 전화에 민원도 넣어 보았는데 이제는 주로 한참 일하는 낮에 전화가 오니 일에 지장을 받습니다. 어찌다 전화가 안 오는 날에는 오히려 무슨 꿩꿩이로 이러나 불안합니다.

A 휴대 전화 없을 때에도 우리 모두 잘 살았습니다. 따라서 없애 버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전화를 개통하고 하지 않고는 개인의 자유이므로, 안 받는 것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 번호를 바꾸어도 됩니다. 반복되는 전화에 응답을 하지 않으면 추심원의 다른 행동을 촉발할 것이니 가끔 전화를 받아 대화를 하라는 사람도 있지만, 별로 잃을 것이 없는 채무자에게는 굳이 권하지 않습니다.

추심원에게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채무자가 추심원 개인에게 빚진 것이 아니고 그 사람도 고용된 것 또는 추심을 수급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부실채권을 사라고 권유하는 판매원에 해당하고 판매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것에 불과합니다. 도덕심과 자존심을 자극하는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채권추심의 희망을 주지 마십시오. 빚발치는 전화를 면하려고 일단 얼마를 입금하라거나 분납약정, 대환대출을 하라는 권유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채무자는 순응하는 사람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그 다음에는 약간이라도 말을 듣지 않으면 더욱 더 추심전화가 자주 옵니다. 추심하는 사람은 이름 그대로 돈을 걷을 분 채무에 관한 어떠한 처분권도 없습니다. 원금도 탕감해 주고 분납도 가능하게 해 주겠다는 제의는 대부분의 경우 추심하는 사람이 추심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기 위하여 권한도 없이 꾸며 대는 말입니다.

내가 자유로운 것처럼 상대방도 자유롭게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전

화를 하는 지 하지 않을 지 여부도 그쪽의 자유이고, 이것은 그날 바쁜 일이 있었다는 우연일 수도 있고 마음 약한 채무자에게 스트레스를 주려고 추심원이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 탐구하는 것은 합리성이 지배하는 영역을 벗어나 정신의학적인 문제가 됩니다. 거의 매일 남편에게 맞으면서도 참고 사는 가련한 여인은 맞지 않은 날은 “오늘은 언제 때리려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잠을 못 잡니다. 늘 폭력에 굴하고 사는 것입니다. 적당한 해결책은 그것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고, 가출하여 자유를 찾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추심 전화를 기다리는 채무자는 추심원에게 지배 당하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전화를 없애 버리는 것일 수도 있고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게 하여 그가 더 이상 추심 전화를 하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전화 해 달라는 저쪽의 전갈에 응대하면 이쪽에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화요금은 받는 자가 아니라 거는 쪽에서 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심을 하는 쪽에서 전화를 걸어왔을 때 오랫동안 통화를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추심회사에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추심전화를 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경우에는 비싼 직원의 인건비가 더 발생합니다.

개는 짚습니다. 화가 난다고 여기 응하면 더 짚습니다. 또 짚는 개를 달래려고 먹을 것을 주게 되면, 나중에 배가 고플 때 개는 더 짚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 짚는 개를 무시하고 가만히 두면 짚다가, 짚다가 제풀에 지쳐 그쪽도 이쪽을 무시하게 됩니다. 추심 전화로 인하여 아무런 이익도 주지 않으면 추심은 확실하게 줍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면서 이에 대응한다고 생각하는 채무자는 ‘헛똑똑이’입니다. 무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안입니다. 도발적인 말투를 견디기가 감정적으로 힘들면 전화를 없앨 수 밖에 없습니다.



Q ●●신용정보회사, ●●유동화전문회사에서 빨간 글씨로 ‘법’자가 쓰여진 우편물을 보내 왔습니다. 용어도 생소하게 형사고소 확정통보, 법절차대상자 확정통보, 유체동산과 전월세보증금 및 통장 가압류 확정 통지, 재산관계명시명령신청예정통보와 같이 써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어떤 것은 소장이라고 하여 법원의 이름까지 찍혀져 있고 어떤 것은 고소장이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고 경찰서장에게 저를 고소한다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강제집행신청서라고 붙어 있고 법원의 집행관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짜 법원에서 조치가 시작된 것일까요?

A 전투에서 미리 예고하고 공격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큰 나라가 말을 잘 듣지 않고 저항하는 세력을 제거하려고 침입할 때 공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분을 축적하기 위하여 예고하지만, 실행에 옮기는 예는 많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소송이나 압류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때 미리 예고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정말로 예의 바른 기관이라는 이야기는 들겠지만, 채무자가 상당히 대비를 할 것이기에 법적 조치의 실효성이 적어집니다. 따라서 보통 우편물을 보내는 것은 마치 추심 전화를 계속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무시하되 파산신청 용도를 위하여 사과상자에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은 반송용 주소에 법원의 주소가 찍혀 있고 “특별송달”로 옵니다. 거기에 맞추어 대비를 하면 되고, 채권자가 민사재판을 제기한 소장이거나 지급명령이거나 이행권고결정 같은 것들은 나중에 파산신청, 기타 채무자로서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쓸 때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보존합니다. 금액이 맞으면 이의나 항소로 불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소장이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고소가 제기되면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을 먼저 청취한 다음 전화로 또는 우편으로 피고소인을 소환하지 절대로 고소장을 우편으로 보내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우편물은 법이 금하는 위계를 사용한 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Q 생활보호대상자로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삽니다. ●●카드회사에서 채권추심을 의뢰 받았으면서 조선신용정보라는 곳에서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곧 실사를 하러 찾아 오겠답니다. 저는 일 하러 다니고 낮에는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만 집에 있는데 무슨 봉변이나 당하지 않을 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시끄럽게 떠들까봐 걱정입니다.

A 별 한가한 걱정을 다 하십니다. 심리적 공황상태를 노리고 어떤 짓을 해서라도 돈을 가지고 오게 만들려는 초보적인 추심기법입니다. 찾아 오면 어떻습니까? 가끔 추심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기는 합니다. 채무자의 생활수준을 직접 보고 혹시 채무자가 재산을 감추어 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지 및 앞으로 갚을 능력이 있는 지를 보기 위함입니다. 어떤 추심원은 채무자를 찾아 왔다가 사는 꼴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파 라면이라도 한 상자 사라며 돈 2만원을 주고 가기도 합니다.

현대 국가는 채무자라고 때리지 않습니다. 결코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탄압을 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서양의 법제에서는, 채무자를 죽이거나 가족과 함께 노예로 팔아서 빚을 받아 내는 것이 아득한 과거의 일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빚을 지고 있다고 해서 채무자를, 가족을 해친 추심원이 있다면 그를 고용한 회사는 1주일 정도 언론에 시끄럽게 논의 되다가 아마도 다음 달에는 회사 간판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폭력은 정부 만이 독점합니다. 정당화 되지 않은 폭력은 자연력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자연력으로부터 시민을 지킬 의무가 있고 시민 또한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 때에는 스스로 저항할 수 있습니다. 자연력에 저항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도시 한가운데로 늑대나 멧돼지가 들어 와서 사람을 해치고 돌아다니면 이것을 목격한 시민은 경찰에 신고하여 국가가 이를 제거하게 할 수 있고, 직접 피해를 당한 시민은 총과 칼 그리고 몽둥이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끔 어떤 채권자가 채무자를 납치, 폭행하였다는 이야기가 가끔 언론에 보

도 됩니다. 이것은 예외적인 일입니다. 신문에는 개가 사람을 물었다는 것은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람이 개가 물었다는 것이 뉴스 가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받을 만큼 다 받고 나서도 악질적으로 추심행위를 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 채무자가 채권자를 납치, 살해한 예도 보도 됩니다. 이것 역시 예외적이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마치 호랑이가 동물원을 탈출하여 도심을 활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 국가는 용납하지 않지만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위험을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동네 시끄러우면 어떻습니까? 임대아파트라면 이웃 역시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동네에서 빗진 채무자를 모욕하는 사람은 아마도 위협을 느낄 겁니다. 근심은 걱정을 낳습니다. 그리고 걱정은 공포로 이끌어가고 결국은 공황상태를 스스로 야기합니다. 이 정도로 가면 정신병리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윽고 그들은 긴 줄을 지어 가지고 차압 취소와 소작료 면제를 탄원해 보려고 묵묵히 마을을 떠났다. 아낙네들은 전장에나 보내는 듯이 돌담 너머로 고개를 내가지고 남정들을 보냈다. 만약 보광사에서 들어주지 않는다면..... 하고 뒷일을 염려했다. 그러나 또출이, 들깨, 칠한이, 봉구---이들 장정을 선두로 한 빈 짚단을 든 무리들은 어느새 벌써 동네 뒤 산길을 더위 잡았다. 철없는 아이들도 행렬의 꿈무늬에 붙어서 절 태우러 간다고 부산히 떠들어댔다.

- 김정환, 사하촌(寺下村)

로마인들에게 식인 풍습이 있었다고는 믿기 어렵고, 고대의 의학 수준이 장기이식을 가능하게 할 정도는 결코 아니었으리라. 채무자를 죽이는 것은 채권자의 복수심을 만족하는 역할을 할 뿐이었을 것이다. 요즘도 이런 일을 시도하는 가증스러운 자가 가끔 보도 된다. 다만,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으며, 정신의학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상태로 보아진다. 냉철한 채권자는 채무자를 ‘티베르 강 건너 이방으로’ 노예로 팔아 넘기는 것으로 실리를 챙겼을 것이다. 역시 21세기 대한민국에도 ‘신체포기각서’ 운운하는 말이 있듯이 계속 행해지고, 다만, 인신매매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복수살인과 인신매매를 당연한 것으로 인정한 이 12표법이 공식적으로 폐기되었다는 이야기는 없는 것 같다. 로마는 계속 노예제가 유지된 채로 멸망하였다. 중세에 유대인에 의하여 기독교인이 노예화 되었을 경우에는 유대인을 처벌한다는 칙령이 공포되었다는 기록도 있다는 것이고, 중세 베니스를 배경으로 한 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에서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이 안토니오의 심장에서 가까운 1파운드의 살을 추구한 것으로 묘사된 것은 그의 인식이 정확하다면, 12표법이 인정한 채무자에 대한 린치가 중세에까지 (채무자가 사전에 동의하였다는 전제 하에) 합법적인 것으로 인식되었음을 뜻한다.

-김관기, 개인파산의이해, 해오름 2004, 77면

재산이라고는 자식 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프롤레타리’라고 부르고, 그 때문에 직접적인 균역을 면제 받은 무산자 계급을 제외한 로마시민은 모두 병사였다. - 시오노 나나미 로
마인이야기 1, 180면

비용을 충당하는 이상으로 받을 가망이 없다면 법적 절차를 취할 이유가 없다. 실 무상 문제되는 전형적인 개인 채무자는 보통 파탄에 이르기 전에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채무와 투쟁을 해 왔다. 재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토지와 건물, 그리고 주택과 아파트 순서대로 처분해서 채무를 정리해 왔고, 자기 집에서 전세로, 대도시에서 위성도시로 다시 시골로 밀려 나왔다. 이들은 최대한도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 전세 또는 월세집에 살며 가재도구라고 해야 변변한 것이 없고 건강 보험 하나 정도 들었고 생활대책은 직장에 다니면서 얻는 급여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채무자에 대하여는 단 하나의 법 절차도 제기되지 않고 극히 일부만이 소송과 압류를 당한다. 어차피 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 사실상 무효화될 수 있는 반면에 계속 전화를 해 댄다던가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위협적인 공문을 보내는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더 싸게 회수되기 때문일 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채권회수 소송은 채무자들이 전혀 다투지 않기 때문에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판결을 받을 수 있고, 거의 기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가는 지극히 싸다. 그렇다면 법적 조치를 통하여 그 원가를 초과할 만큼 지급을 받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채권자들이 잘 알고 있기에 공식적인 법적 조치에 나서지 않는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맞다.

사실 우리는 채무자의 면책을 인정하지 않고 영구히 갚으라고 법제도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채무자들이 버는 돈을 초과하여 변제를 하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이것은 채권자들 자신의 행동 방식에서 보면 명백하다. 순무(beet)에서 피를 뽑아낼 수 없다는 서양 속담은 채무자들을 더 짜내서 조금이라도 더 갚게

하려는 강제에 적절히 적용된다. 돈이 없는데 어찌 갚는가?

흔히 주로 금융권의 인사나 대금업을 해 온 사람들 쪽에서 채무자들은 모두 재산을 처분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감추어 두었기에 빚을 갚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도둑이고 사기꾼이라는 것이다. 물론 그런 채무자도 있을 것이다. 사람은 유혹에 넘어가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모두를 도둑으로 몰려는 어거지이다. 뇌물을 상습적으로 받는 고위 공무원이 있을 지도 모른다. 그렇게 주장되는 것만으로도 큰 스캔들이 된다. 그렇다고 모든 공무원이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과학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하여 허위의 업적을 내 놓고 나랏돈을 지원 받는 사례는 임금님을 별거벗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떠들썩한 사건이 된다. 그렇다고 모든 과학자를 사기범으로 단정할 수 없다. 채무자는 재산을 빼 돌렸다고 말하는 것은 정치인은 다 썩었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혹시 너무나 많은 사람이 감추어 두었다면, 그것은 감춘다는 것의 기준을 변경하여야 하는 것을 뜻한다. 안정적인 사회는 소수만이 범법자가 되도록 한다.

채권자가 법적 절차에 나서는 것은 채권회수의 기대 때문일 수도 있으나, 대부분은 채무자의 자발적 변제를 이끌어내려는 압박수단 즉 레버리지(leverage)로 활용된다. 이것은 채무자에게 여러 가지 선택을 고려하게 한다. 첫째 벌어서 갚기는 비현실적이다. 과학은 과거에 이랬으면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논한다. 변증법은 비과학적이다. 전에 가난했으면 앞으로도 가난할 것이다. 전에 잘 못 벌었으면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급격한 저축을 위하여 복권을 사고, 강도를 하고 몸을 파는 사람도 있지만 역시 비현실적이고 대가가 크다. 둘째는 채권자를 피하는 방법이다. 어떤 이는 주민등록을 실제 살지 않는 곳에 옮기기도 하고 어떤 이는 아예 말소되도록 한다. 아예 채무 없는 먼 세상으로 가기 위하여 바람 부는 다리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보호를 요구한다. 국가의 보호는 내 빚을 대신 갚아 달라고 하는 사회주의적 방식과 파산제도로 금융채무를 취소하는 자본주의적 방식이 있다.



Q 벤처회사로 직장을 옮기면서 퇴직금 2천만원을 받고 그동안 저축한 돈 1천만원, 을 보태고 채권최고액을 8천4백만원을 설정하고 주택담보대출 7천만원을 받아 5년 전 인천시에 연립주택을 1억원에 분양 받아 월 50만원씩 이자를 내며 살고 있습니다. 월 180만원의 급여를 주던 회사가 2002년도에 월급을 밀리면서 약 6개월 카드로 생활하여 빚이 생겼고, 큰 아이가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치료비 약 1천5백만원을 카드 현금서비스로 막았습니다. 어려운 사정에 2년 동안 돌려막았더니 금융권 채무가 무려 8천만원이 되었고, 2004년에 회사가 문을 닫아 대출금연장과 돌려막기가 불가능해졌는데, 갚을 길은 없고 채권자가 집을 압류하면 갈 곳이 없어질 터이니 근심입니다. 팔아서 빚을 갚으려고 해도 현 시가는 연립주택이라 분양가보다 떨어져 8천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아는 사람 하는 말이 다른 금융권에서 압류하기 전에 집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 놓으라고 합니다.-고문관(43)

A 다른 어떤 일을 해도 좋은데, 제발 집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려 놓는 짓만은 하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정직한 채무자는 동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리한 채무자는 조금이라도 타격을 덜 받으면서 생존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기술을 찾습니다. 그런데 남의 명의로 바꾸어서 계속 살겠다는 것은 미련한 기술입니다. 물론 살고 있는 집을 유지하고 싶은 고문관 님의 마음에 영합하는 유혹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익이 없고 해가 되는 일을 하는데 돈을 들이는 것은 가장 미련한 선택입니다. 이 연립주택은 고문관 님의 명의로 되어 있을 때에는 채권자는 이 주택을 압류해서 조금이나마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권자의 그런 기회를 빼앗으면 제재를 받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이 주택은 명의만 고문관 씨 앞으로 되어 있지 사실은 채권자의 것입니다. 그것도 소유권이 넘어가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으니 7,000만원은 아예 근저당권자인 은행의 것이고, 나머지 1,000만원은 고문관 씨의 몫이지만 그나마 이것은 8,000만원의 무담보채권을 가진 일반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입니다. 이것

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는 것은 일반 채권자의 몫을 배제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문관 씨가 돌려 놓아도 겨우 1,000만원 어치의 이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명의로 돌려 놓는다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비용지출을 수반합니다. 인지세를 내고 채권을 사야 하며 등록세, 취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법무사 수수료도 고려해야겠지요. 예를 들어 50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1,000만원의 이익을 남긴다면 이것은 그다지 남는 장사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둘째, 그나마 그 이득은 고문관 씨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채권자들을 위한 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다른 곳에 빼돌려 놓는 사해행위가 실행된 경우, 채권자는 명의를 빌려 준 사람(수익자라고 합니다)을 상대로 하여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돌려놓은 주택의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반드시 채권자가 승소합니다. 물론 수익자는 자신이 진정하게 대가를 취득한 것이고, 채무자가 빚이 많은 것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상당히 노련한 전문가의 치밀한 기획이 필요합니다. 채권자의 청구에 응소하면 또 비용이 들겠고, 기존의 이전비용만큼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셋째,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허위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27조). 경찰서로, 검찰청으로, 또 정식 재판이 되면 법원으로 끌려다니면서 시간과 비용을 쓰고 결국 처벌 받습니다.

넷째, 파산법상의 면책을 못 받습니다. 이 때 채권자의 소송으로 재산이 결국 채무자에게 돌아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었다는 항변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반칙으로 게임을 룰을 어긴 자는 퇴장 당하거나 게임을 몰수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파산절차의 법칙을 어긴 자는 파산절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만지의 게임을 바꾸려고 한 피터가 원승이로 퇴화하는 벌을 받듯이 말이지요.



Q 그러면 1천만원 어치 뭏을 가진 저는 돌려놓기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저는 살아야 하고, 노숙자가 될 수는 없는데. -고문관(43) 계속

돌려 놓기를 하지 않고 살 수 있고, 또 노숙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귀하가 1,000만원 보증금을 가지고 있고(시가 8,000만원 - 담보대출 채무 7,000만원), 월세 50만원을 내고 사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습니다. 이것을 줄이지 않고 저축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A 첫째는 그냥 사는 것입니다. 월세 내고 살듯이 집 담보대출의 이자를 넣고 삽니다. 그러면 담보대출을 시행한 금융기관으로서는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굳이 근저당권을 실현하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니다. 앞으로 집 값이 현저히 오르지 않으면 다른 8,000만원의 채권을 가진 일반채권자는 강제로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경매되는 가격은 보통 인식하는 시가보다는 낮습니다. 예를 들어 7,000만원에 경락된다면 먼저 비용에 충당하고 나면 근저당권자의 채권도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경매비용과 앞의 선순위 채권에 충당하고 남은 정도 이하로 최저경매가격이 결정되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그 이상의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약속하고 담보를 제공해야 경매절차가 속행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매법원은 경매를 취소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라면 고문관 씨는 상당히 장기간 버틸 수 있습니다.

둘째, 물론 영구히 그렇게 되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을 받고 담보대출을 실행한 은행이 채무불이행 정보가 협회전산망에 오르면 자신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는데도 규정을 들먹거리며 담보대출을 연장해 주지 않는 허점함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그나마 주택담보대출 이자 50만원도 내지 않습니다. 늘 내던 금액이라면 월 50만원 씩 저축도 가능할 것입니다. 연체이자를 적용하면 은행도 계산상으로는 막대한 이익을 보고 그것이 채권최고액으로 담보가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확보도 됩니다. 따라서 은행에 따라서는 바로 경매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담

보대출에 대하여는 보통 주택금융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기관이 보증보험을 인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이 보증기관에 청구를 하고 보증기관은 채권과 근저당권을 이전 받아 경매신청을 실행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매신청이 법원에 접수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지역에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이 많을 때에는 이와 같은 절차가 취해지는데 1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경매신청을 받은 법원의 처리용량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심한 때에는 경락까지 2년이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상환하던 50만원씩 20개월을 모으면 고문관 씨의 몫 1,000만원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이상 버티면? 그것은 버는 것이지요! 그 이후에는 재테크의 영역입니다.

고문관 씨의 집이 경락이 되면 이제 등기부에 올린 소유자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에 경락이 되었다고 할 때 새로운 소유자는 싼 값에 내 집을 마련한 실수요자일 가능성도 있지만, 어차피 주택임대사업에 투자를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경락인이 원래의 근저당권자에게 매월 이자 30만원에 4,000만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하고 자기 돈은 1,000만원을 투자하였다고 하면, 고문관에게 다가와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만원에 세를 놓으면 이 사람은 자신의 투자금을 전부 회수하고, 40만원의 월세 받아 이자를 상환하고도 매월 10만원의 현금 흐름을 얻습니다. 물론 고문관 씨도 월세가 40만원으로 줄게 되는 이익이 되지요. 또 들어와서 살 실수요자라면, 보통 원래 살던 소유자에게 이사비용을 주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망한 자에 대한 가진 자의 동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인도 받은 후 문짝과 샹시유리가 형편없이 깨져 있거나 배관시스템에 작은 돌과 시멘트 같은 이물질이 끼어 있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지 않는 쪽에서 악만 남은 사람을 매수하는 뇌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인색하고 끈질긴 게임을 잘 하는 경락인이라도 최저 150만원은 주는 것 같고, 이익을 많이 본 처지에 채무자의 협조 약속에 마음이 동한 신사는 500만원, 1,000만원까지 쾌척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부동산중개업계에서 개발한 세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Q 8천만원짜리 집에 7천만원 담보대출을 받아 50만원씩 내면서 다른 채무를 8천만원을 근근이 갚다가 이제 손들 판입니다. 팔아서 1,000만원이라도 건지려고 부동산에 내 놓았는데, 그쪽 실장이 요즘 찾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대신에 그냥 700만원을 줄 테니 그냥 임대차계약서에 도장만 찍고 가라고 합니다. 희망 없이 채권자가 압류 들어올 것 기다리느니 나가서 방 한 칸이라도 얻으려면 그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한천이(42세)

A 이 선택은 앞 절의 세 선택에 비하여 열등합니다. 경제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를 놓고 나가면 일단 이사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돈으로 월세보증금을 삼아 거처할 곳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비슷한 수준의 집을 찾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비싼 월세를 지급하게 됩니다. 가난을 면하지 못하는 아주 저급한 선택입니다.

이와 같은 브로커가 생기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때문입니다. 어떠한 근저당권이든 소액보증금에는 순위를 양보하여야 합니다. 주택에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소액 임차인은 근저당권의 설정보다 뒤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1,600만원, 광역시 지역에서는 1,400만원, 그밖의 지역에서는 1,200만원까지 경매 대가에서 우선적으로 변제 받습니다.

그렇다면, 수도권의 세입자는 1,600만원 이하의 방을 찾을 때에는 굳이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항상 앞서니까요. 지금 상황에서 한천이 씨가 이 집을 1,600만원에 전세를 주고 나가면 세입자는 경매에서도 이 금액을 떼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상 경매가 진행되면 집의 상황을 가장 잘 아니 가장 싼 값에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취약한 집의 소유자에게 접근하여 예를 들어 700만원을 주고 백지 임대차계약서를 받은 다음 적당한 사람을 임차인으로 하여 주민등록을 하게 한 후 1,600만원 짜리 계약서를 만들어 경매법원에 제출하는 기술이 발휘되는 경우가

자주 들립니다. 이것은 근저당권자에게 심한 손해를 끼치는 일인 지라 권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추구하는 목적의 반사적 효과인 지라 근저당권자의 손해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고, 반대로 근저당권자가 나중에 파산채권자의 지위에 서게 되는 경우 채무자가 정당하지 못한 수법을 썼다고 도전할 빌미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딱 소리 하나 올립니다. 소액보증금의 우선 변제는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방 하나 당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처분권을 수용 내지는 몰수해 버린 효과를 냅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수도권외의 방세개 짜리 1억원짜리 주택이라면 1,600만원의 3배인 4,800만원을 담보가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전에는 이런 이유로 금융권에서 대출 한도를 극히 낮추었었는데, 공적 자금으로 조성된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보증보험을 인수하면서부터 담보대출을 많이 제공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적어도 이런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주장할 자격이 없습니다.



Q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50만원을 주고 살고 있습니다. 돌려막기로 누적한 빚이 약 5천만원 정도 되고 최근 작은 회사에서 130만원을 받아서 저축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연체를 시작하였는데, 최근 상호저축은행에서 전화로 월세 보증금을 압류하겠다고 했고 집 주인에게도 임대차 사항을 물어보고 왔습니다. 근심이 많은 집주인은 은근히 나가 주기를 바라는데, 월세보증금을 빼앗기면 세 식구 갈 곳도 없고 큰일입니다.- 김명세(35세)

A 근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도의 월세보증금이라면 압류를 해서 얻을 금전적 이익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약한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뿐이며, 실제로 압류가 시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압류가 되어도 채무자나 집 주인이 나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본래 보증금이라는 것은 임차인(세입자)의 임대인(집 주인)에 대한 모든 채무 즉 연체된 차임(집세)와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집기 파손 배상금과 같은 것들을 담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입자가 집을 비워 주지 않으면 집 주인은 돌려 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압류를 시행하더라도 제3채무자인 집 주인의 권리를 제약할 수는 없는 것이니, 집 주인은 그 이후에도 채무자가 집세와 관리비 따위를 내지 않으면 반환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보증금에서 모두 까질 때까지 월세를 내지 않고 그냥 사는 것으로 채권자의 압류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김명세 씨의 경우라면 30개월입니다. 물론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를 집 주인으로서는 쫓아 낼 권리가 있습니다만, 망해 먹은 사람을 보증금이 다 까지기도 전에 나가라고 하는 집 주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잡으려는 채권자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째 소송을 제기 하여 채무명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때 비로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둘째, 집 주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인 세입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집 주인을 상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채권자대위), 그렇게 발생한 집 주인의 주택 명도청구권을 전부명령에 의하여 발생한 집 주인에 대한 채권에 기초하여 집 주인을 대위하여(역시 채권자대위) 세입자를 상대로 하여 주택을 이 소송에서는 제3자인 집 주인에게 명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또 집 주인에 대하여는 세입자로부터 주택을 명도 받음과 상환으로 임대차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두 소송은 하나의 절차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지만, 실무 경력이 꽤 된 변호사들도 혼동하는 복잡함을 내포합니다. 예를 들어 추심명령으로는 이 청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세 단계 하나 하나가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도 의사결정을 하느라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소송과 강제집행은 쉽사리 끝나지 않습니다. 집 주인은 당연히 “방을 빼지도 않았는데 무슨 보증금을 게 주느냐”고 당연히 답변할 것입니다. 또 채무자가 나간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정산하고 남는 금액에만 미치는데, 그 전에 채무자는 이미 임대차보증금을 찾아갔을 수도 있고 집 주인과 싸고 또는 그렇지 않고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해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차임 연체가 상당히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채무자를 동정한 집주인이 “벌써 1년 전부터 밀려 있고 보증금이라고 할 만한게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 받으려면 집세를 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경우 채권자의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여기에 협조할 리가 없습니다. 집 주인과 입을 맞추어 ‘집세를 연체하였다’고 주장하겠지요.

다만 장기임대아파트를 운영하는 공기업에서 채권이 가압류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한 사례가 이전에 종종 있었습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는 공기업이 아무런 손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가난하다는 이유로 임대아파트에서 내쫓겠다는 어리석은 행위이고, 차츰 판결로 시정되고 있습니다.



Q 저쪽에서 유체동산을 압류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보고 정신적 충격을 받을까봐 근심입니다. 이웃사람들 눈치도 보이고요.

이익은 거의 없는데 유체동산 압류는 간간이 시행되는 편입니다. 마치 채무자가 굴종하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나오기도 하고, 브로커 또는/및 추심원이 경락을 받아 바로 그 자리에서 채무자에게 돈을 붙여 팔아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에서 강제집행이 이루어집니다.

A 압류는 채무자가 소지하고 있는 동산에 흔히 빨간 딱지로 붙이는 표를 붙이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그 이후 관념적인 점유가 집행관에게 넘어가니 채무자는 압류한 물건을 손상, 은닉, 처분하면 안되며 표시를 손상,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할 수 없다. 물론 압류된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 소유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집행법원에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보통은 이의 비용이 더 비쌉니다.

부부 일방이 채무자인 경우 동산은 공유추정을 받으니 압류할 수 있지만, 그 중 반은 배우자의 것이니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선매수는 다른 사람이 부른 최고가에 할 수 있는데 추심의 실효를 얻으려는 채권추심인이 매수가를 올리면 상당한 돈을 들여야 합니다. 또 매각대금의 반은 배우자에게 돌아갑니다.

압류할 수 없는 물건이 있습니다. 대략 가전제품, 컴퓨터가 압류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무시해도 됩니다. 이들은 채무자의 노동 및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 또는 감정적 가치가 큰 것입니다.

- (1)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 (2) 2월간의 식료품, 연료 및 조명재료 (3) 1월간의 생계비 (4) 농민의 농기구, 비료, 가축, 사료, 종자 등 (5) 어민의 고기잡이 도구, 어망, 미끼, 새끼 고기
- (6) 전문직 종사자, 기술자, 노무자에게 필요한 제복, 도구 (7) 훈장, 포장, 기장

(8) 위패, 영정, 묘비 등 상례,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 집안의 역사적인 기록, 사진첩 등 (10) 도장, 문패, 간판 등 (11) 일기장, 상업장부 등 (12) 저작, 발명에 관한 물건 (13) 교과서, 학습용구 (14) 안경, 보청기, 의치, 의수족, 지팡이, 휠체어 등 (15) 장애인용 경자동차 (16) 소방설비, 경보기구

구입한 지 몇 년 된 가전제품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돈 주고 살 사람이 많지 않다. 이것들은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서 돈을 내고 버려야 하는 쓰레기 들일 수 있다. 둘째, 경매를 실행하면 십중 팔구는 경매될 물건의 소유자인 채무자의 아들, 딸, 형제 자매가 극히 적은 금액으로 사서 그냥 그 자리에 놓고 씁니다. 물론 채무자도 같이 삽니다. 물론 매각대가는 채권자가 가지지만 경매신청비용이나 추심직원의 인건비를 생각하면 유체동산의 경매는 결코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장롱 같은 것이야 사실 생활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니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장롱을 사 갑니까? 50대 남자가 처 자식으로부터 인기를 잃고 배척을 받던 중 가족들이 가장 몰래 이사 가 버릴 계획을 하는 것을 우연히 듣고 이사를 가는 날 가족들 몰래 장롱 속에 들어 가 숨었는데, 장롱 문짝을 열고 나와 보니 고물상이더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없으세요?

가재도구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에게, 또 같이 사는 가족들에게 치욕을 느끼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냉철한 채권자는 이익을 계산합니다. 강제집행으로서 채무자를 굴종시키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반드시 추심원은 유체동산 압류를 시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재도구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것을 무서워하는 자에게만 확실히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이익도 없는데도 이를 하는 것은 그 밖에도 자신들의 기대에 어긋난 자에 대한 제재의 의미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조차 자신의 기대와 달리 이익이 없는 압류를 시행한 회사와는 다시는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가

Q 1년 전에 카드회사 추심원이 집에 있는 유체동산(텔레비전, 냉장고, 컴퓨터, 장롱)을 압류하였습니다. 모두 5년 이상 쓴 것이라 가지고 가겠다는 사람이 없는 지, 더 이상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압류된 가재도구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솔직히 버리고 싶습니다. - 한가인 (45세)

A 압류는 물건에 대한 지배를 국가의 손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압류를 하는 순간부터 국가는 집행관이라는 기관을 통하여 압류된 재산을 점유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채무자는 물건의 점유를 상실합니다. 원칙은 압류를 시행한 후 집행관이 스스로 물건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강제집행 사건에서 물건을 집행관이 가지고 가야 한다면, 운반과 보관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기계류나 가구는 사용하지 않으면 고장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압류를 시행하고 그것을 집행관이 보관하면 채권자에게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집행관은 압류를 시행하였다는 빨간색 표지를 물건에 붙이면서 압류를 선언하고 다만 그 물건은 채무자에게 계속 보관하게 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채무자가 보관하면서 사용하지만, 법이 인정하는 관념적인 점유는 어디까지나 집행관으로 대표되는 국가에 있습니다. 즉 채무자의 점유보다 상위의 점유 내지는 지배를 집행관이 하고 있는 것이고, 채무자는 자신을 위하여서가 아니고 국가를 위하여 압류 물건을 보관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이 경우 채무자는 남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남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이사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즉 이사 갈 때 그 물건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처분하거나 고의로 훼손하지 않으면 됩니다. 압류된 물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자는 압류된 물건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관 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그 물건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압류된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채무자는 쓸모가 없다고 압류물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지만, 압류를 시행한 집행관에게 “도로 가지고 가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사를 할 때에는 압류물이전신고를 집행관 사무실에 하면 됩니다. 버리고 싶을 때에는 압류물을 더 이상 보관하지 않겠다고 집행관 사무실에 통지하면 됩니다. 실제적인 집행관은 이 정도에 이르면 채권자에게 압류를 취하할 것을 권고합니다. 압류가 취하되면 물건을 버리면 됩니다. 가끔 집행관 사무실 직원이 잘 모르고 채권자에게 취하를 권하지도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가지도 않겠다고 합니다. 이때에는 압류된 물건들을 집행관 사무실을 수취인으로 하여 택배로 발송해 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전국의 채무자가 압류물 보관을 거부하고 집행관 사무실로 보내기 시작하면 법원 청사는 구청 재활용센터 비슷해질 것 같습니다.



Q 월급 125만원을 받고 직장에 다닙니다. 추심원이 급여를 압류한다는데 생활비가 없어질까봐 근심입니다. -이미지(24세)

A 추심하는 쪽에서 시행하는 마지막 방법은 채무자가 다니는 직장에서 채무자가 받는 월급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급여는 전부 압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압류하면 채무자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채권자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채무자는 직장을 그만두는 것으로 채권자의 의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5. 7. 28.부터 개정 민사집행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급여 중 1/2 금액을 압류하던 종래의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1) 우선, 월급여가 1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2) 월급여가 120만 원을 초과하고 240만 원까지는 1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3) 월급여가 24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까지는 월급여의 1/2을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4) 월급여가 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 원 + $\{(\text{급여}/2) - 300\text{만 원}\}/2$ ”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대략 다음 표와 같습니다. 급여가 600만원을 넘는 사람은 개정 이전보다 불리해졌습니다.

	100	120	150	200	240	25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가	0	0	30	80	120	125	150	200	250	300	375	450	525	600
	100	120	120	120	120	125	150	200	250	300	325	350	375	400

또한,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A 직장에서 120만 원, B 직장에서 120만 원의 월급여를 받는 경우 합산한 240만 원이 기준이 되고, 압류가능금액은 24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제외한 120만 원이 됩니다.

위 방법에 의하면 이미지 씨의 급여 중 압류 가능한 것은 120만원을 초과하는 5만원입니다. 이 정도 받으려고 급여 압류를 시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압류를

당한 채무자는 해고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또 스스로 사직하기도 하기에 압류를 시행함으로써 채권자는 그나마 말로 해서 조금씩 회수하는 것마저도 차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용주로서는 자신의 돈을 주고 사용하는 직원이 쓸데 없는 추심 전화를 계속 받는 것이 달가울 리가 없습니다. 고용주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시간이 새는 것입니다. 고용주는 슬슬 채무자인 직원을 다른 눈길로 보기 시작하며 이것은 동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자가 일을 덜 하면 동료의 일 부담이 늘어납니다. 압류를 하면 고용주에게도 행정적 부담이 됩니다. 월급을 줄 때마다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압류는 중복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변호사라도 잘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의문이 생기면 공탁을 하면 된다지만 공탁을 하는 것도 인력에 여유 있는 큰 조직이 아니면 만만한 부담이 아닙니다.

물론 근로자가 다른 곳에 채무를 저서 봉급이 압류되는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 하면 통상은 이것은 사생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근로기준법으로 보호하려고 한다고 하여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결하고자 작심하면 어떻게 해서든 그 뜻을 이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근세를 내는 직장이 없이 산다. 특정인을 상대로 구걸을 하기도 하고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에 기대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두 다 아무 상관 없는 사람들의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퀵서비스를 하기도 하고 대리운전을 하고 서빙을 합니다. 많은 경우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나 기타 통계와 행정에서 빠집니다. 이들이 냈어야 할 몫은 제도권에서 고용되거나 달리 소득을 올리는 사람의 부담에 추가됩니다.

그리고 급여 압류는 무익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유일한 무기인 파산신청을 촉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채권자로서도 잘 알고 있기에 함부로 쓰지 않는 압박수단입니다. 이미지 씨도 미리 압류 들어올까봐 미리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압류 들어오면 파산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Q 마이너스 대출과 카드 빚을 이천만원 정도 지고 있습니다. 연체 직전에 돌려막기를 위해 대출 받을 때에는 솔직히 빚을 갚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엇그제는 추심하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 와서는 갚지도 않을 것이면서 카드를 썼으니 사기죄에 해당하고 고소하겠다고 해서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등기우편물을 받았는데, 저의 이름이 피의자로 적히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대출을 받아 얼마를 편취하였다고 적힌 고소장이 도착하였습니다. 교도소에 갈까봐 겁납니다. - 심미순 (31세)

A 전통적으로 돈을 꾸거나 외상으로 물건을 사는 사람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형편이 어려운데도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사용하고 갚지 못한 사람을 확일적으로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금품을 편취한 사기를 저질렀다고 보아 처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무는 이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거짓말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사기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융채권자는 자금운용을 함에 있어 상대방의 자력과 신용을 스스로 평가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빚을 안 갚았다고 채무자가 사기를 저지른 것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금융기관의 의자는 채무자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해도 곧이 믿는 정신박약자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연체와 상각이 불가피하다고 미리 예상한 금융기관이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사기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신용카드 회사의 사기 주장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방향으로 사법기관의 실무가 바뀌었는데, 실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4,5년 전까지 신용카드 사용이 지나친 사람들을 사기로 처벌한 결과 전국의 경찰, 검찰, 법원이 신용카드 사기범을 많이 취급하게 되어 다른 일에 투입할 자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교도소도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의를 실현하려면 3백만 이상의 신용불량자를 다 사기범으로 교도소에 수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문서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한 경우와 같이 적극적으로 허위 증빙을 만든 경우에는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용 평가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왜곡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형사 사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찌다가 변제 능력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 사기에 해당하는 판결도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것은 속임을 당한 사람이 없는데 사기가 성립한다는 터무니 없는 의제(fiction)에 기초한 반동입니다. 사실 이제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채무자를 고소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원낭비에 대한 비난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카드를 사용하였다가 못 갚은 자를 처벌하기 시작하면, 각 법원의 소재지마다 제법 큰 신도시를 하나 건설하여 담을 치고 그것을 “교도소”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아니 교도지역 또는 교도지구라고 불러야겠지요. 경제활동인구의 상당 부분이 구금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죄를 지은 채무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체제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명나라 태조 주원장도 머리에 수건을 두른 도둑의 우두머리였다고 합니다. 그를 따른 대중은 원래 평범한 백성이었을 것입니다.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도둑이 되기를 선택한다면, 이들을 도둑으로 몬 지도층은 더 큰 도둑일 것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채권자들은 얼마나 몇몇합니까? 수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위기를 면한 것은 어느 나라의 금융시스템입니까?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는 형사고소장을 피고소인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담당 형사가 친절하게 전화를 해서 모월 모일 모시에 출두하여 조사받으시라고 안내합니다. 받으신 우편물은 추심의 수단으로 마음 약한 채무자를 위협하기 위한 쓰레기 우편물임이 분명합니다.

(24) 회계하려 할 때에 일만 달란트 빛진 자 하나를 데려
오매 (25) 갚을 것이 없는 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26)
그 종이 엎드리어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
리이다 하거늘 (27)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
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28) 그 종이 나가서 제
게 백 데나리온 빛진 동관 하나를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
되 빛을 갚으라 하매 (29) 그 동관이 엎드리어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30)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빛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31)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32)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빛을 전부 탕감하
여 주었거늘 (33)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34)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35)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채무자가 면제를 받는 은혜를 누리고 막상 자기는 다른 채무자를 닥달하는 상황입니
다.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나라 돈(납세자의 부담이다)을 듬뿍 받는 은혜를 입고
거듭난 금융기관들이 채무자를 닥달하고 형사 고발을 하는 상황이 우리 곁에서 벌어
졌다는 것은 수치입니다.

Q 그래도 교도소는 무섭습니다.

A 19세기의 영국이나 미국 서부 또는 우리 나라의 조선시대나 일정시대의 ‘감옥’을 묘사한 영화를 보면 구금 생활 또는 수형생활이 끔찍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한 인상을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구치소나 교도소 특히 강력범을 가두는 곳이 아닌 경제생활상의 실패로 구금된 곳의 생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인식상의 실수입니다. 교도소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도 사람이 사는 곳이고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단순히 돌려막기를 계속 해 온 소비자는 보통 벌금이고 사기극을 스스로 주도한 악질적인 채무자가 아닌 빚을 갚기 위하여 투쟁을 하면서 돌려막기를 해 온 선량한 또는 미련한 채무자에게 1년 이상의 수양과 반성을 요구할 수 있는 판사를 저자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가끔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저자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어서 석방되게 노력하여 달라고 조바심을 표시하며 강하게 보채는 고객에게 구치소는 국립호텔이라고 농담처럼 이야기합니다. 침식을 제공하지, 스스로를 지킬 필요가 없게 외부 경비를 해 주고 내부 질서도 지키고 건강도 챙겨 주며, 외출할 때마다 경호원이 붙은 관용 차량을 제공 받고, 만났다 하면 판, 검사인데, 이 이상 훌륭한 대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구속되면 일생을 망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중죄인으로 수감된 적이 있음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이 분들은 봉건군주나 군사정권 아래 억압 받았던 것 정치범이니 사기범과는 질을 달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말은 계급적입니다. 마치 질이 다른 사람이 있다는 시각인데, 이것은 가진 것이 없는 자에 대한 모독입니다.

가격이 만족스러우면 기름을 팔라. 남은 곡물도, 와인도 팔라. 늙은 황소와 출산력이 없는 양, 낡은 수레, 낡은 농기구, 늙은 노예, 병든 노예 등 무엇이든지 무익한 것은 매각하라. 주인은 사는 습관보다는 파는 습관을 가져야 하느니라 - 고대 로마 Cato의 충고,
http://penelope.uchicago.edu/Thayer/E/Roman/Texts/Cato/De_Agricultura/A*.html

시장이 물건의 가치를 증대하는 수단이 되는 것은 채무자가 발행한 채권증서의 경우에도 다를 것이 없다. 당초에 여신을 실행한 즉 채무자로부터 채권증서를 사 들인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채권의 회수에 전념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 다른 일을 하면 더 수익을 얻는데 채권의 추심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남지 않는 장사인 것이다. 그렇다고 채권을 포기할 수 없으니 보유하고 있다가 틈틈이 점검하고 시효소멸하기 전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인건비와 소송비용 기록유지를 위한 공간의 임대료와 같은 관리비용이 계속 발생한다. 그렇게 보면 채권의 가치는 최초 소지인에게는 0에 수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로 되기도 한다. 노동을 열심히 하여 잘 상환하던 채무자는 이제 골칫덩어리가 되어 버린다.

그런데 주인 하기 나름이다. 동일한 채무자가 발행한 같은 액면의 채권증서라도 대량 매입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관리하고 또 전문적인 추심기법으로 무장한 조직은 회수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들 사이에 거래가 될 유인은 충분하다. 원금 500만원에 연체이자가 1,000만원이 발생한 채권을 은행이 액면의 5%인 25만원에 팔면 이러한 채권을 산 '유동화' 전문 회사는 채무자에게 액면 그대로 1,500만원을 추구한다. 이것은 무에서 유를 추구하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당연히 이들의 추심은 집요할 수 밖에 없고, 이에 직면하는 채무자에게는 재앙이 된다. 이들은 통상의 대리점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원가공개를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추구는 황당한 규모의 엄청난 마진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매각은 추심위임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채권자는 완전히 매각하는 대신에 대리인

에게 추심을 위임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한다. 그 보수가 회수된 금전의 일부를 성공사례로 지급하는 것일 때에는 예를 들어 60%를 주는 것일 때에는 이것을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40%의 금액에 매각한 것과 기능적으로 같다.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추심위임과 매각은 비슷하다. 당사자들은 일단 액면의 2%, 3%에 매각하되 비교적 신용이 좋은 매수인은 그것을 외상으로 결제할 수 있고 또 판매 대가 이상으로 회수하는 이익을 매각인과 매수인이 공유하는 상황이 되면 이것은 법적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성공보수가 부착된 추심위임이라고 할 수도 있다.

전통적으로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것은 지탄 받는 직업이었다. 그것은 아마도 폭리를 실현함에 있어서 가진 것 없는 민중의 인적 자본 실현 결과를 집요하게 추구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었으리라. 그렇기에 인건비가 비싸고 엄격한 행동규준의 적용을 받을 것이 기대되는 변호사에게만 인정하여 성업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권리의 양수를 업으로 삼는 것은 심지어는 변호사에게도 엄격하게 금지되었다. 이제 추심과 채권매각은 산업이 되었다. 이에 시달리는 채무자에게는 탈출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부실채권의 거래이기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많으면 본래의 소지인으로부터 짝 값에 사서 약간의 합리적인 마진을 붙여 되 파는 거래도 가능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채무자가 채권증서를 시장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업자도 이론상 가능하다. 그런데 가난한 채무자를 위하여 충분한 정보유통과 교섭력을 가진 사기업은 잘 봉사하지 않는다. 채권추심업이나 부실채권양수를 영위하는 면허에 대하여 법과 실무는 상당한 기업규모를 요구하는데, 이들은 독점적 지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가난한 개인 채무자는 자신이 발행한 채권을 협상으로 되사는 방법으로 시장적인 보호를 받기 힘들다면, 강제로 되살 수 있게 해 주는 경제규제가 정당화될 수 있다.

한편 추심업자를 위해 종속노동을 하는 사람들(추심원)은 추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들을 독립된 사업자로 풀어버리는 것도 채권증서의 매각과 별 다를 것이 없다. 고대 로마에서도 양식노예는 비싸다고 인식하였다.

2

가 :

파산 bankrupt

(형용사) 1. 금전의 부족으로 인하여 특정인이 채무를 다 갚을 수 없으므로, 그의 남은 재산이 채권자들에게 의하여 관리되거나 채권자들 사이에 분배될 것으로 법적으로 선언된 2. 전혀 돈이 없는, 재정적으로 파탄된. 3. 가치 있는 속성이 원래 없거나 고갈된: a book that is bankrupt of original ideas. (명사) 파산 상태에 있는 사람. (타동사) 파산에 이르도록 하다. [현대 영어에서는 1533년에 bank rouverte 라고 처음 쓰였는데, bankruptcy에 해당하는 이탈리아어의 bancarotta에서 유래된 말이다: banca는 대금업자(moneychanger)의 테이블을, rotta는 부수어진(broken) 것을 뜻한다] - The American Heritage STUDENT DICTIONARY 1994, p.79

돈에 관련된 세속적인 의미에서, 파산이라는 단어는 두가지 용법으로 쓰인다. 첫째는 통상 채무자의 지급불능일 경우에 개시되는 법적 절차이다. 채무자가 “나 어제 법원에 가서 파산을 했다”라고 말할 때는 이 용법으로 쓰이는 것이다. 둘째로는 채무자가 돈이 없어 지급능력이 없는 상태를 뜻할 수 있다. 고스톱 게임의 참여자가 마지막 판에서 가진 돈이 없다며 “나 파산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문맥을 고려하여 여러 용법으로 쓰이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면 기만에 넘어가게 된다. “파산은 인생의 끝이고 무덤이다”라고 말할 때의 파산은 채무자가 돈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둘째 의미이다. 현대 사회에서 돈이 없고 채무만 있으면 벌어서 자신을 위하여 쓰지 못하고 갚다 바쳐야 하니 실질적으로 노예상태에 처한다. 그런데 노예는 사회적 죽음의 한 형태이다. 그렇다면 파산한 사람 즉 돈이 없고 빚이 많은 사람은 한 인생의 끝에 이른 것이다. 그렇다면 “파산하면 자식들도 지장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사람마다 출발점이 다르다”고 누가 이야기하였던가? 돈이 있으면 자식을 몇 년 동안 외국에 유학을 보낼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위장 전입까지 시키며 부모 책임으로 별장과 농지를 마련하여 줄 수 있다. 없는 사람은 자식들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못한다. 돈이 없으면 확실히 ‘지장’이 있다. 가난을,

어떤 경우에는 빚을 물려준다. 이런 의미에서 파산하면 자식들도 지장을 받는다.

법적 절차인 파산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빚잔치’이다. 채무자가 가진 것을 다 내 놓고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며 채권자도 빚잔치 이후에는 더 이상 받지 못한다. 물론 예외는 있다. 어떤 재산은 채무자에게 남으며 또 파산절차에 가입하지 않는 채무도 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파산절차는 재정적으로 과거 인생과의 단절을 뜻한다. 이것은 새로 태어나는 것을 뜻한다. 파산절차를 거친 사람은 더 이상 채무의 속박에 매여 있지 않으니, 힘들기는 해도 돈을 조금이나마 모을 수 있고, 자식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을 수 있다.

중세 이탈리아의 도시에는 대금업자가 파산하면(두번째 의미) 그가 쓰던 벤치를 두들겨 부수어 여러 사람에게 공시하고 때로는 영주의 감독 하에 채권단을 결성하여 파산(첫번째 의미)을 진행하는 관습이 있었고, 채무자가 드넓은 광장에 뛰어 나가 벌거벗은 다음에 큰 기둥에 등을 비비면서 나는 파산했다(두번째 의미)고 여러 번 외치면 더 이상 변제하라고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한다. 창피함을 대가로 과거로부터의 해방을 부여한 것이다. 현대에는 이런 낙인까지는 찍지 않는다. 파산자라는 말은 더 이상 법전상으로 쓰이지 않으며 다만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만 역사 기록으로 남을 뿐이다. 현대의 파산절차는 채권의 공동 행사, 기업의 질서 있는 청산 또는 재조직, 부수하여 개인 채무자의 면책을 통한 재기를 위한 법적 기술일 뿐이다. 마치 에어컨이나 냉장고가 더위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인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파산제도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집단은 파산을 부정적으로 묘사한다. 파산은 인생의 끝이라고 말하면서 두번째 의미를 암시한다. 이것은 언어의 용법에 따른 적절한 사용이 아니다. 독재를 민주적 집중제라고 하는 어법은 마치 사각형같은 삼각형(rectangular triangle)처럼 알아채기 쉬운 모순된 어법이다. 그러나 파산이라는 똑같이 발음되고, 똑같이 벤치를 두들겨 부순다는 상서롭지 못한 뜻을 가진 단어에서 사회적인 죽음과 새로 태어나는 절차라는 상반되는 의미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이미 파산하여 벌거벗고 있는 사람이 파산하면 남들이 어떻게 볼까 생각한다.

Q 처자식이 있는 20세 연상의 중소기업 사장과 정이 들었습니다. 그이는 32평 아파트를 제 앞으로 사 주었고 아이가 생긴 이후에는 늦둥이라고 귀여워하며 본처에게 들킨 후에도 당당하게 아이를 호적에 올렸고 가끔 들러 생활비를 주고 갔기에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평온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저는 그이의 사업이 어려운지 몰랐었는데, 2년 전 그이는 병으로 죽었습니다. 저는 그이가 평소에 자랑하던 주택과 임야 같은 재산을 나중에 분배 받을 생각으로 상속권은 주장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금융기관에서 그이가 생전에 운영하던 법인의 보증채무라면서 20억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해 와서 알고 보니 그이의 재산은 생전에 본처와 자식 앞으로 다 돌려 놓았고 본처와 세 아이들은 저에게 알리지 않은 채 상속 포기를 하여 현재 8살짜리 아이가 그이의 채무를 단독상속하였다는 것입니다. - 정민효(33세)

A 부채가 자산이 많은 경우에도 부채가 자손에게 일괄적으로 물려진다면 신분제를 인정하는 결과가 됩니다. 또 재산이 바로 자손에게 물려지면 죽은 사람의 채권자는 불리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죽으면 상속재산을 모아 채무를 먼저 정리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상속인에게 인도하고, 부채가 재산보다 많아서 빚을 다 청산하지 못할 상황이면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절차를 적용하는 법제가 합리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죽은 사람의 권리의무 일체 즉 자산과 부채 전부가 죽는 바로 그 순간 상속인이 상속분대로 포괄승계 하되 부당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째,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간주된다. 상속인이 서류를 갖추어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기만 하면 가정법원이 이를 확인하는 심판을 하여 주니 간편합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해당 상속포기를 한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간주되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이 부담을 더 지게 되거나 그보다 후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채무가 넘어갑니다. 정민호 씨의 아이가 단독상속하게 된 상황은 바로 이것을 뜻합니다.

이 점은 한정승인의 신청을 함으로써 피할 수 있다.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여 재산과 채무를 인수하되 채무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인수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재산의 부채의 목록을 특정하여야 하고 약간의 공고비용을 들여야 하지만, 후순위의 상속인에게 예상하지 못하였던 채무가 넘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안전장치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기회를 놓치고 채무를 상속합니다. 정민호 씨는 아이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아이 아빠가 죽는 순간 아이가 상속인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때부터 상속포기기간이 진행하기에 8살 짜리 아이가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률에 대한 무지 때문이기도 하고 또는 설마 아버지에게 빚이 있었을까 하는 안이한 생각 때문이기도 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조건적 포괄승계를 인정하는 민법의 규정체계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몇 차례 내린 바도 있는데 대체입법이 발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끔 조상으로부터 빚을 물려 받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민호 씨의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파산 상태를 물려받았고, 나중에 정민호 씨의 재산을 물려 받아 보았자 이것을 채권자에게 바쳐야 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파산 절차로 시정되는 것이 언론에 가십거리로 나오는 예가 가끔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이 빚은 상속되므로 파산절차를 취하는 것은 채무자가 빚을 자손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은 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은행 매장 문에 아래 공고가 붙었다:
 “비정상적인 예금인출 때문에, 모든 예금주들이 공평하게 취급될 수 있도록 이 은행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 이사회는 은행을 주정부의 관할에 넘기는 것이 좋다고 보았습니다.” - Weston Independent, 1931. 10. 14.자,
<http://www.wvculture.org/history/businessandindustry/westonbankrun03.html>, 2006.1.15.방문

파산(bankruptcy)의 어원은 은행(bank)의 그것과 같이 벤치이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은행은 파산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자금중개기관인 은행은 채권자이기도 하고 채무자이기도 하다. 은행은 대중으로부터 예금을 조성하여 이것을 기초로 수요자에게 대부를 하는데 받은 예금의 범위를 훨씬 넘는 대출을 일으켜 신용을 창조하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일반의 기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그리고 대출을 받아간 기업이 부실화되면, 대출을 실행한 채권자도 연쇄적으로 부실화된다.

은행의 건전성에 의문을 가지는 예금주들은 남보다 먼저 예금을 인출하려고 할 것이다. 이것은 악순환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가서 경쟁적으로 예금 인출을 요구하여 은행은 초단기적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다(bank run). 이 위기에 처한 은행은 파산에 이른다. 물론 은행 자체가 건전하다면 다른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예금주들의 요구에 응할 수 있겠지만, 부실한 은행이라면 다른 은행이라도 동반부실을 원하지 않는 한 이것을 거부할 것이며, 또 사람들이 전체적인 금융시스템을 신뢰하지 않게 되면,뱅크런에 직면한 은행은 그 부실한 가치를 실현하게 되고 예금주들은 본래의 채권액을 받지 못한다. 1929년 10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대공황이 한 예이며 은행에 예금을 유지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것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설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1997년에 우리나라의 은행이 외국에서 빌려온 단기 차입금에 대하여 외국의 채권자들은 공동으로 대환을 거부한 것도 뱅크런의 한 예라고 보겠다. 직전에 설립된 우

리의 예금보험공사도 예금주 보호제도의 중대한 축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의 경우에는 아무 근거 없이 외국의 은행들을 포함한 예금주들이 부실한 은행에 대한 채권증서를 액면가로 파는 횡재를 하였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현재 예금보험은 공적 기관인 예금보험공사(<http://www.kdic.or.kr>)가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기관별로 개인당 5천만원까지 보장된다. 웬만한 중산층은 금융기관별로 분산 예치함으로써 절대로 보장 받는 액수이다. 금융기관은 예금의 수신 규모에 기술적인 방법으로 산출된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료를 공사에 내고, 금융기관이 파산하여 예금을 한 사람들에게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공사가 예금주에게 ‘보험금’의 형태로 예금을 돌려준다. 법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는 금융기관에 있지만 그 재원은 예금자에게 지급할 수 있었던 이자를 줄여 마련할 수 밖에 없다. 말하자면 예금자들을 위하여 금융기관이 보험에 드는 것이다. 보험료를 내기 위하여 금융기관은 ‘예대마진’을 확대한다. 예금을 하는 자는 누구든지 원래 예금보험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예금이자보다 적은 이자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예금인출사태의 가능성을 확실히 줄인다. 그렇지만 예금주가 은행의 관리자를 자세하게 감시할 유인을 줄이며, 은행관리자로 하여금 위험의 인수를 장려하고 따라서 간접적으로 은행체계를 취약하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는 사회정책적인 정책결단의 결과이므로 불가피한 것이고, 또 예금액 전부 보장이 아니고 일부만을 보장함으로써 약간이라도 줄일 수 있다.

파산(두번째 의미: 파산절차)에 의한 채무자의 면책은 파산(첫번째 의미: 지급불능)을 보험사고로 한다는 면에서 예금보험제도와 같다. 보험료는 금융소비자에게 비싼 이자를 물리는 형태로 조성되고 형식적으로 채권자는 돈을 떼이고 채무자가 이익을 얻는다. 또 주로 우량한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파산에 대비하여 보험을 들기도 한다. 들지 않은 채권자는 말하자면 자기보험(self insurance)을 운영하는 것이다. 역시 불가피한 도덕적 해이는 면책 범위의 조절로 줄일 수 있다.

파산에 관한 법은 최소한 두가지 일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지급불능인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 사이에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것을 확보하는 것이고 두번째로는 지급불능인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파산법은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또 채무자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래 목적은 아니지만 면책(discharge)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정직한 채무자를 채권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 Jordan, Warren and Bussel, bankruptcy 5th ed., 1999, p.17

본래 도산 절차는 집합적 추심행위이다.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에 나서는 대신에 채권단을 형성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모아 환가하여 우선순위와 채권비율에 따라 배당하여 일부라도 목적을 얻는 것이다.

채무자에 대한 추심행위나 법절차가 효과가 없는 경우에도 논리적으로 채무자에게 불명예를 부과함과 아울러 가진 재산을 모두 내 놓게 강제하는 일반집행절차로서의 파산절차가 남아 있다. 이 절차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을 선고 받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일이 있다는 것이 공적으로 선언되고 대중에게 공개되니 채무자는 불명예를 겪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로 인하여 차별을 겪게 되니 역시 강력한 추심 장치가 될 수 있다. 파산절차에서 채무자는 법원의 소환에 응하여 자신이 가진 재산에 관한 사항을 진술하여야 하고 가진 재산 및 최근에 처분한 재산에 관하여 조사를 받고 허위진술이나 재산 빼돌리기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론상 파산신청은 채권자를 위하여 상당히 강력한 역할을 하여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레버리지가 된다.

그러나 채권추심의 수단으로 채권자가 공식적인 파산신청을 하는 예는 극히 드물다. 첫째, 강제집행절차가 집행에 먼저 착수한 채권자에게 이익을 주지 않기에 채권자의 공평배당을 위하여 굳이 파산법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둘째, 책임재산의 회복도 사해행위취소의 방법으로 용이하게 달성된다. 오히려 채권자는 파산절차보다 일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의하는 것이 이익이다. 회복되는 재산을 자신이 직접 받아

채권에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파산절차에서 특별히 잘 못한 것이 없는 채무자는 가진 것을 다 내 놓고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채주는 곱이 넘고 돈은 중국 사람이 받아 가는 꼴이다. 물론 파산의 선고로 직업을 잃을 수 있는 공무원과 전문직업인에 대하여는 그것이 강력한 레버리지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 의미를 사실상 잃었기에 별 쓸모가 없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면책 조항이 빠진 파산법이 필요하다. 그것은 강제 집행법의 개정으로 재산관계명시명령과 채무불이행자명부 제도가 도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를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는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강제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면 제재를 받는다. 그러나 채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아무런 압박수단이 되지 않는다. 또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이미 금융정보가 공적으로 지원되는 카르텔에 의하여 관리되고 또 사기업적인 신용정보의 형태로 유통되어 채무자를 압박하는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옥상옥이다.

따라서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재산관계명시명령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당신을 등재하겠다는 것도 쓸데 없는 압박이다. 파산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보급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파산절차를 개시하겠다는 위협을 한다는 말도 가끔 들렸다. 울고 싶는데 뺨 때려주기 식이다.

파산이라는 말은 어두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두운 주제가 아니다. 파산으로 이끌어가는 경제적 병리현상은 절망을 주지만, 파산 그 자체는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다. 자유시장경제는 개인과 기업이 실패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므로 파산제도는 시장경제의 본질적 구성요소이다. 조류독감은 치명적이고 어둡다. 그러나 이를 치료하는 의술은 희망이다. 현실적인 사람들은 파산하면(첫번째 의미: 지급 불능) 파산을(두번째 의미: 파산절차) 신청해야 한다.

개인의 채무불이행 사태에 있어서 채권자들을 위하여서는 파산법이 적용될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나 대형은행과 대기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강제집행절차에 의하기에는 쉽지 않다. 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에 수천, 수만, 수십만의 채권자가 있는 대기업과 대형은행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파산절차가 필요하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1997년의 사태 이후 이전에는 부실기업이 행정부의(또는 은행의) 관여 하에 다른 기업에 ‘인수’되는 것이 흔하였다. 이것은 부실한 기업이 정상화되어 사정이 변한 뒤에는 늘 특혜논란을 받았다.

그래서 대기업, 대형은행의 경우에도 파산법이 경제 및 법률 실무가들과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고, 오히려 은행과 정부가 손을 들고 나서 법원으로 떠넘겨지는 경우에도 파산의 변칙인 회사정리와 화의 제도가 이용되었다. 그런데, 이들 제도가 채권자의 희생 하에 경영악화에 책임 있는 관계자를 보호하는 불합리, 부실기업의 조업을 통하여 경쟁 기업에 해가 되고 막상 해당 기업도 살아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경험을 한 이후에는 많은 법원이 계속 경영을 지양하고 기업이 조업을 하는 상태대로(on the going concern) 제3의 법인을 설립하여 자산을 이전하고 기존의 채권자와 필요하면 제3자가 참여하여 기존의 채권자등 이해관계인은 지분을 취소 당하거나 신주의 일정 부분을 받는 속칭 M&A 방식이 많이 선호되어 왔다.

이것은 본래의 청산형 파산에서 추구하는 바이다. ‘파산’이라는 말이 기업은 조업을 중단하고 채권자들이 재산을 산산히 나누어서 쪼개 가지고 종업원들은 실업을 하는 것과 같이 생각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피하여야 할 해악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원상 남아 있는 부적절한 의미에 집착하는 것이다. 기업을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관념적으로 분리하여 기업에 대한 권리를 채권자들의 우선순위에 따라 ‘줄을 새로 세우는’ 것에 불과하다고 인식하면 파산은 기업위험의 적절한 분배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기업이 조업을 하고 있는 그대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팔고, 그 대가에서 조세채권자, 임금채권자, 저당권자 등이 먼저 가지고 가고 나머지 채권도 우선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는 절차적으로 효율이 지켜진다면, 기존의 채권자와 소유자는 손해를 보게 되겠지만 조업을 하는 기업 그 자체는 빚이 없는(debt free) 새로운 기업으로 출발을 할 수 있다. 하나은행에 합병되어 없어진 충청은행은 파산선고를 받고 청산되었지만, 기업조직은 그대로 유지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전형적인 예이다. 이제 부실한 금융기관이 발생하면 예금보험공사의 주도 하에 파산절차에 의하여 청산되고 있으며 소기업의 경우에도 일부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 파산절차가 확대되어 가고 있지만, 이것은 개인의 주된 관심사는 아니다.

과거에도 빚에 빠진 채무자 문제는 늘 있었지만 이것은 간간이 강압적인 리더십에 의하여 정리되었다. 예를 들어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라고 불렀던 군사평의회(military junta)는 농어촌고리채정리법(법률 제620호)를 통과시켰고, 유신통치가 시작되기 직전인 1972년에는 기업과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사채에 대하여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1972.8.2. 대통령 긴급명령 제15호)을 시행하였다(“8.3조치”). 아마도 역시 혁명적인 리더십에 의하여 통과된 것이 분명한 1962년의 파산법도 이와 같은 조치가 간헐적으로 취해진 때에는 특히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1982년 무렵의 사채업자가 연루된 사건 이후에는 사채업을 영업으로 하는 것은 아예 형사범죄가 되었고, 강력한 금융규제가 계속되었기에 대량으로 채무자가 발생하는 사태는 계속 이연되어 왔다. 개인에 대하여 파산의 필요성이 주목 받기는 힘들었다.

이제 민주화와 함께 우리는 세계화, 즉 미국화되었다. 금융규제가 원칙적으로 철폐되어 대량으로 채무자가 발생하였고, 그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하는가? 민주화된 토론을 거쳐서 국사를 결정하는 참여정부에는 과거의 혁명적인 리더십을 기대하기 힘들다. 결국 채무 문제의 해결은 법원이 일상적인 업무로 행하는 정상적인 파산절차에 부담이 넘어와 있다. 원래 외환위기 때 구제금융을 준 IMF에서는 파산법원을 설립하고 automatic stay, 차별금지와 같은 미국적 제도를 요구했었다. 우리의 입법자들은 단행법의 기술적인 통합과 제도의 추가 외에는 이 핵심적인 개혁의 어느 것도 실행하지 못하였다. 답답할 뿐이다.

Q 조선신용정보회사에서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으면 저를 상대로 파산신청을 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촉장에 파산자는 주거제한을 당하고, 변호사, 의사, 약사, 공증인, 회계사, 법무사, 공무원, 상공회의소 임원, 은행지배인 등이 될 수 없고 그밖에 여러가지 잡다한 자격증이 무효가 되며, 파산선고 사실이 본적지에 통지되어 신원증명 사항에 기재되고, 감수명령을 받으면 집에서 나올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한다고 써 놓았습니다. 빚만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원하지도 않는 파산신청을 채권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A 파산신청을 채권자가 대신 해 준다면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느라 애 쓸 이유가 없으니 환영해야 할 일 같습니다. 본래 파산제도는 채권자를 위한 제도로 발달해 왔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채무자의 자산을 '빚잔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채권자는 할 자격이 있습니다만, 채권자가 회수되지 못할 것이 분명한 절차비용을 예납하면서까지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기에 추심의 수단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가끔 가다가 재산관계명시명령을 신청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를 신청하거나 유체동산, 월세보증금, 급여를 압류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모두 실효성이 없어 압박수단으로만 활용됩니다.

2006년 4월부터 “파산자”라는 말은 이제 법전에서도 사라졌습니다. 파산자가 주거제한을 당한다던가 감수명령으로 파산자를 집에서 나올 수 없게 연금할 수 있다는 규정도 삭제되어 없어졌다. 파산선고 사실이 본적지에 통보된다는 것도 법률상의 근거 없이 예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데, 곧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전산망이 발달하지 못하였을 때 개인의 신상에 관한 자료를 본적지에 집적하고 이것을 신원증명이라는 형태로 제3자가 쓸 수 있게 하던 시절의 유물입니다. 신용정보를 비롯하여 전국적인 차원에서 개인의 정보가 집적되는 현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유산입니다.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해서 채무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아도, 물론 채무자는 이 절

차에서 면책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파산으로 가고 싶어 하는 채무자로서는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되니 반겨야 할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침 울고 싶었는데 뺨 때려 준다"는 말은 바로 이런 경우를 뜻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세, 채권자 만세, 신용정보회사 만세"라고 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도 않을 일을 왜 자꾸 하겠다고 위협하느냐고요? 마음 약한 사람은 불량배가 얼굴만 찌푸려도 설설 겁니다. 얼굴이 무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나 의사, 변호사 같은 중요 자격증에 대하여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이 되지 않은 사람을 배제하는데, 면책을 받으면 자동으로 당연 복권이 되니 문제 없습니다. 의과대학을 새로 다니거나 사법시험에 새로 합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빛이 많은 사람은 쫓기는 자로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직무나 사업에 전념하기 힘들기에 사실상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냥 파산상태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공무원이 직위를 면하는 것으로 실무가 운용되고 있다는 점인데, 대통령, 국회의원, 서울특별시장, 지방의회 의원과 같은 고급의 공직자들은 파산의 선고로 인하여 직위를 면하지 않으니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 파산법 제525조 (차별적 취급에 대한 보호)

(a)...정부기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을 인정하거나 거부하기 전에 채무초과이었던 사실,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사건에서 면책할 수 있는 채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만을 이유로 인가, 허가, 특허, 특권 기타의 수권을 거부, 취소, 정지 또는 갱신거절하거나, 그 수권에 조건을 부여하거나, 그 수권에 관하여 차별대우하거나, 고용을 거부하거나, 고용을 종료시키거나, 고용에 관하여 차별대우하지 못한다.

(b) 사기업의 고용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만으로... 채무자...또는 채무자...와 공동,협력한 개인의 고용을 종료시키거나 그 고용에 관하여 차별대우하지 못한다.

(c) 학생에 대한 보조금 또는 대출금계획을 운영하는 정부기관 및 학생대출금계획에 의하여 보증 또는 부보된 대출업무를 포함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는...(위 (a)항에 열거된 사실을 이유로)...대출금, 대출보증 또는 대출보험을 거부하지 못한다.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은 과거 지급능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즉 과거 가난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파산 절차가 끝난 이후에는 새로이 재산이 생기고 따라서 지급능력이 늘어나는 것이 보통이다. 신용은 천천히 회복된다. 그런데 다른 법령과 개인들의 계약이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을 들어 차별하는 예가 있다. 이것은 신용과잉의 시대에 잠재적인 파산자가 수백만명이 되는 경우에는 이들은 특정한 사회적 지위 내지는 계급을 구성하게 되고 이들을 차별하는 것은 계급제도, 봉건제가 된다. 가난한 사람들은 차별 받게 된다. 왜냐 하면 언제든지 있는 사람들이 “당신 파산이야”하면서 의자를 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 용어로 말하면 “사회적 지위에 의한 차별”이 되는 것이 분명하다.

1978년 전면개정된 미국 파산법(Bankruptcy Code)는, 파산절차에서 면책된 교통사고손해배상채무를 들어 운전면허를 정지시킨 사안에 대한 1971년의 Perez v. Campbell 사건에서 선언된 바와 같이 연방법인 파산법의 완전한 효력을 좌절시키는

주 법률은 무효라고 판정한 것을 입법화하여 오로지 파산 선고를 받은 사실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하는 조항을 넣었다. 2005년 통과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관하여 대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았음을 이유로 채무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일반조항을 삽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들의 로비에 의하여 채택되지 아니하였다. 결국 그 요지는, “우리는 미국과 실정이 다르다”던가, “아직 미국의 발전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는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식이다. 그러나, 파산법이 추구하는 기술이 1970년대의 미국 국민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21세기 대한민국의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우리 대기업은 이미 세계시장에서 세계적인 기준에 따라 경쟁하고 있는 마당에 파산법이라고 그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미국의 이 법조항 때문에 도덕이 특히 타락하였다는 증거가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왜 우리는 국제금융에서 미국의 기준을 따르고 있는가? 법률에 정통한 대법원이 제시한 의견을 거부한 자들은 어느 정도의 법률 지식을 주장하는 것인가?

연방법/주법과의 위계질서가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차별금지의 근거를 헌법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 책의 집필 당시 대구지방법원은 파산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차별규정에 대하여 과잉금지의 원칙, 법익균형의 원칙에 근거하여 헌법 위반의 요소를 찾았다.

물론 국가가 아닌 개인과 사기업은 채용과 신용공여에 관하여 사람의 자력을 평가하여 참고할 자유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사람의 신체조건, 외모의 잘생김과 못생김, 남녀의 성별, 출신 지역, 나이와 같은 차별적 요소에 의한 고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확립된 인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개인과 사기업도 고용에 있어서 파산절차 이용 여부를 공식적인 심사기준으로 삼는 것은 충분히 금지할 수 있다. 한편, 순수히 자기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민영이 은행이라도 정부의 재정자금으로 지원되는 정책자금 특히 학자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에 있어서는 정부의 입장에 서므로 파산 선고를 받은 사실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Q 최근 중견 제조업체에 생산 직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연봉 1800만원으로 4식구 근근이 살아가는데,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때문에 파산 신청을 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파산하면 회사 생활을 계속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어 추심에 시달리며 참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빚 갚을 돈을 마련할 방도도 없고 미칠 지경입니다. -이상호(47세)

A 보통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해직된다는 회사 규정이 없습니다. 때문에 파산으로 인하여 회사 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 파산법 제525조는 파산선고를 받은 것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입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파산 선고로 해직된다고 이해됩니다만, 이것은 공무를 담임할 자격을 “가난하지 않은 자”에 한정하는 차별적인 조치이고 이것 때문에 유능한 인력 충원기반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회사 사장에게 파산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장은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거 하면 회사 못 다니는건가?" 채무자는 "달리 갈 데도 없으니 더욱 더 여기서 열심히 일해야지요."라고 답했습니다. 사장은 무관심했습니다.

채무자는 파산과 면책을 진행하는 동안에 외국 출장도 두 차례 다녀오면서 어떠한 불편함도 느끼지 못하고 회사 생활을 하였습니다. 단 하나 불편은 급여를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할 수 없었던 점이나 이것도 파산과 관계 없이 거래은행의 지급정지 조치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사항은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하지 않은 채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에 전념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노동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고 고용한 직원들의 업적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채무자는 채권자와의 약속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만들려고 합니다. 카드빚 때문에 매춘을 하고

강도를 하였다는 극단적인 사례는 신문, 방송을 시끄럽게 합니다.

회사 실무에서는 당연히 이들을 경계합니다. 출장비라든가 자재구입에 관해서 지출결의서가 올라와도 다시 한 번 검토하게 됩니다. 창고관리를 맡기기도 어렵습니다. 내다 팔면 돈이 되는 것들이고, 그들은 채권자의 추심에 어쩔 수 없이 약속을 해놓고서는 돈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숙련된 관리자는 직원이 일과 중에 한쪽에 가서 전화를 받는 모습만 봐도 어느 정도 느낌이 옵니다.

파산신청자는 과거의 빚으로 인한 추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근거를 없애 줍니다. 파산신청자는 쉽게 이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숙련된 직원을 원하는 고용주에게 좋습니다. 돈에 대해 큰 욕심도 낼 이유도 없습니다. 채권자들에게 가져다 바치는 돈을 이제 바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과 중에 추심전화에 시달리고 채권자들을 회사로 오게 하는 가난한 직원과, 파산을 신청하여 당당하게 회사 생활하는 가난한 직원 중 어느 쪽을 고용주는 선택하겠습니까?

credit 1. 돈을 빌리거나 외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능력. 2. 부채나 자본(equity)의 증가 또는 자산의 감소를 결과하는 회계 기장, 우리 용어(대변) 비교: debit(차변). 3. 계정과목 잔액 - www.dictionary.com에서, Source: *Wall Street Words: An A to Z Guide to Investment Terms for Today's Investor* by David L. Scott

재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기술적인 의미에서 쓰는 신용의 뜻은 결국 지급능력을 뜻한다. 돈을 빌리거나 연불거래의 혜택을 받으려면 잠재적 채권자가 잠재적 채무자의 신용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여러가지 사람의 지급능력과 관계 있는 자료를 가공하여 얻어지는 정보이다. 근본적으로는 물적 재산, 그 중에서 은행 예금과 같은 금융자산이 가장 편한 객관적 척도가 될 것이고, 경상 소득도 장래의 재산 상태에 관한 것이니 또 하나의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금융기관과 기업과 같은 잠재적인 채권자로서는 개인의 지급능력에 관한 신용정보를 가지고 싶어한다. 이 자료는 은행예금 잔액, 부채 잔액, 공과금 납부 습관, 연체 여부, 파산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지 여부, 강제집행을 받는 적이 있는 지 여부, 결혼 여부, 가족관계, 직업, 소득, 소송과 같은 광범위한 영역에 관한 것을 포괄한다. 신용정보사(credit bureau)는 여러가지 방법에 의하여 특히 공중에 공개된 자료 또는 각 개인이 동의를 거쳐 제공한 자료를 가공하여 신용정보를 생산해 낸다. 다만 자료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가 문제될 수 있기에 정부의 규제 하에 영업을 한다. 시장의 수요가 있는 한 신용정보를 생산하여 다른 개인이나 기관에 제공하는 힘들다.

전문화된 신용정보회사가 적법하게 축적된 신용정보를 금융기관 등 잠재적인 대기업에 파는 것은 제한하기 힘들다. 왜냐 하면 수요자로서는 잠재적인 거래상대방의 장차 지급능력이 있는 지 여부에 관하여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신용정보를 수용하는 잠재적 채권자가 그 신용정보를 단순히 하나의 의사결정자료로

활용하는 경우에만 그러하다.

과거 정부가 감독하는 금융기관들의 협회 전산망에 채무를 연체한 개인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제도가 있었다. 금액과 상관이 없이 또 채무자의 해명과 상관이 없이 채무자에 대한 부정적인(negative)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정보를 공유하는 다른 금융기관이 새로운 신용부여와 기존의 신용을 회수하는 관행이 성립하였다. 금융채권자들의 공동행위에 의하여 한 금융업자가 어느 상대방을 찍어 명부에 올리면, 다른 금융업자들 모두가 여신을 거절하도록 하는 이와 같은 관행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금하는 부당한 공동행위(boycott)에 해당한다. 과거 은행 등 금융기관이 정부기관에 준하던 시절에 형성되어 시장을 억압하다가 세계화, 자유화 시대에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 악습이다. 신용 점수가 좋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 한 금융시장도 틀림 없이 존재하는 것이기에, 개인에 관한 신용 정보가 동의와 적법 절차를 거쳐 유통되는 것은 그 사람을 막다른 벼랑으로 내몰지 않는다. 그러나, 업자들이 연합하여 거래를 거절하는 것은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려는 개인과 이들의 가능성을 본 창의적인 사업자를 억압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파산은 (1) 빚을 갚지 못하는 상태와 (2) 파산절차를 통하여 채무를 취소하는 과정의 두가지 의미를 가진다.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다른 빚도 상환할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신용정보상으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이런 의미에서의 파산은 신용을 좋지 않게 하는 요소이다. 그런데, 재판절차로서의 파산은 채무를 취소한다. 면책을 받은 개인은 소득이 있는 한 파산신청을 하지 않은 연체자에 비하여 훨씬 상환능력이 커진다. 그런 의미에서 파산은 신용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물론 채무자가 파산제도를 선택하였다는 것은 그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면책결정을 받은 것도 하나의 신용자료로 파악된다. 다만 사람의 개성도 변하니 일정기간만 가치가 있기에 그 동안만 유지된다. 보통 7년이다.



Q 돌려막기와 이전에 남자에게 사기 당한 것으로 인해 5천만원의 빚이 있습니다. 추심 전화에 직장을 잃고 파산신청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주위 사람들이 파산은 신용기록에 나쁜 영향을 주어 앞으로 금융거래를 하기 힘들어진다고 말합니다. 돈을 쉽게 벌어서 갚을 길은 없고 답답합니다. - 신용주 (25세)

A 흔히 채무자의 면책을 쉽게 인정해 주면 누가 빚을 갚겠느냐는 우려를 합니다. 그러나 파산제도를 아무리 채무자에게 관대하게 운용하여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빚을 갚지 못한 점에 대하여 자존심의 손상을 얻고, 또 빚을 갚지 않은 것 때문에 다시는 금융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기 때문에, 쉽게 파산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돌려막기를 넘어서 카드깡 같은 불법까지 저지르며 결제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개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된 사실은 채권금융기관에서 일정 기간 기록합니다. 고객이 ‘빚을 떼어먹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기록해서 장차 그 고객에게 새로 신용을 부여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용을 평가하는 요소는 파산 뿐만이 아닙니다. 파산을 선택하지 않아도 전반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일 뿐입니다. 기록을 장기간 남기면 가장 수익성 있는 고객을 차별하게 되니 금융기관 자신에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연체선상에 있지만 파산을 택하지 않은 사람은 도덕적으로 우월할 지 모르지만 위험한 고객입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은 돈 장사일 뿐, 도덕을 진작시키는 경찰이 아닙니다. 파산을 선택하였던 고객은 당장은 비난을 받을런지 몰라도(물론 그 근거에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상환능력은 훨씬 좋습니다. 120만원 월급 받아 100만원 갚으며 빚을 늘려가는 사람과 파산 면책 이후 그냥 120만원으로 사는 사람의 상환능력을 비교해 보면 명백합니다. 더욱이 한번 면책을 받은 이후에는 7년 동안은 다시 파산 제도로 들어가 다시 채무를 떼먹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신용카드

회사 입장에서는 파산/면책을 받은 사람이 좋은 고객일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엘리자베스 워렌 교수의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파산변호사는 카드모집인을 겸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파산 절차가 종결되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객에게 공격적으로 영업하는 신용카드회사가 제공하는 신용카드발급신청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신청서에 의하여 카드가 신청이 되면, 파산변호사는 10달러의 소개료(commission)를 받는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면책 이후 1년 만에 신용카드를 받는 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기적인 거래로 신용이 쌓이기 때문이지요. 은행거래습관 같은 우량(positive)정보도 쌓인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연체자에게 진정한 신용회복의 길은 파산입니다. 신용은 사람의 도덕지표가 아닙니다. 상환능력을 뜻합니다.

신용은 연체하지 않은 사실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소득이 적은데 신용카드를 여러 개 가진 사실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며 한번이라도 현금서비스를 받은 사실, 또 은행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는 대금업체 즉 속칭 제3금융권이 신용조회를 한 사실, 리볼빙을 선택하거나 연체 이후 대환대출을 받아 갚은 것으로 처리한 사실 모두가 곧 연체될 가능성이 있는 자료가 됩니다.

한편 이미 연체된 사람의 경우에 파산을 신청하지 않으면 연체정보가 늘 남아있게 된다. 이것은 파산/면책을 받았다는 것에 비하여 훨씬 불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파산의 신청은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강력한 신용회복의 길 중 하나입니다.



Q 대학원에 다니던 딸이 남자에게 사기 당해서 보증을 서고 대출을 받아 주어 2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갚아 주자니 유일한 재산인 시가 3억원의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데, 고1짜리 아들도 교육시켜야 하고 정년을 가까이 하고 있는 처지에 저희 부부 은퇴 후 생활이 걱정스럽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딸은 개인파산을 신청하겠다고 합니다. 미국 유학을 꿈꾸고 있는 아이에게 지장 없을 지 근심스럽습니다. - 권혁서(56세)

A 가난한 외국인의 입국은 환영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보트피플의 경우에서 보듯이 특별히 정치적 난민이라는 명분이 있어도 어느 정부나 막상 자기 나라가 선뜻 받겠다고 나서지 않습니다. 일반 여행자나 유학생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입국하면 돈을 쓰지 않으니 당장 경상 수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또 취업을 해야 하니 내국인의 고용기회가 줄어들고 임금이 내릴 것입니다. 따라서 부유한 나라에서는 같은 선진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의 입국 신청 자격을 미리 심사하는 비자 제도를 운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은 단순 여행 목적인 경우 비자를 쉽게 받고 또 단기 체류에는 아예 면제 받는 경우가 많지만, 외국인의 이민을 받아서 성립, 발전해 왔고 우리나라와 정치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국의 경우 역설스럽게도 우리 나라 사람들이 아무리 단기간 여행을 한다고 해도 미리 비자를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과거 단순히 여행을 한다며 입국했다가 속칭 불법체류를 선택하는 한국 사람이 워낙 많았기에 이민 억제라는 국내의 사회적 압력을 의식하여 취하는 정책이라고 추측됩니다.

그리하여 비자 신청자가 여행이든 유학이든 입국목적은 마치고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올 것이며 미국에 눌러 살려고 하지 않을 것임을 나타내라는 의도에서 재산과 활발한 경제활동의 증명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사람이 합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과 은행 거래를 꾸준히 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의 모든 신청자가 거쳐야 하는 영사와의 면담에서 보통 납세사실에 관한 증명과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은행예금통장의 원본 제출을 요구 받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서도 파산을 선택하지 않은 채무자는 이 요건을 영원히 충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거액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사람은 은행예금통장을 유지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납세를 하는 직장에 취업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법률상 통장을 개설 하여 돈을 예치할 수 있고 취업을 할 수 있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채권과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을 언제든지 압류할 수 있기에 거의 기대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거액의 빚을 진 채무자가 장차 미국 유학이나 아니면 단순한 여행을 생각 한다면 빚이 많은 것을 한탄할 것이 아니고 은행 거래와 납세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그 중의 하나는 파산신청을 하여 과거의 채무를 취소 받는 것입니다.

1:

빛에 쪼들리던 절망적 상황에서 Joda 은행 점원 펠릭스는 금고로 잠입하여 서류가방을 100달러짜리로 가득 채우고 집으로 달아났다. 제 정신이 든 후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 지 깨달았다. 그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 지금 다니는 은행에서 50,000달러를 훔쳤어요. 어떤 일이 내게 닥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50,000달러를 더 훔쳐서 나에게 전부 가지고 오시오”라고 차분하게 지시하였다. 이 말을 듣고 펠릭스는 깜짝 놀랐지만 시키는대로 다시 한번 금고에 들어가 50,000달러를 꺼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간 펠릭스는 두번 훔쳐 낸 100,000달러를 건네 주었고, 변호사는 이 돈을 모두 받은 다음 다음과 같은 공문을 은행에 발송하였다. “Joda 은행장 귀하: 귀 은행의 점원인 펠릭스 핑거스가 100,000달러를 횡령하여 달아났습니다. 매우 가난한 펠릭스의 가족들은 이 돈을 변상하기 위하여 초인적인 노력을 다 했지만, 50,000달러 밖에는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귀 은행이 펠릭스를 민,형사적으로 고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펠릭스의 가족은 50,000달러를 변상하고자 합니다...(이하 잔소리)...” - The Lawyer Joke Book, Barnes & Noble 1991, 75,76

파산 이외의 다른 신용회복 방법은 결국 채무를 무효화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앞에서 보았듯이 채무자가 발행한 채권증서를 채권자가 소지하고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할 때, 첫째 방법은 채권증서를 사들이는 것이고, 둘째 방법은 채권증서에 선언된 의무를 액면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다. 채권소지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채무자는 의무를 이행하여 채권증서를 무효화할 수 있지만, 그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채권증서를 사 들이는 것이다. 이것은 채권소지인의 동의에 의하여만 가능하니 협상이 필요할 것이다.

누구든지 밀지는 거래는 하지 않으려고 한다. 특히 돈 장사를 하는 금융채권자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채무자가 자신이 발행한 채권증서를 다시 사 들이기 위한 채권자와의 개별 협상에 성공하기 위하여는 채권자가 생각하는 채권증서의 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이 친구는 1,000

만원에 빚지고 있는데 재산은 하나도 없고 앞으로 열심히 달라고 쫓아다니면 300만원 정도는 갚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채권자가 인식하는 채권의 가치는 3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왜냐 하면 추심비용도 들고 또 장래에 받는 300만원은 적당한 이자율에 의하여 할인하여 현재가치로 산정(자본화: capitalize)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300만원 이상의 금액을 갚겠다고 하면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거래가 성립되어야 한다. 채권자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이상을 얻기 때문이다.

실무는 그렇지 않다. 주관적인 채권의 가치 추정은 채무자의 태도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변제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채권자가 생각하는 가치를 올린다. 천리마운동을 해서라도 채권의 액면가를 청산하겠다고 할 정도로 확고하다면, 채권자가 인식하는 채권증서의 가치는 훨씬 커질 것이다. 여기에 채무자가 “지금 얼마 정도 있다”는 태도까지 보이면 채권증서의 값은 더 오른다.

아예 빚을 갚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권의 값을 낮춘다. “말해 보았자 입만 아프고 인건비만 손해”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되면 채권의 가치는 0이 되기도 하고 관리비용만 자본화되어 (-)에 이르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채권자는 채권증서를 쉽게 싼 값에 팔아 넘긴다. 다만, 이것은 채무자 본인에게는 공개적으로 팔지 않는 경향이 있다. 채권자는 일반인에게는 “채권을 탕감해 주는 정책이 있다”고 알려져 다른 채무자의 의지에 영향을 주는 것을 근심한다. 채무자 측을 대변하는 변호사와의 사이에 은밀한 협상으로나 이루어질 수 있다.

각 금융기관이 유지하는 리볼빙, 대환, 프리워크아웃, 장기분할상환, 만기연장과 같은 제도에 순응하는 것은 변제의지를 보임으로써 채권자에게 희망을 주고 채권가치를 올린다. 종종 추심원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1만원이라도 넣고 이야기하자”는 제의를 따르면 채무자는 “이행의지가 조금은 남아 있는” 부류로 분류된다. 더욱 더 심한 추심의 대상이 된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억지~~”

2: ()

워크아웃(workout), 1. 연체된 대출금을 재조정 또는 대환하는 행위 2. (파산)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하기로 하는 법원 외에서의 합의 - Black's Law Dictionary, 7th edition

서로 의리를 지킨다면 훨씬 좋은 결과가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합리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행동한다면 어쩔 수 없이 서로에게 나쁜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 두 도둑 갑과 을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한 후에 둘이 같이 '의리'전력을 선택할 것을 정한다면 서로에게 유리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 홍중학 외 2, 미시적경제분석 제3판 591

“채권증서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인식시킴으로써 개별채권자와의 협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채권자들은 노련한 채무자 측 대리인의 기술에 의하여 ‘각개 격파’를 당할 수 있다. 채무자가 “나는 가진 것이 전혀 없다. 그러니 어차피 당신은 내게서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그런데 내 친구에게 채권의 5% 정도 금액을 빌릴 수 있는데 나머지를 탕감해 준다면 다른 채권자들 몰래 이것만큼은 갚아 주겠다”고 말할 때 개별 채권자에게는 “다른 채권자 몰래”라는 말이 설득력이 있다.

개별 채권자는 상대방을 믿고 의리를 지켰는데 상대방이 배신하면 혼자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기에 각 죄수가 서로를 배신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 되는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상황에 처한다. 그 해결책은 신뢰의 회복이다. 첫째 파산절차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다 털어 보는 것이나 개인채무자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남는 것이 없다. 둘째는, 채권자들 사이의 담합이다. 채권자 어느 누구도 채무자와 협상을 통하여 채권증서를 액면가 이하에 매수해 주지 않는다(명목적으로는 ‘원리금 감면’)을 해 주지 않는다는 공동의 정책을 설정하고 위반자를 제재함으로써 강제로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제도적인 약정으로 성립하면 카르텔(cartel)을 형성하는 것이 된다. 물론 이것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것이고, 이익이 크고 명백한 경우에는 일부 참여자에 의하여 깨질 수 있다. 원리금

감면을 기대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선전 선동을 통하여 허위의식을 확립하려고 애쓰는 것도 이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중용한 방법 중 하나이다.

셋째는, 채권자들이 공동으로 채무자와의 협상에 나서는 것이다. 채권자들은 이제 서로 불신할 필요가 없다. 채무자가 파산절차라는 강력한 레버리지가 있다는 점을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유효적절하게 주지하고 있고 또 채무자가 자신의 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변된다면, 이것은 협상이 될 수 있다. 채권자가 협상을 깨면 채무자도 파산을 신청함으로써 채권증서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무자의 주도로 채권단이 형성되기는 어렵기에 절차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파산법원이 개입하는 것이 지금은 폐지된 화의제도나 회사정리제도, 신법에 의한 회생, 개인회생제도이다.

그렇지만, 협상의 과정에서 파산절차의 가능성이 의도적으로 배제되고 채무자가 적절히 대리되지 못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연합의 먹이가 된다. 물론 협약에서 제외된 채권자가 이익을 본다는 문제는 있다. 채무가 대부분 협약에 의하여 어떤 수준에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협약 외의 다른 채권자가 알게 되면 그들이 자기 채권 평가는 높아진다.

미국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채무자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비영리 신용상담소가 전국에 1450개 정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금융채권자들이 후원하는 전국 소비자신용재단과 연계된 소비자신용상담소(Consumer Credit Counseling Services, CCCS)가 그것인데, 첫째, 특히 젊은 채무자의 소비생활 상담 및 금전 관리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고, 둘째 채무자가 최고 4년까지 채무를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워크아웃 협약에 가입하도록 채권자를 설득한다. 소비자신용상담소는 재정상태가 절망적이지 않은 소액의 채무자에게 유익한 상담과 회생기회를 제공하지만, 첫째 채무 전부의 이행을 고집하고, 둘째, 파산신청이 적절한 사례를 상담하면서도 채무자에게 파산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데 자신들이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조언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변명하지만 사실은 채권자의 지원을 받는 처지라 그렇다고 한다. Jordan, Warren, Bussel, Bankruptcy 5th ed. p.582

설립목적: 신용회복지원의 극대화를 통하여 채무불이행자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고 가계파산을 예방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www.crss.or.kr

우리나라에도 제법 효율적인 신용상담소가 있다. 서울 중구 명동의 전국은행연합회 건물 인근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이다. 금융기관들의 협약에 의하여 설립되어 지금은 조직상 독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본부 외에 전국 대도시에 7개 지부(서울 영등포,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수원)와 주요 도시에 13개 상담소(의정부, 원주, 천안, 청주, 전주, 울산, 마산, 순천, 제주, 강릉, 춘천, 목포, 안산)를 두고 있으며, 신용관리교육원과 취업안내센터까지 운영한다.

5억원 이하의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8년까지 나누어 갚을 수 있게 워크아웃계획을 준비하는 바 원칙적으로 명목 채무의 감면에는 소극적인 감이 있으며(이자 포함한 채무의 1/3까지 감면, 원금은 채권자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상각한 채권에 한해서 ‘30%’까지 감면을 인정), 파산에 대하여는 신청서류 및 절차가 복잡하여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던가 ‘파산선고’의 불이익이 있고, 면책불허가사유 해당 여부가 불투명하며, 개인의 특별사정 등에 융통성이 적다는 인식을 표시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미국의 CCCS와 다를 것이 없다.

파산절차에 대하여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은 신용회복위원회 자신이 내거는 “가계파산을 예방”한다는 존립목적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다. 재정이 파탄된 상태인 첫번째 의미의 파산은 적극재산의 증가로만 방지할 수 있는 것인데,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돈을 나누어주거나 직접 채권자에게 빚을 대신 갚아 주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것이므로, 그들이 방지하기를 원하는 가계파산은 두번째 의미의 파산 즉 “법원에 대한 파산절차의 신청”을 뜻하는 것이 분명하다. 즉 조직상의 최우선 목표는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보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채무의 절대금액이 크지 않고 채무자가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 상환 여력은 이 남

아 있지만 고율의 이자를 붙여가는 상황에서는 언젠가는 파탄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 이자의 감면과 상환기일의 연장을 부여하면 채무자는 파산을 선택하여야 할 상황에는 이르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제공하는 워크아웃이 상당히 유효적절하다.

개인연체자(과거의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채무자에게만 워크아웃을 제공하는 정책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에 의하여 실효적으로 구제될 수 있는 채무자의 범위를 좁힌다. 개인연체자로 등록되기 위하여는 금융기관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채권자의 추심을 장기간 견뎌야 하는데, 이 상태에 이른 다중채무자는 변제의 희망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마음 약한 사람들을 무차별적인 추심에 시달리게 하여 녹록해진 다음에 워크아웃을 혜택이라며 부과하는 것은 마치 다짜고짜 고문부터 해 놓고 그 다음에 차분한 분위기에서 조사에 들어가는 억압적 체제의 수사기법을 연상하게 한다.

물론 워크아웃이 성립하면 금융기관들은 개인연체자 등록을 해제하니 약간의 신용을 높인다. 그러나 새로이 돈을 빌려 줄 정도로 신용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이미 휴지가 된 채권증서의 값을 올릴 정도로만 신용이 증진된다. 의무가 더 커지는 것이다. 여기에 워크아웃 범위 바깥에 있는 금융기관과 사채 채권자는 이제 경감되었으니 내 것은 별도로 갚으라고 추심할 더 강한 유인을 갖게 되고, 이들의 행동은 워크아웃 계획의 좌절로 이끌어가기도 한다. 이제 파산이 불가피하다.

신용회복위원회도 워크아웃에 관하여 수수료를 받는다. 이들은 금융기관의 채무를 전산망 기타의 방법으로 파악하며 채무자의 변제계획을 짜 준다. 그런데 이것은 채무자를 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채권자를 위한 것이다. 채권자의 지원을 받기에 본질적으로 채무자와는 반대편에 있는 조직이 채무자에게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쌍방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변호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런 행동이 금지된다. 최소한 알려야 한다.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에 관한 수수료 징수는 위법이기도 하다.



가

Q 직장에 경리로 다닐 때 약간 무절제한 생활도 했고 마침 회사도 문을 닫아 1년 정도 쉬는 사이에 빚으로 생활하다 보니 빚이 2,500만원 정도 생겼습니다. 그 중 1,000만원은 결혼할 남자 친구가 보증을 썼고, 500만원은 자동차를 할부로 사면서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사실 취업하면 갚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데 빚 독촉 전화에 시달리는 처지라 괜찮은 직장 취업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정숙(27세)

A 채무액이 많지 않고, 그중 상당 부분이 담보채무이거나 친밀한 사람이 보증한 것이라면 파산과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이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보증인은 책임이 있으며, 또 파산제도가 담보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정숙 씨의 경우에는 면책을 받더라도 결국 1,500만원은 따로 벌어서 갚게 될 것으로 예측되니 실질적으로 1,000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신용회복위원회가 제공하는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독립된 비영리 단체로서 전국의 주요 도시마다 지부를 두고 있으며, 채무의 해결방법에 관하여 상담을 제공하고, 회원인 금융기관에 대한 개인채무의 상환금액과 일정을 채무자의 능력에 맞게 조정을 해 줍니다. 수금역할도 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지정한 계좌로 납입하면 되고 개별 금융기관을 찾아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주채무를 이행하면 보증채무도 같이 면제하여 주며, 경우에 따라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도 워크아웃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증인도 주채무자와 마찬가지로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고, 대가 없는 보증을 받아간 채권 것에 대한 비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보증채무를 포함시키는 것은 채권자에게도 큰 이익이 될 수 있으며, 자동차와 빌라 같은 물건은 담보가치가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기에 담보권의 실행보다는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 높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는 첫째, 원리금을 과감하게 탕감해 주는 변제계획을 제공하는데 인색하다는 점, 둘째, 채무액이 크고 상환능력이 의심스러워 파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에게도 이를 권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채권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을 받는 것으로부터 오는 근본적인 한계인데, 진정으로 독립된 소비자신용상담조직으로 행세하기 위하여는 극복하여야 할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또 과거에는 연체가 시작된 후 3개월 이후에 워크아웃을 신청할 자격을 부여하였습니다. 따라서 추심에 시달려 채무자가 억압된 심리상태에 있을 때 그저 채권자 편향적인 채무재조정에 동의를 받는 것일 뿐이었다는 점도 비판 받습니다.

3: ()

농어촌고리채정리법(1961. 6. 10.법률 제620호,페이지)
제6조 (위원회의 직능) ① 리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고리채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2. 고리채원리금의 조정과 고리채정리대상금액의 판
정에 관한 사항

② 시(구)읍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리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와 판정
에 관한 사항

제10조 (무신고고리채의 처리)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고리채는 정리대
상에서 제외하고 동채권자의 변제청구권은 소멸한 것
으로 간주한다.

제11조 (고리채의 대위변제) ① 고리채의 채권자에 대
한 부채는 농업은행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하되
농업은행이 발행하는 금융채권을교부한다.

② 전항의 금융채권의 액면은 제6조 제1항 제2호 또
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판정한 금액으로 표시한다.

‘한마음금융’, ‘희망모아’와 같은 회사들이 있다. 발음하기 편하고 의미상으로도 낙
관적인 인상을 주지만, ‘모은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공동의 추심행위이다. 파산
절차라는 것이 본래 집합적 추심행위라는 점에서는 비슷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이들은 실질가치가 의심스러운 채권을 사서 액면가에 채
무자에게 팔 것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배드뱅크(bad bank)라고 불리는 이들 조직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 별도로 관리하면서 시장에 매각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문적으로 처리하
는 은행 또는 구조조정전문회사라고 주장된다. 원 채권자는 명목적인 금액으로 채권
을 처분하여 손실을 실현하며(따라서 이익을 축소하고 법인소득세를 덜 내게 된다),
배드뱅크는 채권을 추심하여 이익을 얻는다. 계약하기에 따라서는 일정 목표 이상을
회수하면 원 채권기관과 공유할 수도 있고 회수율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원
채권자가 다시 사들일 의무를 부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배드뱅크는 원 채권기관 및 채무자와의 사이에 각각 독립적인 관계를 맺는다. 첫

째, 원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배드뱅크는 채무자가 상환의무자인 채권증서를 매입한다. 그 실질가치는 의심스럽다. 어떤 경우에는 채권의 3%에 매입해 주는 것만 해도 원 채권자는 관리비용을 따질 때 큰 이득을 얻는다. 따라서 그 매입가격 즉 취득원가는 절대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둘째,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배드뱅크는 채무자에 대하여 액면 금액 상당의 새로운 대출을 해 주는 것으로 주장된다. 그런데 이 대출은 채무자에게 실제로 지급되지 않는다.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 전액을 원 채권금융기관에 갚아 주는 것으로 친다. 이 대출원리금을 채무자는 할부로 갚아 가는 것으로 약정한다. 이 ‘대출’에 대하여는 3%의 ‘선납금’이 요구된다. 이것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보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일단 채권취득원가만큼은 확보하겠다는 의미도 있다.

배드뱅크는 채권증서의 취득원가가 얼마인 지 채무자에게 밝히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액면 100만원 짜리 채권을 배드뱅크가 3%인 3만원에 취득한 것이라면, 3만원의 선납으로 취득원가는 충족한다. 나머지는 순전히 영업이익이 된다. 이것은 배드뱅크의 운영비를 제외하고도 남는 엄청난 수익성을 올리는 성공적인 공적 자금의 운용의 실례라고 평가될 지도 모르겠다.

수익성의 반대편에 서 있는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재앙이 된다. 능력을 넘어서는 상환을 요구 받기 때문에 이것은 파산처리절차가 아니다. 대량 채무자 발생에 대한 과거의 처리방식은 이렇지 가혹하지 않았다.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액면의 일부 만을 농업은행이 채권발행 형식으로 대위지급하고 채무자는 농업은행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량 채무를 처리한 바 있다. 채무자에게 훨씬 덜 가혹하다. 비록 그것이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세력이 강압적으로 요구한 소비에트 방식의 채무 취소라고 할 지라도 훨씬 더 경제민주주의적인 정당성을 가진다. 파탄에 이른 가난한 채무자가 수백만인 상황에서라면, 일상의 파산처리절차보다는 고대 아테네의 솔론(Solon)과 같은 지도자가 행한 것 같은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서민들을 대변한다던 사람들이 배드뱅크 같은 괴물을 만든 것은 후퇴이고 자기부정이다.

파산법은 첫째 지급불능인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 사이에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것 즉 빚잔치를 근본 목적으로 하며, 둘째 지급불능인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방지한다. 즉 파산법은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또 채무자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셋째 면책제도를 통하여 정직한 채무자를 채권자로부터 보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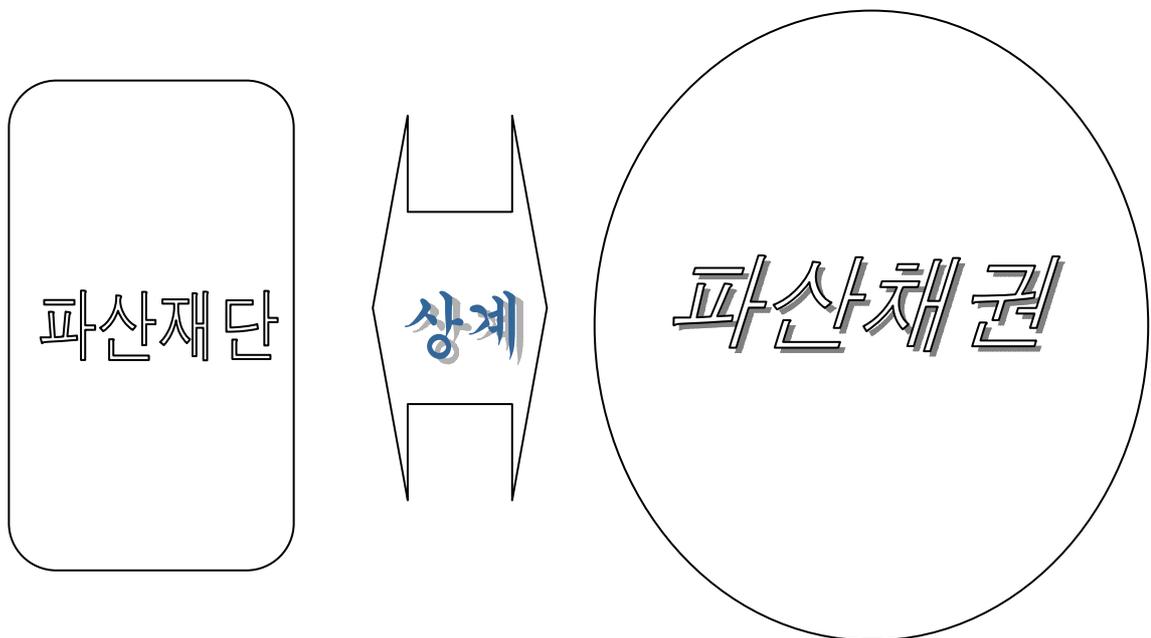
채권자들은 다른 채권자가 달려들기 전에 먼저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려고 각자 독립된 강제집행절차를 취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특정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해 보았자 다른 채권자가 달려들어 배당을 요구하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집행에 나서기를 주저한다. 이와 같은 상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모든 채권자가 참여하여 배당을 받으면 피할 수 있고 채권자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게 된다. 즉 상호 신뢰의 결여로 인하여 생기는 죄수의 갈등상황 (prisoner's dilemma)과 비용수익부담의 불일치로 인하여 생기는 무임승차자의 문제 (free rider problem)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지급불능상태를 예견하는 채무자로서는 채권자들을 위한 빚잔치에 제공되어야 할 재산을 감추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된다. 채무는 이에 상응하는 재산에 의하여 가치가 보장되는 것이니 재산은 사실상 채권자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절망적인 상태에서 재산을 팔아서 현금을 감추거나 친인척, 친지의 명의로 빼돌려 놓는 행위는 사실상 절도, 횡령이다. 물론 누구든지 훔치고 싶은 유혹은 있게 마련이다. 일반 민사법 상으로도 재산을 감추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또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만 파산법에 의하여도 사기파산죄로 형사처벌을 행하며 처분행위의 효력은 부인되어 다시 회복된다. 아울러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면책의 은전을 거부함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을 간접적으로 강제한다. 즉 채찍과 당근인 것이다.

위 두가지 목적에 협조하는 정직한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의 이행의무를 면제 받는다. 즉 빚잔치로 과거는 종결되고 채무자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인생을 새로이 출발

(fresh start)하는 것이다. 이것은 본래 파산법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불운한 상인에게 면책이라는 당근을 부여함으로써 채권자들에게 협조할 동기를 제공하는 것에서 연원한다. 그런데 현대의 상인은 대부분 유한책임을 지는 법인이라는 형태와 상업적 보험이라는 형태로 위험을 피한다. 오히려 소비자금융이 활성화된 20세기 이후 대기업의 소비 조장에 노출된 개인에 대하여 의미가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은 파산제도는 특정 시점에서 채무자에게 있는 재산을 가지고 그 당시까지의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기술적으로 표현하여 파산 선고 당시의 채무자 재산이 채무자로부터 독립하여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때까지 발생한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묶어 이 파산재단으로만 파산채권을 변제하고 부족한 부분은 소멸시켜 버리는 것이다. 파산재단과 파산채권을 상계하여 버리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 이후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과거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난다.



규칙에는 예외가 있다. 어떤 재산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으며(면제재산), 어떤 채무는 파산채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비면책채권). 절차의 혜택은 규칙을 지킨 자에게만 부여된다. 규칙을 어긴 채무자에 대한 제재는 면책의 부인이다.



Q 대기업에 다니던 중 채권자가 급여에 압류를 하여 권고 사직을 당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생활하며 의욕을 잃고 살고 있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채무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게 된 경우 파산으로 구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파산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딱한 사정을 알고 있는 선배가 자기 회사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급여도 월 300만원 이상 주겠다고 하는데, 파산을 신청하면 다시 급여가 압류되는 것이 아닌 지 걱정됩니다. 파산법상 제한 사항은 없는 지도 궁금합니다. - (박재영, 27세)

A 첫째로, 파산을 신청한다고 급여가 압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언제든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박재영 씨가 지난 번 직장에 다닐 때 급여가 압류된 점에 비추어 명백합니다.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얻지 못한 채무자는 늘 급여 압류의 정신적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할 의욕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둘째로,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합리적인 채권자들은 급여압류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추심 노력을 스스로 자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파산의 신청은 자발적으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 놓고 채무의 면책을 얻으려는 것이기에 여기까지 나아간 채무자로부터는 더 이상 회수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받아들 것이 없는 상황에서 법적 비용을 지출해 가면서 급여 압류를 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자동금지명령(Automatic Stay) 제도(파산법 제32조)를 두어 파산의 신청이 법원에 접수되면 모든 채권자는 어떠한 행위의 추심행위, 강제집행행위, 소송행위도 하지 못하게 하고, 고의로 위반하면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며, 위반행위도 무효가 되게 하고 있는데, 원래 IMF가 우리나라에도 파산법 개정을 권할 때 도입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 일부 입법실무가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나, 이 제도가 성문법으로 존재하든 아니든 파

산의 신청은 채무자의 상환거부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함으로써 채권자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다.

셋째, 법률상으로 취입에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가끔 일부 다른 법에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을 차별하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이론상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되기 전까지의 단기간에 제한을 설정할 뿐이며, 실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가 받아오는 급여 청구권을 배당의 재원으로 포함시킨다는 규정이 없으니 사실상 파산법에 의하여 급여가 압류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채권자에 대한 배당의 재원이 되는 파산재단은 파산의 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으로 구성되는 바, 그 이후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이라도 채무자의 고유재산을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파산신청부터 파산 선고까지의 기간 동안에 취득한 재산은 이론상 파산재단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론상의 가능성일 뿐이며 그 기간이 짧기에 실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파산의 신청시를 기준으로 하여 아예 문제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으면, 사실상으로는 우리도 따르는 기준입니다. 박재영 씨 취입을 하셔도 되고, 취입을 하여야 합니다. 먹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픽스는 불사조란다, 해리. 불사조들은 죽을 때가 되면 갑자기 확 타올랐다가 잿더미에서 다시 태어나지. 저걸봐라……”

조앤 K 롤링, 김혜원 옮김,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 제2권 II 45



Q 직장을 다니다가 명예퇴직을 당한 후에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접근해 온 후배에게 동업 명목으로 사기를 당해서 제 명의의 아파트와 토지등 가진 재산을 모두 날리고 3억원의 빚이 남았습니다. 파산을 신청하고 싶지만, 아버지가 제법 큰 빌딩을 소유하고 운영하고 계시며 생전에는 저를 포함하여 3자녀에게 재산을 주지 않겠다고 공언하시지만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말씀도 하지 않으시니 결국 돌아가시면 1/3 정도는 물려 받을 것이고, 아내도 경력 20년의 교사로서 직장생활로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니, 부모와 아내의 재산을 팔아 갚으라고 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리고 파산을 하면 혹시 자식에게 지장은 없는지요. - 이주영(48세)

A 개인주의는 우리나라가 받아 들여 사용하고 있는 서양법을 지배하는 전통입니다. 물론 서양에서도 고대와 중세에는 ‘가장’이 가족을 지배하였고, 가장이 빚을 지고 갚지 못하여 노예로 팔려갈 때에는 가족 즉 처와 자식들도 같은 운명을 겪었습니다만, 이것은 오래 전에 폐기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근대화 이후에는 가족의 운명을 가장이 멋대로 정하지 못하며, 부모가 부유한 지 또는 가난한 지 여부에 의하여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차별하지 못하게 변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특정 가족에게 속하는 것은 운명입니다만, 특정인에게서 태어났다는 신분을 차별의 근거로 삼지 못하고 연좌제 역시 금지됩니다. 이와 같은 차별금지의 정신이 시민법 질서에 투영된 것이 바로 개인주의(individualis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대성의 표상입니다. 이와 같이 재산법의 질서가 개인의 책임을 기초로 성립되어 있는 이상, 재산의 정리를 추구하는 파산법에서도 파산재단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배우자, 자식은 사회통념상 아무리 친밀한 관계에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모두 남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재산이 많아서 앞으로 채무자가 물려 받을 것이 기대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기대는 파산재산을 구성하지 않으며, 배우자의 고유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상속과 신분은 파산법에서 고려하지 않는 우연인 것

이다. 다만, 미국 파산법 제541(a)(5)이 파산신청 이후 180일 이내에 상속, 이혼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파산재단에 포함시키는 것 같은 기술적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 장차 재산을 물려 받을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채무자라면 파산신청을 서둘러 미리 면책을 받아 두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됩니다.

배우자인 경우 혼인 중 취득한 재산으로서 일방의 고유재산으로 특정되지 않은 재산은 공유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주로 소유자가 공적인 장부에 표시되지 않는 유체 동산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나 임대차보증금과 같은 재산은 대외적으로 소유자가 명백하므로 공유라고 단정할 수 없어 파산재단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공유지분은 또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배우자가 각기 1/2씩 공유하고 있다고 보아지지만 채동산은 보통 그 가치가 미미하여 파산재단 가산의 이익이 없습니다. 즉, 부부 일방의 채무가 있다고 하여 다른 배우자의 재산이 영향을 받거나 반대로 배우자의 재산에 의하여 채무자의 파산재단 범위가 확장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물론 채무자가 빚을 지면서 가정을 유지하고, 그 희생 위에서 배우자가 재산을 늘려나간 경우에는 사실상 채무자가 재산을 감춘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배우자의 재산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고보다는 채무자가 본래 파산재단에 속하여야 할 재산을 감추고 손상한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로지 신분관계에 의하여 파산재단이 확장된다고 생각하는 실무가가 있다면 고대 및 중세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고루함을 보인다고 평가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근대성을 지향하는 사람들로부터는 잘못이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흔히 파산하면 자식에게 지장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재정적 파탄상태라는 첫번째의 의미로 쓰일 때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이 곤란을 겪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번째 의미 즉 파산신청을 하면 자식에게 지장이 있다는 것은 의미론적인 언어의 남용이거나 예의 없는 발언입니다.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개선하는 것이고, 현대 사회에서는 부모의 행위로 인하여 후손이 차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파산법은 소득이라는 형태로 모습을 나타내는 인적자본을 채권자들의 손아귀 바깥으로 배치한다. 그리고 다른 면제재산은 민사법의 영역에 남기는데, 이것은 파산법이 정하는 새출발정책이 인적자본의 보호에 한정된다는 것을 뜻한다. - Jackson, The Logic and Limits of Bankruptcy Law, 228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파산 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을 구성하며, 채무자가 파산 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도 파산재단에 가산된다. 즉, 부동산, 동산과 같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유형자산 뿐만 아니고, 퇴직금 청구채권과 같이 이미 종업원으로서 역무를 제공하여 발생하였지만 퇴직을 하지 아니하였기에 장래에 행사할 채권도 포함된다.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처분하여 순위에 따라 채권의 변제에 충당된다. 그런데 퇴직금 채권은 이미 발생한 것이라고 할 지라도 채무자가 실제로 퇴직하지 않는 한 실현할 수 없다. 실무상으로는 파산선고 당시까지의 퇴직금 상당액의 자금을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련하여(이 채무는 새로이 발생한 채무이므로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파산재단에 가산하는 방법으로 실현을 의제한다.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은 법원이 임명하는 파산관재인이 행사하지만, 절차의 신속을 위하여 파산신청 이전에 또는 이후에 채무자가 스스로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변제, 배당함으로써 파산재단이 아예 형성되지 않고 파산을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상례가 되어 있다. 어차피 회생형 파산제도에서는 채무자 자신이 재단을 관리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점(debtor in possession, DIP), 그리고 채무자 자신이 가장 자신의 재산을 유리하게 처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결코 비난할만한 실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가장 채권자를 위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행동하여야 할 것이 기대된다.

면제재산에 속하는 재산은 채권자에게 내 놓을 필요가 없고 채무자는 파산절차의

진행 여하에 불구하고 이를 보유할 수 있다. 먼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상으로는 앞에서 본 압류가 금지된 동산과 급여 채권이 면제재산에 해당한다. 그리고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 교원의 퇴직금 전액과 연금,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적 급여도 각 단행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없으니 파산재단에 가산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 보증금 전액(1200만~1600만원)과 최대 720만원까지의 6개월간 생계비도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파산재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소유자라면 자기 몫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위 소액 보증금 정도 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가 5,000만원의 주택을 법적으로 소유하지만 4,000만원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매월 이자 20만원을 상환하는 사람의 자기지분(equity)은 1,000만원이다. 매월 20만원의 이자와 연젠가는 원금 4,000만원을 갚고 5,000만원짜리 집을 취득할 선택권(option)을 1,000만원에 산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20만원을 내고 사는 임차인과 기능적으로 동일하다. 역시 면제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산재단이 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면 법원은 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를 결정하는데 이때 약간이라도 면제재산이 아닌 재산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채무자가 그대로 보유한다. 파산관재인도 관리, 처분비용이 많이드는 재산을 포기할 수 있다. 처분의 이익이 없는 오래된 차량을 채무자에게 남기는 것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면제재산과 포기재산은, 채무자가 면책결정으로 얻은 인적 자본의 해방 이후에 별어서 취득한 신득재산과 함께 채무자가 노숙자로 전락하지 않고 다시 중산층으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즉 채무자는 과거로부터의 해방, 장래의 소득으로 사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하니 면제재산의 형식으로 채무자가 ‘프롤레타리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파산법에 의한 면책은 개인이 계약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능력에 간섭하는 것이다.

L.H.White, "Bankruptcy as an Economic Intervention," Journal of Libertarian Studies 1-4 (1977) p.281

파산채권은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뜻한다. 이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행사할 수 있으니 정상적으로 파산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행사될 수 없다. 채권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발생되었기에 우선권이 인정되는 재단채권도 결국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므로 나중에 면책된 채무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니 넓은 의미에서 파산채권의 일종이다.

파산제도는 개인이 계약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 아무리 개인끼리 이 채무는 절대 면제될 수 없으며 자손 만대 상속된다고 규정하더라도 법은 여기에 협조하지 않으며 파산절차로서 무효화된다. 마치 모든 금융거래 계약서에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선택하는 시기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당시에 존재하는 재산으로 그 당시까지 발생한 채무를 정리하며, 그래도 정리되지 못한 채무에 관하여는 채무자는 변제의 책임을 면한다”고 보이지 않는 잉크로 쓰여 있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채권은 파산절차의 적용을 받게 하기 곤란하다. 이 점에서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면책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론에 부합하며 우리 법은 다음 채무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중 근로자의 채권은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동성이 작아 마치 신분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것과 비슷하기에 면책을 부인하는 것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차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물론 어디까지나 이들 채권은 파산채권이 되므로 파산재단에 참가하여 일부 변제를 받을 수도 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조차 어차피 면책을 받지 못할 상황이라면 이들에 대한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올릴 이익이 없다.

파산의 선고 이후에 새로이 생긴 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 차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가 새로이 취득한 재산에 따라붙을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파산재단×파산채권 + 면제재산 + 비면책채권 → 새 출발 + 면제재산 + 비면책채권**으로 요약된다. 파산재단과 파산채권은 파산이라는 함수에 의하여 소멸하고 새로운 출발이 되며 어차피 면제재산과 비면책채권은 파산절차에서 아예 제외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편하다.



Q 2005년 6월 드디어 파산선고에 이은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새마을금고에서 친구가 1,000만원을 대출받을 때 제가 빚보증을 하고 공증을 서 주었던 것을 깜박하고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면책을 받고 직장에 나갔는데 9월 들어 회사로 받는 월급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왔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자신들의 채권이 파산채권으로 신고 되지 않았고 그 사실을 자기네는 몰랐으니 면책결정은 그들과 상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듯하게 여겨져서 갚으려고 해도 150만원 받는 처지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35세, 나돈령)

A 파산은 특정 채무의 효력을 유지시킬 지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고, 채무에 빠진 사람을 해방할 것인 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즉, 사람에 대한 재판이고 특정의 채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면책결정의 효력은 채권자로 신고되었는 지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금융채권자에게 미칩니다. 이것은 파산법의 해석상 분명합니다.

새로운 파산법 제566조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파산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7호에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악의’라고 함은 채무자가 자신에 관한 불리한 사실을 알고 있는 특정 채권자에게 절차 참여를 배제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뜻하는 것인데, 이 악의를 입증할 책임은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나돈령 씨의 경우처럼 채무가 있는 지를 깜박 잊고 신고하지 못한 경우라면, 위 규정의 악의로 기재한 때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인데 채권자가 나돈령씨가 악의로 누락했다고 채권자 새마을금고가 입증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면책결정의 효력은 비록 파산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았어도

새마을금고의 채권에도 미칩니다.

이것은 파산, 면책 진행사항과 결정을 신문에 공고하고 있는 취지에 의하여도 명백합니다. 신고된 채권자에게만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것을 입법자들이 의도하였다면, 채무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도록 하면 되지 굳이 관계 없는 사람에게도 알려지는 공고제도를 둘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면책된 채무에 기초하여 전부명령이 온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이 인정하는 이의신청과 항고를 통하여 그 효력을 다룰 수 있습니다.

한편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상당히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채무자가 고의로 누락시켰는 지 아니면 실수로 깜박 잊은 경우에 해당하는 지를 묻지 않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하여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는 여럿인 경우가 많고 어려운 처지에 처한 채무자가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황급히 돈을 융통하여 돌려막는 경우가 많은지라 채권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경우도 있고, 절차상의 실수로 누락이 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일반의 회생이나 청산형 파산에 비하여 현저히 불리한 점인 지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Q 전자상가에서 유통업을 5년 했습니다. 2년 불경기를 견디다가 결국 손을 들었습니다. 자잘한 납품대금과 종업원 임금 밀린 것은 노력해서 모두 청산했는데, 세금 1천만원과 나머지 금융채무 1억원을 갚지 못하였습니다. 취업은 했는데(월수 170만원), 세 식구가 먹고 살기도 빠듯하고, 채권자들이 월급을 압류하여 이 직장도 그만 두게 될까 봐 무척 겁이 납니다. 파산을 해도 세금은 면책이 되지 않는다는데, 좋은 선택일까요? - 김영진(37세)

A 맞습니다. 파산제도를 택한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금융채무를 전반적으로 면책 받지만, 체납세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은 개인이 거래를 하면 국가가 강제적으로 일정 금액을 자기 몫으로 챙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자신이 채무자의 신용을 심사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므로, 면책을 거절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굳이 국가우월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김영진 씨가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더라도 체납세금에 대하여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니까 버는 소득으로 갚아야 합니다. 세금을 내기 어려울 정도가 되면 청산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따르지 못한 대가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임금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무상 저자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임금과 세금을 내기 힘들 때에는 청산이든 회생이든 파산제도를 고려하라고 조언합니다.

대안은, 개인회생인데, 원칙적으로 5년 이내, 갚을 금액이 많은 경우 8년까지 생계비 지출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채권자에게 갚고, 나머지 채무에 관하여는 면책을 얻는 것입니다.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개인회생에서도 세금을 면책해 주지는 않고, 순차로 100% 갚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에 포함시키는 것이지만, 계획대로 이행을 다 하면 체납세금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다는 면에서 면책이나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청산형 파산에 대한 개인회생의 몇 안되는 장점 중 하나입니다.

김영진 씨의 경우 3인의 생계비로 135만원 정도까지는 인정해 주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통상 이를 공제한 35만원씩 60개월, 합계 2100만원을 갚는 것으로 채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체납세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하면, 채권자의 몫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21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먼저 가지고 나면 나머지 1100만원으로 금융채권자에게 나누어야 하니, 채권자는 이의할 가능성이 많아지겠지요.

이런 경우, 채무자로서는 생계비에서 조금 더 내뱉 생활을 해서 월부금을 내거나 변제기간을 최고 96개월까지 늘림으로써 타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다만, 어차피 체납세금을 정산하지 않으면 직장생활을 계속 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변제 받으려면 채권자로서도 이의를 고집하면 불리합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파산을 선택할 수 밖에 없고, 채권자는 전액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파산절차에 의하여도 청산되지 않는 조세채무는 공식적으로 취소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재정당국은 변제능력을 잃어버렸다고 판단되는 채무자를 끈질기게 추급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들의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면 다른 방법으로 국가재정에 기여할 기회를 빼앗게 되고 결국 그것은 재정당국의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와 같은 변제능력 상실을 표상하는 현저한 사태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채무를 일단 관리대상에서 지워버리는 ‘결손처분’을 시행하며 그 이후 다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재정시효(보통은 5년, 무신고 등의 경우에는 10년)가 완성되면 법적으로도 완전히 면책될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일단 결손처분이 된 조세채무라도, 채무자의 자력이 있는 것을 파악하게 되면 당연히 파일을 다시 열어서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국가재정을 책임진 세무공무원의 도리라고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분납이라도 하겠다면서 변제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당연히 자력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가장 강력한 징표가 될 것입니다.



Q 안정된 직장에서 착실히 모아 집을 마련했습니다. 분양가는 3억원이었는데, 값이 올라 지금은 10억원이라고 합니다. 구조조정 바람에 퇴직하고 담보대출 7억원을 뽑아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했는데, 부도를 맞아 망하고 담보대출을 빼고도 10억원의 법인 보증채무가 남았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서 빚을 정리하고 나머지 채무는 과산면책으로 터는 수 밖에 없는데, 경매 넘어갈 때까지 기다리자니, 빚이 별로 줄지 않을 것 같아 조바심이 납니다. 또 경매가 되어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데 재산이 빚으로 넘어가는 처지에 거액의 세금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 걱정스럽습니다. - 김성일(45세)

A 경매는 국가가 대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매매와 실질이 동일합니다. 김성일 씨의 집이 10억원에 팔린다면, 원가 3억원을 제외하고 7억원의 양도차익(단순화를 위하여 다른 공제항목 무시)을 얻은 것입니다.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 그리고 주택규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양도소득세가 부동산거래에 수반하여 정산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세무서가 거래과정이나 경매절차에 개입하여, 양도소득세를 징수해 가면 세수가 확보되겠고, 채무자도 양도소득세를 마련하는 부담이 없겠습니다만,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즉 ‘외상’입니다.

먼저, 집이 쉽게 팔리는 경우에는 받은 금액 중에서 양도소득세를 미리 빼 놓았다가 양도소득세를 바로 예정신고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섭섭하겠지만, 국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채무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없으니, 면책에도 장애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두번째 경매의 방법으로 집이 넘어갈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가지고 경매절차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8억원에 경락이 되었다면 그에 해당하는 채무가 소멸되는 이익을 소유자가 얻은 것이니 원가 3억원을 제외한 5억원이 양도소득

이라고 간주됩니다. 그 양도소득세는 다음 해 5월 31일 이후에 신고 납부가 없는 것을 기다려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파산, 면책 절차가 전부 끝난 뒤인데, 국세 채무는 파산법에 의한 면책의 대상이 아니니 채무자로서는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방법은 소득세법에 있습니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제89조의 규정입니다. 김성일 씨가 집을 처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을 신청하여도 지급을 할 수 없으니 파산선고를 받게 됩니다.

고가의 재산인 집이 있으니 파산재단이 구성되고 법원은 그 관리처분을 위하여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집을 처분하여 그 대가를 채권자에게 분배하는데, 여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이것은 채무자에게 충분히 이익이 있는 지라통상 실무상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경매 넘어갈 때까지 기다리기” 대신에 파산선고 이후의 정식의 파산절차 진행을 바란다는 점을 특히 명시하여 파산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정식의 파산절차에 의하는 경우에는 변제능력을 잃어버린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파산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납하여야 함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본래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파산절차의 비용을 국고에서 이를 가지급하였다가 파산재단을 관리, 운영하면서 비용을 회수하는 것으로 되었기에 채무자는 비용예납의 의무가 없었지만, 법원의 예산상, 절차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문화된 규정이었고 그나마 파산법의 개정으로 국고로부터 가지급한다는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비용의 예납이 없이는 법원은 무한정 기다릴 것이므로 채무자가 정식의 파산절차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어느 정도 현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통의 단순한 파산 사건의 경우에도 대략 30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의 예납금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Q 어려운 가정형편에 카드 빚을 3000만원 가량 졌습니다. 연체를 시키지 않으려고 회사 자금을 3000만원 유용해서 빚을 갚았는데 바로 탄로 나서 해직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하였다고 3000만원의 지급각서를 받고 회사는 형사고발을 일시 유예하여 주었는데 그 이후 직장이 없이 생활하며 다른 빚도 늘어났고 갚을 길이 없습니다. - 안태영(41세)

A 아쉽습니다. 안태영 씨의 선택은 가장 좋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회사의 자금을 직원이 함부로 가지고 가면 직위에 따라 횡령죄 또는 절도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파산법에 의하면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는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빌려 준 것이 아니기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변제의사와 능력을 심사할 기회가 없었으니 파산제도에 포함시키기 곤란하고, 또 면책을 허용하면 고의의 불법행위를 장려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의식하지 못하고 실수로 저지른 잘못은 용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횡령이나 절도는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안태영 씨가 회사에 지고 있는 3000만원의 빚은 파산절차에 의하여 절대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른 채무도 있는 경우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면책결정을 할 수 있지만, 그 결정의 효력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원래 생활고로 인한 신용카드 채무는 회사에 성실하게 다니면서 개인회생 절차에 의하여 전부 일부를 순차로 갚아 가면서 정리할 수도 있고 파산제도로 면책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약한 채무를 갚기 위하여 파산절차에서 면책되지도 않는 채무를 새로이 부담한 것이니 최악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채무로 아무리 어려워도 회사 돈에 손대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어차피 안태영씨의 채무는 즉 안태영씨가 발행한 채권증서는 그 가치가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회사 측의 망각 또는 배려에 의하여 빚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첫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의 시효에 걸립니다. 이 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채무는 소멸하는데 소멸시효는 중단이 될 수도 있고 그 중단사유도 여러가지 있으니 후일 전문가의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족의 지원을 받아 또는 저축을 하여 모은 돈으로 손해금에 못 미치지만 회사와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입니다. 전혀 못 받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회사는 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상기술이 필요하겠지요.

한편 회사의 입장에서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회사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전문적인 추심 및 채권매입기관에 위임 또는 매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액면가에 맡긴다는 것은 상정하기 힘듭니다. 나중에 실제로 추심에 당하는 기관으로서는 현저히 싸게 매입한 채권증서에 대하여 전액을 받는 것을 표면적으로는 추구하겠지만 관리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적당한 마진을 붙여 채무자에게 팔아 버리는 합리적인 결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협상의 기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면책이 되지 않은 상태는 파산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일 뿐이며, 파산을 신청하지 않은 때에 비하여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급능력이 없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 받은 것이니, 채권증서의 가치가 휴지에 가깝다는 것을 현실화함으로써 보다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한다고 볼 수 있으니 파산신청 이전보다는 오히려 나은 거래조건을 이룬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제651조.제653조.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전에 본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도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게임의 규칙을 정면으로 어긴 자에 대한 제재는 퇴출이다. 위반의 결과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였는 지 여부와 상관없이 규칙의 위반은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파산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는, 파산재단 손상과 파산채권의 허위증대(사기파산죄 해당), 비정상적인 할인판매와 편파변제(과태파산죄 해당)와 같은 실제적인 위반행위 뿐만 아니고, 구인불응, 파산증퇴, 설명의무위반과 같이 파산절차에 협력하지 않은 범죄행위도 면책 부인 사유가 된다.

실무상 가장 큰 규칙 위반은 파산재단을 손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채권자들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보존되어야 할 파산재단을 손상하는 사해행위(fraudulent

transfer)는 파산관재인이 부인권 행사로 파산재단에 되돌려질 수 있으며, 가장 심각한 면책장애사유를 구성한다. 이것은 파산법의 부정이요, 파산법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기에 아무리 사소한 행위라도 파산법의 보호를 거절 당한다. 보통 채무자가 재산을 가족, 친인척, 친지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판정 받는다. 이러한 경우 대가를 받았다거나 이들도 채권자였다는 점은 충분한 항변이 되지 못한다. 가까운 사람에게 특혜를 준 것이고, 선의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이다. 파산채권을 허위로 만들어낸 경우도 진정한 파산채권자들의 몫을 줄이므로 사해행위가 된다.

파산으로 면책을 얻은 후 7년, 개인회생인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여야 새로 면책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상습적으로 파산제도에 호소하는 계급이 출현하기 위한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낭비, 도박 기타 사해행위도 파산재단의 구성을 위협하는 것이기에 면책이 부인될 사유로 열거되어 있다. 실무상으로는 경마, 카지노와 같은 도박이 이에 해당한다. 왜냐 하면 채무자가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행위임을 잘 알고 있고 적어도 합리적으로 그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에 따라 빈번한 증권, 선물 투자를 여기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다만,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실무상 자주 이용된다. 다만, 이와 같이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이유를 비교적 자세하게 실시할 것이 기대되는데 법원의 업무가 많은 관계로 그냥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으므로”라고 단순히 표시하는 경향이 있다.

채무자가 전반적으로 파산절차에 협조하는 한, 약간의 과소비, 변제를 하기 위하여 절망적인 상태에서 한 속칭 카드깡 행위, 고리대금업자에 대한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의 채무 부담행위 등에 관하여는 재량 면책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재산을 감춘 행위에 관하여는 다른 면책불허사유에 비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P는 T에게 400파운드를, C에게 200파운드를 빚졌다. C는 P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P는 T에게 진 빚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평가액 300파운드 정도인 자신의 재산 일체를 양도하였다. 양도는 비밀리에 이루어졌으며 P는 양폐를 비롯한 재산을 그대로 점유, 사용하였다. 양도했다면서도 P는 물건 일부를 팔았고 양털을 벗기고 양에 자신의 마크를 새겼다. C가 P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 P의 재산을 압류하려고 하자 T는 재산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T에 대한 양도는 사기라고 판단하였다. - Twyne's Case(1601), Jordan, Warren, Sullivan, Bankruptcy 5th ed. p.454



한우영 씨는 철물점을 운영하면서 거래처 발행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였는데, 부도가 나는 바람에 1억3,700만원 가량의 채무를 지게 되어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사채등을 이용한 결과 6,800만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여 지급불능상태에 빠졌다. 이 상태에서 경북 의성군 소재 대지 465㎡를 동생에게, 다시 1년 뒤에 같은 곳의 전답 3,540㎡를 사촌동생에게 각 매매를 가장하여 증여하였고 그 후 1년 뒤에 파산을 신청하였는데, 최근 2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채권자의 이의신청에서 재산이전사실이 밝혀졌다.

법원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상당한 규모의 토지를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채무자의 면책을 허가하지 않았다. 다만, 항고심 법원은 증여한 부동산이 상속받은 위토로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고 항고인이 고령으로 뇌경색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면책을 허가하였다.



황영주씨는 파산 신청을 하면서 자신의 소유이던 연립주택을 3,200만원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채권자는 파산자가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언니에게 연립주택을 돌려놓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황영주씨는

진술을 반복하여 이것은 이전에 언니에게 구두로 3,000만원에 매도한 것이고, 매매 대금으로 언니와 형부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법원은 “채무자의 진술 내용이 반복되었을 뿐 아니라, 매도시기, 소유권이전등기 시기의 간격, 매매대금 약정액과 실제 수령액이 차이가 있는 점 등 채무자의 주장을 믿을 수 없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위 연립주택을 은닉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면책을 부인하였다.

항고심 법원은 원인관계를 언니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차용하여 채무를 부담하여 오다가 언니에게 연립주택으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재산의 은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이와 같은 행위는 파산의 원인이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채무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그 방법이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하니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만, 언니가 돈을 빌려 주면서 연립주택에 살고 있던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보아 일부면책을 하였다.



안어봉 씨(42세)는 당구장, 결혼정보회사, 중국산 저가물품 수입유통업 등을 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대출과 사채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면서 그 채무가 증가하게 되었다. 사업자금을 위한 대출금과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카드깡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돌려막기를 하여 채무가 급증하게 되었고, 현금서비스 한도액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상품권 깡을 거듭해왔다.

그러다가 파산 신청 직전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빌라를 7,000만원에 처분한 후 자신의 거주지를 옮겨야 할 처지가 되자 그 매매대금으로 빚을 갚고 나머지 일부를 이용하여 새로운 주택임대차계약(보증금 1,000만원)을 체결하면서 그 임차인 명의를 아들 명의로 하여 채권자들의 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법원은 이것을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1,000만원 정도의 월세 보증금은 채무자에게 남겨 둔 채 동시폐지해 버리는 것이 법원의 실무였던 지라 안

어봉 씨가 실제로 이런 은닉행위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면책을 부인한 것은, 채무자의 사소한 위반행위가 약삭빠름을 표상하는 것이라고 본 것이 아닐까? 법원에 따라서는 어차피 면제재산 범위내의 금액이라면 그 명의를 누구 앞으로 가지고 있든지 별 상관 없다고 볼 가능성도 있지만, 채무자로서는 실익 없이 제재 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일이다.

주택 보증금이 아니고 상가 임대차보증금인 경우에는 재산도피의 인상이 더 강해진다. 김인숙 씨(43세)는 운영하던 책방(보증금 1,000만원)을 동생에 대한 채무변제를 한다는 명목으로 그 임차인 명의를 동생으로 변경하여주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유일한 종업원이 되어 책방을 계속하여 운영하여 왔다. 법원은 “채무자의 이러한 행위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거나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채무 소멸행위로서 그 방법이나 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면책을 부인하였다.

참작을 받은 경우도 있다. 지방 대도시 출신의 김인선 씨(28세)는 다단계판매업에 종사하면서 물품구입비와 생활비 조달 등으로 채무가 증대되었다. 이미 파산 상태(첫번째 의미)에 이른 김인선 씨는 돈을 벌어 빚도 갚고 결혼도 하기 위하여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고모와 결혼할 남자친구로부터 함께 2,500만원을 빌려 카페를 개업(보증금 1,500만원)하였다. 위 카페를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채권추심 압박이 심해졌다. 상당한 미모를 갖춘 젊은 아가씨에게 몸이라도 팔아서 갚으라는 이야기는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이었다. 김인선 씨는 남자친구와 고모에게 돌려 주어야 할 카페 임대보증금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임차인 명의를 아버지로 변경하였다. 물론 제1심 법원은 당연히 김인선 씨의 면책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항고심 법원은 김인선 씨가 위 점포의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명의를 자신의 아버지로 바꾸어 결과적으로 채권자들의 압류 등 채권보전을 곤란하게 한 것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실시하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이유가 남자친구의

돈만은 꼭 갚아야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실제로 카페를 폐업한 후 임차보증금 잔액을 돌려받아 그 중 상당 부분은 남자친구에게 변제하고, 남은 돈은 고모의 양해 아래 좌판영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하여 80% 면책 결정을 하였다.

이것은 약간의 기능적인 이해를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는 새로이 수혈되는 자금의 가치는 기존에 이미 휴지조각이 되어 버린 채권증서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회생절차에서의 공익채권과 성격이 같다. 한편으로는, 위 카페는 사실상 남자친구와 고모의 것이라고 할 수도 있었다.



: 가

국책은행에 근무하는 이성호씨(32세)는 어릴 때 철강업체를 경영하던 아버지가 돌아가고, 어머니가 법인체를 이어서 경영을 하면서 재산 관리도 어렵사리 어머니가 계속하였다. 이성호씨로서는 대학 다닐 때까지도 무슨 재산이 있는 지, 어떤 거래를 하는 지 잘 몰랐고 사업을 꾸준히 한 어머니를 믿을 수 밖에 없었는데, 후일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담보대출을 받을 때 성년이 된 이성호 씨는 보증보험회사 지점에 가서 날짜 없이 날인을 해 주었는데 속칭 IMF 사태 때 회사는 부도가 나서 30억원의 보증 빚을 졌다. 이성호 씨가 군에 있던 사이 어머니는 집에 있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조상들이 묻혀 있는 이성호 씨 명의의 경북 산골의 선산을 사촌에게 돌려 놓았고, 또 제법 가치가 나가는 경기도 토지를 다른 사촌에게 팔아 그 돈으로 회사 직원들의 밀린 임금을 주었다.

면책신청에 대하여 법원으로서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판결 결과를 무시할 수도 없어 면책이 안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이성호 씨는 이 사건이 사실상 모친이 저지른 것이므로 채무자의 기회주의적 태도를 징계하려는 파산법상의 면책장애사유는 적용이 없다고 주장하며, 돌려 놓았던 선산의 값에 상당하는 돈을 채권자에게 제공하였다. 법원은 면책불허사유가 있지만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한다고 결정하였다.

우리 모형의 주된 함의는, 파산법을 더욱 엄격하게(또는 덜 관대하게)하는 것은, 본래 의도와는 반대되게, 장기적으로 개인파산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이것은 소위 사람들이 모순된 행동에 관하여 자신을 정당화하는 인지부조화 때문에 그렇다. - Fumihiko HIRUMA, Consumer Credit, Impulse Buying and Bankruptcy Law, 早稲田商學 403호(2005/3)

낭비는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므로 법률상 면책불허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낭비의 의미는 목적과 상관 없는 지출을 불필요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사람이 추구하는 목적과 상관 없이 금전을 지출한다면 작은 금액이라도 낭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고, 목적이 충분하다면 낭비가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무역을 하라고 금융을 해 주었는데, 이것을 경마장에 가서 사용하였다던가, 유흥주점에 상습적으로 출입하였다면 이것은 확실한 낭비일 것이다.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이기 때문이다.

채무자는 신용을 얻음에 있어 그것이 채무자의 사업을 영위, 진작하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묵시적 보증(implied warranty)을 한다. 채권자는 자신의 돈이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에 금융상의 신용을 부여할 것이다. 그렇다면 낭비는 면책의 장애사유가 될 수 있다. 채무자 자신이 명시적, 묵시적으로 표시한 용도에 어긋나게 빌려 온 재산을 축내는 행위는 면책 부인이라는 제재를 받아도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이것은 생산적 활동을 기대하고 신용을 공여한 채권자가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의 파산법이 제정된 시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바대로 소비자금융이 활성화된 시기에는 낭비의 의미와 관련하여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소비자금융에서는 금융채권자가 소비를 부추기기 때문이다. 소비를 장려한 금융채권자는 여기에 책임이 있으므로 낭비를 이유로 면책을 구할 자격이 없다. 석양이 지는 바다를 향해하는 크루즈 배에서 잘 생긴 남자와 어여쁜 여자가 데이트를 하는 화면

이 방영되고, 조금 있다가는 프린트에서 남자가 돈을 내는 장면에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 주세요”와 같은 카드회사의 광고는 뻔뻔스러울 만큼 직접적이다. 대금을 당장 결제하지 않도록 하여 장래의 소득을 담보로 현재의 소비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소비자금융의 본질이다. 그리고, 신용카드는 용도를 묻지 않는다.

채무자의 충동적 과소비를 면책 불허의 이유로 삼게 되면 그 혜택은 소비를 장려하여 온 금융채권자들에게도 미친다. 그렇다면 금융채권자들은 원인자 부담 대신에 소비 장려로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해도 면책을 못 받으니 더욱더 소비를 장려하고 또 대출심사를 게을리할 것이다. 즉 잘못된 자는 벌을 받게 한다는 식으로 파산법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채무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채권자의 행동을 왜곡한다. 대출심사를 안 하고 또 채무자가 소비를 많이 하여 나락으로 빠지면 빠질수록 채무자는 면책을 더욱 더 못 받게 되리라고 생각한다면 채권자는 돈을 떼일 위험을 낮게 평가하고 더 대출을 하는 도덕적 해이에 빠진다.

여기에 소비자의 입장에서 인지부조화(cognitive dissonance)라고 불리는 심리상태를 부가하면 강박적 소비는 더 악화될 수 있다. 소비자는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함으로써 현재 즉시 만족을 얻지만 이것이 가져 올 파국에 대하여도 근심한다. 해악의 결과를 잘 알면서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심리상태에서 보듯이, 사람은 자신의 과거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는 존재이다. 엄격하게 파산법을 적용함으로써 도덕적인 낙인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채무자는 “자신은 실패하지 않았다. 갚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대응하게 된다. 돌려막기, 카드깡을 수도 없이 자행하게 되고, 부모와 배우자, 형제의 인감도장을 들고 나오는 범죄행위까지 저질러 가면서 채무이행에 집착한다.

그렇다면 길은 명백하다. 소비자금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정적 파탄 상태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담을 내부화(internalize)하도록 하는 것이다. 과소비로 인한 파산이라고 하더라도 면책을 부여하는 것 이외에 더 좋은 기술적 방법이 있을까?



Q 실연한 후 1년 동안 아픔을 잊기 위한다는 핑계로 험하게 살았습니다. 3,000만원 정도 유흥주점에서 썼고, 비슷한 금액을 경마장에서 날렸습니다. 해외 여행도 두 번에 500만원 정도 썼습니다. 결혼자금으로 모아 두었던 적금 2,000만원 탕진한 것도 모자라 빚이 5,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연체이자만 월 100만원이 넘는데, 배달기사로 100원 버는 것으로는 이자도 못 냅니다. 파산하고 면책 받을 수 있을까요? 하긴 파산 아니면 로또 복권인데 로또 믿고 사느니 차라리 죽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한갑수, 27세)

A 물론 낭비는 채무자의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실무상 월 수입의 50% 이상을 유흥과 여가활동에 보냈을 때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따집니다. 한갑수 씨의 경우에는 수입에 비하여 무척 많은 유흥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아 형식적으로 낭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니, 면책을 받지 못할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두가지 점에서 구제 받을 길이 충분히 있습니다. 첫째, 그래도 면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대출은 용도를 묻지 않고 이루어지고, 신용카드는 빚으로 소비하라고 조장하기에 낭비가 오로지 채무자의 책임은 아니고 채권자의 잘못도 있습니다. 장래는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불만을 면하려고 하는 인간의 나약한 점인 강박적, 충동적 소비를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진보적인 법원에서는 순전한 소비신용이고 채무자가 문서위조 같은 적극적인 위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을 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파산법은 면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면책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법률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개인회생은 파산법에 의한 면책을 못 받은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파산제도의 한 변형이지만, 보통 5년, 짧으면 3년 길게는 8년까지 최저한의 생계비로 근검 절약하여 살면서 저축할 돈을 변제하기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즉시 면책을 해 주는 파산제도에 비하여는 보통 채무자에게 불리하기에 채무자는 선택을 망설입니다.

그래서 채무자를 이쪽으로 유인하려고 일종의 당근으로 제공된 장치가, 원칙적으로 채무가 생긴 원인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 낭비로 인하여 증가된 채무도 개인회생채권에 편입되어 변제계획에 따른 일부 변제로 청산됩니다. 지금의 실무례에 의하면 한갑수씨의 경우 100만원에서 최저생계비 60만원을 공제하고 40만원을 60개월간 합계 2,400만원을 갚아 주는 것으로 변제계획이 충분히 통과될 수 있습니다. 물론 도중에 실직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다 이행하지 못해도 면책을 부여합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은 실패한 사람을 치유하는 장치입니다. 도덕주의자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완벽한 '살아서천국'을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채무자는 빚을 갚고, 기업은 이익을 내며, 성매매는 없고, 사람들은 술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는 이상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제력 없이 술 마시다가 위장을 버리기도 하고... 마구 먹다가 똥똥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이 먹고 삽니다. 약한 인간들의 현실을 보고 구제하기 위한 파산, 면책에 있어서 도덕을 강요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파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에 현명한 파산 전문가는 먼저 채무를 전부 면제 받는 청산형 파산을 고려하고, 이것이 주효하지 못하거나 그럴 것임이 명백한 때에 한하여 개인회생 등 다른 대안을 찾습니다.



Q 교정직 공무원이던, 99년 주식 붐 와중에 근로자주식저축에 세액공제의 혜택이 있었습니다. 딱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쌈짓돈 2천만원으로 직접 주식거래에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벌었습니다. 그러나 벤처 열풍이 2001년 봄 경 꺼지면서 투자한 주식이 휴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손실을 만회하려고 은행 대출을 받고 주위에서도 빌려 다시 주식을 시작하였고, 하루에도 몇번씩 사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9.11 사태로 다시 주식이 폭락하여 1억원의 빚으로 남았습니다.

2002년 퇴직하고 채무를 정리한 후 남은 5천만원으로 전업으로 주식 및 선물 거래에 나섰는데, 약 6개월만에 다 털어 먹고, 2002년 10월 이후에는 생활비와 주식 거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2003년 7월 마지막 남은 아파트를 처분하여 빚을 변제하였는데, 1억 5천만원의 채무가 남았습니다. 주식으로 인한 채무는 면책 받기 어렵다는데 그런가요?-(최교위,48세)

A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파산법은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채무자가 한 경우 면책을 부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공식적으로 주식투자는 돈을 벌자고 하는 것이고 유흥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이것을 한 일이 있다고 면책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미 생활이 어려울 정도가 되었는데 다시 과도한 차입을 하여 위험이 큰 거래를 하는 것은 사행적 성격이 지나칩니다. 그리하여 과거 일부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주로 대출 등으로 조달한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하루에도 몇번씩 사고 파는 데이트레이딩의 방식으로 주식 거래 및 선물거래에 몰입하여 거액의 빚에 파묻힌 경우에는 때때로 면책을 부인하여 온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주식투자나 선물거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면 국가가 장려하는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범죄시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에

는 위험이 있는 것이고 이 위험이 현실화한 것을 이유로 그 피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으로 손해를 본 사람이 있으면 그 반면에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고, 또 증권회사와 은행도 이익을 보았고, 국가도 세금 형태의 이익을 봅니다.

따라서 최근의 실무는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수공할 수 있는 정도의 주식, 선물 투자에 대하여는 사행행위라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한편, 사행행위라고 해서 면책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책장애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하더라도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절충설적으로 판단하여 3-4년 정도 뒤의 기간까지 발생할 이자 전부와 원금의 70% 내지 90% 정도를 탕감하는 ‘일부면책’을 취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투자를 하였다고 면책이 안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파산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기를 권합니다.



Q 영문과를 졸업하고 특허사무소에서 번역 일을 하였습니다. 결혼하고서도 아이를 가지기까지는 계속 다녔고 마지막에는 연봉 3000만원 정도였습니다. 일과 동료로 인한 스트레스에 쇼핑중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백화점에서 옷을 샀습니다. 따져 보니까 3년 동안 1억원이 넘습니다. 전세금을 빼고 남편 수입을 합해 갚았지만 4,000만원의 빚이 남았는데 직장도 없고 남편과도 사이가 안 좋아져 빚 청산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파산신청할 수 있을까요? 낭비로 인한 파산이라 면책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어 답답합니다. (강연희, 35세)

A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신용을 공여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이것을 장래의 소득 창출과 관련 있는 활동에 쓸 것을 기대하는 것이라면, 채무자로서는 받은 돈을 부채 상환능력을 증대하는데 써야 한다는 것이 통상적인 기대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들어 온 돈을 이러한 용도에 쓰지 않고 그저 현재의 쾌락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통상적인 채권자의 기대를 배반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부채상환을 위한 저축 여력을 해하는 행위에 대한 일종의 제재로서 지나친 낭비에 대하여는 면책을 불허할 수 있도록 파산법은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실무상으로는 월 수입의 50% 이상을 유흥과 여가활동 등 소비적 활동에 지출하였을 때에는 낭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강연희 씨의 경우에는 3년치 연봉을 초과하는 옷을 구입한 것으로 보아 형식적으로 낭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니, 파산을 신청해도 면책을 받지 못할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법은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고 있을 뿐 허가하지 말라고 규정하지 않기에 법원과 재판부에 따라서는 기준의 충족 여부에 불구하고 면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회사는 카드의 용도를 묻지 않고 신용카드를 발급합니다. 카드로 책을 사건, 유럽 여행을 떠나건, 벤처기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건 상관 없습니다. 게다가 신용카드 회사는 낭비를 조장합니다. 고급 호텔, 크루즈 여행을 배경으로 젊고 예쁜 남녀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돈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현재를 즐기

라고 유혹하는 텔레비전 광고를 폭격하듯이 송출합니다. 낭비를 이유로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면책을 불허한다면 원인을 조장한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되기에, 이런 경우에는 면책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면책 불허로 판단 받는 경우가 흔히 있지만, 반대로 쉽게 면책 받는 예도 많이 있습니다. 장래는 불확실합니다. 이것은 재판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시도해 보아서 실패하지 못하면 개인회생이라는 대안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 발생원인이 낭비인 지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다른 분의 사례인데, 이자 포함해서 6천만원이 조금 넘는 금융채무를 지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신용카드빚인데, 불필요한 물품과 서비스구입이 많았고 연체시작 시점부터는 카드론 대출도 많았으며, 중국 여행도 2번, 정선카지노에도 호기심 삼아 다녀온 수준이었습니다. 월 150만원 버는 특별한 재산이 없는 젊은이였으니 당연히 과소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이 면책을 받았습니다.

사회는 모범생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과소비는 소비자 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자동차와 휴대폰을 분에 넘치게 자주 바꾸는 충동적 소비자들이 있어야 자동차회사, 전자회사가 영업을 합니다. 신용카드는 당장 결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에 한도를 넘기 쉽고, 사용자 고객으로 존중 받고 있다는 공격적 광고에 의하여 중독되게 됩니다. 상황을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변제능력을 상실하고 채무의 노예가 된 뒤입니다.

냉정한 계산과 자제력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인한 불이익은 카드 사용자가 입지만, 이것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많이 마셔 폐나 간이 병드는 피해를 소비자가 입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유로 파산법상으로는 낭비로 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면책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술, 담배의 판매자가 중독자를 만들 듯이, 신용카드가 채무 노예를 만들어내는 현실에 따라, 단순히 소득의 규모를 초과하는 소비지출이라는 것만으로 낭비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재산을 털어낸 것과 동일시 될 상황에 대하여만 면책을 부인하는 경향을 보이는 법원이 있고, 충동적 미용성형수술, 명품 구입, 신혼여행 정도는 보통 이상 없이 면책을 받습니다. 시킨 대로 한 것이니까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근래에 이르러(2005. 9월 기준) 일부면책 결정은 하지 않는 쪽으로 실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의정부지법을 포함한 몇 개의 법원에서도 일부면책결정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임채웅, 면책후 추심행위의 금지 및 비면책채권의 범위, 2005.9.24 법원 도산법커뮤니티 세미나 발표 자료

파산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과거 원금의 일부(10% 내지 30%)만을 남기고 이미 발생한 연체이자와 앞으로 3년 내지 5년간 발생할 이자는 탕감해 버리는 일부면책의 결정이 일부 법원에서 나온 바 있다. 이것은 면책불허가 결정과 일정 금액을 변제한 이후에는 복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결정이 복합되어 있는 것인데, 복권이나 채무 소멸 여부에 관하여 법정절차 이외의 조건인 채무자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니 확실히 절차법 이론상의 문제가 있지만, 특히 문제가 되지 않으니 이 나라의 확립된 법인 것 같다.

각 사안에 맞는 구체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고, 기능적으로 이해할 때 일부 변제를 추구하는 회생절차와 개인회생절차가 바로 일부면책결정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인데, 파산절차를 택할 것이냐, 회생절차를 택할 것이냐는 실질적으로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용성이 있다.

그러나 실무상의 번잡함이 있다. 첫째 채권자도 영속하지 않는다. 금융채권자도 파산, 합병 등으로 동일성을 변경하기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채권을 유동화시켜 양도해 버립니다. 이미 파산절차 진행 이전부터 시작한 채권매각은 2,3년 지나 보면 부실채권투자회사에 넘어가고, 일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이들 채권자를 찾아 보아야 하는데, 대부분 오로지 지상으로만 존재합니다. 액면 3%까지 매입한 채권자가 액면 20%의 변제를 받아들이지도 않아서 번거로움을 겪기도 하고, 이 경우 이론상 공탁을 하면 되지만, 이것도 번거로움이다. 둘째, 법원의 입장에서도 일부면책은 부담이다. 복권신청이 들어오면 이미 종결했던 기록을 다시 열어서, 채무자가 제시하

는 변제주장을 심리해야 하는데, 역시 금융채권자들 사이에 일어난 인수, 합병의 역사나 이들 사이의 채권양도 여부를 살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가끔 행해지고 있는 일부면책결정은 대부분 비현실적이다. 이것은 가난한 채무자의 현실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다. 자산을 이미 다 청산해 버린 채무자의 경우에는 변제 자력이라는 것이 노동으로부터 나올 수 밖에 없다. 즉 인적 자본(human capital)만 남아 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2천만원, 3천만원 정도의 채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지급불능이다.

그런데, 일부면책결정을 받을 정도의 채무자라면 보통은 공(0) 하나를 더 붙인 2억원, 3억원의 채무를 진 경우가 많다. 왜냐 하면 성실한 채무자에게 기대하지 않는 사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무상 최고의 일부면책 비율인 90%를 적용해도 2천만원, 3천만원을 채무로 남기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불가능을 요구하는 것이 된다. 법은 불가능을 요구하지 않는다. 만일 그렇다면 고객을 우롱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극히 제한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고 대부분의 법원도 일부면책을 잘 하지 않는다.

가끔 필요한 때가 있기는 하다. 첫째는 사해행위의 원상회복이다. 여러 군데에 5억 빚을 진 채무자가 3,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빼 돌렸다고 가정하자. 법률상 이 경우 동시폐지를 하지 않고 파산재단을 구성하여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재산을 회수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상, 예산상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동시폐지를 해 버리되 90%의 면책을 부여하면 채무자는 5,0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의 이행책임을 면하고 복권을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의 재산형성이 채무자의 파산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도 역시 재산회복의 편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는, 회생과 개인회생의 기능적 대안으로서 인적 자본이 큰 사람에게 활용할 수 있다.

시간의 불가역성을 고려하면 정책적으로 그 범위를 좁힐 이유는 명백하다. 복지국가라는 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기초생활 수준의 소득을 창출하는 최저한의 자산을 누구나 형성하고 있다면 정부의 재정부담은 훨씬 경감될 것이다. 몇 년간의 검약생활 강요는 최저한의 자산형성시기를 놓치게 할 수 있다.

뿌리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므로 꽃 좋고 열매 많으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끊어지므로 내 되어 바다로 가나니. - 용비어천가
 사람은 누구나 (다른) 출발점을 갖고 시작하는데 저는 혜택받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 홍석현,

사람은 모두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말은 혁명 구호에나 나오는 거짓말이다. 세계는 평평하다는데, 양극화 추세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부자는 세계적인 부자의 수준으로 상승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절망적인 나라의 비슷한 사람으로 전락하는 와중에 중산층은 더 이상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긴 가뭄에 실개천부터 마른다. 가지지 않은 자는 불행이 닥쳤을 때 망하기 쉽다. 능력도 유전되는 경향이 있고 지적, 육체적 발달은 후천적으로 습득되기도 할 것이니 부잣집 자식들이 훨씬 유능해질 가능성이 크다. 공교육이 부실하면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는 노동계급의 자제는 늘 뒤진다.

미래는 불확실하다. 확실성은 흘러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논리적 범주와 모순된다. 인간은 나름대로 인과의 경로를 예상하여 미래의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즉 불편함을 해소하는 쪽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행동한다. 올바른 선택으로부터는 이득을 얻을 것이고 잘못된 행동으로부터는 손해를 볼 것이다. 행동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낙관적이다. IT기업을 설립하거나 그에 투자를 하는 사람, 영화제작이나 출판에 투자하는 사람, 대단위 상가와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사람은 속칭 대박을 꿈꾼다. 이들은 젊은 엔지니어나 영화 엑스트라의 무위도식을 걱정하여 사업을 하지 않는다. 자신의 재정적 성공을 추구한다. 성공스토리는 언론을 장식한다. 일수 돈을 빌려 시작한 세탁소에서 시작하여 굴지의 건설회사 회장이 되기도 하고 현금서비스를 빌려 마련한 창고에서 벤처기업을 시작하여 기술개발과 자본유치로 자가용비행기를 타고 다닌다. 실패의 가능성은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잃을 것도 별로 없다. 남의 돈을 빌려 와서 투자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수만이 성공하고 부자가 된다. 대부분은 실패한다. 보도되는 것은 사람

이 개를 무는 것과 같은 이상한 사태이다. 혜택 받지 못한 사람이 전 재산을 들여 중국에서 김치 공장을 하다가 기생충알이 발견되었다는 보도에 모든 것을 잃은 예는 주목을 끌지 못한다. 망하는 것은 어두운 주제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일상적이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수성가를 하여 부자가 되는 것은 이례적이기에 초겨울에 피어나는 분홍색 장미나 혹은 속의 개나리처럼 주목을 끈다. 이런 예외적인 성공 사례가 하면 된다는 신념과 함께 선전될 때 성공을 꿈꾸는 자는 냉혹한 시장의 게임에 뛰어들어 중국에는 소수의 성공하는 이를 위하여 행동한다. 실패하는 기업은 소비자에게, 종업원에게, 납품업자에게 또 국가에게 분에 넘치는 이익을 주고 정작 본인은 망해버린다.

실패한 자도 다른 사람에게서는 좋은 일을 한다. 어떤 이는 든든한 자본이 없이, 능력이 없이, 또는 자본도 없고 능력도 없이 사업을 시작하였다가 도산하여 피해를 준 사람을 규탄한다. 또 주제 넘은 소비를 하여 자신을 망친 철딱서니 없는 소비자를 비난한다. 모범적이라고 가정되는 주로 부유하고 살만한 사람들로 부터 나오는 이러한 주장은 자세히 관찰해 보면 허접한 편가르기이다. 이들은 마치 백인이 흑인을 멸시하고 유럽인이 아시아인을 멸시하였듯이, 부자는 가난한 자의 도덕적 결함을 찾으려고 한다. 가진 사람만이 사업을 할 수 있다면 독점적 지위가 형성된다. 한계기업이 높은 비용 지출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뛰어 들어 생산활동을 함으로써 소비자는 싼 가격에 물품을 사는 혜택을 본다. 없는 자로부터 오는 극단적인 경쟁의 위협은 기존의 대기업이 부당하게 소비자를 착취하는 것을 주저하게 한다. 소득이 부족함에도 분에 넘치는 소비를 하는 사람은 대기업을 살찌운다. 현대 사회에서 대기업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는 근거 중의 중요한 하나는, 대량생산을 하는 대기업은 결과적으로 대중에게 봉사한다는 점이다. 기업을 받치는 소비대중은 어리석은 소비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목적을 이루도록 했다. 그럼에도 이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왜 뱉혀?’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부당하다.

누가 “노예제가 무엇이나?”라고 묻는다면 나는 한마디로 “살인”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다른 질문: “재산이 무엇이나?”에 대하여는 “장물”이라고 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 - 프루동
 그 악당들이 소위 ‘공정한 분배’를 한답시고 곡물을 거둬들이는 동안, 자기 것을 조금도 숨겨 놓지 못한 이들은 특히 심했지. 그 놈들의 공정한 분배란 자기들은 가지고 우린 가져선 안된다는 뜻이었던게야. - J.R.R.Tolkien, 김번 외 2 옮김, 반지의제왕 6, 187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잡으면 된다. - 등소평

사유재산제도와 각자의 능력 차이, 그리고 여기에 원래 인생이라는 것이 불확실하다는 피할 수 없는 진리가 결합되면 다수는 가난하고 소수는 부자이고 유복하다. 흉년에 굶어 죽지 않기 위하여 흰죽 몇 사발에 눈을 팔고 자식을 팔고 자신을 팔아 노비가 되어 버렸다는 이야기에서 보듯이 그 차이는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적절한 규제가 되면 방지될 수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 억압을 피하려고 백성이 유민이 되고, 유민은 지배층에 도전하여 도적이 되어 난세를 횡행하였다. 왕조의 창업과 교체가 이루어지며 명나라 태조 주원장처럼 도적이 지배층이 되기도 하였다.

인간에 관하여 나름대로 정치한 이론을 구성하여 아예 불평등의 원인을 깡그리 없애 버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사유재산의 부인과 교육의 평준화로 사람의 출발점을 인위적으로 같게 하려고 하고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하여 시장에 의한 거래 대신에 중앙집권적인 의사결정을 추구하는 사회주의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실패하였다고 흔히 평가된다. 인간의 욕망을 수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유재산은 그 자체로 정당한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사유재산은 신성불가침의 것이라는 고풍스러운 선언도 부자들이 자신들의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도그마라고 배척할 수 있고, 또 사유재산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현존하는 제도이기에 그대로 유지 보장되어야 한다는 헌법이론도 그저 기득권자를 옹호하는

파시스트적인 절충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도 사유재산이 조상의 또는 본인의 장물이 아니라고 이성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 그렇다면 사유재산의 정당화는 그것이 개인의 행복을 위하여 유용한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기술(technique)이라고 하는 것이 편다. 그런 의미에서 재(財)테크라는 말은 사유재산에 관한 진실성을 함축한다고도 할 수 있겠다.

재산권은 다른 사람의 접근, 이용을 배척할 수 있는 것이니 그것은 결국 타인에 대한 권력으로 나타난다. 타인을 배제함으로써 인간이 자연을 소유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일 뿐 엄밀히는 사유재산이라는 것은 환상이다. 생명이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토지 즉 자연을 지배하는가? 오히려 흙으로 돌아갈 인간을 토지가 지배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평가이다. 이 권력이 한 사람 또는 소수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널리 개인들 사이에 재산권의 형태로 퍼져 있고 여기에 자유로운 거래가 합해지면 경제적 의사결정을 분산시키고 이것은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다수의 복지를 결과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믿는다.

기술은 쓰이는 자에 따라서 유용하기도 하고 남용되어 해를 주기도 한다. 출발점을 달리하는 사유재산의 소유자와 그렇지 않은 대중 사이에 아무런 계약상의 규제 없이 방치 되면, 불황기에 가난한 자는 몰락하고 노예로 떨어지며 이러한 상황은 대물림한다. 궁한 자는 토지를 팔고 집을 팔고 자동차를 팔고 자식을 팔고 자신을 팔게 마련이다. 결국 소유의 집중과 대중의 가난으로 귀결되며 이것은 사유재산제도가 정당화되는 근거를 말살하게 된다. 자본주의의 자살이다. 그러나 농약이 저세상으로 가는 수단으로 남용된다고 그 생산을 금지할 수 없듯이, 가끔 남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 기술을 폐지할 수 없다. 사유재산제도가 유용한 하나의 사회적 기술이라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부가하면서 이것을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흔히 부자에게 걸어서 공정한 분배를 한다는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행동을 하자고 가진 자들도 악어가 눈물을 흘리듯이 나서기도 하지만 그 유효성에 관하여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한다.

부자는 가난한 이들을 다스리고, 빛진 이는 빛준 사람의 종이 된다. - 잠언 제22장 제7절
조반유리(造反有理), 반역에는 이유가 있다. - 모택동

어떠한 조치도 적어도 누구든지 노예상태에 지속적으로 매여있지 아니한다는 기본적인 보장이 없으면 공허하다. 노예에게는 결코 공정한 분배가 돌아갈 리 없기 때문이다. 만일 사람들이 자신이 사회의 어느 지위에 속하게 될 지 모르는 상태에서 바람직한 사회형태를 선택하는 사회계약을 실시한다고 할 때, 자신도 그 사회에서 가장 실패한 사람이 될 가능성도 크다는 점을 아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누구든지 노예가 되지는 않는 사회를 선호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채무자의 행동이 채권자에게 지배된다는 의미에서, 채무는 본질적으로 노예상태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회계약을 구현하기 위하여는 노예상태를 벗어나는 기술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평상시의 그것은 파산제도이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여 사용하고 있는 사유재산이라는 기술의 부작용을 견제한다. 즉 파산제도는 사유재산제도를 보충하는 기술인 것이다. 평소에 이와 같은 보충과 견제가 없는 상태에서 양극화가 지속되면 언젠가는 과격한 혁명으로 시정될 것이다. 가난은 혁명을 낳고 혁명은 다시 가난을 낳는다고 그 누가 말했던가? 자기 책임의 원칙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의 본고장은 미국이다. 그들이 채무자에게 우호적인 파산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것이 보수적인 철학에 의하여 뒷받침 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물론 사회에서 어떤 자는 노예의 제재를 받아야 마땅하다.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제재는 그 자체가 응보적인 조치로서 정의감에 맞는 것이고 또한 잘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에 대한 예방적 교육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처지에 놓일 사람은 다수가 유효적절하게 제어, 탄압할 수 있는 소수여야 한다. 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다수인이 노예상태에 놓여 있다면 그것은 체제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다수가 도둑, 사기꾼이 되는 길을 택하였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언젠가는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고, 반대편의 사람도 사실은 도둑임을

뜻한다.

이 불평등을 과격하게 시정하겠다는 체제들은 잘 운영되고 있지 못하니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듯하다. 그렇다면 부자를 존경하지는 못할지언정 가진 것을 잘못이라고 손가락질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없이 역사 바로 세우기를 시행하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혼돈을 만나게 될 것이기에 조상의 잘못은 부자들 자신의 흠이 아니며, 오랜 기간 미국 생활을 하는 동안 별장을 마련하며 위장전입으로 농지를 취득하였던 점도 그냥 부친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설명하면 된다. 재산을 많이 가진 자들이 고관과 정치인에게 뇌물을 주어 타락시킨다는 비난도 정당하지 않다. 비난 받아야 할 것은 돈을 걷어간 자이지 준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별 볼 일 없이 놀러 와서 인사를 하고 작게나마 굶은 일도 해 주는 젊은이들에게 용돈, 월급, 청소비 등 명목의 돈을 제공한 유흥업소 주인은 보호비를 갈취 당한 선량한 피해자로 인식되며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고 손가락질 받지 않는다. 순탄한 기업활동을 방해 받을까봐 두려워 나으리들에게 분에 넘치는 명절 떡값을 제공하였다는 점도 혜택 받은 삶을 살았던 것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돈 좀 있는 죄”라고 치부하고 명백한 잘못을 용서 받을 수 있다면, 없는 것에 대하여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가난도 대물림하고 빚도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부모에게 태어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버려지기도 한다.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은 한 때 방탕한 생활을 해도 파탄에 이르지 않으며, 사업을 하다가 방만한 운영으로 궁지에 몰려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남아 있는 재산으로 채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때의 방탕함이나 철없음으로 돌리고 재기할 수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과소비’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소비’이다. 없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적용될 수 없다. 이들은 약간의 실수만으로도 빚을 지고 허덕이게 된다.

전통적으로 빚을 갚지 않는 것을 도덕상의 결함으로 규탄해 왔다. 사람마다 출발점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고, 그저 사람은 빚을 갚아야 하는데 이것을 이행하

지 않는다면 나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가난이 죄라고 비난하는 것이다. 가난이 죄라고 할 수 있다면, 가진 것도 장물이라고 해야 마땅하다. 조상에게서 물려 받은 가난을 탓해야 한다면, 그 가난의 원인을 찾아서 역사 속으로 들어가 결국은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든 가증스러운 조상을 발견할 수 있다. 만인이 지탄하는 불법 투기의혹이 있는 고관이지만 ‘누구나 출발점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니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자고 할 수 있다면, ‘주제 넘은 소비를 한 자로서 비난 받아야 하지만, 원래 가난하였으니 용서해 주자’라고 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1997년에 동아시아를 휩쓴 속칭 IMF 사태 이후 많은 사람이 더 가난해졌다. 세계경제에의 통합은 불가피한 구조조정으로 실업자를 양산하였다. 금융시스템을 공격으로 떠받침과 아울러 개인들에게 헬리콥터에서 돈 뿌리듯이 신용카드를 나누어 주는 것을 방임했던 정책상의 변화 이후 400만 정도의 사람이 빚을 못 갚게 되었다.

가난을 구제 받지 못한 사람들은 도피하여 21세기 대한민국 변영의 상징인 인천 국제공항으로 돌아올 복편 티켓 없이 하염 없이 외국을 떠돌기도 하였고, 어떤 이는 다른 세상으로 영원히 피했다. 또 어떤 사람은 쉽게 돈을 벌어 보려고 자기 주인을 납치하였고, 몸을 팔았다. 있는 사람들의 눈이 그들만의 호화 주상복합아파트로 모여드는 동안 없는 자들은 정체를 위장하고 우리들 속에 섞이게 되었다. 탄압이 계속 되면 이들은 일어설 수 밖에 없다.

경제활동을 하였기에 빚을 질 수 있었을 것이다. 이들은 결코 소수가 아니다. 400만이 되는 사람이 법과 도덕을 어겼다고 평가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재검토해야 할 단계에 있다. 다수가 지키지 않는 법이라면 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물론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암시하는 바와 같은 가난한 자에 대한 도덕주의자의 멸시를 근절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가진 자 특히 대금업자에 대한 파퓰리스트적인 증오를 확산하는 것도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재산이나 채무를 그저 기술적인 수단으로 보는 냉정함이 필요한 때인 것이다.

가난한 것은 나쁘고 있는 것도 죄라는 식의 분열증적인 사고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가진 재산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채무에 대하여도 파산채권과 파산재단의 상계라는
도식으로 설명되는 바와 같이 질서 있는 청산과 재건을 추구한다.

이것은 도덕이나 윤리와는 상당히 먼 거리가 있는 기술(technique)이다. 마치 우
리가 더위로부터의 해방을 위하여 미국사람들이 사용하여 온 냉장고나 에어컨 같은
기술을 우리가 모방 도입하여 사용하듯이, 그들이 오래 전부터 기업과 개인의 구조
조정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파산이라는 기술을 21세기 대한민국의 우리가 따라 하
지 못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아직 여건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열등감과 엽전의식이
거나, 이미 저들을 따라 하고 있는 가진 분들만이 미국적인 아니 세계적인 수준이
되겠다는 차별의식이다.

노예 상태에 익숙해지면 그것에 저항하지 않고 숙명으로 받아들인다. 그것은 미학
적으로 정당화되는 경향까지 있다. 당연히 노예제도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은 이와 같
은 숙명론에 친숙할 수 밖에 없다. 빗진 것을 갚아야 한다는 당위를 지키면서 겪는
가난의 처절함에 마치 1945년 이전의 일본인들처럼 우리는 익숙해져 있는가?

집요하게 되풀이되는 장면은 여전히 단조로운 진흙탕
속의 행군, 비참한 전투의 고통, 승패가 정해지지 않
는 작전이다. 마지막 장면은 승리도 아니고, ‘반자이萬
歲’ 돌격조차 아니다. 그것은 아무런 신기할 것도 없
는 진흙 속에 깊이 묻힌 중국 어느 도시에서의 숙영
宿營의 경정이다.....그들이 싸우고 있는 전쟁의 목적
조차 말하지 않는다. 일본인 관중에게는 화면에 나타
나는 인물이 모두 전력을 다해 은혜를 갚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영화는
군국주의자들의 선전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들
영화의 후원자들은 일본 관중이 그것을 보아도 결코
반전 사상을 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루
스 베네딕트, 김윤식, 오인석 옮김, 국화와 칼 236면

보험의 인수여부는 여러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아마 카지노에서 잃은 손실을 보전해주는 보험상품을 팔 보험회사는 없을 것이다. 만일 그런 보험이 있다면 가입자는 마구 무책임한 도박을 벌일 것이다(“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이러한 보험을 쫓아 가입하려는 자는 대부분 손해율이 높은 자들일 것이다(“역선택: adverse selection”) - Douglas G. Baird, Elements of Bankruptcy 3rd ed. 2001, p.35

앞에서 보았듯이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파산채권)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면책은, 그 때까지 형성된 채무자의 일반재산(파산재단)만이 파산채권자에게 배당되고, 그 후에 채무자가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파산채권으로 집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 인적 유한책임을 강제하는 것이다. 사람과 그의 재산이 분리되어 특정 시점의 재산에 관하여만 청산을 하고 사람은 최초의 위치에서 새로이 시작하는 것이다. 마치 사람마다 주식회사를 하나 가지고 있다가 부실화되면 버리고 새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과 같다.

채권자의 손해가 불가피하다면 대응하는 이자를 올려야 파산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파산제도는 모든 사람의 자금조달비용을 늘릴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모든 채무자는 당초부터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반면에 채권자는 일부 채무자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겪는다. 물론 높은 이자로 조성된 자금으로 채무자의 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을 가입하기도 하고, 스스로 흡수할 수 있다(자기보험: self-insurance). 파산제도는 모든 금융계약에 이러한 ‘보험증권’을 추가하는 것이다.

보험인 이상 파산제도에는 당연히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문제가 존재한다. 파산해도 면책을 받아 새출발을 할 수 있다면 과도하게 차입할 유혹이 커질 것이다. 그런 위험 때문에 채권자가 이자율을 올린다면 빚을 지고 갚지 않을 사람이 먼저 대출 신청을 할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신용을 파괴할 정도는 아니다.

자기 집을 화재보험에 든 사람은 경계심이 떨어질 수 있고 특히 방화범이 먼저 가

입하려고 할 것이지만, 화재보험시장은 활성화되어 있다. 주의를 덜 기울이는 것은 치명적인 것이 아니며 작은 손해를 가입자에게 부담시켜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의료보험이 있다고 사람들이 함부로 몸을 굴리겠는가? 그리고 방화범이 화재보험의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규칙을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은 파산하게 되었을 때 약간의 손해를 보기에 면책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해도 도덕적 해이가 문제될 정도로 무책임하게 되지는 않는다. 또 채무를 고의로 면탈하기 위하여 파산을 남용하는 사람들은 걸러내면 된다. 성실한 채무자는 “열심히 일해서 갚는 사람은 뭐냐?”며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자동차보험의 혜택을 보지 못한 채 보험료만 열심히 내는 운전자의 이해할만한 심정이다.

면책을 받을 권리는 개인이 자유로이 포기하지 못한다. 개인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가 있지만, 면책을 구할 권리를 포기하고 보험료를 절약하지 못하며, 채무자는 원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새 출발을 할 권리를 사야 한다. 채무자는 이자를 더 지급하는 형태로 보험료를 내며, “면책을 받지 않을 테니 이자율을 싸게 해 달라”고 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개인의 재정적 불행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과 차용하는 당시에는 위험을 정확하게 평가할 능력이 없다는 점이다.

첫째, 개인의 불행은 본인 뿐 아니라 가족, 친구, 사회 전체 심지어는 세계적으로 영향을 준다. 노예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세금과 파산이 없으니 지상천국이라고 선전되는 체제에서 부모를 잃고 꽃제비 되어 떠도는 어린이가 있다면 이웃한 우리는 분개한다. 문명인은 어려운 사람의 곤경을 모른체하기 힘들다. 둘째, 개인은 항상 냉철하게 합리적이지 못하다. 기업들은 위험 평가에 능할 수 있지만, 개인은 돈을 빌릴 때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못할 수 있다.

개인이 빛의 노예 생활을 계속하지 않을 수 있도록 면책을 받을 권리를 강제로 사게 하는 것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들도록 강제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어떤 사람이든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 제도가 바로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보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낀다. – Roy P. Basler, *The Collected Works of Abraham Lincoln* p.361

사람에 대하여 소유권이 행사되는 노예제도는 타고난 것이든 개인적 선택의 결과이든 문명국가에서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규제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 그것은 사회적 죽음이기 때문이다.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노역을 강요당하지 않고 갚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채무자의 선택이니 노예제도는 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호박에 줄 친다고 수박이 되지 않는다. 국가체제라는 억압이 가난한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채무자가 이 시스템을 피할 방법을 찾기 힘들어질 때, 채무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노역을 할 수 밖에 없고 채권양도가 인정된다면 사실상 채무자가 거래되는 것이니 적어도 노예제도와 유사한 제도와 관행에 해당한다. 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가 채택한 노예제, 노예무역 및 노예제와 유사한 관행의 철폐에 관한 보충 협약 제1조는, 채무자가 자신의 인적 서비스 또는 그 영향 아래 있는 사람의 인적 서비스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위 또는 조건 중 합리적으로 평가된 이런 인적 서비스의 가치가 채무의 청산에 적용되지 않거나, 이러한 인적 서비스의 기간과 성질이 각각 제한되고 명백히 정의되지 아니한 경우를 채무노예(debt bondage)라고 규정한다.

첫번째 억압은 형사처벌의 위협이다. 채무자가 빚을 못 갚으면 당초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의제가 차용금사기의 정리처럼 행세하여 왔다. 채무자가 어떠한 말을 할 필요도 없는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 작성행위나 그 후의 카드사용에 대하여도 안이하게 사기죄를 인정하여 왔다. 둘째 전문적인 추심업자이다. 예전에는 ‘해결사’라고 하여 폭력배로 간주되어 엄한 처벌을 받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허용되었다. 채무자는 쉬지 못한다.

이들은 거둬지는 전화로 또는 직접 방문하여 독촉을 하고 쓰레기 우편물을 보낸다. 사랑한다는 말도 자꾸 들으면 스토킹이 되는데, 빚 갚으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한다. 셋째, 국민의 등록을 요구하는 국가의 조직화와 사회보장제도이다. 그 전제로 전 국민에게 강제되는 주민등록제도는 사람을 국가 체제의 종속물로 만들 수 밖에 없다. 숨을 곳이 없어진다. 이론적으로 이런 사생활에 관한 정보는 보호되게 되어 있지만, 법이 모두 지켜지는가? 넷째,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월급을 월급의 압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위협이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자는 생물학적으로 살아 있지만 자신을 위하여 일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종속적 생활을 하게 된다. 전적으로 근로소득에 의존하여 살게 되지만 벌어들이는 것에 대한 제1의 권리자는 정부이다. 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하여 먹어야 하니 식비를 지출해야 하고 잠을 자야 하니 집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도심의 직장 가까운 곳에 집을 얻을 수 없으니 멀리 살며 지하철 차비를 지출해야 한다. 그리고 남는 돈은 당연히 채권자에게 갚아야 한다. 이것은 많은 경우 이자를 갚기에도 부족하니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 굴레에서 빠져 나올 길을 없다. 노예가 되는 것이 사회적 죽음이라면, 빚을 지는 것은 죽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방되어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 물론 어떤 노예는 해방을 당하는 것을 주저한다. 그것은 먹고 살게 해 준 주인에 대한 의무감 때문일 수도 있고, 주인의 보호 바깥으로 나가 생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강제로 노예를 내 보내라고 강요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면책으로 새 삶을 찾는 것이 모든 채무자의 선호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저지른 일 내가 수습한다는 것은 미학적으로 훌륭한 결단이기도 하고 신용을 지키는 것은 계속 빚을 얻을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초에 문제 발생의 여지가 없도록 금융업을 일괄적으로 규제하거나 채무로 인한 속박을 일거에 해방하는 것보다는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빚으로부터 해방될 기회를 부여하는 파산 제도가 우월하다.

그러한 (세입원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토지는 계속 방기되었고 무역은 대부분 중단되었다. 소지주들은, 중한 세금 압박 때문에 도산하게 되어 자신들을 대토지 소유자의 자비에 의탁하게 되었다. 이들은 소작인, 농노 심지어는 노예가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너무나 멀리 퍼졌기에 국가의 세입에 해를 많이 끼쳤다. 사실 기원 후 368년에 발렌스 황제는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을 불법으로 선언하기까지 하였다. Bruce Barlett, “How Excessive Government Killed Ancient Rome”, CATO Journal, 14-2, 1994, www.cato.org/pubs/journal/cvj14n2-7.html

노예들을 시켜서 하는 작업은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오로지 최소한의 생존 밖에 들지 않지만 결국에는 가장 비싼 비용이 든다. 아무 재산도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은 오로지 가능한 한 많이 먹고 가능한 한 적게 일하는 것 이외에는 관심이 없다. 노예 자신의 생존을 담보할 정도 이상의 일은 오로지 폭력으로 짜내는 방법으로만 얻어질 수 있다. - A. Smith, The Wealth of Nations, Bantam Dell 2003, p.493-494.

노예의 소모는 주인의 비용으로 귀착되지만 자유 노동자의 소모는 노동자의 부담이기에, 중국에는 자유인의 작업이 노예노동보다 훨씬 싸다. - Ibid. p.113.

임금에 대한 제1의 권리자는 대한민국 정부이다. 임금을 주는 사업자는 극히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금(‘갑종근로소득’)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여기에서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최저한의 생계비를 떼고난 나머지가 과거의 채권자들에게 가게 되면, 채무자는 별 희망이 없다. 저축을 해서 장래 무엇을 하겠다는 희망이 없는 사람은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다. 일을 해도 현재의 소비에 만족한다.

그런데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도 일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다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의 몫까지 일해야 한다. 그렇다면 금융채무의 발생은 납세자의 부담을 증대시키는 외부성(externality)을 발생시킨다. 그렇다면 파산제도는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이다. 금융채권자는 내부화한다.

채무자는 실업급여를 월 100만원 받아 가면서 실업자 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취업을 할 생각이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렇지만, 채무자로서는 재교육을 마치고 나서도 최소한 갑근세와 의료보험료를 내는 사업장에는 가지 못하고 돈을 벌더라도 회색시장이라고 표현되는 비제도 부문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주로서는 월급 압류에 따른 행정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채무자를 다른 지원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채무자는 월급을 낮추어 입사에 지원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여기서 세금 때고 난 급여 중에서 상당 부분을 부지런한 채권자가 먼저 가지고 간다면 채무자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자금도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취업을 계속 못하면 계속 무료로 학원을 다닐 계획이고(두달동안 취업이 안된 사실을 보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실업수당 끝나면 슬슬 공공근로나 다닐 궁리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귀원이 면책을 부여하시나 하지 않으시나 채무자가 이 사건 파산채무를 갚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선거법이 개정되어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도 대통령, 국회의원, 서울특별시장을 할 수 있고 어차피 가난한 사람이 겪는 이상이 차별을 받지 않기에 별로 불편한 것이 없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도 세금을 내는 시민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 - 항고이유서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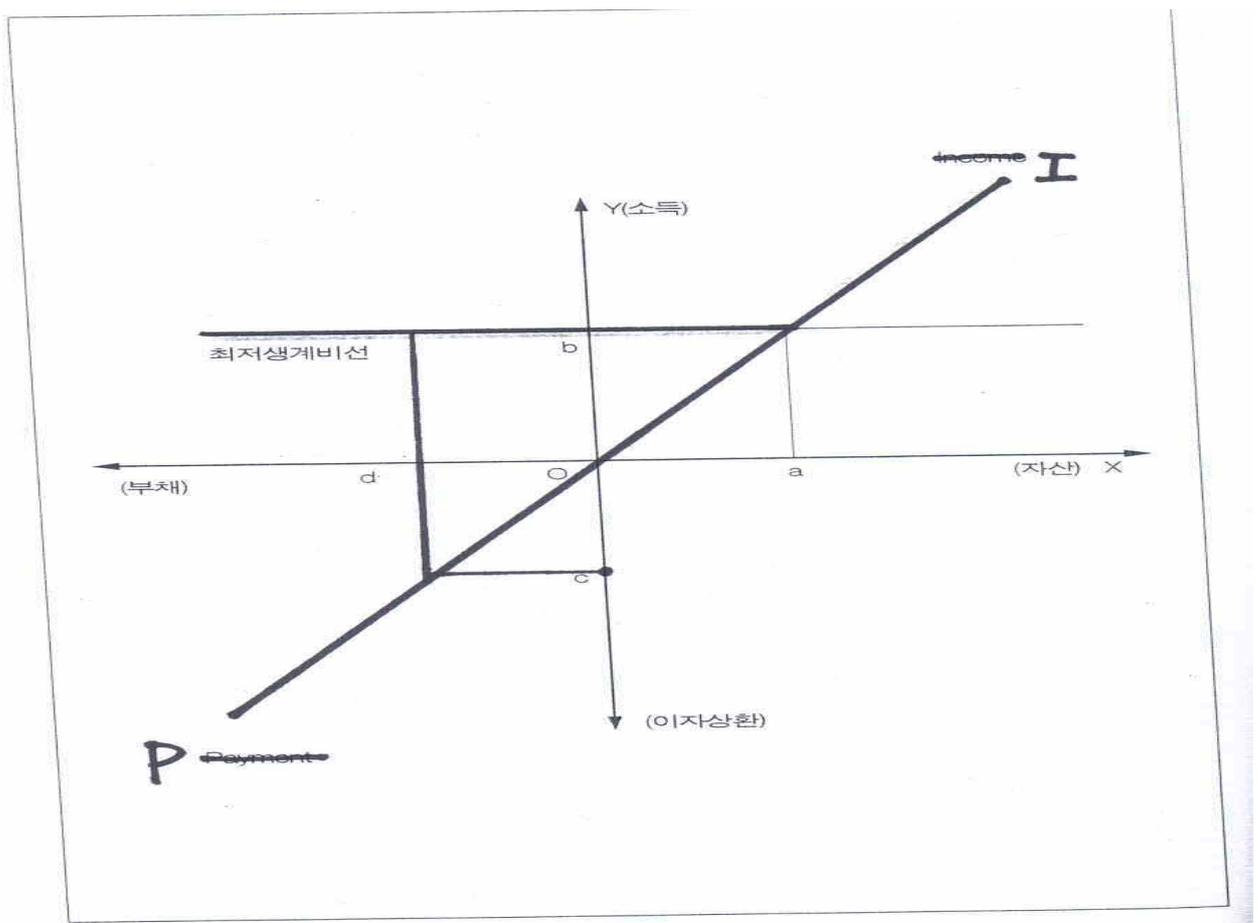
납세자 감소는 체제 붕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고대 로마가 군사비 지출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금을 늘리고 함량 미달의 화폐를 발행하여 물가를 올리자(기능적으로 세금의 일종이다), 많은 자유민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노예가 되어 유력자에게 의탁하여 갔고, 이것이 악순환을 일으켜 도시가 붕괴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을 어떻게 평가하여야 할 지는 어디까지 믿어야 할 지는 역사가들의 논쟁거리겠지만, 직관적으로 명백한 것은 세금을 낼 자유인이 줄면 그들은 더 부담하게 될 것이다. 고대 로마의 귀족은 달리 더 좋은 살 곳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전세계가 부자들을 끌어 들이려고 노력하는 상황에 있는 21세기에 사는 부자들은 자신들이 세금을 내는 조국을 선택할 수 있다. 이민, 원정출산, 조기유학을 하기도 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4조 제1항, 제2항
 국가는 자유 시장을 보호하는 한편 빈곤을 감소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자유시장경제에서 복지체제의 존재는 과도한 위험 인수로 이끈다. 따라서 채무자로 하여금 미래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천문학적인 이자율을 감수하고서라도 금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안전망의 유지비용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기 때문이다. - Robe and Michel, "Penalties and Optimality in Financial Contracts: Taking Stock," www.american.edu/academic.depts/ksb/finance_realestate/mrobe/Library/Minguet.pdf p.19.

소극적으로 제도권에서 일을 하지 않고 덜 하는 것을 넘어 가난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납세자에게 부담을 준다. 그것은 사회보장제도 때문이다. 채무자로서는 자발적으로 실업을 하고, 사회보장에 의존할 유인을 확실히 가지게 된다. 사회안전망을 떠받치는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파산제도를 이해한다면, 그 정책적 요구는 분명해진다. 소비생활에 있어서 무분별하였거나, 어이 없는 투자를 해서 파탄에 이른 사람에게도 도덕적 비난 가능성 여부에 불구하고 면책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단순화를 위하여 소득은 자산에 비례한다고 가정하자. 채무는 부(마이너스)의 자산이며, 채무상환의 의무는 부(마이너스)의 소득이다. 그림에서 X축은 자산을 표현하며, 원점에서 왼쪽은 부의 자산 즉 부채를 뜻한다. Y축은 그 종속변수로서 소득(또는 이자 지급)을 뜻한다. 그렇다면 자산(부채)과 소득(이자지급)과의 관계는 우상향하는 P - I를 연결하는 직선으로 표시된다. 사회안전망은 그림에서 표시되는 최저생계비선으로 표시될 수 있다.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적 연대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변경할 수 없는 여건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것이다. 그렇다면 최저생계비선이 P-I 선 위에 있는 한에서

는 그 차액만큼을 ‘공적 자금’으로 보조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d’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c만큼에 해당하는 이자 지급을 해야 하고, ‘b’만큼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를 어디서인가 충당해야 한다. 이 사람이 채무를 이행하고 생존할 수 있기 위해서는 $b+c$ 의 금액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c 만큼은 채권자가 흡수하도록 한다면, 납세자의 부담은 그만큼 경감된다. 그 해결책은 오로지 파산제도일 수 밖에 없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 그 급여를 채무 변제에 쓴다면, 이 복지제도의 효과는 그만큼 사라져 버리게 된다. 그 사라져 버리는 복지 혜택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다시 복지 수준을 높여야 한다. 채무를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적 자금으로 채무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 이것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앵벌이’ 시키는 상황이 된다.



오늘 바로 하늘이 무너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진로를 변경하지 않으면 15년이나 30년 후에는 무너질 수 있다.- 프리드먼 지음, 김상철, 이윤섭 옮김, 세계는 평평하다, 367
 대기업은 거의 전적으로 대중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산을 한다. 전적으로 부유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사치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대기업과 같은 큰 규모의 경영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들 대기업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건의 주요 소비자는 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 미제스, 김태홍 역음, 자유경제의 철학, 우아당 1980, p.17

유한책임은 잃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을 하여금 시장에 진입하여 줄 수 있게 함으로써 경쟁제한적인 요소를 상당 부분 제거하여 준다. 이것은 기업활동을 장려한다. 무한책임은, 비록 보이지 않을 지 모르지만, 경제전체에 대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한 독점자가 지배하는 시장을 고려해 보자. 독점자가 자금력이 매우 풍부하여 신규진입에 대하여 무자비한 가격전쟁을 수행할 의도가 있다면 모든 잠재적인 경쟁자는 그러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다. 그렇게 할 경우 파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착취적인 행동은 유한책임의 원칙에 의하여 방지할 수 있다.

직관적으로 볼 때, 신규 진입자가 많은 채무를 지고 시작하는 반면에 파산을 하더라도 유한책임의 보호를 누린다면 그는 가격전쟁으로 잃을 것이 거의 없고 책임제한이 없었던 경우였더라면 무모한 전략일 수 밖에 없는 것 즉 시장진입을 가능하게 하여 준다. 즉, 신규진입자로 하여금 유한책임에 의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신규진입의 위험을 배제하는 것이고 따라서 생산물 시장에서 독점적인 가격수준을 허용하게 한다. 있는 사람만이 장사에 나선다면, 가격 경쟁은 있을 수 없다. 소비자는 더 비싼 값에 물건을 사 써야 한다.

유한책임이 인정되는 주식회사가 경제 발전에 불가피한 것이라고 본다면, 개인의 유한책임에 대하여 그렇지 못할 이유가 없다. 개인 기업의 형태를 취할 지, 법인의 형태를 취할 지에 관하여는 중립적(neutral)이어야 하기 때문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기업은 대중의 소비를 기반으로 존립한다. 자본주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대기업이 대중에게 봉사한다는 점 때문이다. 고객은 항상 옳다. 소비자는 왕이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더 팔기 위한 구호가 아니다. 대중은 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냉장고와 같은 내구 소비재를 구매함으로써 대기업을 후원한다. 미래를 희생하고 현재를 즐긴 주체님은 소비를 한 사람들도 삼성전자, 엘지전자, 현대자동차 등이 세계적인 거대기업이 되는데 기여하였을 것이다.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사람은 소비여력이 크지 않다. 파산제도는 채무를 취소함으로써 내수 기반을 확충한다. 내수부족 상태를 근심한다면 파산제도를 활성화할 일이다. 파산은 자본주의의 꽃이다.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체제 하에서는 파산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파산제도를 사회주의적이라고 말하려면 1898년 이후의 미합중국을 사회주의적이라고 불러야 옳다.

빛에 시달리는 여자가 아이를 가지겠는가? 가임 여성 한 명당 출산율이 1.16이라는 것은 단일민족으로서 대한민국의 장래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그 타격은 산부인과, 소아과 의사, 유아용품, 분유회사에 이미 미치고 있다.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 유치원도 타격을 받고 있다. 주택이 이미 남아 도는 상황에서 인구가 주는 것은 건축업자에게도, 임대업자에게도 절망이다. 노령화 사회에서는 대형 할인점도 희망이 없다. 노인들은 쇼핑카트를 밀고 다닐 힘이 없기 때문이다. 새로 아이를 낳은 여자의 파산 절차를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축하금 몇십만원 주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경제규제는 도덕에 대하여 중립적이다. 근로자는 높은 보수를 선호하지만 어려워진 기업은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다른 기업에서도 탐내는 우수한 인재는 기업이 도산하기 전에 떠나는 경향이 있다. 임금우선택권은 오라는 곳도 없고 갈 곳도 마땅치 않은 사람들이 고용보장을 외치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유지한다. 파산제도도 마찬가지이다. 가난한 자는 보호 받을 필요가 있다.

3

DIY

가 가

혼자서 자신의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은 자신의 뇌수술을 직접 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
Sullivan, Warren and Westbrook, As We Forgive Our Debtors—Bankruptcy and Consumer Credit in America(1999) p23

법원은 정형적인 양식을 제공한다. 채무자는 빈칸을 채우고 증빙을 첨부하여 비용과 함께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파산신청서의 작성에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법원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한 봉사 차원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안내하는 편이다. 따라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게는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당연히 권장된다. 어떤 사람들은 전문적인 조력을 찾는다. 서류에 친숙하지 않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된 사람은 조언을 넘어 대서도 필요하다. 또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신속과 편의를 위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다.

법원은 (1)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는 사람, (2) 70세 이상인 사람, (3) 모자가정 또는 부자가정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변호사수수료에 관하여 소송구조를 제공한다. 주민등록표와 (1), (3)에 해당한다는 증명서를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해당 법원으로 가면 된다. 법원은 미리 지정해 둔 변호사에게 순서대로 배정한다. 비교적 파산 사건 취급 경험이 많고 헌신적인 사람들이 소송구조 변호사로 지정되므로 안심해도 된다. 구조대상인 사람에게는 적극 권장한다. 다만, 인지와 송달료 필요한 경우 예납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곳도 있다. 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활성화된 온라인 커뮤니티들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사람을 위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물론 무료이다. 그런데, ‘소송구조’ ‘무료변론’을 자처하면서 활발하게 홍보하는데 막상 찾아가보면, 영업을 하는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을 알선하는 곳도 있다. 구조라고 선전하는 바와 달리 유료이고, 또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것은 대략 기술적인 어려움을 덜어주는 다음 서비스이다. (1)

파산절차에 관한 조언, (2) 채무자가 작성하는 신청서 및 진술서에 관한 조언, 경우에 따라 대신 작성 (3) 관련 문건의 최종적인 정리 (4) 신청서 제출 대행 (5) 법원으로부터 오는 송달의 수령과 연락, (6)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제출하는 이의에 대하여 반박하는 의견 제출, (7) 추심에 대처하는 방법의 조언, 지나친 추심에 대한 경고장 발송, (8) 면책결정 확정 이후 채권자에게 통보.

변호사, 법무사, 비공인 전문가에게 맡기기를 선택한 사람은 이 편을 읽기 보다는 관심 있는 사람에게 바로 가는 것이 좋다. 시간이 절약된다. 서비스의 범위와 질이 다르고, 또 고객에게 부과하는 보수도 다르다. 광고는 너무 믿지 말자.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법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일은 별로 없기에 파산신청을 직업적으로 대행하는 것은 그다지 힘들지 않다. 다만, 상당한 지속성이 필요하다. 경험은 하루 이틀에 쌓이는 것이 아니다. 파산을 이해 못하는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풍부한 실무경험과 소양을 갖춘 법무사도 있다. 사실 면허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입소문이다. 직원이 자주 바뀌는 사무실은 고객에게도 충실하지 않다.

돈 없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변호사를 ‘샀다’고 시비할까 봐 걱정할 필요 없다. 첫째, 채무자의 가족이 후원한다. 빚 갚겠다고 형제자매에게 도와 달라고 하면, 외면하고 등을 돌린다. 한강에 돌던지기 식이기 때문이다. 같이 망하게 된다. 그러나 파산 변호사에게 가겠다고 하면 그 비용은 빌려주는 경우가 많다. 둘째, 일반 사건에 비해 저렴한 수입료를 받는 사실을 채권자나 법원은 당연히 안다. 변호사 선임이 과실죄에 해당한다면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면 바보일 것이다. 셋째, 변호사는 법원에 협력하며 부실채권의 질서있는 처리에 기여한다. 따라서 채권자의 몫을 우선하여 가지고 가는데 채권자로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1978년의 미국 파산법이 파산 변호사 보수가 파산재단에서 우선 변제되도록 규정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다만, 사실상 보수를 채권자가 지급한다는 점 때문에 파산 변호사는 채무자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 또 기업에 대하여 평소 자문을 해 왔던 변호사는 파산절차에서 그 기업을 대변하지 않게 하는 것이 옳다.

해당되는 것만 순서대로 준비한다. 구비할 수 없는 서류에 관하여는 전문적 상담을 권한다. 법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법원 파산과 또는 신청과 사무실에서 무료로 나누어 준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것을 내려받아도 된다. 이 책의 뒤에 첨부된 양식을 써도 된다. 연습의 필요성이 있으면 미리 여분을 복사해 두어야겠다.

2. 파산신청서 부속서류

(1)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명

채무자의 신분과 주소를 증명하는데 기본적인 서류이다. 호적등본은 채무자가 살아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주민등록등본은 법원의 관할 구역 안에 채무자가 살고 있다는 점을 증명한다. 주민등록등본은 5년 이내의 주소 이전현황이 나오도록 발급 받는다. 채무자의 생활 근거의 변화를 추정할 수 있게 해 준다. 외국인은 주민등록표 대신에 외국인등록증명을 발급 받는다. 외국인도 주소를 우리나라에 두고 있는 한 우리 법에 의하여 파산절차로 들어갈 수 있다.

(2)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증명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다. 사업체로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절차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을 해야 청산절차가 생략되는 동시폐지를 받을 수 있다.

각기 장점과 단점이 있다. 공식적인 청산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는 파산선고와 함께 파산관재인에게 사업을 양도하고 조신하게 있으면 된다. 다만, 파산관재인의 보수 기타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개인 파산인 경우에는 50만원까지 낮추어 주기도 하지만 통상 300만원 내지 500만원은 부과한다. 또 시간도 많이 걸리는 편이다. 동시폐지를 받기 위하여 폐업을 한 경우에는 잔여재산 처분에서 기술적인 곤란함을 겪을 수 있다. 공평한 분배를 채무자 스스로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3. 진술서(현재까지의 생활상황) 부속서류

(1) 신용카드 최초발급시기

“2002년 6월” 같이 특정한다.

(2) 신용카드 사용내역

그리고 마지막 거래일부터 1년간의 신용카드사용내역을 준비한다. 예를 들어 2004년 8월 15일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그때부터 거슬러 올라가 1년이 되는 2003년 8월 16일부터의 사용내역이 되겠다. 실무상 파탄에 이르기까지의 소비습성 및 금전차용행태를 보기 위한 것이다. 법원에 따라서는 신용카드사용내역을 첨부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4. 진술서(채권자일람표) 부속서류: 부채증명

채권자가 누구인 지, 원인은 무엇인 지, 금액(원금과 이자)는 얼마인 지를 소명하는 자료이다. 부채잔액증명서, 잔고확인서, 거래사실확인서, 고객별원장조회표와 같이 형식적인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일 수도 있고 판결,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의 사본 같은 것도 훌륭한 부채증명자료이다. 신용카드 대금의 마지막 청구서도 부채증명이 되고, 독촉장 중에서 원금과 이자가 기재되어 있는 것도 부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 대출통장도 마찬가지이다.

양식에 명시적으로 첨부하라는 지시가 없고, 원래 파산법에 의하면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을 맞출 필요가 없다. 또 이자는 매일 가산되므로 정확할 수도 없다.

개인에 대한 채무인 경우 대부분 차용증서를 채무자가 소지하지 않고, 개인채권자가 부채증명서를 해 주기를 기대할 수도 없다. 채권자의 성명과 송달 받을 수 있는 주소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파산절차에서 채권자가 누구인지는 원칙적으로 중요한 요소이다. 파산절차는 채권자의 권리를 취소/말소하는 것이기에 채권자가 자기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여는 장이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5. 진술서(재산목록) 부속서류

(1) 예금통장

특이한 금융거래가 없는 지 대략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최종 금융거래일부터 거꾸로 6개월 동안의 거래가 가장된 예금통장을 사본한다. 보관하고 있는 통장이 없으면 은행 지점으로 가서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또는 안 내고) 거래원장을 출력한다.

(2) 보험계약반환금 확인서 및 보험증권

저축성 보험을 유지하는 경우에 준비한다. 자동차종합보험은 해당 없다. 전액 보장성(계약반환금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저축성인 경우 해지한다. 특히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약관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해지해서 대출금을 갚아주기를 권한다. 보험계약자의 명의 변경은 권하지 않는다.

(3)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이나 가게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계약서를 사본한다. 흔히 월세가 밀려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보증금 잔액이 계약서 상의 금액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이 경우 임대인과 중간 정산을 보고 그 확인서를 준비하는 것이 편하다. 뒤의 정산서 양식 참조.

(4) 차용증서 등

남에게 빌려 준 돈이나 매출을 하고 받지 못한 돈이 있으면 그 차용증, 장부책 사본, 판결 등 증빙을 챙겨본다. 한편 변제 받기 어려운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도 점검해 보자. 그 자료는 i)채무자의 주민등록말소사등본, ii)통반장의 불거주확인서, iv)채무자로부터 반송된 봉투 사본, v)타인 명의로 된 사실확인서, vi)채무자의 부도사실증명 또는 무자력인 사실을 알 수 있는 부도확인서(예를 들어 수표에 부도선언이 기재된 것)이다. 한편, 채무자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승소한 사실이 나오는 판결문도 좋습니다.

(5) 예상퇴직금확인서

근속기간, 파산신청 당시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파산신청시에 퇴직한다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기재한 사용자(고용주)가 작성한 확인서이다. 즉 퇴직금중간정산

액이다. 근속기간은 오래되었지만 중간정산이나 퇴직금 담보대출을 받은 일이 있어 퇴직금이 없으면 없다는 확인서를 필요로 한다. 직장 경리 담당자 또는 세무회계사무소에 알아본다. 5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에서는 준비할 필요가 없다.

(6) 부동산등기부등본, 공시지가확인서, 시가확인서, 피담보채무증명

채무자 명의로 된 것이면 누가 돈을 내서 샀든지 간에 채무자의 것이다. 재산세과세증명과 공시지가확인서는 대략 시세를 따지는 기초가 된다. 아파트,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의 부동산 사이트에 나오는 시가 자료를 출력한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인 경우 동네 복덕방에서 대략 어느 정도에 거래된다는 확인이라도 받으면 좋다. 아니면 말고. 저당채무는 설정된 은행에 가서 잔고증명을 받으면 된다. 채무자가 본인이라면 앞에서 준비한 부채증명과 겹친다. 주택을 세 놓은 경우 임대차계약서도 준비한다. 역시 주택 값에서 공제해야 하는 항목이다.

(7) 자동차등록증 및 시가증명자료

부동산에 준한다. 인터넷의 중고차 사이트에서 차종과 연식에 따른 시가가 나오도록 출력한다. 설정된 경우 저당채권의 잔액증명이 필요하다. 역시 채무자가 본인이라면 앞에서 준비한 부채증명과 겹친다.

(8) 최근 2년간 처분한 재산, 회수한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자료

파산신청서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2년 이전의 것은 필요 없다. 보험을 해약한 경우 해지계산서, 적금을 해약한 경우 계산서,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경우 영수증, 퇴직금을 받은 경우 계산서, 부동산과 자동차 처분시 등기부등본 또는 등록원부등본, 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등이다.

물론 그런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없다. 증빙을 어거지로 만들 수는 없으니 없는 채로 준비한다. 처분하고 받은 대가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준비한다.

(9) 최근 2년간 이혼하고 재산을 분여한 경우

기본적으로 앞의 재산처분의 경우와 같다. 재산분할협의서, 상대방에게 준 부동산

과 차량의 등기부등본, 시가증명자료(공시지가증명 등)를 준비한다.

(10) 상속재산이 있었던 경우

상속을 포기하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가도록 협의한 경우 그 해당 재산의 등기부등본, 처분한 경우에는 재산처분을 증빙하는 서류를 챙겨본다.

6. 진술서(현재의 생활상황) 부속서류

(1)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자영업자의 경우 최근 2년분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회사원인 경우 최근 2년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준비한다. 없는 경우 급여명세서 모아둔 것을 찾는다. 본인이 영세업자이고 고용주가 영세업자여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준비할 필요가 없다.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연금을 받거나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면 그 수급증명서를 준비한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동거인에게 수입이 있는 경우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같이 준비한다.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등이다.

(2) 주거를 증명하는 서류

①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② 주거지가 신청인 또는 친족 소유의 주택인 경우	등기부등본
③ 주거지가 친족 외의 소유이고, 소유자의 호의로 무상거주하는 경우	등기부등본 및 소유자의 거주확인서
④ 임차인의 호의로 무상거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인의 거주확인서

7. 그밖의 자료

현재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소명할 만한 자료는 참고로 내는 것이 좋다. 질병으로 치료비를 과다하게 지출한 경우, 계속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치료비 영수증, 진료확인서 등)를 준비한다. 장애인인 경우, 모자가정인 경우 그 증명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보증금중간정산서

1. 임차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무상거주지 주소	연락처

2. 정산 현황

보증금	월세	연체월수	연체금액	잔액

위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임대인

(인)

임차인

(인)



무상거주사실확인서

1. 무상거주자(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무상거주지 주소	연락처

2. 거주기간 및 소유자 또는 임차인

거주기간	년 월 일부터 현재까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신청인의 전화번호:

위와 같이 무상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건물소유자 또는 임차인

(인)

파산법이 예정하는 파산절차는 (1) 파산선고로 채무자의 파산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하고 (2) 파산재단으로 파산채권에 충당하여 과거를 청산하고 (3) 채무자를 면책하는 세가지 단계로 진행된다.

파산선고	신청 → 채권자 통지 → (심리: 생략 가능) → 파산선고
청산	파산관재인 취임 → 채권확정 및 환가와 배당 → 파산폐지
면책	(신청) → 심리 → (채권자이의/심리) → 면책결정

법원의 채권자에 대한 통지는 형식적인 송달이 원칙이지만 파산의 경우에는 공고로 대신할 수도 있다. 다만, 최소한 한번의 송달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실무이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파산을 선고한다. 재산을 모아 파산재단을 구성하더라도 파산절차 즉 청산의 비용에 충당하기 어렵다고 볼 때에는 파산과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을 한다. 신청서와 부속서류에 별 이상이 없고, 비교적 합당한 조력을 받아서 제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법원으로 소환하여 심문해 보지도 않고 파산선고를 내리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바로 다음 단계인 면책 심리로 넘어간다. 파산신청은 면책신청의 취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별도의 면책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실무상으로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라고 하나의 서면으로 낸다.

희귀하지만, 법원이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예가 있다. 이러한 경우 항고를 하여 시정하기도 하지만, 조금 후에 또는 관할을 옮겨 다시 파산신청을 해도 된다. 어차피 기관력의 표준시에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다. 마치 이혼소송을 냈다가 기각 당하면 조금 있다가 다시 내도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Things change!

청산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의 주도 하에 한다. 채권자집회의 소집, 파산채권의 조사, 확정,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배당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개인파산절차에서는 주로 약간의 자투리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이 남은 경우이거나 사업이 완전히 폐지되지 않은 경우 동시폐지가 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청산을 담당한다

다. 흔히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임명되는데 대부분은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간혹 파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한 사람이 채무자에게 물건 매수자를 물색하여 데려오라면서 자신의 직무를 집행하지 않고 사건을 미룬다는 예가 종종 들리나 이런 경우 사유를 소명하여 파산관재인의 개임을 법원에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법원이 동시폐지를 받아들이면 개인파산절차는 파산신청→파산심리→파산선고→면책심리→면책선고의 5단계로 단순화된다. 파산심리는 생략되는 경향이 있었고, 면책심리도 새 파산법에서는 서면심리로 대신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30일 이상의 채권자이의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동안에 어느 채권자이든 채무자의 면책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기일을 잡아 법원에서 그 이의 사유가 정당한 것인 지를 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무상 활용하는 예가 많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신청 사실을 통지 받은 이후에는 즉시 자신 앞에 닥친 손실의 위험을 알게 되므로 기간을 늘려가면서 채권자이의기간을 두는 것이 무의미할 수 있다. 특히 동시폐지 사건에서는 파산절차로 더 이상 밝혀질 것이 없다. 따라서 법원도 신속적으로 운영한다. 명백한 경우에는 채권자이의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바로 면책 허가 결정을 내린다.

파산 면책 동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시절 파산 선고가 확정되고 면책신청기간을 넘긴 경우가 흔히 있었다. 이 경우 다시 면책을 신청할 수 없다는 설이 있었다. 그러나, 법은 과거에(이전에는 10년, 신법에서는 7년 또는 5년)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우 다시 면책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원래 파산선고시 이후로 사정변경이 생긴 것이라고 보면 다시 파산신청을 받아들이지 못할 바 아니다. 실제로 많은 재판부는 그렇게 실무를 운용하여 왔다.

면책결정은 공고한다. 채권자에게 송달하지 않는다. 면책 불허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송달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면책 허가 결정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공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따라서 면책결정은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나면 확정되어 효력이 생긴다. 항고 법원에서 면책불허결정을 허가결정으로 바꾼 예는 꽤 많이 있고, 재항고 법원인 대법원도 종종 원심을 파기한다.

파산 사건은 채무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한다. 지원은 파산 사건을 취급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예외는 서울이다. 서울에는 본원이 서초동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외에도 동부지방법원, 서부지방법원, 남부지방법원, 북부지방법원이 5개 있다. 입법자는 서울특별시 전 지역의 파산 관련 사건을 오로지 서울중앙지방법원만이 관할하도록 정하였다.

주소지에 따른 각 법원의 명칭과 주소, 관할구역은 다음 장의 표와 같다. 전화는 자제하자. 파산 담당하는 직원들은 무척 바쁘다. 각급 법원마다의 특이성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체크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과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사건을 처리해 왔고, 전담 법관과 직원이 배치되어 신속히 진행되어 왔다. 재판의 진행방법과 결과도 비교적 채무자들에게 대하여 호의적이었다. 일부 다른 지방의 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여건이 되지 못하여 처리가 늦어지고 과감한 면책을 부여 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리하여 지방의 채무자가 서울에 살지 않으면서 마치 사는 것처럼 주민등록을 옮기고 그 등본을 첨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예도 많았다. 어떤 이는 아예 상경해 버렸다.

지금은 공식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 다만, 다량의 사건을 취급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직업적인 경험으로부터 지역에 따라 또는 담당 재판부에 따라 약간 편차를 보인다는 느낌을 가질 뿐이다. 이것은 어느 재판에서나 있을 수 있는 운이고 기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파산제도도 어찌 보면 일종의 산업이다. 누구든지 주민세를 낸다. 또 중앙정부의 교부금은 주민인구에 비례하여 집행된다. 또 파산절차의 운영을 위하여 법관과 직원의 고용이 필요하다. 변호사 사무실이 파산을 취급하면 역시 산업생산을 증가시킨다. 파산절차를 엄격하게 운영하여 채무자를 다른 지역으로 쫓아내면 그 지역의 번영에 나쁜 영향을 준다. 개인의 신념에 따라 파산에 적대적인 운영을 하게 되면 법

원에, 지역 경제에 해를 끼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2006년 4월부터 아래와 같은 경우에 채무자 본인의 주소지 이외의 곳에 파산 신청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증폭되었다. 따라서 각 지방법원은 변호사 단체로부터 “왜 다른 지역의 변호사만 먹고 살게 하느냐”는 압력을 받을 수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우리 지역의 주민이 빠져나가지 않게 해 주세요”라는 청원을 받을 수 있다.

- (1) 법인이 파산, 회생 신청을 하였을 때 그 법인 대표자는 법인의 신청 사건이 제기된 파산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 수원시에서 살며 출퇴근하였다면, 서울의 회사가 도산하면 회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 (2) 영업을 하는 채무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강원도 동해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채무자는 관할 고등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 (3) 여러 사람이 같은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또는 부부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들은 관할법원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주소를 둔 주채무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 보증인의 주소지가 제주도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공동 보증인 중의 한명이 파산신청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관할 법원이 아닌 곳에 한 파산신청은 전속관할의 위반이기 때문에 원래의 관할 법원으로 이송된다. 그리하여 신속히 좋은 재판을 받고 싶어 실행한 위장전입이 절차만 지연 시킨 꼴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제는 전국 지방법원별 편차가 거의 없으니 안심하고 법에 나온 대로 추진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하다.

관할은 파산신청시를 당시로 고정된다. 따라서 파산신청을 한 후 다른 지방법원 관할구역으로 이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계속 심판하는 것

이 원칙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 제주지방법원에 신청을 한 채무자가 서울로 이사를 한 경우라면, 심리 때마다 원래의 법원으로 가는 것이 힘들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새 파산법은 편의에 의한 이송을 인정한다. 실제로는 취하하고 새로운 관할 법원에 다시 신청하는 것이 편할 것이다.

전국법원관할구역표

법원	우편번호	주소	관할구역
서울중앙지방법원	137-737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	서울특별시 전체
의정부지방법원	480-707	의정부시 가능동 364	한강 이북의 경기도 및 강원도 철원군
인천지방법원	402-753	인천 남구 학익동 278-2	인천광역시 및 부천시, 김포시
수원지방법원	442-704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	한강 이남의 경기도(부천, 김포 제외)
춘천지방법원	200-715	춘천시 효자2동 356	강원도(철원군 제외)
청주지방법원	361-705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93-1	충청북도
대전지방법원	302-720	대전 서구 둔산동 1390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대구지방법원	706-714	대구 수성구 범어동 176-1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주지방법원	561-758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416-1	전라북도
울산지방법원	680-704	울산 남구 옥동 635-3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양산시
부산지방법원	611-742	부산 연제구 거제동 1500	부산광역시
광주지방법원	501-703	광주 동구 지산2동 342-1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창원지방법원	641-705	창원시 사파동 1	경상남도(양산 제외)
제주지방법원	690-751	제주시 이도2동 950-1	제주도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지도를 넣고 관할구역을 표시해 넣으면 어떨까요==



Q 자동차 회사 엔지니어로 5년간 근무하였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자친구가 3년 전에 저의 집안이 가난하다며 변심하여 다른 남자와 결혼하였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은 이후 마음이 울적하여 주체 넘은 소비도 하였고 또 경남지역 태풍 피해 때문에 부모님이 그나마 망해서 생활비도 드리다 보니 연봉을 4천만원 이상 받았는데도 모은 것 없이 3년 만에 큰 금융기관에만 진 빚이 2억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미국의 자회사에 오랜 기간 근무할 사람을 모집하는데 가고 싶지만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언젠가 돌아오면 그때 빚이 남아 있을텐데 희망이 없습니다. 미국행을 포기해야 할까요? - 박찬준(30세)

A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현대 문명국가는 그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 사는 사람을 국적에 관계 없이 보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파산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즉 대한민국의 각 지방법원의 관할 하에 사는 사람은 국적에 관계 없이 우리나라 파산법원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파산법의 어디를 읽어 보더라도 외국인을 차별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더욱이, 미국의 파산법은 세계에서 채무자에게 가장 관대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것은 조상이 영국에서 건너 온 가난한 채무자였기에 그렇다는 말도 하는데, 2005년의 상당히 심한 반동적인 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느 법제에 비교하여도 여전히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이 파산법은 당연히 미국 시민에게 적용되겠지만, 외국인도 미국 영토 내에 거주하거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 법원의 파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파산법 제109조(a).

예를 들어 국경 너머 캐나다에 살며 미국으로 출퇴근하는 노동자가 미국 내에서 은행 잔고가 300달러 남아 있음을 주장하며 미국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아주 흔히 가능한 선택입니다. 심지어 2004년에는 미국 내에서 전혀 조업을 하거나 심지어는 대리점도 개설한 적이 없는 외국의 석유회사가 미국 텍사스 휴스틴의 연방 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일도 있습니다. 채무담당 임원이 미국으로 돈을 가지고 들어

가 텍사스의 은행에 수백만달러를 예치하고는 미국 내에 재산이 있음을 근거로 관할을 주장하였는데, 약간은 남용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박찬준 님이 미국에 소재한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 당연히 미국에 거주하게 될 것이니 당연히 미국의 파산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인 문제는 채권자가 모두 국내에 있는 지라 송달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채권자가 우리나라의 은행이라면 전혀 문제 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국의 금융기관과 필사적인 경쟁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우리나라의 은행을 비롯한 중대형 금융기관은 거의 예외 없이 미국 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법원의 파산절차가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외국의 파산 법원이 진행한 절차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것이라고 국내의 채권 금융기관이 무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국제금융의 현실을 모르는데서 나오는 기우입니다. 미국 파산법은 파산신청이 되면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는 추심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면책결정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도 부과합니다. 미국 법원의 관할 구역에서 지사를 두고 영업을 하는 우리의 금융기관의 직원이 본사에 고의로 손해를 끼칠 의도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면, 미국 법원의 파산에 관한 결정을 존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남들은 일부러 채무해결을 하러 미국에 가기도 하는 마당에 채무 때문에 미국에 가는 것을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채무자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원래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사람 중에는 빚을 못 갚고 도망 온 채무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또 극심한 경제공황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미국 자체에서 파산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채무자공화국’이라고 부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미국은 채무자에게 가장 관대한 면책제도를 갖고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강한 경제를 갖고 있습니다. - 오수근, 박용석, 김형두, 서경환, 알기쉬운 개인회생절차 p. 16

신청서와 진술서 양식은 파란 색 잉크로 정서하여 보충하기를 권한다. 왜냐 하면, 내용의 기재가 일정한 자리에 위치하게 되니, 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알아 보기 쉽다. 물론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니 너무 알아보기 힘든 악필이라면, 컴퓨터로 쳐도 된다. 공란이 부족하면 그 자리에 ‘별지와 같음’이라고 표시를 하고, 별지에 기재한 다음 양식의 맨 뒤에 별지를 붙인다.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의 첫 장인 ‘파산 및 면책신청서’의 작성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말은 아직 들어본 바 없다. 법원의 실무에서 ‘주소’라고 할 때에는 주민등록상의 그것과 관계 없이 지금 실제로 살고 있는 곳을 뜻하지만, 실무적으로 주민등록표에 나온 곳을 표시한다. 혹시 주소지 이외의 곳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경우라면, 주소란 밑에 ‘송달장소’를 따로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

본적은 호적등본에 나오는 대로 적는다. 결혼(혼인신고)한 여자는 당연히 남편의 본적지가 된다.

은행이나 구청 같은 곳에서는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통용되는 것과는 달리 신청인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는다는 점을 주의하자.

파산재판의 대가로 국가가 챙기는 수수료는 파산 1,000원, 면책 1,000원 합계 2,000원에 불과하다. 다만 채무자, 채권자 및 관계기관에 우편에 의한 송달을 하기 위하여 우체국에 지급하는 송달료는 예납해야 한다. 과거 공고를 관보와 일간신문에 게재하도록 하여 공고료도 예납을 해야 했는데, 새 파산법에서는 인터넷 방식을 채택하였다. 채무자가 신청한 파산의 경우 절차비용을 국고에서 가지급한다는 규정도 폐지되었고, 오히려 비용예납을 하지 않으면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게 되었다. 어차피 실무상 지켜지지 않던 규정이었고, 또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현저하게 비용을 절감해 주려고 법원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보통은 예납 요구가 불합리하지 않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신 청 인(채무자)

인지
2000원

성 명: 김 채 무 (주민등록번호 820124 - 2345129)

주 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1-24 (우편번호: 137-874)

본 적: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468

연락처: 휴대전화 (010-9309-0023), 집전화 (02-3474-1826), e-mail (debtor@canceldebt.co.kr)

신 청 취 지

1. 신청인을 파산자로 한다.
2. 이 사건 파산절차를 폐지한다.
3. 파산자를 면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에게는 별첨한 진술서 기재와 같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합니다.
2. 그런데 위 진술서 기재와 같은 신청인의 현재 자산, 수입의 상황 하에서는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파산재단을 구성할 만한 재산이 거의 없어 파산절차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합니다.)
3. 따라서 신청인을 파산자로 (하고, 이 사건을 파산절차를 폐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첨 부 서 류

1. 호적등본 1부
2.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1부
3. 진술서(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 포함) 1부

2006. 4. 1.

신청인 김 채 무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예납할 송달료의 기준은, 파산, 면책 각기 기본적으로 10회분과 파산절차에 대하여 채권자 1인당 2회, 면책절차에 대하여 채권자 1인당 3회이다. 2006년 1월 현재 1회분 송달료는 2,960원이다. 즉 채권자 수가 10인이라면, 파산송달료는 29,600원 + 10*2,960원*2=88,800원이고, 면책송달료는 29,600원+ 10*2,960원*3=118,400원이다. 사건 진행 중 모자라면 추가 납부 요청이 법원에서 오며, 종결된 후 남은 송달료가 있으면 환급된다.

진술서 작성의 일반적인 원칙은 진실이다. 가슴 아픈 이야기,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새로 떠 올리는 것은 채무자로서는 고통이다. 또 연체가 오래된 경우에는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 자신이 기억 나는 대로 잘 적어 준다. 물론 기억은 주관적이기에 객관적 사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어차피 과거를 완벽하게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진술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신청인 김 채 무 (인)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또 본인의 현재의 채무, 자산, 생활의 상황 및 가계의 수입·지출은, 별지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 각 기재와 같습니다.

1. 본인의 성명, 주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 명 : 김 채 무

생년월일 : 1972년 3월 8일생

본 적 :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468

주민등록상의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71-24

거 소(위 주소와 다른 장소에 거주하고 있는 때에만 기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1-25 삼아연립 102호, 송달영수인 채은주

연락처

휴대전화 (011-9052-0093), 집전화 (02-3474-1826), email (sharkguard@canceldebt.co.kr)

본적과 주민등록상의 주소는 각기 호적등본과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것을 옮기면 된다. 거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다른 장소에 거주하고 있는 때에 어디라고 기재하는데, 채권 추심을 피해 다른 곳에 주민등록을 옮겨 놓은 사람들은 송달과 연락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적어야 할 것이다. 다만 다른 관할 구역에 살고 있으면서 편의상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는 경력이 서식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부족할 정도로 많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중요한 것이 아니면, 최근의 것을 중심으로 중요한 것 몇 개만 써도 무방하다. 채무 증대나 지급 불능과 상관이 있는 경력이 5개 이상이라면, 물론 ‘별지와 같음’이라고 쓰고 별지 한장 더 붙여야 할 것이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학력과 경력을 굳이 서류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 믿어 준다.

4. 본인의 현재까지의 생활상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책에 영향을 주는 사유가 있는 지 보기 위함이다. 대부분 ‘없음’이 정답이다. 있는 지 없는 지는 채무자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이고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지만, 허위진술임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솔직히 ‘있음’이라고 말하고 법원의 재량면책을 바라는 것보다 불리할 수 있다. 위험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너무 지나친 완벽주의도, 너무 위험선호적인 자세도 권하지 않습니다.

(1) 슬롯머신, 경마, 경륜, 포커 등 도박행위를 한 경험 (있음, 없음)

- ▷ 어떤 도박을 하였는지 ()
- ▷ 도박을 한 시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도박을 한 횟수 1개월 평균 ()회 정도
- ▷ 도박에 사용한 금액 1개월 평균 ()원 정도

이것은 ‘상습적’인 경우에 한해서 ‘있음’이라고 적는다. 즉, 재산의 감소가 현저할 정도인 경우이다. 명절날이나 초상집에서 고스톱 치는 것 정도는 형식상 도박이지만 보통은 문제되지 않는다. 사정에 따라서 법원은 재량으로 전부 또는 일부면책을 해주기도 한다. 즉시 면책을 기대하지 않고, 10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복권을 받으려고 그냥 과감하게 파산을 신청하기도 한다. 물론 추상적인 것이니 대충 언제부터 언제까지(솔직히 상습적인 도박을 한 사람이라면 정확히 기억할 수도 없다) 한달에 몇회, 한번에 얼마 이 정도로 쓰면 된다.

(2) 과거 자신의 월수입의 반 이상이 소요되는 호텔, 콘도, 골프장, 고급 음식점에 다닌 경험 (있음, 없음)

사실, 산업시찰과 같은 명목으로 위장된 관광은 정부 부문에서나, 민간 부문에서나 많이 실행된다. 어찌되었든 채무자의 책임에 의한 소비가 아닌 이상 시비할 이유가 없다. 보따리 장사 하느라 일본, 중국에 수없이 왕래하였다는 것도 여기의 여행 범주에서 빼도 되겠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직업적인 출장인 것이다.

(4) 과거 5년간 100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한 경험 (있음, 없음)

(물건의 품명, 구입시기, 가격 등을 전부 기재하여 주십시오)

과거 5년간 100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한 경험은 대부분의 사람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간략히 적어준다. 물론 시기나 금액이 잘 생각 안날 수 있다. 그러나 100만원 이상의 물건이라면 대충은 생각이 날 것이다. 적당히 적는다. 신용카드 사용명세서 같은 것에는 정확한 금액과 시기가 나올 것이다. 어떤 사람은 5년 간의 신용카드 사용명세서를 신용카드 회사에서 발급 받아 이것을 정확하게 적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아마도 서식에는 이것을 전부 적을 칸이 부족할 것이다. 따라서 빈 칸에는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백지에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별지를 만들어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별지 1: 100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한 경험

품명	구입시기	가격
캠코더	99년 경	130만원 정도
피아노	2002년 3월 경	150만원
컴퓨터	2003년 1월 경	130만원

(5) 과거 물건을 할부나 월부로 구입하고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매각, 입질 등)을 한 경험 (있음, 없음)

(물건의 품명, 구입시기, 가격, 처분 시기 및 방법을 전부 기재하여 주십시오)

물건을 할부나 월부로 구입하고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하는 것의 전형은 자동차를 월부구입하는 것이다. 그밖에 고가의 제품이 이에 해당할 것이

다. 여기에서 물건을 ‘할부나 월부로’ 구입한 것을 적음에 주의하자. 따라서 작은 금액의 제품을 일시불로 구입하여 이것을 처분한 것은 굳이 적을 필요 없다. ‘있음’에 표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별지에 표를 그려야 할 것이다.

별지 2: 물건을 할부나 월부로 구입하고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한 경험

품명	구입시기	가격	처분시기	방법
자동차	2003년 4월	1,500만원	2003년 6월	주심원의 주선으로 중고로 처분하여 1000만원 회수, 채무 변제
노트북컴퓨터	2003년 5월	250만원	2003년 5월	구입 즉시 200만원에 매도하여, 신용카드 대금 변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즉시 이것을 다른 곳에 매각하는 것을 흔히 ‘카드깡’이라고 한다. 금, 백화점 상품권, 노트북 컴퓨터 같은 고가품을 산 것으로 하고(보통 채무자는 현품을 보지도 못한다. 굳이 현품이 거래되는 불편함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 업자가 고율의 수수료를 떼고 현금을 주는 것이다. 물론 하는 사람이나 깡을 하여 주는 업자나 불법을 하는 것이다. 흔히 채권자 측에서 채무자가 카드깡을 한 것을 들어 형사처벌된다고 겁을 주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깡을 직업적으로 한 업자가 아닌 채무자는 오히려 피해자에 가까운 이상 사실상 처벌되는 예가 없다.

카드깡은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니, 면책장애사유로 거론되고, 지나친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면책을 부인하는 예가 많았다. 그러나, 카드깡을 채무자 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지라 최근의 실무에서는 카드깡을 했다는 것을 아예 무시하고(합계 1,000만원-2,000만원에 해당하는 경우) 그냥 전부 면책결정을 하거나, 면책부인사유는 인정하나 법원의 ‘재량으로’ 부분 면책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채권자인 신용카드 회사에도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으며, 채무자를 비난하는 것은 ‘피해자를 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신용카드 회사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감시할 수 있다. 전산기술의 발달로 실시간으로 신용카드 거래 내역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정상적인 매출을 하는 가맹점은 예를 들어 주로 이미 고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신용카드 회원에 대하여 고가의 물건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을 보면 명백히 가려 낼 수 있다. 자신의 것을 지

키지 않고 방임하는 상태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라고 표현된다. 카드깡을 방치한 신용카드 회사는 도덕적 해이를 들어 채무자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

둘째, 이와 같은 카드깡은 채무자가 어떻게 해서든 채무를 갚으려는 절망적인 노력에서 행해진다는 점이다.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갚기 위하여 다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돌려막기’를 하다가 더 이상 결제자금을 구할 수 없을 때, 당장 대금을 마련해 오라는 닥달에 채무자는 생활정보지에 나오는 ‘싼 %’ 또는 ‘카드대납’이라는 광고에 쉽게 유혹을 당할 수 밖에 없다. ‘파산’이라는 탁월한 선택에 대하여 정보의 흐름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저 결제 못하면 큰 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상황에서 조건을 불리하지만 당장 추심 전화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는 방편이라면 일단 저지르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는 업자가 채무자에게 카드깡이라도 해서 ‘돈을 가져오라’고 요구하며, 실제로 채무자를 카드깡업자에게 데리고 가기도 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카드깡업자가 채권자의 친척이기도 하고 동일한 사람이기도 하다. 더 심한 경우가 있다. 채무자에게 카드깡을 시켜 몇 번 착취해 먹은 업자가, 최종적으로 “이제는 파산을 할 때”라며 자신이 직접 파산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예도 있다는 말이 들려 오기도 하였다.

실무상 신용카드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때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년간의 카드사용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수면에 떠 있다가 가라앉기 직전의 채무자의 행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망하기 바로 직전에 어떠한 금융행동을 취한 것인 지는 이 카드사용내역서에 잘 나타난다. 특히 카드깡은 ‘척 보면 안다.’ 자금이 어려운 사람이 비싼 노트북컴퓨터나 상품권, 금을 산 것이 이것 외에 있을 수 없다.

(6) 채무의 지급이 곤란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이후에 재산을 처분한 경험

(있음, 없음)

(처분한 재산, 처분시기, 받은 대가, 그 사용처를 전부 기재하여 주십시오)

교과서적으로 볼 때, 파산, 면책은 자신의 재산을 채권자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던지는 ‘정직한 채무자’가 누리는 권리이다. 채무의 지급이 곤란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이후에 재산을 처분한 경험은, 채무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가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쓰거나 감추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흔히 말하는 ‘돌려 놓는’ 행위이다. 집과 가게의 명의를 친정 어머니 이름으로, 형제의 이름으로 바꾸는 행위이다.

물론 진실한 처분행위이고, 그 대가가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쓰인 것이라면, 이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 하면, 채권자가 또는 파산법원이 해 주었어야 하는 행위를 대신 한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 파산 절차의 신속을 위하여는 재산을 처분해서 일단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나누어주는 평등한 취급을 해 주는 것이 장려되기도 한다. 살던 집을 처분해서 채무를 갚은 경우가 전형적인 것이다. 생활비로 쓰는 것도 합리적인 것인 한 절대 지장이 될 수 없다. 왜냐 하면, 파산법은 채무자의 ‘생존’을 위한 것이고, 도덕적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싫어하는 것은 앞에서 보았듯이 ‘돌려놓는’ 행위이다.

등기부등본에 공시되는 토지, 건물은 채권자들로서도 연체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있는 지 여부를 검색하면서 관심 있게 본다. 따라서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감추는 것보다 그 경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낫다.

별지 3: 재산처분에 대하여

처분한 재산	처분시기	받은대가	사용처
신림동 93-2 간영아파트	2003. 2.	3,000만원(근저당제외)	전세금
개봉동 000-2 다세대주택 전세보증금	2004. 4.	3,000만원 회수	1,000만원 월세보증금 1,900만원 채무 변제
강릉시 교동 000 임야	2005. 12.	2,000만원	채무 변제 및 생활비

(7) 채무의 지급이 곤란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이후에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경험 (있음, 없음) (변제한 채권자의 성명, 변제시기, 금액을 전부 기재하여 주십시오)

편파변제는 다른 형태의 재산 숨기기이다. 첫째는, 친족, 친구에 대한 채무를 우선하여 변제하여 주는 행위이다. 둘째는, 친족, 친구가 보증을 한 채무를 우선 갚아 주는 행위이다. 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사실상 채권자이다.

어떤 사람들은 은행과 카드회사 등에 대한 채무를 면제 받고, 친족, 친구에 대하여는 채무를 계속 갚아야 한다는 알량한 도덕심을 이야기한다. 이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진 채무자는 재기할 가능성이 없다. 왜냐 하면, 신용카드 회사에 종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친족, 친구에게 종속되는 상태로 변할 뿐이지, 채무자는 해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노예가 주인을 바꾸어도 노예는 노예일 뿐이라고 비유할 수 있다.

반면에, 채무자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채권자에게는 변제한 것이 있어도 별 상관 없다. 그야 말로 우연히 이루어진 변제는 적어도 된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는 그냥 ‘없음’이라고 표시하고, 안 적어도 그만이다. 왜냐 하면, ‘편파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액의 전화요금 채무와 같은 것은 갚아도 절대 편파적인 것이 아니다.

별지 4: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경험

채권자의 성명	변제시기	금액	참고
근대카드	2004년 1월	230,000	금액이 작은 것부터 정리를 하면서 갚으려고 시도하였음
오성카드	2004년 1월	34,000	작은 금액에 추심 전화가 너무나 와서 갚았음.
PK텔레콤	2006년3월	200,000	전화요금

(8) 사기죄,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로 고소되거나 기소된 경험 (있음, 없음)

유전무죄, 무전유죄 - 시중에 떠도는 말

전통적으로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돈을 빌릴 때 채무자는 자신의 상환자력이 있다고 서약하는 것이고, 채권자는 이 서약을 믿고 처분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단정해 왔다. 신용카드 발급이나 고리대금업자의 대출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은 실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을 받아주면 채권자는 국가 사법 시스템에 과부하를 걸게 된다. 채무자의 변제자력에 대하여 채권자는 심사를 해야 되고, 그 심사가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은 채권자가 지게 하는 것이 맞다.

개인간의 사채 거래에 관하여는 아직도 기존의 실무를 쉽게 못 버리는 것 같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거나, 망해 보아야 인심을 안다는 말도 마찬가지로이다. 친구, 올케, 시누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형사 고소를 하고, 파산 법정에 까지 출석

하여 판사 앞에서 고래 고래 악을 쓰는 경우가 많다. 몇 년동안 거래해 오면서 많은 이익을 얻은 단골거래처가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때도 많다.

물론 이와 같은 형사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면책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재량면책’을 허용한다. 따라서 친구나 친척의 고소로 인하여 사기죄의 처벌을 받은 일이 있다면, 감추지 않는다. 대신에 그 판결문을 재판을 받은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가서 ‘판결문등본교부신청’을 해서 교부 받아 파산신청 서류에 참고자료로 넣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나오고, 이것은 재량면책까지 부인할 사유가 되는 지 아닌 지에 관하여는 법원이 판단한다.

19세기의 영국이나 미국 서부 또는 우리 나라의 조선시대나 일정시대의 ‘감옥’을 묘사한 영화를 보면 구금 생활 또는 수형생활이 끔찍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한 인상을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구치소나 교도소 특히 강력범을 가두는 곳이 아닌 경제생활상의 실패로 구금된 곳의 생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인식상의 실수이다.

양식에서 적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기죄,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일 뿐이다. 횡령죄, 업무상횡령죄로 형사처벌 받은 것은 적어 넣을 필요가 없다. 어차피 면책도 되지 않는 채무이다.



Q 여행사를 경영하였습니다. IMF 사태, 9.11테러로 인한 불황을 버텼고 공무원인 친구에게서 3억원을 월 2부이자로 빌려 다른 사채를 갚고, 운영자금으로 썼습니다. 사스 창궐 이후 경영이 더 어려워졌고, 2년동안 월 6백만원의 사채 이자도 감당이 안 되어 집을 팔아 원금을 2억 갚았지만, 나머지 1억은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사기죄로 고소하여 6개월을 복역하고 나와 보니 살던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가족은 흩어졌습니다. 재기를 위하여 파산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저와 같이 사기죄로 처벌 받았던 사람은 면책 받을 수 없다고 하니 답답할 뿐입니다.- 김한수(48세)

A 사기죄로 처벌 받은 사실은 경우에 따라 면책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래 파산법이 면책을 인정하는 근거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자력과 변제의도를 심사할 기회가 있었던 것을 전제로 채무불이행의 위험을 채권자가 지라는 것입니다. 그 위험을 지는 대가는 높은 이자를 받는 것으로 보상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무를 부담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판단에 장애를 줄 허위표시가 있으면 채권자는 이런 위험을 제대로 평가 못하고 의사결정을 하니 채권자의 면책은 가혹하니 이런 행위를 한 채무자는 제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규칙에는 예외가 있다는 격언은 파산법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면책을 하지 말라는 법조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파산법은 면책을 불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면책을 하여서는 안된다”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파산법원이 면책 장애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여하는 면책을 “재량면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빚을 못 갚으면 그 사실 자체 만으로 사후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채무를 졌다는 진술을 받아 이것을 근거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왔던 일반법원의 경직된 실무에 대하여 숨쉴 틈을 제공합니다. 특히 최근의 실무는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빼돌린 비행을 저지른 경우가 아니면 되도록 재량면책이라도 부여하려는 경향입니다.

원금의 2/3은 이미 회수되었고, 2년 동안 2부 이자를 지급한 상황이라면 나머지 원금 이상의 금액이 이자의 형태로 건너간 꼴이라 파산법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인

김한수 씨를 동정할 만한 여지가 충분합니다. '사기'죄가 있다고 면책 안된다고 확정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잘못된 의견입니다. 물론 파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파산 관사님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형사판결서, 관련된 조서, 채무 변제기록 같은 것들을 정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면 죄를 지은 사람을 수감해 놓은 곳이므로 무척 살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그렇지 않더군요. 구치소에서는 적어도 먹고 잠자는 생활의 기본 문제가 해결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가장 근로조건이 우수하다고 평이 난 원풍모방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저희 기숙사 식당 부식보다 구치소가 더 낫더군요.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은 죄인보다 못하다는 것을, 수감된 사람들이 먹는 음식보다 더 못한 음식을 먹으며 방세 걱정, 연탄 걱정으로 찌들리며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지금 마음이 편합니다. 고생스런 바깥 생활, 창살만 없지 감옥 같이 살아온 우리들의 바깥 생활보다 육체적으로 편합니다.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평화시장에서 궁정동까지 3권 162

(9) 과거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험 (있음, 없음)

년 월 일경 () 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음

그 파산선고에 이어서 면책을 받은 경험 (있음, 없음)

년 월 일경 () 지방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음

(10) 과거에 개인채무자회생절차를 이용한 경험 (있음, 없음)

2005년 6 월 15 일경 (서울중앙) 지방법원에서 개인채무자회생 인가결정을 받음

그 개인채무자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험 (있음, 없음)

년 월 일경 () 지방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음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7년간, 개인채무자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5년간 면책을 부여하지 않을 사유가 된다. 계속 면책을 허용하게 되면 상습적인 면책자라는 사회계급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면책을 받은 경험 유무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개인채무자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을 인가 받았지만 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변제계획의 변경이나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실무상의 편의를 위하여 채무자는 파산 신청을 하기도 한다.

(11) 과거에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배드뱅크 등을 이용한 경험 (있음, 없음)

2004년 10 월 일경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여 채무재조정을 받음

많은 사람이 이쪽을 거쳐서 온다. 단순한 참고자료일 뿐이다. 신용회복위원회나 배드뱅크 같은 곳을 거쳐서 와야 한다는 제한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12) 이번 항목은 개인 영업을 경영한 경험이 있는 분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 영업 중 상업장부의 기재

정확히 기장하였다. 부정확하게 기장하였다. 기장하지 아니하였다.

▷ 영업 중에 도산을 면하기 위하여 상품을 부당하게 염가로 매각한 사실 (있음, 없음)

(언제 무엇을 매입원가의 몇 %로 할인판매를 하였는지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영업 중 상업 장부의 기재에 관하여는, “정확히 기재하였다”에 표시한다. 사실, 영세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하더라도 대충의 수입과 지출 같은 것을 틈틈이 수첩 같은 곳에 적어두는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상업장부의 요구수준은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다르다. 큰 기업은 정확한 복식부기 원칙에 의한 회계가 필요하고,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을 것이 기재되는 반면에 호프 집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메모를 적어 놓은 것만으로 충분한 장부가 될 것이다.

법은 불가능을 요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봉어빵 노점상은 대충 사업의 수익성과 자신의 수입이 얼마라고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메모를 한다면, 상업장부에 ‘정확히 기재하였다’에 해당할 것이다. 즉, 채권자를 속이기 위한 분식회계를 하였다고 단정할 정도가 아닌 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영업 중에 도산을 면하기 위하여 상품을 부당하게 염가로 매각한 것은 앞에서 본 카드깡과 같은 구조로 생각하면 된다. 형식적으로 면책장애사유가 형식적으로 될 수 있지만, 보기에 따라서 무시하거나, 재량 면책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파산법은 변제하기 어려워진 상황에 채무자가 현명히 처신하여 파산법으로 오기를 기대한다. 무리하게 채무를 이행하려고 불리한 조건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행위에 대하여는 면책을 거부한다. 그런데, 파산법이라는 것이 채무자 사이에 널리 알려지고, 문화적으로 정착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파산법에 의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면책을 부인한다면, 지나친 형식주의이다.

(13) 과거 5년간 발급 받아 사용한 신용카드의 종류 및 수

(카드사용액에는 물품구입 뿐만 아니라 카드신용대출금도 포함됩니다)

카드회사명(내환카드)	발급시기(1999년 2 월 일)	카드사용액()	원)
카드회사명(외국인카드)	발급시기(1999년 4 월 일)	카드사용액()	원)
카드회사명(육성카드)	발급시기(2000년 10월 일)	카드사용액()	원)

카드회사명(알지카드) 발급시기(2003년 12 월 일) 카드사용액(원)
 카드회사명(석흥카드) 발급시기(2004년 10 월 일) 카드사용액(원)
 카드회사명(씨비카드) 발급시기(2005년 2 월 일) 카드사용액(원)

양식에는 6개 신용카드가 나오는데, 오랜 기간 동안 여기서 빌려 저기서 갚는 식으로 버텨 온 채무자는 10개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별지와 같음’이라고 적어 주고, 별지에 위 양식에 따라 적어 준다.

5년간의 카드 사용액을 전부 집계한다면 엄청난 노력이 들 것이다. 신용카드 회사에 따라서는 이것을 전산 출력해 주면서 합계도 산출해 주기도 하나, 그렇지 않으면 이론상 5년간의 카드 사용내역을 전부 합산해야 한다. 이것은 채권자인 신용카드회사에도 부담을 준다. 물론 채무자의 번거로움은 더 하다. 그래서 합계가 어려우면 카드 사용액 란은 그냥 비워둔다.

어떤 사람은 끈이 끈대로 합계를 모두 낸 후에 카드 사용액이 너무 많다고 판사님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걱정한다. 그럴 필요 없다. 사용액이 많다는 것은 신용카드회사도 오랜 기간 동안 채무자를 많이 짜 먹었다는 이야기이다. 카드 특히 현금서비스를 오랜 기간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채무자는 신용카드회사를 위하여 일한 것이다.

5. 채권자와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자와 채무지급방법에 관하여 교섭한 경험 (있음, 없음)

- ▷ 그 결과 합의가 성립된 채권자수 (8)명
- ▷ 합의에 기하여 지급한 기간 (2004 년 2 월 일부터 2004 년 12월 일까지)
- ▷ 매월 지급한 총액 1개월 평균 (800,000)원 정도
- ▷ 지급 내역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였는지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각 채권자에게 지급

(2) 소송 · 지급명령 · 압류 · 가압류 등을 받은 경험 (있음, 없음)

- ▷ (서울남부)지방법원 ()지원 2005 ~~가합~~(차) 23456호 상대방(두성카드)
- ▷ ()지방법원 ()지원 가합() 호 상대방()

▷ ()지방법원 ()지원 가합() 호 상대방()

채권자와 채무지급방법에 관하여 교섭한 경험의 전형적인 예는 금융기관 연합회의 지원을 받는 ‘개인워크아웃’이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몰랐던 수입원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며 ‘상환의지’를 보여야 하고, 채권자 측이 원금을 깎아 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이자도 적용하는 것인 지라, 진정한 의미에서 ‘협상’이나 ‘교섭’이라고 말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워크아웃을 겪은 채무자가 이것을 교섭이라고 안 써도 큰 지장은 없다.

개인 사업이 도산했을 때, ‘채권단’을 결성하여 여기로 얼마를 분할상환하는 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다. 이때 여기에 적어주면 될 것이다.

법원의 사건번호는 2005가합234 호와 같이 접수한 연도, 사건별 고유식별부호, 접수일련번호로 이루어져 있다. ‘가합’은 민사 합의사건, ‘가단’은 민사 단독사건이다. 따라서 2005카단23456과 같은 신청사건이나, 2005타경234와 같은 강제집행 사건인 경우에는 ‘가합’에 취소선을 긋고 괄호 안에 사건 분류기호를 적어준다.

소송 기타의 법적 절차를 제기 당했던 것은 기억 나는데 막상 판결문, 결정문을 보존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민원실 창구 앞에 가서 채무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사건을 검색하여 보자. 해당 지방법원의 사건은 대부분 찾을 수 있다. 사건번호를 알아내서 판결문 등본 교부신청을 하면 훌륭한 부채증명과 필요한 경우 참고자료의 역할을 한다. 그래도 찾을 수 없으면 이 란은 비워두어야 할 것이다.

6. 채무가 증대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언제, 어떠한 사정 하에 누구로부터 얼마를 차용하여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언제 어떠한 사정 하에 무엇을 구입하였는지를 시간 순서에 따라 상세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별지를 사용하여도 됩니다.)

별지와 같음

7.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기 및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언제부터 매월 얼마 정도의 금액을 어떠한 사정 하에 지급할 수 없게 되었는지를 상세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별지를 사용하여도 됩니다.)

별지와 같음

언제, 어떠한 사정 하에 누구로부터 얼마를 차용하여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언제 어떠한 사정 하에 무엇을 구입하였는지를 시간 순서에 따라 상세히 기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원칙일 뿐이다. 채무발생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보충은 필요할 것이다. 사안에 따라서 법원이 제공하는 서식에 채무가 증대된 경위,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위를 충분히 넣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축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이 희귀한 난치병에 걸려서 수천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하였고 이렇게 채무가 증대된 상태에서 근근이 이자만을 상환하면서 버텨 왔는데, 어느 날 채무자가 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되어 소득을 잃었다는 것이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위로 충분하다. 5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경영하던 회사 채무 보증을 썼던 것을 몰랐고, 재산도 나누어서 다 썼는데, 지금에 와서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십억의 보증채무 이행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가 패소하였다는 사정도 지극히 간단하다.

이렇게 짧게 적을 수만 있다면, 아주 이상적이다. 심사를 하는 법원의 입장에서도, 읽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위 설문에는 각 “별지와 같음”이라고 표시하고 보통 A4 용지 2장 정도를 서술하게 된다. 흔히 ‘경위서’라고 불린다. 그러나, 이것은 취직을 위한 자기소개서가 아니다. 따

라서 파산신청을 하는 채무자 자신의 인적 역량을 한껏 드러낼 이유가 없다. 장황하게 쓰지 말자.

어떤 채무자들이 작성하는 경위서를 읽어 보면, 첫째, 가난한 집에 몇째 자식으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을 거쳐 카드를 발급 받을 때까지 1장 이상을 쓴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거의 누구나 다 그렇다. 사람마다 출발점이 다르다. 출발점이 뒤쳐진 사람이 파산 범정에 이르는 것이다. 읽는 사람을 지키게 할 필요는 없다. 둘째, 존경하는 판사님이라는 말이 많이 쓰인다. 채무자 아니더라도 판사님들이라는 직위를 존경해 줄 사람은 많다.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 존경을 말하는 것은 실례가 될 수 있다.

또 채무가 발생하여 지급불능에 이른 원인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려고 기억하는 모든 복잡한 상황을 완벽하게 표현하려고 애쓰면, 그야말로 “자기 자신의 뇌수술을 스스로 하는” 곤경에 직면할 것이다. 법원은 채무의 늪에 빠져 버린 가난한 채무자에게 직업적인 작가의 기량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수많은 가난한 채무자에게 별 관심이 없다. 채무가 늘어나서 결국 풍선처럼 터져 버리는 상황을 수궁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정리하는 정도로 족하다. 특히 반대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채무자의 말을 법원은 믿어 준다. 물론 나중에 허위 주장임이 드러나면 형사처벌을 받고 면책을 취소하는 조건에서이다.

채무가 증대되면 결국에는 지급이 불가능해 지니까 동어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6.채무가 증대된 경위와 7.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기와 경위는 하나의 문서로 작성하기도 한다. 저자가 다음에 개설한 김관기변호사의개인파산상담실 (<http://cafe.daum.net/CancelDebt>)에는 수많은 경위서가 올라 있다. 다음은 한 예이다. 아마 이 정도 쓰기 위해 채무자는 과거 5년간의 기록을 뒤져 며칠을 고민했을 것이다.

채무가 증대된 경위 및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위

1999년 이전 월급 70만원으로 생활하며 모자란 부분들은 적금들 당시 만든 국민카드(1995)를 사용하면서 생활했습니다. 1999년 9월에는 6년 정도 사귀던 000와(남편: 현재 혼인신고/결혼식을 못한 상태)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000는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제 월급으로 생활하였습니다. 1999년부채 : 국민카드:1,496,000(치과치료), 삼성카드:1,095,000(오토바이구입할부).

2000년 6월 일이 줄어들어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같은 해 10월에 다시 세민자수라는 회사에 월급여 95만원의 2교대 근무 직원으로 들어갔지만 약 4개월 동안의 생활비를 카드로 충당했습니다. 또 2000년 11월 000의 나이많은 부모님과 학생인 동생의 생활비를 000가 카드로 썼는데 고정적인 수입이 없다 보니 카드는 연체되었고, 고민 끝에 300만원을 삼성아하론패스 카드로 빼서 빌려주게 되었고 제 월급으로 생활하면서 300만원을 갚아나갔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한번 늘어난 빚은 연체하지 않기 위해 현금서비스를 받으면서 돌려막기 해 보았지만 금액은 조금씩 커져만 갔습니다. 2000년부채: 국민카드:3,194,500, 삼성카드:1,890,000, 아하론패스:3,000,000.

2001년 3월 건강이 나빠져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다시 생활비를 카드로 썼습니다. 일을 할때는 그나마 월급만큼은 메울 수 있었지만 이제 그만큼 빚이 늘어났습니다.

2001년 4월 어머니가 동생이 서울에 취직이 되서 방을 구해야 하는데 새마을금고에서 600만원을 대출했지만 300만원정도 모자란데 연말에 줄 테니 빌려 달라고 부탁해서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삼성카드로 현금서비스 받아서 빌려드렸습니다. 이후 매월 카드 현금서비스 받아서 돌려막기를 계속했고 카드한도도 늘어나 연체는 막을 수 있었지만 빚은 눈덩이처럼 늘어만 갔습니다. 6월에는 동생에게서 100만원을 받아서 카드 값 내는 데 보탬고 나머지도 연말 즈음에 받아 역시 카드값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자를 생각하면 역시 불어난 것입니다.

2001년 5월 천이백에 월세 4만원인 반지하(방2개)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지만 000가 킷서비스(오토바이)에 취직하고 저도 일을 하고 있으니 힘들어도 빚은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사한 지 한 달도 채 안되 000가 오토바이 사고가 났습니다. 왼쪽 다리뼈가 심하게 부러지면서 뼈조각들이 힘줄이랑 근육 인대등을 모두 끊어 와서 인공관절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후 15일 입원에 병원비가 700여만원(500만원은 집주인에게 말해서 전세금에서 빼고 나머지는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병원비 감당이 힘들어 혼자 앉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퇴원을 했고 제가 옆에서 간호하면서 대,소변을 다 받아냈습니다. 일을 못하니 생활비는 또 카드로 충당했고, 기존 카드빚 돌려막기에 매일 카드날짜 확인하며 불안하게 지냈습니다.

2001년8월쯤 000가 겨우 앉을 수 있게 되었고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보니 주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을 벌 수 있을것만 같았습니다. 이때 000는 이미 신용불량상태라 제 명의로 계좌개설하고 무리하게 카드로 340만원을 마련해 주식을 시작했지만 석달만에 모두 잃었습니다. 이후 300만원을 더 마련해서 다시 한번 시도했지만 마찬가지로였습니다.

2001년부채: 국민카드:5.094.656, 삼성카드:8.292.845, 우리은행비씨:835.580, 외환은행:442.982, 엘지카드:1.200.000

2001년 9월에는 다시 월 급여 100여만원에 공장에 나갔습니다. 급여를 받아 카드빚을 메워 가면서 여전히 카드로 생활하였습니다.

2002년 4월 차가 있으면 뭐라도 할수있지 않을까해서 LG캐피탈에서 할부 설정하고 97년식 아반떼를 600여만원에 36개월 할부 구입하였습니다. 000는 가벼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다리가 완전히 낫지 않아서 이마저도 그만두었습니다.

2002년7월 국민카드에서 신용이 좋아서 국민골드카드로 교체해준다고 해서 국민골드카드로 교체하고 카드한도는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카드빚은 점점 늘었고 카드 사용 또한 늘면서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아 돌려막기는 계속이었습니다. 이마저도 한계에 달한 즈음 2002년 11월 국민카드에서 신용대출 안내문을 보고 1000만원을 수수료 제한 985만원

으로 대출받아 연체 위기 카드 대금을 내면서 돌려막기를 계속했습니다.

20002년채무: 국민카드:7.940.000, 국민카드대출:10.000.000, 삼성카드:9.677.628

우리은행비씨:713.000, 외환은행:371.414, 엘지카드:3.238.540, 엘지캐피탈 차량할부:6.000.000(36개월 할부), 현대카드:1.900.000, 부산은행비씨:441.570, 국민은행비씨:1.500.000

2003년5월경 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 한도를 갑자기 0원으로 만들면서 돌려막기하던 카드들이 모두 연체되기 시작했고 카드사에서 전화가 오고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샌 펠리페에 사는 66세의 홀아비 제럴드 리 머포드는, 나쁜 계획, 나쁜 결정, 나쁜 운수, 나쁜 건강 (Bad planning, bad decisions, bad luck, bad health) 때문이라고 파산으로 몰아가는 상호 연관된(interrelated) 요인을 간결하고 완벽하게 요약하였다 -Sullivan, Warren and Westbrook, The Fragile Middle Class: Americans in Debt(2000), p142.
 만일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다. If we have nothing, we have each other - Kara King, 세 아이 엄마, Shipler, The Working Poor p. 174

돌려막기를 통해 천천히 늘어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

채무증대추이

단위: 천원

연도	월평균 수입	연수입 총액	월평균 지출	연지출 총액	연도말 채무총액	월평균 이자지불액	연간 이자지불액	비고
2001								
2002								
2003								
2004								
2005								

8.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기 이후에 차용하거나 채무가 발생한 사실 (있음, 없음)

(있다면 채무발생의 시기, 원인, 금액, 조건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별지를

사용하여도 됩니다.)

2004. 12. **카드 대환대출 13,000,000원, 이자 월 23%, 3년 분납

2005. 12. 5,000,000원, 은행 이자 부담하기로 하고 장모에게서 빌림

모범 답안은 물론 ‘없음’이다.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의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서 형식적으로 면책장애사유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싼%”라는 광고를 보고 찾아 간 사채 사무실에서 5부 이자로 2,000,000원을 빌려 **카드 빚을 갚기로 했는데 거기서 신용카드를 맡기라고 했고 그 이후 그들이 멋대로 속칭 카드깡을 했다는 이야기도 가끔 들린다.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이 거래형태를 분석하여 이상한 사용에 대하여 즉시 승인을 거절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자기방어적인 통제를 시작하고, 야만적인 추심행위가 잦아들고 또 파산제도에 관하여 홍보가 많이 이루어진 2005년 이후에 연체를 시작한 채무자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무리를 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완전히 저들의 세상이었다. 몸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하고, 추심하는 사람이 카드깡업자를 겸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고리의 채무를 부담한 것을 채무자의 탓으로 돌리기 어렵다.

현저히 불리한 조건의 채무를 부담한 것을 이유로 면책을 부인할 근거는 크지 않을 수 있다. 막상 파산재단이라고 형성될 만한 재산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공동으로 분배에 참가하는 파산재단을 고갈시켰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채권자일람표는 채무별로 순번을 달리하여 기재한다. 다만, 같은 채권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무는 연이어 기재하되, 발생 원인이 오래된 것부터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한다.

‘채권자명’ 란에는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여 채권자의 성명이나 법인명칭을 정확히 기재한다. 예를 들어 동대문시장에서 의류 장사하는 사람이 ‘경이네’라고 쓴다고 해서 그렇게 쓰지 말고 대표자 개인의 이름을 ‘임순자’와 같이 적어 준다.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성명은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소와 일치하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까지 기재하여야 한다.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 보증인도 ‘보증인’란에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왜냐 하면 보증인은 구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증으로 인한 구상채무는 보증인이 보증한 채무의 바로 다음에 기재하되, ‘순번’ 란에는 보증한 채권의 순번에 2-1과 같이 가지번호를 붙여 표시하고, ‘잔존채권액’란의 ‘잔존원금’란, ‘잔존 이자 · 지연손해금’ 란에는 ‘미정’이라고 기재한다.

차용 또는 구입일자는 은행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일자를 쓰고, 신용카드의 경우 “남아 있는 채무 중 가장 먼저 발생한 것의 날짜”이겠지만 포괄적인 계정인 이상 그냥 최초발급일자를 기재하여도 무방하다.

‘발생원인’ 란에는 표 하단에 기재된 발생원인의 해당번호를 기재한다. ①금원차용(은행대출, 사채 포함), ②물품구입(신용카드에 의한 구입 포함), ③보증(피보증인 기재), ④기타이다. 보증을 한 경우에는 보증을 받은 사람의 성명을 같이 기재하고, 기타인 경우에도 ‘보증금’과 같이 적어 주면 좋겠다.

‘최초 채권액’ 란에는 채무발생 당시의 금액을 적는다. 일정 금액을 처음부터 약정하고 대출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적는다. 신용카드인 경우 “남아 있는 채무 항목의 최초 금액을 합한 것”이겠으나, 편의상 최종 잔고를 적어 주어도 무방하다. 실무상 부채증명에 기재된 원금을 적으면 된다., ‘사용처’ 란에는 구체적 사용용도 또는

구입물품을 각 기재한다.

‘잔존채권액’란, ‘잔존원금’란, ‘잔존 이자·지연손해금’란에는 파산신청 당시까지 채무자가 갚지 못하고 있는 채무의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을 각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하단의 ‘합계’란에는 채무의 총액을 기재하며, ‘잔존원금’, ‘잔존 이자·지연손해금’란에는 각각의 합계액을 기재한다. 이것은 시일이 지나면서 변동되지만 그에 따라 채권자일람표를 변경시킬 필요는 없다.

순번	채권자명	차용 또는 구입일자	발생원인	최초 채권액	사용처	보증인	잔존 채권액	
							잔존 원금	잔존 이자 지연손해금
1	신민은행	1999. 9. 30.	①	30,000,000	운영 자금	김초다	25,000,000	2,880,000
1-1	김초다						미정	미정
2	신민은행	2003. 7.17.	①	20,000,000	운영 자금		15,000,000	1,116,334
3	알지카드	2005. 9. 21.	③ 임민지	11,234,124	무상 보증		11,234,124	2,234,002
4	임차인	2004. 7. 31.	④ 주택 임대	20,000,000	이사 비용		12,000,000	0
5	오성카드	2005. 8. 20.	①	10,000,000	채무 상환	임현철	10,000,000	1,034,023
5-1	임현철						미정	미정
6	알지카드	2005. 9. 21.	③ 임민지	11,234,124	무상 보증		11,234,124	2,234,002
*채권의 ‘발생원인’란에는 아래 해당 번호를 기재함 ①금원차용(은행대출,사채 포함), ②물품구입(신용카드에 의한 구입 포함), ③보증(피보증인 기재), ④기타						합계	잔존 원금	잔존이자 지연손해금
						80,498,483	73,234,124	7,264,359

채권자의 주소는 최근 주소로 번지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 송달이 되게 하여야 한다. 보증인도 채권자로서 주소까지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공동보증인도 마찬가지이다. 채권자가 금융기관이나 기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 또는 거래지점의 소재지를 정확하게 기재한다. 인터넷 검색으로 해당 회사 홈페이지를 찾으면 된다. 이 채권자목록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실무상 부채증명서를 첨부한다.

채권자의 누락이 없도록 주의하자. 특히 어떤 사람은 개인 채권자와의 인간적인 친분관계 때문에 이들의 빚은 파산 이후에도 갚아주겠다며 일부러 누락시킨다. 고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은 면책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채무자가 의도하였던 것이니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채무 규모가 크면 그것은 법원과 나머지 채권자에 대하여 실제적 진실을 왜곡하는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밝혀지면 면책의 불허가 및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또 이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면해도 좋고 개인 채권자에 대한 것은 도저히 그러지 못하겠다는 사람은 인식상의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다. 금융기관은 개인의 사정을 잘 보지 않고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 신용을 준 것임에 비하여 순전히 도와주겠다고 빚 명목으로 돈을 준 개인이 아니고 월 2부, 3부, 심하면 5부까지의 이자를 붙이며 돈을 준 개인 채권자는 채무자의 어려운 상황을 잘 알면서 여기 편승해서 이익을 취한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채무를 계속 갚는다면 아무리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면해 준다고 하더라도 파산제도가 부여하는 새 출발의 기회를 활용할 가능성이 없다.

구술심리를 하지 않고 파산선고를 내리는 경향이 있는 판사들도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 채권자로 많이 올라 있는 경우에는 법원으로 소환하여 이들의 말을 들어보고 싶어한다. 채무자를 잘 아는 사람들이기에 그동안의 사정에 관하여 진실이든 허위이든 주장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채무자를 오래 짜 먹은 사람일수록 더 악랄하게 항의하는 경향이 있다. 법원의 판사들도 잘 안다. 그렇지만 이들의 이의를 통과하는 사람은 심지어 이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일이 있어도 면책 결정을 받는다.

개인채권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도 이름과 주소를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것은 직업적인 사채업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은 소득세법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금융을 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이자 전부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 하고 어떠한 공제항목도 주장할 수 없다. 사채 수

입을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는 크지 않다. 알려지면 상당히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1972년의 8.3조치에서 사채의 신고를 세무서에서 받은 것을 사채를 많이 운용한 사람들은 기업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인적사항을 모르는 개인채권자라도 일단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찾아 본다. 과거 공증을 해 준 적이 있으면 그 서류에 채권자의 인적 사항이 나온다. 채권자에게 직접 물어보면 아마도 가르쳐 주지 않을 것이다. 명절 선물을 택배로 보내기 위하여 주소가 필요하다는 거짓말에도 직업적인 사람은 넘어가지 않는다. 이들은 전화번호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쓰는 경우가 많으며 자동차도 마찬가지로이다. 정 안되면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라도 파산신청한다 또는 하였다는 취지를 전송하고 그것을 촬영해 두는 것과 같이 채권자를 찾아 보려고 노력했다는 자료를 만들어 잘 보존해 둔 후 그것을 첨부하여 채권자 목록에 올리고 법원의 조치를 기다린다. 법원은 채권자에게 송달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하여 그럴 듯한 해명을 들으면 그냥 진행해 준다. 아니면 위험이 더 크지만 아예 빼 버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나중에 채권자가 자신이 빠졌다고 주장하여 소송을 걸어 오면 채권자가 가르쳐 주지 않아 할 수 없이 제외하였다고 항변할 수 있다. 또 어떤 채무자는 세무서에 알아보라고 적절하게 레버리지를 구사한다.

신용카드회사의 경우 채권의 추심을 전문적인 업자에게 아웃소싱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채권을 이관’했다는 통지가 온다. 이 경우 채권자는 원래의 신용카드회사이다. 핑을 물어 오라고 사냥개를 풀었다고 해도 잡아 온 핑을 사냥개 주겠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채권양도통지를 정식으로 송달 받은 경우에는 양수한 자를 채권자로 올려야 맞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자산관리공사(KAMCO)나 무슨무슨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다. 양도통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원래의 채권자 이름으로 자신의 채권을 누구에게 무조건적으로 양도한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새 양식에는 맨 앞에 요약표를 넣고 ‘있음’이라고 표시된 항목만 법원이 검토하여 동시폐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없음’이다. 면책 장애 사유나, 기왕의 면책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쓰되, 채권자의 권리 행사와 상관이 없는 사소한 것에 대하여는 약간의 착오가 있어도 상관이 없으니 겸허한 마음으로 솔직히 써 줄 일이다. “어떻게 써야 잘 썼다고 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요령을 피우지 않는” 자세를 권한다.

재 산 목 록

※ 먼저, 다음 재산목록 요약표에 해당재산이 있는지 √하고, 「□ 있음」에 √한 경우에는 아래 해당 항목에서 자세히 기재바랍니다.

1. 현금	□있음 □없음	7. 퇴직금	□있음 □없음	13. 최근 2년간	□있음 □없음
2. 예금	□있음 □없음	8. 부동산	□있음 □없음	재산 처분 여부	
3. 보험	□있음 □없음	9. 자동차●오토바이	□있음 □없음	14. 최근 2년간	□있음 □없음
4. 임차보증금	□있음 □없음	10. 고가 가재도구	□있음 □없음	받은 임차보증금	
5. 대여금	□있음 □없음	11. 기타 주요 동산	□있음 □없음	15. 이혼재산분할	□있음 □없음
6. 매출금	□있음 □없음	12. 주식, 회원권 등	□있음 □없음	16. 상속재산	□있음 □없음

1. 현금 : 금액 (500,000 원)

2. 예금

금융기관명(농산은행) 계좌번호(950-04-240011) 잔고 (23,023 원)

금융기관명(한일은행) 계좌번호(398-23-345234) 잔고 (0 원)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잔고 (원)

☆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에 대한 것도 포함합니다.

☆ 예금잔고가 소액이라도 반드시 기재하고 파산신청시의 잔고(정기예금분을 포함)와 최종 금융거래일로부터 과거 6개월간의 입출금이 기재된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소액의 예금은 사실상 현금이겠지만, 예금 항목이 별도로 있으니 현재 소지하고

있는 돈만 기재하면 된다. 물론 현금을 동전까지 셀 필요는 없을 것이다. 10만원 단위까지만 개략 적어준다.

새 파산법에 의하면 6개월까지의 생계비는 면제되고, 720만원까지 보장되는 것으로 2006년 1월 말 현재 입법예고 되어 있다. 청약예금, 적금, 청약적축 모두를 현금과 합하여 이 면제금액 범위 내의 것이라면 그냥 두어도 될 듯하다.

물론 현금이 전혀 없어야 또는 면제재산 범위 내라야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큰 금액을 가지고 있을 때 파산 법원은 채무자에게 “이것을 채권자들의 채권 비율대로 되도록이면 평등하게 나누어 주도록” 권할 것이다. 어느 것이 평등한 변제인지 잘 감이 안들 때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그럴 처지가 못 되면, 파산 법원에서 심문 받을 때 조언을 받으면 된다.

마이너스통장의 잔고는 -9,404,302원식으로 표시하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재산 목록을 표시하는 것이니, 0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어느 쪽을 따라도 상관 없다.

통장 사본을 첨부하라는 것은 통장에 채무자의 자금 운용이 나오는 지라, 비정상적인 금액의 거래에 관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점은 없었는 지를 보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거의 쓰지 않았던 통장이라면 여기에 올릴 필요가 없지만, 실무상 참고적으로 이것도 복사해서 붙이라고 한다. 많은 채무자들이 돌려막기를 실행하느라 통장을 4개 이상 운용한다. 이 경우에는 별지를 활용한다.

3. 보험(생명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험회사명(오성생명) 증권번호(0234-234-3294) 계약반환금 (2,456,300 원)

보험회사명() 증권번호() 계약반환금 (원)

보험회사명() 증권번호() 계약반환금 (원)

☆ 파산신청 당시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계약반환금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전부 기재하여 주십시오.

☆ 보험증권사본과 파산신청시의 계약반환금 예상액(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재한

보험회사 작성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원칙적으로 이 확인서가 들어가는 상황보다는 보험은 깡그리 해지하여 채무의 변제에 쓰거나 당장의 생활비로 쓰기를 권한다. 채무자가 가진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해지하지 않고 면책신청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어차피 해약해서 보험회사에 대한 채무를 갚으라고 법원은 권한다.

여기에서 “파산신청시에 가입한 보험”이라 함은 파산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보험이다. 채무자가 보험계약자인 경우, 즉 채무자가 보험료 납입을 할 책임이 있는 것을 뜻하고, 채무자가 보험계약을 하지 않고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물론 해당하지 않는다. 자동차가 필수적인 사람의 경우에, 종합보험(대물, 대인 배상 책임이 규정된 것)은 해지해서는 안된다. 채무자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잠재적 피해자인 공중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보험회사는 위험을 부각하고 때로는 과장한다. 진료비가 비싸지 않도록 국가통제가 실시되며 보장의 범위도 넓은 국민건강보험이 실시되는 상황에서도 유효적절한 치료비가 보장되지 않는 희귀 질병에 걸릴 위험, 또 이런 병의 발생으로 치료를 받느라 소득을 잃을 위험은 언제라도 있다. 그리하여 월 몇만원 단위에서부터 몇십만원 단위까지 다양한 플랜의 보험이 판매되며, 주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파고든다. 있는 사람은 굳이 보장이 필요하지 않다.

첫째 문제는 막상 이와 같은 보험은 보장하는 범위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 예를 들어 현대의학을 활용하면 증상의 개선과 생존의 연장이 가능하지만 그 비용이 3천만원인데 막상 보험약관은 1천만원의 치료비를 정하고 있는 경우이다. 치료비를 담보하는데 부족하지만 1천만원이라는 보조금은 이러한 보험이 없었더라면 치료를 포기하였을 가족으로 하여금 2천만원의 빚을 내서 약간의 가망 밖에 없는 치료에 나서게 한다. 재정적 파탄이 이를 피하기 위한 사적인 보험으로 오히려 조장되는 예이다. 두번째는, 이와 같은 보험료의 납부가 다른 곳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특히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신용카드로부터 돈을 납부하여 보험료를 낼

때 신용카드회사도 보험회사도 수입을 얻는 반면에 가난한 자는 더 가난에, 채무에 빠지게 된다. 보험회사가 고용하는 보험설계사들은 친족, 친지를 주된 판매대상으로 삼으며, 형편이 어려워 해지하려는 사람들을 체면상 해지하지 못하도록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한다. 그러는 와중에 보험설계사도 마치 팔리지 않는 상품을 스스로 사는 다단계판매자처럼 빚을 누적시켜가기도 한다. 어느 쪽이든 보험회사는 번영한다.

흔히 환급금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보험료가 몇만원에 불과한 건강보험, 아이 교육보험을 그대로 유지해도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이 자주 있다. 그러나, 파산, 면책은 새로이 태어나게 해 주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무리 파산, 면책을 해 주더라도, 채무자가 원초적으로 갚아야 할 채무가 있다면, 재기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신용카드로 한달에 십몇만원 들어가는 보험을 몇 년간 유지하느라 사태가 악화되었던 사람은 보험을 유지할 명분도 없다.

보험회사의 창구 직원이 ‘약관대출’ ‘신용대출’이 남아 있다고 하여 보험해지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해지를 해서 대출을 갚고 나머지를 달라는 것인데도 거부를 하는 것은, 보험회사 창구직원, 영업사원으로서의 꺾기 자금 또는 sinking fund 역할을 하는 보험료 수입을 계속 받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보험회사에게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는 보험회사 직원은 “보험회사 말아 먹을 직원”이다. 왜 그럴까? 약관대출이라고 해도 채무는 파산, 면책의 대상이 된다. 약관대출이 면책이 된 채, 채무자가 후일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지급해 주어야 한다. 확실히 보험회사의 손해이다. 해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면책 심리까지 넘어가면 보험회사에서 해지환급금으로 대출을 상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는 예가 최근 많이 있다.

4. 임차보증금

임차물건(아파트), 지급한 금액 (1,200만 원), 반환금 (1,000만 원)

☆ 반환금란에는 파산신청시에 임대인에게 임차물건을 명도한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반환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예상액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 보증금 전액(1200만~1600만원)은 면제된다. 이 전에도 관행적으로 면제해 오던 범위에 해당한다.

5. 대여금

채무자명(신창원) 채권금액 (5천만원) 회수가능금액 (0 원)

채무자명() 채권금액 () 회수가능금액 (원)

☆ 계약서의 사본 등 대여금의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변제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6. 매출금(개인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있는 분은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한 매출금 채권)

채무자명() 채권금액 () 회수가능금액 (원)

채무자명() 채권금액 () 회수가능금액 (원)

☆ 영업장부의 사본 등 매출금의 현재 잔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변제 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대여금이나 이에 준하는 채권이 혹시 있으면 적어준다. 파산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경우 적어줄 경우가 많을 것이다. 다단계 회사에서 사기를 당한 경우, 채무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이것을 형제, 자매, 친구 등에게 빌려 준 경우도 여기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호의적으로 빌려준 경우 뿐만 아니고, 채무자 자신이 고리대금을 업으로 행한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한다. 실제로 카드깡업자, 고리대금업자도 파산신청을 하고 면책도 받는다. 이것은 은행이나 카드 회사가 채권을 받지 못해서 파산하는 것과 하나도 다름이 없다. 채무자가 도피하거나 교도소에 장기 수감 중인 사실,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사실은 모두 채권의 실질가치를 0으로 표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유들이다.

생각하기는 힘들지만, 파산 선고 전까지 그야 말로 “인천 앞 바다에 배가 들어온” 사태가 발생하여 위 채권이 회수된 경우라면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변제해 주고

법원에 그 사실을 보고하면 될 것이다. 그래도 채무가 남으면, 면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파산 선고 이후 채권이 회수된다면, 이것은 마치 복권 당첨되는 것과 같은 형제이다. 그 복권의 소지자는 채무자이다.

7. 퇴직금

근무처명(고대자동차주식회사) 퇴직금예상액 (15,234,230 원)

☆ 파산신청시에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 받을 수 있는 퇴직금예상액(퇴직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을 기재한 사용자 작성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만일 퇴직금채권을 담보로 하여 돈을 차용하였기 때문에 취업규칙상의 퇴직금보다 적은 액수를 지급 받게 되는 경우에는 차용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근무하는 회사에서 중간정산이 가능하면, 이것을 선택하고, 채권자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갚아 주기를 권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 상당액의 자금을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차입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물론 생활비로 면제되는 금액 범위 내인 경우에는 법원에 따라서 동시폐지를 할 것이다. 어느쪽이든 파산법원의 지시를 따르게 될 것이다. 어느 것도 어려운 사람은 퇴직금 중간 정산이나 현실적 퇴직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개인회생제를 대안으로 고려하게 된다.

이 란은 퇴직하지 않은 사람이 기재한다. 파산 신청 이전에 이미 퇴직하였다면, 이 란에 기재하지 않고, 아래 14항에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작은 회사에서는 대략 다음과 같은 문구로 사용자의 확인을 받으면 될 것이다.

퇴직금 누적액 확인
입사일: 2001. 8. 1.
퇴사간주일: 2006. 7. 31.(파산신청일 기준)
기간: 5년 0개월
평균임금: 2,000,000
퇴직금: 10,000,000원

8. 부동산(토지와 건물)

종류(토지 ● **건물**) 소재지 (인천 중구 문학동 1123 우성연립 203호)

시 가 (7,000만 원) 등기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잔액(8,000만 원)

종류(토지 ● 건물) 소재지 ()

시 가 (원) 등기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잔액(원)

☆ 등기부등본 등과 재산세과세증명서 등 시가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저당권 등 등기된 담보권에 대하여는 은행 등 담보권자가 작성한 피담보채권의 잔액증명서 등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흔히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파산이 안된다”는 말을 듣는다. 틀렸다. 파산법의 원칙적인 모습은 공적 절차에 의한 채무자의 보유 재산 처분이기 때문이다. 다만, 환가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바로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는 환가가능한 재산이 없을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것은 파산절차의 신속을 위하여 정한 특례가 오히려 실무상으로는 원칙이 되어 버린 관계로 이러한 오해가 생긴 것이다. 물론, 부동산이 남아 있으면, 이것이 적절한 채권자에 의하여 경매 되기를 기다려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채권회사가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의 의사표시가 명백해 진 이후에는 사실상 추심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는 지라, 많은 이들은 신속히 파산신청을 하고 싶어한다. 이와 같은 경우 파산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법원이 부동산집행의 결과를 굳이 기다리겠다면, 그냥 그때까지 기록을 캐비닛에 넣고 기다리면 그만이다. 채무자에게는 변호표를 먼저 준 것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익이 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나중에 경매가 되고 나서 배당표를 법원에 제출한다.

피담보채권이 시가에 딱 차 있는 경우는 채무자는 소유자라기보다는 오히려 피담보채권을 갖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선택권(option)을 가진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은행도 경매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 경매해서 피담보채권 잔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진다면, 이것을 실행함으로써 훌륭한 담보를 가진 채

권이 일부 회수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부실채권임이 명백해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경매가 기피, 지연되는 상황에서는 채무자더러 무작정 경매가 진행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그 구제책은 간단하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의 금액 범위 내에서 부동산을 채권자의 것으로 보면 그만이다. 파산 절차에서 면책되는 것은 담보되지 않은 일반채권에 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책결정을 해도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의 권리는 침해 받지 않는다. 동시폐지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도시 지역의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의 경우이다. 공시지가는 차이가 많이 나고, 생활정보지의 광고에 나오는 호가 만으로는 시가를 입증하기 곤란하다. 적정한 ‘감정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파산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제출할 생각으로 일단 공시지가 확인서, 거래사례에 관한 인터넷 정보자료 등을 제출하기도 한다. 은행이 자신들의 판단으로 시가를 추정하는 속칭 지상감정을 시행하듯이, 파산법원도 광고지에 나오는 정보와 담보권자가 실행을 하지 않는 사정 등을 보고 채무자의 주장을 믿어주기도 한다.

9. 자동차(오토바이를 포함한다)

차종 및 연식(개나타3, 95년식) 등록번호(인천52구6885) 시가 (150만 원)

차종 및 연식() 등록번호() 시가 (원)

☆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차량이 생업의 수단인 경우, 예를 들어 노점상이나 택배종사자, 개별화물업자가 오래된 연식의 ‘고물’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 처분해서 빚 갚으라 소리는 안 한다. 다만, 승용차인 경우에는, 이것이 장차 재기에 지장을 준다는 인식에서 있으면, 처분하는 것이 맞겠다. 싼 값의 대중교통이 비교적 발달해 있는 도시 지역에 사는 사람인 경우에는 승용차의 필요성에 관하여 합리적인 주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전세, 월세보증금을 마련할 돈이 없어서 시내버스가 하루에 몇 번 밖에 오지 않는

시골 지역에 거주하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승용차가 필요하다. 가치가 얼마 나가지 않으면 법원도 무시해 준다.

할부로 산 차이고, 제법 가격이 나가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통상 할부금융을 실행하는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에는 채무자가 차량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권자가 이것을 팔아서 채권에 충당하는 것이 편하다. 이 경우 아래 12항에 기재하고, 파산 신청 당시에는 차량이 없는 것이니, 여기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10. 가재도구(중요한 것만 개별적으로 기재)

품목명()	시가 ()	원)
품목명()	시가 ()	원)
	합계 ()	원)

11.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중요 동산(귀금속, 미술품 등)

품목명()	시가 ()	원)
품목명()	시가 ()	원)
	합계 ()	원)

12. 주식, 회원권, 특허권 등 위 1항~11항 이외의 재산권

재산권의 종류()	시가 ()	원)
재산권의 종류()	시가 ()	원)
	합계 ()	원)

‘중요한 것’을 적으라는 것이니, 예를 들어 2,3년 된 텔레비전 같은 것 적지 않아도 된다. 가격은 당연히 중고가격이다. 아무리 신품이라도 매장을 나서는 순간 20% 이상의 가격이 떨어진다. 5년쯤 지난 것이라면, 10% 가격도 안한다. 새로 살 경우에는 꽤 돈이 들지만 요즘 장롱은 돈 내고 버려야 한다. 따라서 적지 않는다. 다만 유체동산압류를 당한 적이 있는데, 여기 올라간 것은 그대로 적어주는 것이 좋겠다. 또 재산관계명시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보통 결혼 반지, 아기 돌반지까지 값나가는 동산은 모두 다 팔아 치웠기에 적을 것이 없을 것이다.

또 망해 버린 회사의 주식이 가치가 있을 리 없다. 우리사주로 받았던 비상장주식이나, 한동안 인기가 있었으나 지금은 잊혀진 콘도 회원권이 없는 지 챙겨 보자. 채무자 입장에서는 거의 휴지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재산’이라고 판지 거는 채권자들이 있다. 싼 값이라도 팔아서 그 대가로 채무를 청산하고 파산신청으로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공시된 시가에 안 팔린다 하는 말을 자주 듣는다. 아니다. 부동산이 안 팔린다는 것은 가격을 충분히 싸게 하지 않아서 그럴 뿐이다. 공급에 제한이 있는 관계로 가격 변동폭이 클 뿐이다. 경기 좋은 시절에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시가로는 결코 팔릴 수 없다. 그러나, 과격적으로 싸게 내 놓으면 팔린다. 이것을 싸게 팔았다고 시비할 수 없다. 채권자에게 던져 주는 한은. 어차피 채권자에게 줄 것인데 비싸게 팔려고 애를 쓸 이유가 없다.

13. 최근 2년간 처분한 100만원 이상의 재산

별지와 같음

☆ 처분의 시기, 대가 및 대가의 사용처를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재산의 처분에는 보험의 해약, 정기에금 등의 해약, 퇴직에 따른 퇴직금수령 등도 포함합니다. 주거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수령에 관하여는 다음의 14항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부동산이나 100만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시기와 대가를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계약서사본, 영수증사본과 처분대가의 사용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동이 활발했던 사람은 아무래도 별지를 활용할 경우가 많을 것이다. 재산을 팔아 채무자가 빼돌렸다는 의심을 사지 않도록 충분한 근거 있는 사항을 잘 적어 주자. 모범 답안은 “채무의 변제” 또는 “사업운영자금” “생활비” “파산신청비용” 등이다.

자료가 남아 있지 않는 경우도 있다. 금융기관이나 공인된 사업장을 유지하는 사업자는 새로 발급해 준다. 개인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없으면 할 수 없다.

순번	재산	처분시기	대가	대가의 사용처
1	적금	2004년 7월	4,500,000원	사업운영자금
2	보험	2004년 9월	1,200,000원	생활비
3	아파트	2005년 2월	150,000,000원	저당채무변제/보증금5천만원
4	퇴직금	2006년 1월	35,000,000원	카드대금정산
5	보험	2006년 2월	2,000,000원	생활비/파산신청비용

14. 최근 2년 이내에 주거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사실

2006.2. 5천만원 회수, 1,800만원으로 이사하고 월세보증금 지급, 3,200만원 채무 변제

☆ 임대차계약서사본과 수령한 임차보증금의 사용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임차보증금은 비교적 고액이고 그 흐름을 파악하기가 용이하기에 재산 중에서 특히 따로 항목을 정하여 둔 것으로 이해된다. 전세보증금을 수령하여 쓰는 용도의 전형은 다른 곳으로 “줄여가는” 것이다. 물론 차액은 생활비가 될 수도 있고, 채무 변제가 될 수도 있다.

15.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에 따라 재산분여(할)한 사실

☆ 분여한 재산과 그 시기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분여한 재산의 가치를 나타내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친족의 사망에 따라 상속한 사실

2004년 10 월 28 일 부 ●모 이만배의 사망에 의한 상속
상속상황

- 상속재산이 전혀 없었음
- 신청인의 상속포기 또는 상속재산 분할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이 모두 취득하였음

신청인이 전부 또는 일부를 상속하였음

주된 상속재산과 그 처분의 경과

연립주택, 협의분할로 700만원을 받아 이것으로 파산비용, 채무 500만원 변제

☆ ㉠ 또는 ㉡항을 선택한 분은 주된 상속재산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을 선택한 분은 다른 상속인이 주된 상속재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부동산인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항을 선택한 분으로 상속한 주된 재산을 이미 처분한 분은 그 처분의 경과와 대가의 사용처를 상세히 기재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원래 이혼과 동시에 하는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이나 상속 이후 상속인 들 사이에서 협의분할, 포기를 하는 것은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이기에 채권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파산법에서 무엇이냐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것은 합리적인 경우에 한한다. 부부의 재산분할이나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을 위장한 재산도피인 것으로 볼 경우에는 면책을 부인 당하니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재산 처분에 준해서 합당한 기재를 할 것이다.

이혼시의 재산 정리는 부부의 순자산을 대상으로 하므로 채무 초과인 상태에서라면 이론상 배우자에게 재산을 나누어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전세금은 배우자에게 넘기고 이혼하고 같이 생활비로 쓰면서 누적한 신용카드 대금은 그냥 채무자가 갚는 경우이다. 앞으로 아이들 키울 것을 생각하여 미리 재산을 넘겼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간혹 있다. 그러나, 부양은 재산이 있으나 없으나 만인의 의무이다. 면책도 되지 않는다. 재산을 넘김으로써 해결할 것이 아니다.

상속포기, 협의분할에 따라 다른 형제자매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된다고 보아, 면책 부인사유가 될 수 있다. 물론 노모가 혼자서 살고 있는 작은 집과 같이 채무자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채권자나 파산법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재산이 당연히 있다. 적당한 평가 하에 형제에게 넘기고 돈을 마련해서 그것을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방법이 보통 권장된다.

현재의 생활상황

1. 현재의 직업【 자영, 고용, 무직】

업종 또는 직업(음식) 직장 또는 회사명 (정우분식)
 지 위 (서빙) 취 직 시 기 (2005 년 4 월)

2. 수입의 상황(신청인의 월수입 합계 1,400,000 원)

- 자영수입(원)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월 급여 (1,400,000 원) → 급여증명서(최근 2년분)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의 사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연 금 (원) → 수급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생활보호(원) → 수급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기 타 (원) →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수입원을 나타내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현재 무슨 일을 해서 얼마나 수입을 올리고 있는 지를 적어 준다.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보존하고 있는 것을 내면 된다. 보존하고 있는 것이 없으면 세무서에 가면 발급해 준다. 급여증명은 월급명세서이겠지만, 사용자가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갈음해도 된다. 특히 이런 증명에 익숙하지 않은 영세업자에게 고용된 사람인 경우 영세업자라 없다고 적시하고 또는 적시하지 않고 그냥 생략해도 그만이다. 연금이나 생활보호수급증명은 해당 공단이나 자치단체로 가면 될 것이다. 기타로는 부모의 지원이 이에 해당할 지 모르겠다. 자료는 통장을 제출해도 그만이고, 제출 못하면 그만이다.

3. 가족 ? 동거인의 상황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연령	동거여부	직업	월수입
이남선	남편	45세	동거 · 별거	대리운전	1,000,000원

이명희	딸	16세	<input type="checkbox"/> 동거 · <input type="checkbox"/> 별거	고등학생	원
이남주	아들	9세	<input type="checkbox"/> 동거 · <input type="checkbox"/> 별거		원

☆ 가족·동거인 중 수입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2항과 마찬가지로 급여명세서사본,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가족의 범위는 부부와 자녀이다. 미혼의 자녀는 부모와 미혼의 형제가 가족의 범위에 포함될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미혼이지만 심리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경우에는 부모, 형제를 쓰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그것은 혼자서 주민등록이 된 것 여부와 상관이 없다. 반면에 부부와 자녀로 구성되는 핵가족이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가족인 사람이 있다. 이 경우에는 적어 준다. 즉 생산과 소비를 공유하는 단위에 포함되는 지 여부를 따지면 된다.

가족의 수입이 있으면 과산 신고를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강요하면 한 사람이 망하면 가족 전체를 파탄에 빠트리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다만, 배우자의 수입이 많은데 채무자가 ‘생활고’로 빚이 누적되었다고 쓴다면 무엇인가 상당히 이례적인 사정이 충분히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4.

거주를 시작한 시점 (2005 년 10 월 20 일)

거주관계 : 아래 ㉠ - ㉨ 중 선택 ()

- ㉠ 임대 주택(신청인 이외의 자가 임차한 경우 포함)
- ㉡ 사택 또는 기숙사
- ㉢ 신청인 소유의 주택
- ㉣ 친족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
- ㉤ 친족 이외의 자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
- ㉨ 기타 ()

㉠, ㉡항을 선택한 분에 대하여,

관리비를 포함한 임대료 (300,000 원) 임대보증금 (7,000,000 원)

연체액 (원)

신청인 이외의 자가 임차인인 경우라면 임차인 성명 (이미현 / 딸)

㉠, ㉡항을 선택한 분에 대하여,

소유자 성명 () 신청인과의 관계 ()

☆ ㉠ 또는 ㉡항을 선택한 분은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또는 ㉣항을 선택한 분은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 또는 ㉥항을 선택한 분은 소유자 작성의 거주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이 필요한 경우는 다른 사람 명의의 주택에 사는 경우이다. 채무자 자신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했던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앞의 재산목록에 첨부한 바 있으므로 중복되게 준비할 필요가 없다.

5.

소득세 미납분 (없음 , 있음 - 미납액 원)

주민세 미납분 (없음 , 있음 - 미납액 원)

재산세 미납분 (없음 , 있음 - 미납액 원)

의료보험료 미납분 (없음 , 있음 - 미납액 원)

국민연금 미납분 (없음 , 있음 - 미납액 원)

자동차세 미납분 (없음 , 있음 - 미납액 원)

기타 세금 미납분 (없음 , 있음 - 미납액 원)

세금과 기타 공과금은 면책의 대상에서 빠진다. 채무자로서는 국세청과 기타 공공기관의 선의에 의존하여 살 길을 찾아야 한다. 조세의 경우 실제로 재산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면 5년 정도 지나면 결손처분을 한다. 의료보험료나 국민연금의 경우 빈곤층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탕감 조치를 가끔 취한다. 적절히 확인하여 독촉장에 따라 대충 적어준다. 증빙은 필요 없다. 어차피 면책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파산 법원이나 채권자로서는 큰 관심이 없다.

가

가계수지표 (2006. 4.월분)

수입			지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급여 또는 자영 수입	신청인	1,400,000원	주거비(임대료,관리비 등)	300,000원
	배우자	1,000,000원	식비(외식비 포함)	600,000원
	기타()	원	교육비	400,000원
연금	신청인	원	전기· 가스· 수도료	50,000원
	배우자	원	교통비(차량유지비 포함)	300,000원
	기타()	원	피복비	250,000원
	생활보호	원	의료비	100,000원
	기타	원	기타(통신비)	200,000원
	수입합계	2,400,000원	지출합계	2,200,000원

개인적인 지출이 아니고, 가족 전체의 수입, 지출을 현금주의로 따져본다. 정의상 수입합계가 지출합계보다 작을 수 없다. 일시적으로 빌려 온 돈 또는 얻어 온 돈은 기타 란에 적어 준다.



Q 친정에서 하는 건설업체에서 10여년간 근무했습니다. 의사와 결혼하였고, 2자녀를 두었습니다. 저는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대주주 가족이었기에 법인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IMF 사태 무렵 회사는 부도가 났고, 3억원 정도 보증채무가 남았습니다. 남편이 병원을 개업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60평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만, 부도 나기 전에 집을 담보 잡혀 3억원 정도 친정에 지원해 주고 무일푼으로 일어난지라 더 지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재기를 위하여 파산 신청을 생각해 보았는데, 남편에게 5억원 상당 재산이 있어 그것으로 갚으면 되지 않느냐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 박준희(43세).

A 법인의 보증채무였다면, 원칙적으로 면책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물론 보증을 해 주고 특별한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또 법인의 부도 무렵에 재산을 도피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사례에서는, 가정이라는 사실상 하나의 경제 단위를 지지하는 배우자가 자력을 가지고 있어 배우자가 채무를 대신 갚아 줄 수 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부부공유의 재산제도를 두고 있지 않은 우리 민법상으로는, 부부라도 재산문제는 각자의 책임 하에 처리합니다. 따라서 채무가 배우자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 부부와 자녀로 구성되는 ‘가정’은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하나의 통합된 단위인 것이고, 법은 이런 사정을 고려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일상가사에 관한 행위입니다.

전형적으로 생활비, 교육비와 같은 지출을 위하여 부부 일방이 채무를 부담하여 가정이 유지되었다면, 상대방도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민법의 원칙은 파산제도의 실무에도 투영됩니다.

가족의 생활은 일상가사이기에 경상적 지출로 인하여 채무가 누적되는 경우에는 부부가 같이 파산으로 오는 경우가 많지만, 어떤 경우에는 채무를 한쪽으로 몰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인은 5천만원의 빚을 지고 있지만, 남편은 1억

원의 집을 가지고 있지만 부인 빚 갚아 주기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파산 법원은 부인의 빚이 늘어나게 된 원인에 주목합니다. 그 채무 증대의 원인이 가정의 유지, 보존을 위하여 사용된 식비, 자녀교육비, 주택자금대출 상환금 지출 때문이라면 부인이 빚을 저서 남편이 재산을 축적한 상황이라고 보아 파산과 면책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준희 님의 경우에는 일상가사와 상관 없는 원인으로 빚이 발생하였기에 남편이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파산, 면책에 원칙적으로 장애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언제나 예외적인 상황은 발생합니다. 채무자가 빚을 저서 다른 곳에 이익을 주었고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누리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부도 무렵 친정의 도움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면 파산법원은 심리를 까다롭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합당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

채무증대경위의 작성은 쉽지 않다. 또 심리적으로 위축된 채무자는 자신에게 닥친 상황이 특이하다고 생각하기에 선뜻 ‘자서전’ 집필에 나서지 못한다. 물론 파탄의 원인은 여러가지이고, 채무자의 사정도 제각기 다르기에 맞는 말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유형은 파산 전문가들에게는 일상적인 것인지를, 진지한 상담을 오랜 시간 받고 싶은 사람의 기대는 충족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와 같은 흔한 사례는 다만 전형일 뿐이며 현실의 채무자는 여러 요인이 복합될 수 있다. 이하의 유형화된 사례를 자신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 지 따져 보고 채무증대경위 작성에 참고해보자.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부채를 물려 받는다. 사람이 죽은 후에 유산으로 재단을 형성하여 죽은 사람의 채무가 청산된 뒤에 유족에게 남은 재산을 인도하는 법제에서는 비자발적으로 채무를 물려 받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법제는 사람이 죽는 바로 그 순간 상속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즉 죽은 사람이 살아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과 부채가 사망의 순간에 모두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거듭된 헌법불합치결정에도 불구하고 대체입법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물론 현행 민법 하에서는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안전장치를 활용할 기회를 놓치고 채무를 상속한다. 법률에 대한 무지 때문이기도 하고 또는 설마 빛이 있었을까 하는 안이한 생각 때문이기도 하다.

비행기도 추락하며 도시가스관도 터진다. 지하철에 불이 나기도 하고 백화점이 무너지기도 한다. 따뜻한 남쪽 나라로 휴양을 갔다가 해일에 휩쓸리기도 한다. 사람들은 이 사고가 나에게서는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다. 항구에 돌아오지 않는 범선의 이야기는 문학작품의 소재이기도 하다.

이한우 씨(34세)는 갑 회사에 고용되어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작업 도중 과실로 지나가던 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한영우 씨를 보지 못하고 타고 넘어가 다치게 하였다. 이한우 씨는 잘못을 피해자에게 빌고 3,000만원을 합의금으로 배상하고 사건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피해자는 을 회사가 가입한 산재보험에 의하여 치료를 받고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받았는데, 박달정형외과, 조선병원, H대학부속병원에 무려 3년 이상 입원, 통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았고, 특히 대학병원은 마음껏 검사와 진료, 입원치료를 시행하였다. 결국 치료비가 3억원이 넘게 청구되었는데, 관할 공단의 관계자는 심사를 게을리하여 제한도 하지 않고 모두 지급하였다. 그 후 공단은 이한우 씨가 사고를 저지른 자로서, 갑 회사가 그 사용자로서 이를 전부 상환할 책임이 있다고 3억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50%의 과실을 인정하여 1억 5천만원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갑 회사는 사실상 실체가 없고 업주는 행방불명이 되어 이한우 씨가 꿈쩍없이 구상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처지이나, 이한우 씨에게는 이렇다 할만한 돈이 없다.

그런데, 피해자로서도 별로 잘된 것이 없다. 사고 전에 기술자로 월 200만원의 공식적 수입을 올렸지만, 비번날과 휴일에 철공과 도장공으로 부업을 해서 100만원을 더 벌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 학자금융자를 받아 학교를 다녔고 부모님의 병원비를 낸 것 때문에 3,000만원 정도 빚이 누적되어 있었다. 역시 가난한 집 처녀를 만나 결혼해서 아이를 둘 낳고 6식구가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의 셋방에 살다가 이사 다니기에 지쳐 건설업자의 월세 사는 기분으로 사면 된다는 말에 9,000만원 분양가 집을 8,000만원의 용자를 끼고 샀다. 물론 은행에는 분양가 1억 2,000만원짜리 계약서가 제출되었는데, 은행도 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이 있기 때문에 심사도 제대로 안한 눈치이다. 그런데, 부상으로 인하여 작업 능률이 떨어지니까 회사를 더 다닐 수 없게 되었고, 부업도 손을 놓았다. 산재급여는 생활비와 이자로 다 썼고, 일부 권 목돈은 이런 저런 명목으로 다 나가 버렸다. 이제 일할 수 없게 된 마당에 빌라는 은행 용자금 8,000만원보다 훨씬 아래로 내려가버렸고, 신용대

출 채무 3,000만원도 그대로 남아 있다. 이제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해서 월 90만원 정도 받지만 솔직히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고 채무를 누적하고 있다.

사유재산제도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 또는 시장경제에서 어떤 물건을 사고 안 사고는 개인의 선택에 맡겨진다. 기업 또 개인은 시장의 수요로 나타나는 사회적 선호를 만족시키는데 대한 보상을 얻는다. 그런데 9.11테러나 조류독감의 유행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시장의 수요는 급격하게 줄 수 있고, 또 출산율의 감소나 컴퓨터의 보급 같이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변천은 천천히 수요를 감소시킨다. 물론 어느 경우나 생산비가 커서 가격 인하를 감당해 낼 수 없는 한계기업이 먼저 도태된다. 보다 싼 가격으로 생산하는 기업은 생존하여 계속 소비자에게 봉사한다. 지진이나 해일, 태풍과 같이 물리적인 변동 없이 우리가 겪은 가장 급격한 충격은 아마도 1997년의 동아시아경제위기일 것이다. 2001년의 9.11테러도 국제적인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손상하면서 많은 기업에 영향을 주었다.

최성현 씨(49세)는 1995년에 대기업 부장으로 퇴직, 퇴직금과 저축 2억원으로 제조회사를 차렸다. 10억원으로 설비를 마련하며 집을 담보로 돈도 빌렸다. 처음에는 이익을 조금씩 내더니 1997년의 동아시아경제위기를 맞아 환율이 폭등하고 은행 금리도 20%를 넘어 위기를 맞았다. 모기업의 파산으로 납품대금까지 떼였고 빌린 돈으로 위기를 넘겼지만 빚이 늘어나 이자부담은 더해 갔다. 부동산 값이 반 이하로 떨어지자 담보대출도 연장이 어려워졌고, 사채도 돌려가면서 이자를 상환하며 얼마간 버텼지만 2001년의 9.11 테러의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쫓딱 망했다. 집은 헐값에 경매로 넘어갔고 그래도 10억원 정도가 빚으로 남았다.

광우병 사태도 급작스러운 수요감소와 가격상승이라는 이중의 충격을 주었다. 장경애 씨(45,여)는 2002년 집을 처분하고 창업자금을 대출 받아 골프장 옆에 갈비집을 열었다. 2003년 4월까지는 주말과 여름에 그런대로 장사가 잘 되었다. 하지만 2003년 여름 내내 주말마다 비가 와서 손실을 보아, 그 전에 저축한 자금을 모두

축냈다. 2004년 1월에는 광우병 파동이 있어 갈비집 전체가 힘들었고 이자 부담이 있었던 장경애 씨는 빚을 누적하였다. 그런데 질 좋은 미국산 고기가 수입 되지 않으니 고기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 원가부담이 커졌고 그나마 소비자들도 불황에 돈을 쓰지 않았기에 값을 올려 받을 수도 없었다. 견디다 못해 2004년 11월에 폐업하고 나니 밀린 임대료, 임금, 물건 값을 갚고 나니 보증금 300만원 월세 20만원의 집으로 옮겨 갈 수 있었고 그래도 7,000만원이 빚으로 남았다. 학교앞 분식집을 창업하고 있다가 매점이 잘 안되는 것을 걱정한 교장선생님이 교문을 닫아거는 바람에 한 순간에 망했다는 사람의 이야기도 비슷하다.

사회의 인구학적 특성도 수요에 영향을 준다. 이나영 씨(45세)는 88년도에 강원도의 한 소도시에서 유아용품점을 개업하였다. 속칭 386세대라고 불리는 베이비붐 세대의 끝자락에 걸친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곧이어 커플당 2,3명의 자녀를 생산하던 시기였다. 자신도 아이를 낳아 키웠고 이나영 씨 세대가 6남매였기에 사람들은 둘만 낳기라는 정부 홍보대로만 하여도 수요는 꾸준하리라 기대하였다. 대단히 영업이 잘 되었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10년 정도 운영하여 아이들을 키웠다. 그런데, 외환위기 무렵을 전후하여 매출이 서서히 줄어들었는데, 이나영 씨는 이것이 전국 어느 국민이나 겪는 불경기인 줄 알았다. 그 와중에도 지방 소도시의 인구는 줄어들었고, 또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줄어들었다. 그 동안에 건물주의 도산으로 인하여 가게 보증금을 새로 마련하여 이사하느라 거액의 손실을 보았고 친정어머니의 입원, 남편과의 사별로 인하여 부채가 늘어났는데 줄어드는 매출로는 빚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졌다. 적금과 보험을 해지하고 영업이 좋을 때 사 두었던 주식도 처분하여 채무를 갚았지만 그래도 빚이 남았다. 최근 가임여성 1인당 1.16명을 낳는다는 보도와 출산율 저하를 이유로 분유회사의 주식을 외국인투자자들이 모두 처분해서 반토막이 났던 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야 이나영 씨는 이제 신생아를 상대로 하는 자신의 사업을 접을 때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이제 단일민족으로서의 이 나라의 미래가 없는 것이다.

고학으로 의과대학을 졸업하여 산부인과 전문의가 된 한재영 씨(50세)도 마찬가지로

였다. 대학에 남으라는 권유를 뿌리치고 3억원을 빌려 중소도시에 개업하였다. 명성을 빌려 빚을 갚고 안정을 찾을 무렵 산모가 사망한 사고가 생겼는데 불가항력이라는 항변은 안 통하고 마녀사냥 하듯이 의사의 책임이 없음을 증명하라는 등 강제적인 분위기에서 조정이 이루어져 대출을 받아 1억 5,000만원을 배상했는데도 죽은 환자 남편이 병원에서 계속 행패를 하여 문을 닫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그 와중에 증권투자, 약간의 외도로 약간의 빚을 졌는데 그럭저럭 감당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인근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 되어 환자가 줄어 결손을 보기 시작하였지만, 다시 입주되면 회복되리라 생각하고 채무를 늘려가면서 버텼는데 출산을 잘 하지 않는 쪽으로 풍조가 변해 하루 10만원도 수입을 올리지 못한 지 10개월 만에 5억원 넘는 빚을 남기고 손을 들었다.

한수동 씨(58세)는 활자를 뽑아 판 위에 배열하는 식자공으로 10년 동안 신문사에서 일하다 외동딸을 대학에 진학시킬 때 퇴직하였다. 퇴직금 5,000만원으로 아파트 단지내 정육점을 인수하면서 급한 마음에 권리금을 사채로 충당했다. 월세와 이자로 매월 100만원이 나갔지만, 살만했으나 주변에 대형할인점이 들어서면서 손님이 줄었다. 여기에 광우병, 구제역 파동이 겹치며 매출이 줄어 전세집을 빼서 월세로 옮기며 빚을 갚았으나 그래도 매출이 개선되지 않아 이제나 저체나 하는 마음에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속칭 돌려막기로 버텼지만 빚이 늘어나 7,000만원이 되었다.

: , ,

가진 것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이 인적 자본을 구속하는 선택을 하는 것은 어리석다. 어떤 사람은 돈을 빌려서 투자라고 하는데, 그 투자라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지나고 나면 속았음을 발견하게 된다. 투자에 대하여 약속된 수익율은 허황될 정도로 크다는 것이 바로 사기였음을 시사한다. 군인, 공무원, 교사의 퇴직금은 먼저 본자이 임자라는 말이 있듯이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사기꾼이 학교 동문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 어떤 이는 친족관계, 친분관계를 믿고 아니면 결혼 약속을 믿고 그저 야깁 없이 준다. 팔아 넘겨지는 여자의 이야기는 흔하다. 기본적인

으로 돈을 빌려 가지고 있다가 도둑질 당한 것과 같은 구조이다. 형제라도, 부모자식간이라도 명의를 빌려 주는 것은 내 인생을 형제 부모자식에게 송두리째 맡기는 것이다. 남자친구에게 카드를 맡기는 것 이것은 일종의 인신매매이다. 이것은 범죄이다.

이유나 씨(28세)는 여상을 졸업하고 비교적 조신하게 관변 단체에 다녔다. 사무실에서는 전화를 받고 복사를 하고 은행 심부름을 슬슬 다녔을 뿐 편하게 지냈지만, 봉급이 적고 따분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 동창이 찾아 와서는 다짜고짜 데리고 간 곳이 한수키토랜드라는 다단계 회사 교육장이었다. 처음에는 뿌리치고 집으로 왔지만, “제발 내 얼굴 보고 자리만 한번 채워달라”는 간청에 주저 않았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이 강사로 나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면서 선진기술이라고 주장하며 당신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고 외친다. 처음에는 반강제적으로 남자 친구에게 끌려다니다 싶이 했는데,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선남선녀들이 많이 있었다. 설마 이 사람들 전부 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는 힘들었고, 영업과 강의 해외 세미나 등으로 천천히 인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며 이유나씨는 이 사업은 아주 중요하며 자신도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다만 판로와 사람 영입이 문제였지만, 실적을 올리고 장래에 판매할 재고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물건을 스스로 샀다. 회사에서도 은근히 부추기는 경향이 있어 결국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느라 다시 현금서비스를 받아 돌려막기를 시작하였고, 몇 달만에 그 와중에 친 언니와 이모까지 다단계에 끌어들이고 서로의 카드로 자금을 융통하였다. 카드 대금 결제를 못하자 젊은 여자를 상대로 한 대금업자에게서 대출도 받았고, 카드로 물건을 구입하고 즉시 현금으로 되파는 카드깡도 했으나 결국 거액의 빚만 졌다.

사업을 하던 이영준 씨는 비교적 유복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비쳐졌다. 안정되지 못하고 이 직장 저 직장을 떠돌던 후배 김한수 씨(43세)는 이영준 씨에게 몇번 용돈을 받아 써서 늘 고맙게 생각하던 처지였는데, 어느 날 이영준 씨가 자신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바깥에 나서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서 용산 전자상가에

서 도매업을 하는데 명의만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김한수 씨는 선배에게 신세진 것도 있었고 앞으로도 용돈은 타 쓸 수 있겠다 싶어서 승낙하였고 김한수 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자제품 도매업체를 설립하여 이영준 씨의 동생이 경영하였다. 몇 달간 영업도 되는 듯했고, 김한수 씨도 고맙게 용돈을 받아 썼다. 어느 날 채권자들이 찾아와서는 5억원대의 물품대금을 내라고 하였고 김한수 씨는 일단 거절해서 돌려 보냈지만 결국 채권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다. 김한수 씨는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이라는 항변을 소송에서 제출하였지만, 판결 이유에 의하면, 명의만 빌려 주었더라도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으면 제3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고 다만 그 책임을 이행하면 명의를 빌려간 이영준 씨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김한수 씨는 이영준 씨가 자기 명의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하고는 자신이 속칭 바지로 이용당하였음을 깨달았다. 세무서에서도 억대의 세금이 연체되어 있다고 납부하라고 한다.

미술대학을 다니던 이은주 씨(24세)는 인터넷 채팅으로 지방의 P의과대학에 다니다가 가정형편으로 일시 휴학을 하고 학비를 버는 중이라는 주한식(27세)을 만나 사귀게 되었다. 두 사람은 곧 가까워졌고 이은주 씨는 주한식의 집에 동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드나들었다. 주한식은 의과대학을 마치고 난 후의 장래를 위하여 어려운 현실을 이기고 말겠다는 결의를 수시로 말하였고 이은주 씨는 장차 주한식의 반려가 될 희망을 갖게 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어려운 시절이라서 학자금 대출이 정책적으로 쉽게 실행되었고, 또 학생이라도 신용카드를 만들기에 어려움이 없었는데, 주한식의 은근한 요구로 이은주 씨는 학자금대출을 받아 주었고 또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기도 하였는데, 주한식은 이은주 씨 앞으로 차를 뽑아 몰고 다니고 단란주점에 가는 사치를 부렸다. 몇 달 뒤 주한식은 이은주 씨와의 만남을 피했고 카드회사의 빚 독촉에 의심이 들어 알아보니 주한식은 의과대학생도 아니었고 여자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상습적으로 벌인 파렴치범이었고 이은주 씨 앞으로 이미 7천만원이 넘는 빚이 발생하여 있었다. 어떤 추심원이 전화를 하여 빚독촉을 하기에 사정을 설명

하였더니 긴 말 하지 말고 손 쉽게 몸이라도 팔아서 돈을 갚으라고 전화를 한다. 그렇게 하면 소설에 나오는대로 애인이 사창가에 팔아넘겨진 꼴이 되니 이은주 씨는 기가 막혔다.

ROTC 장교로 임관하였다가 지휘관의 자질이 있으니 남으라는 선배의 권유를 받아 20년 이상 복무한 이종복 씨(45세)는, 전역전 적응기간을 받아 쉴 때 친구의 소개로 해외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회사에 입사하였다. 처음 할 일은 많지 않았지만, 조직생활 경험과 지휘관 경력을 살려 경영진에 합류하라는 사람들의 부추김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회사는 운영자금과 개발프로젝트를 위한 투자금의 충당을 위하여 은행의 대출을 받는데 이종복 씨가 대표이사로서 보증을 하였고 나아가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었다. 1년 정도 후에 회사는 수십억대의 채무를 남긴 채 부도가 났고, 은행은 경매를 실행하여 이종복 씨는 집을 날렸다.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였던 자들은 다 빼 먹고 달아나고 이종복 씨는 거액의 보증빚 더미 위에 올라앉았다. 군인 퇴직금은 먼저 본 자가 임자라는 말을 하며 아내가 사생결단을 하며 만류하였기에 퇴직금을 일시에 받지 않고 연금을 선택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지금 이종복 씨는 생각한다.

S사에서 월급 130만원을 간신히 받는 직장인인 한가은(24세) 씨는 열심히 살며 절약하여 결혼자금을 모으고 있다. 그런데, 한가은 씨의 언니 한영은 씨(28세)는 다단계에 빠지고 남자를 알게 되면서부터 10여장의 카드를 발급 받아 돌려막기를 시행하다가 결국 모두 연체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오성카드 회사의 직원은 한영은 씨에게 기존의 연체된 빚을 새로 대출을 받아 갚는 것으로 정리하자고 권유하였다. 즉 한영은 씨에게 오성카드가 1500만원의 대출을 연리 20%에 실행하는데, 이 대출금은 한영은 씨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오성카드 채권 1500만원의 상환에 쓰인다는 것이다. 대환이라고 불리는 이 대출 실행에 있어서 오성카드는 한영은 씨의 신용이 좋지 않아 이자율이 높는데, 이러한 불리한 점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실행하

는 것이니 보증인을 세우라고 집요하게 요구한다. 한영은 씨는 친 동생인 한가은 씨에게 벌어서 언니가 반드시 갚아 주라며 대환대출의 보증인이 되기를 요청한다. 한가은 씨는 오성카드 회사에 나가 대출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을 하였고, 이 절차는 1분도 걸리지 않았다. 한영은 씨는 알지카드에도 똑같이 700만원 정도의 대환대출보증인으로 한가은 씨를 보증인으로 세웠고, 한가은 씨는 만져 보지도 못한 돈으로 인하여 보증채무로만 2200만원을 부담하게 되었다. 한가은 씨는 대가 없이 변제를 받은 대기업의 가증스러운 행위의 희생이 된 것이다.

개똥 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삶을 누리는 것 이상의 가치가 어디에 있으랴. 게다가 의학의 발달은 자연적 죽음을 오랜 기간 동안 이연한다. 상당히 오래 전부터 당뇨나 고혈압은 의학적인 지혜에 따르는 한 더 이상 심각한 질병이 아니게 되었고 암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질병에 대하여 치료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인간 활동이 그러하듯이 의술의 시행에도 많은 비용이 든다. 가난한 사람이 이러한 치료를 선택하기 위하여는 빚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사회적 죽음의 원인이 된다. 과도한 의료비가 본인 또는 가족 또는 둘 다를 재정적 파탄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이다. 물론 과소비의 한 예이겠지만, 자신을, 자식을, 배우자를, 부모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파는 행위에 대하여 사회적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상주의자들은 모든 의료를 무상으로 하자고 또는 모두 공적인 보험으로 보장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상의료를 채택한 체제에서 ‘무상’은 전면적으로 또는 대부분 시행되지만 막상 제대로 된 ‘의료’가 부족하거나 제때 공급되지 않거나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것도 발본적인 해법은 아닐 것 같고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파탄에 이르는 사례는 지속될 것 같다.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한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귀찮은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을 비유하는 것이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옛날에 가난한 사람이 제사를 지

낸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것은 한마디로 과소비이다. 지금 같이 식자재가 풍부하지 않던 시절 제사는 가난한 자에게 엄청난 부담이었다. 저승으로 간 조상의 귀신을 모시기 위하여 제사를 지내도록 사회규범을 설정하였던 것에는, 가난한 자가 잉여의 저축으로 재산을 모아 성장하지 않도록 하려는 지배층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었을 지도 모른다. 마치 중국이 주변부인 조선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계속 조공을 강요하여 잉여의 축적을 계속 방해하여 왔었던 것처럼.

어떤 양민이 타향에서 객사한 부모의 시신을 찾아오는 비용을 자신이 앞으로 노비가 되고 자손만대 이에 따르기로 하고 부자에게 돈을 꾸어 마련해서 결국 효도를 하고 종이 되었다는 조선시대 후기의 기록이나, 공양미 삼백석에 자기 몸을 팔아 부모를 봉양하였다는 효녀 심청의 이야기, 그리고 조선 말기에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을 정도로 이웃에 빚을 지고 있었다고 캐나다 선교사가 기록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의미가 크지 않은 혼사와 장례에 많은 지출을 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던 것 같다.

없는 처지에 이와 같은 의식은 가난한 자에게 큰 부담이 되며, 신혼살림 마련을 위하여 빚을 지는 경우도 제법 있다. 한편, 친족, 친지 사이에 축의금, 부의금을 내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 하에서 체면을 찾기 위하여는 이들 지출도 확실히 가계의 수지를 압박하는 요소로 확실히 작용한다.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의식의 간소화와 실리의 추구로 전환하지 않는 쉽게 바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미성년인 자식을 부모가 양육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가족제도를 부인하지 않는 한 당연한 의무이다. 가지지 않은 자에게는 이것도 부담이고 사람에 따라 빚을 늘려가는 요인이 된다. 세계 최저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줄어드는 것은 생활고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아이를 낳아서 버리면 사회가 키워야 하니까 버리지 않고 키워주는 이상 엄마가 원하면 양육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나 3명 이상 아이를 낳은 여자에게는 보험료 불입없이도 노령연금을 주는 안전망을 마

런하는데까지 우리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윗쪽으로도 부양의무를 지운다. 언젠가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것조차 사라지겠지만 현재로서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물려받은 것이 없는 노동계급의 자녀에게는 이것이 큰 부담이 된다. 물려준 것이 없어 자식이 가난한데, 여기에 가난한 부모가 얹혀 사는 꼴이 되면 대물림을 넘어서 가난의 악화가 일어난다. 여기에 효심 깊은(그러기에 현명하지 못한) 자체가 노인의 치매 등 만성 질환에 대하여 전통적인 가정에서의 노후봉양에 집착하게 되면 노동시장에 나갈 수 있는 성인 한명이 묶이게 되고 소득을 감소시켜 사태는 더욱더 악화된다.

처음에 가지지 않고 시작한 사람은 오로지 저축으로 재산을 늘릴 수 있다. 즉 버는 것에서 쓰는 것을 제외하고 남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산을 상속받거나 부자와 결혼하여 아니면 기타의 방법으로 증여를 받거나 복권에 당첨되거나 도박을 통하여 또는 절도, 강도, 뇌물수수 같은 범죄를 통하여 돈을 얻는 것 밖에 없다. 모두 예측불가능이거나 가능성이 희박하고 의식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한다고 해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모범적으로 소득보다 적은 소비를 함으로써 저축을 하여 자산을 형성하거나 채무를 줄인다. 현재를 희생하고 장래를 기약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장래에 벌어들여 갚을 생각으로 현재의 소비를 늘린다. 즉 장래를 희생하고 현재를 즐기는 것이다.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금융을 통하여 결국 저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한다. 소비를 많이할 수 있게 하는 재원은 일단 주로 할부금융 또는 신용카드의 형태를 띤 소비자금융으로 조달되는데, 금융기관의 자금원천은 저축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온다. 그러다가 만성적으로 소득을 초과하는 소비를 하는 사람은 빚이 누적되어 필연적으로 경상소득으로 상환이 어려워지게 되고, 한 채권자에게서 빌려 다른 채권자에게 원금을 나중에는 이자를 갚는 돌려막기를 실행하고, 그리고 심

한 경우에는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게 고리로 돈을 주고 기생하는 사채업자 (loan shark)의 먹이가 된다.

어떤 사람들은 매월의 신용카드 채무액이 통제가능한 범위를 넘어선다. 다수가 일정한 안정적 직업이 있고 전체적으로 상환실적이 좋지만 신용카드 빚을 갚기 위하여 꾸준히 돌려막는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재정적 안정성을 회복할 수 없게 된다. 근검절약을 미덕으로 여기는 청교도적인 관점에서는 이들을 비난할만 한다. 잘못을 졌으면 그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거시적으로 보면 이들은 자신들의 현명하지 못한 선택의 결과 다른 사람에게 기여한다. 능력을 넘치는 소비를 함으로써 물건을 파는 대기업과 주유소, 식당, 건물임대업자의 수익에 기여한다. 또 소비자 금융의 구조에 빠짐으로써 현대의 금융기관의 수익에 기여한다.

정비선 씨(42세)는 꾸준히 빚을 늘려왔다. 개인 변호사 사무소의 직원으로 성실하게 다녔지만 부침이 심한 업종의 특성상 3, 4년 만에 한번씩 직장을 옮겨 다니느라 기복이 있었고 부수입을 챙기는 요령도 없어 월 수입은 지금도 150만원 정도이고 이 돈으로는 전업 주부인 아내와 중학교, 초등학교에 다니는 세 아이의 생활비, 교육비 대기 빠듯하다. 직장생활 시작할 무렵부터 신용카드가 있었고 둘째 아이가 유치원 다닐 무렵부터 생활비에 초과지출이 있어 현금서비스를 받은 이래 월급을 받으면 카드 대금을 메우며 살았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급여 만으로 청구서를 감당하기 힘들었고, 다른 카드를 발급 받아 현금서비스를 빼서 결제하기 시작했다. ‘돌려막기’가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곧 결제하지 못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가졌지만, 한두달만 더 쓰고 만다는 생각으로 지출을 줄이지 못했고 돌려막기로도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날 현금서비스 한도는 ‘0’으로 조정되었다는 신용카드회사의 통지를 받았고, 정비선 씨는 모든 채무를 연체하였다.

힘들기는 하지만 밀리지 않고 갚아가던 사람들이 돌발적인 사태가 갑자기 발생하여 정기적인 채무를 못갚게 되는 상황이다. 그 전형은 가장의 실직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함정이 있다. 둘 중 하나가 실직하면 가장의 실직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업주부가 평소 가정을 지키고 비상시에 배우자를 대신하여 취업에 나서는 가정보다 더 취약하다. 아이를 맡겨야 하기에 어린 아이를 유치원에 맡겨야 하는데, 종종 외국어를 가르친다면서 100만원까지 한다. 조기교육이 중요하다고 아끼지 않는다. 어릴 때는 장난감, 의복 등 지출이, 중고교를 보낼 때에는 공교육이 변변치 못하니 학원과 과외로 사교육비를 지출한다. 좋은 학군을 찾아 전세금, 월세가 장난이 아닌데, 나중에 값을 생각으로 빚을 얻어 이사를 한다. 심지어는 유학도 보낸다. 실제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는 별 희망도 없이 외국 학교에 다니는 한국 학생들로 넘쳐난다. 그러다가 갑자기 실직하면 대책이 없다.

명문 대학을 나온 IT업종에 발을 들여 놓은 조현호 씨(39세)는 6년간의 직장생활 동안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을 정도로 치열하게 살았다. 물론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리더십을 인정 받았다. 물려받은 것이 없는 처지에 자기 계발에 투자하느라 월세보증금 3천만원 밖에 재산을 모은 것이 없었던 조현호 씨는 한국에 신규진출하는 외국계 IT 기업에서 원래의 직장에서 주던 것보다 2배가 넘는 연봉 1억 5천만원을 제시하며 당기자 미련 없이 이직하였고, 행복하기 짝이 없었다. 조현호 씨는 인적 자본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기에 잘 버는 돈으로 아이들에게도 과외비 지출을 아끼지 않았고 그동안의 대기업 경력으로 쌓인 신용으로 2억원의 대출을 조달하여 2억 5천만원을 들여 아파트를 샀다. 자동차도 품위에 맞는 것으로 구입하였고 그 중 3천만원을 할부로 조달하였다. 안정적인 수입을 예상하면 두 아이를 2달간 외국에 연수 보내는 것도 큰 부담이 아니었는데, 외국의 본사에서 한국 관련 사업을 3개월 만에 포기하는 바람에 조현호 씨는 실직하였다. 곧 취업의 기회가 다시 오리라는 기대에 생활수준을 줄이지 않고 1년 정도 지내는 사이에 업계 불황이 닥쳐 조현호씨는 수입을 얻지 못했고, 자동차를 처분하여 할부금은 정산했고 신용카드도 돌려막기도 했지만 주택관련 대출금을 막지 못했고 아파트는 빚보다 적은 1억 7천만원에 경매되고 1억원 정도를 연체하게 되었다.

맨주먹으로 일어나 사업을 이룩했다가 외환위기로 모든 것을 잃었다가 각고의 노력으로 재기한 성공신화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무렵, 정부는 서민들의 창업을 장려했다. 고민근 씨 (35세)도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받아 가계은행으로부터 창업자금 대출 3천만원을 받고 모아 놓은 돈 1천만원을 보태 인터넷쇼핑몰을 시작하였다. 이 돈은 모두 사무실을 빌리고 전산시스템을 갖추는 투자비용으로 들어갔는데, 막상 여유자금이 없었지만 고민근 씨는 일단 신용카드를 받아 급한 운영자금으로 쓰고 매출이 일어나는 대로 갚을 수 있었다. 몇 달 동안은 일시적으로 여유자금도 생겨 고민근 씨는 아는 후배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일상적인 업무를 보게 하고 자신은 평소 관심 있던 연예 사업에 기웃거리며 기회를 찾았다. 그러는 사이, 매출이 줄었다. 가격경쟁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자금이 풍부한 경쟁자들이 도매상으로부터 현금구매로 조달가를 낮추어 박리다매 식으로 싸게 팔았고 어떤 업자는 아예 조달가 이하로 팔았다. 어떤 업체는 물품을 구입하여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염가로 다른 업체에 덤핑을 쳤고 그 다른 업체는 도매상으로부터 산 경우보다도 더 싸게 시장에 내 놓았다. 제조업자가 처음에 생각한 유통경로대로 해 온 고민근 씨의 경우에는 도저히 경쟁력이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고민근 씨도 어떤 경우에는 도매상으로부터 받은 물품을 다시 ‘깡’으로 처분하여 현금을 만들어 다시 다른 급한 물품을 조달하는 곡예도 부러 보았으나, 이것은 빚을 늘릴 뿐이었다. 곧 경쟁이 줄고 좋아지겠지 하는 생각에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동원해가면서까지 물품을 구입해서 이것을 끝까지 투쟁하다가 결국 고민근 씨는 종업원 임금 300만원을 2달 밀렸고 또 비정상적인 매출이었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어디론가 가야 했으므로 부가가치세도 1천만원 정도를 체납한 채 쇼핑몰 간판을 내렸다.

민선하 씨는 젊은 나이에 은행 지점장 까지 하던 남편을 잃고 혼자 되었지만 남편과 친정 어머니가 남긴 약간의 유산을 마치 콧감 빼먹듯이 처분해 가면서 아들인 고민근 씨와 딸인 고희주 씨를 유학도 보내고 음대를 마치게 하는 등 비교적 순탄하게 키워 왔지만 마지막 남은 은행 담보대출이 짝 찬 5층 빌딩에서 나오는 월세로 은행

이자를 갚고 생활비를 뜯어 쓴다. 그런데 아들 고민근 씨가 사업을 한번 들어먹고 다시 시작하고 몇 달 뒤에 급한 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고 해서 1년 전에 은행이자를 낼 때 창구직원의 권유로 만든 신용카드를 아직도 귀여운 아들에게 건네주었다. 나중에 여러군데 신용카드회사에서 연체가 되었다고 해서 알아보니 아들은 어머니 민선하 씨가 건네 준 카드 뿐만 아니라 민선하 씨의 서랍에 있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른 카드를 여러 개 발급 받아 사용하여 무려 5천만원의 빚을 지게 하였다. 불경기라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여 급전을 조달하여 보증금 2천만원을 내 준 상황이었는데 한 카드 회사가 건물을 압류하니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압류에 공실이 생긴 상황이 되자 다른 임차인들이 월세를 내지 않아 은행대출도 상환할 수 없게 되었다. 물론 아직 시집도 안 간 고현주 씨도 오빠인 고민근 씨에게 카드를 주어 3천만원의 빚을 지게 되었다.

(LOAN SHARK)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 도리에 합당하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도 월 5부, 심지어는 월 1할의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린다. 이 정도 되면, 이 사람들이 갚을 능력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사람은 자신에게 부담이 가는 채무부터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어 이런 고리의 대출을 준 채권자는 정상적인 대출을 준 채권자의 희생하에 단기간에 이익을 회수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약탈적 대출(predatory loan)은 소규모 사채사무실 또는 일수업자를 연상하게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 조직화된 형태를 띠기도 한다.

한때의 실수로 카드 빚 500만원의 빚을 지게 된 이미정 씨(27세)는 월수입 100만원에 감당하기 힘들어 다른 카드를 발급 받아 돌려막기를 하였다. 그러면서도 약간 씩 필요한 물건을 카드로 구입하며 2년을 버티는 동안 채무는 그럭저럭 2,500만원이 되었다. 결제자금을 구하지 못하게 된 어느날 즉석에서 대출 상담하여 실행해 준다는 레이디캐피탈의 지하철 광고에 따라 사무실로 가서 급전 300만원을 대출 받아 해결하였다. 이자는 연 66%로 부담가는 액수였다. 부지런히 갚았는데도 다른 카

드 채무도 결제일이 돌아왔고 결제를 하루라도 넘기면 채권자의 전화 벨 소리에 일을 하지 못할 지경이 되자 “싼%”라고 쓴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찾아 간 사채사무실에서 시키는 대로 카드를 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상품권을 사서 맡기고 액면의 60%정도를 받아 그것으로 카드대금을 입금한다. 다음에 찾아갔을 때 사채사무실 직원은 아예 신용카드를 맡기면 일단 결제자금을 다 해 넣고 그것을 이미정 씨가 갚으라고 한다. 시간도 없어 그렇게 하였는데 며칠 뒤 결국 막지 못했고 나중에 집계해보니 1억5천만원의 카드빚이 발생해 있었다. 카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이들이 이미정 씨를 팔아넘긴 것이다.

아래 편철순서에 따라 빠진 서류가 없는 지 검토해 보자.

1. 파산 및 면책신청서
2. 호적등본
3. 주민등록등본
4.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증명서
5. 진술서 (신용카드의 종류와 수 등 해당사항이 있으면 별지를 붙이고 마지막에 채무증대경위서도 별지로 진술서의 일부를 이룬다)
6. 채권자일람표 (채권자의 주소 포함)
7. 재산목록 (처분한 재산의 내역 등 해당사항이 있으면 역시 별지를 붙임)
8. 현재의 생활상황
9. 가계수지표
10. 부속증빙서류는 4 내지 8에 나오는 순서대로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부채증명, 예금통장 사본, 보험증권과 해약반환금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남에게서 받은 차용증서 등 채권 관련 자료, 퇴직금 예상액증명서, 등기부등본과 시가증명자료, 자동차등록증과 시가증명자료, 2년간 처분한 재산에 관한 서류, 상속에 관한 서류, 수입에 관한 종합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등, 주거를 증명하는 서류(

1개의 문서를 이루는 서류에는 간인을 한다. 서류는 위쪽에 2개의 구멍을 뚫어 철끈으로 묶는다. 그 다음 법원으로 간다. 구내에 은행이 있다. 기준에 따른 송달료를 내고 혹시 인지도 파는 지 물어보고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 2,000원을 산다. 은행에서 안 팔면 구내 우체국으로 가서 산다. 그 다음 파산 및 면책 신청서 해당 란에 2,000원의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영수증은 납부자 보관용을 빼고 클립으로 철한다. 이제 법원 접수 창구로 간다. 큰 법원은 파산과에 민원실이 따로 있고, 중간 규모 법원은 종합 민원실에 파산 접수 담당자가 있다. 작은 법원은 민원실에 민사 신청

접수 담당자에게 낸다. 접수계장은 검토하고 혹은 검토하지 않고 서류를 받아 준다. 혹시 필요하면 “이것은 이렇게 하라”고 지도를 해 준다. 친절하 편이니 주눅들지 말고 신청서를 내자. 다만 무척 바쁜 사람이니 이 책에 나오는 것과 같은 이야기들을 물어 가면서 너무 방해하지 말도록 하자. 하루에도 수십번 씩 듣는 이야기를 반복하면서도 웃으라고 교육을 받은 분들이지만, 지치면 짜증스러워진다. 깨끗이 잘 만들어 온 신청에 대하여는 접수계장으로부터 오히려 잘 해왔다, 고맙다는 말을 들을 것이다. 계장은 파산, 면책 사건 접수 번호를 즉석에서 부여해 주며, 혹시 예납금이 필요하면 안내해 주니 이에 따라 은행에 가서 낸다. 송달료는 인터넷뱅킹으로 낼 수도 있고, 법원도 완벽한 신청에 대하여는 우편접수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법원이 먼 사람은 이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파산 전문가들도 사무실에 따라서는 우편접수를 주로 활용한다. 우리나라의 우편제도는 적어도 등기우편에 관한 한 매우 효율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을 믿을 수 있다. 불안하면 ‘배달증명’을 활용한다.

이제 기다림의 미학에 빠질 때다. 사건의 진행상황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다. 주소가 확실하다면 송달을 기다린다. 웬만하면 법원에 전화는 하지 말자. 무척 바쁜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그 처리에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을 기대하여야 한다. 관공서에서 하는 일이 지연되는 것은 정상적이다. 서류가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파산신청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을 묻는다. 법원이 취급하는 사건은 한두개가 아니고 법원이 특정인을 위해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줄을 서야" 한다. 아무리 채무자가 보채도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서부전선 이상 없다"는 식의 보고이다. 그리고 소설에 나오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하루 이틀이 인생의 운명을 바꾸지 않는다. 아이는 시간이 지나면 나온다. 파산 신청 후에는 생업을 찾아 종사할 일이다. 파산 신청이나 면책 결정은 벌이와 생존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다.

미국의 경우 파산의 신청이 있으면 이것은 모든 채권 회수 노력에 대하여 금지명령으로 작용한다. 본래 IMF는 이 자동 중지(automatic stay)를 포함한 파산법의 개정을 권하였지만 입법과정에서 좌절되었기에 파산 신청 이후 채무자 보호는 그다지 강력하지 못하다.

그러나 나라가 보호해 주지 않아도 백성은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매사는 보기에 따라 다르다. 앞에서 보았듯이 추심행위는 폭리를 실현하기 위한 영업사원의 귀찮은 접근일 뿐이고,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괜찮은 회사의 추심전문가들은 급여압류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추심 노력을 그만둔다. 따라서 접수 이후 금융기관에서 전화가 오면 파산 신청을 접수한 사실, 관할 법원과 사건 번호를 가르쳐 주는 것은 앞으로 전화가 오지 않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담당자는 채무자의 계정 메모에 언제 어느 법원에 파산신청, 접수번호 2006하단345와 같은 식으로 적어 놓기에 다른 직원들도 주지하게 된다.

파산신청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묻는 서류가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한다. 확인해서 주소 보정서를 제출한다. 송달이 되어야 진행이 될 것 아닌가?

고의로 송달을 받지 않는 채권자도 있다. 일반적인 소송사건에서 마찬가지로 집행관에 의한 야간, 휴일 송달을 신청해 본다. 주로 여성들을 상대로 높은 이자를 받는 금융기관들에서 본점이 아니라면서 송달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었고, 꽤 큰 전화회사에서 송달 받을 담당자가 없다면서 우편물을 돌려 보낸 일도 있었다. 이 경우 정식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대표이사 개인의 주소로 송달해 본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런 사실과 함께 대표이사 개인의 주소를 공개해 버리면, 그 회사 담당자는 해리포터 앞으로 온 호그와트 마법학교 입학통지서를 받지 않으려 애 쓰다가 편지 속 에 파 묻힌 사장의 질책을 받을 것이다.

우량 금융기관은 부실채권을 추심하느니 매각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기관은 이러

한 채권에 투자를 한다. 그래서 채무자는 파산 신청 이후 자신에 대한 채권이 매각된 사실을 알게 될 수 있다. 채권의 매각은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완성되므로 직접 매각 사실을 알리는 우편물이 온 경우에만 대응한다. 파산신청 이후 송달되기 전까지 매각된 경우라면 채권자일람표를 보정한다. 채권자에게 송달된 다음에 매각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냥 놓아 두어도 된다. 파산신청이 된 사실을 채권자가 알게 된 이후에 그것을 양도한 것이므로 그 후에 양수한 투자자는 당연히 아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맞다. 물론 법원의 진행 편의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권자를 변경하는 것은 상관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정이 오히려 기록을 복잡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법원은 심리를 열고 또는 열지 않고 파산선고를 내린다. 절차에 관하여는 친절히, 자세히 안내하는 편이므로 채무자는 시키는 대로 따라 하면 된다.

법원은 기록을 일별한 후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하여 보정명령의 형식으로 설명을 요구한다. 단순히 어떠한 사항을 문의하는 것일 수도 있고, 증거자료를 내라고 할 수도 있다. 합당한 설명과 자료를 낸다.

전부면책결정은 간단하다. 그냥, “채무자를 면책한다”고 주문에 표시된다. 이 면책의 효력은 파산신청시에 표시되었든 표시되지 않았든 채무자에 대한 모든 파산채권에 대하여 미친다. 채무자 자신이 몇몇하면, 면책이 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은 가질 필요가 없다.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은 희망을 가지기가 쉽지 않다. 그를 제기하자.

면책이 안되면 파산신청을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이야기는 틀렸다.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법원의 결정으로 ‘이 사람은 빚을 갚을 수 없었다’는 선언을 받았으니 채권자(보다는 추심원)의 관심을 아무래도 덜 받는다. 즉 채권증서의 값이 0로 선언되었으니 사 오기가 쉽다. 또 그 다음의 대안인 개인회생을 방해하지 않는다.

4

(Miscellaneous)

제7장(청산형 파산)은 개인이 현존하는 자산을 포기하도록 강제하고 그 대신에 장래의 소득을 개인이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제13장(개인회생형 파산)은 이것을 뒤집는다. 제13장의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모든 자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대신에 장래 소득의 일부(생계비를 제외한)를 포기한다." - Douglas Baird, Elements of Bankruptcy p.54

2004년 9월 23일 개인회생제도가 도입되었고, 2006년 4월 1일 통합도산법의 시행과 함께 그동안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로 적용되어 오던 회생 제도가 개인을 포함한 전체 채무자에게 확장되었다. 회생은 파산이 아닌 특별한 제도가 도입된 것이라기 보다는 파산제도의 한 변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파산채권을 처리하는 면에서 동일하나 기술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다. 그것은 파산을 뒤집은 것 또는 변형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아래 표는 파산과 회생의 특성을 대비한다. 파산은 현재 가진 것을 파산재단으로 채권자에게 던지고 파산채권은 모두 소멸한다. 즉 채무자의 장래 소득은 채권자에게 가지 않고 채무자가 사용할 수 있다. 회생에서는 채무자는 현재를 지킨다. 대신에 장래의 소득을 일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파산	개인회생
재산	희생	유지
인적자본	완전해방	일부 구속
비유	죽음+ 재생	생명연장

일단 파산절차에 의한 청산을 했다고 치고, 본래 채권자에게 던졌던 재산을 이자를 붙여서 채권자에게 상환을 제의하는 구조를 가진다. 청산을 할 경우 채무자는 영업의 계속성이나 감정적 애착을 잃게 되는데 회생으로 현재를 지킴으로써 그 이상의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채권자는 청산에 의한 것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으니 이것은 경제학적인 효율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 즉, 청산+ 신용부여=회

생으로 볼 수 있는 바, 실무상의 문제는 연불거래 일반에서 나타나는 채무자의 이행 확보가 되겠다. 따라서 개인회생은 채무자에게 장차 일정한 규칙성을 가진 소득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의 직원이 그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으며, 이론상 농민이라도 연 1, 2회의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볼 수 있다.

회생은 청산형 파산에 비하여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청산형 파산에서 제공하는 가치 이상을 지급하는 금액과 기간 산정하고, 채무자로부터 수금을 한 후 채권자에게 채무 비례에 따라 나누어주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다고 할 지 모르지만, 채권자로서도 부실채권에 매여 있는 것이 수익성이 없어서 매각하였을 때 채권자를 변경하는 문제가 생기고, 채무자가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재를 해야 할 것인가 면책을 해야 할 것인가 결정이 문제된다. 채권자들의 의견을 들을 것인가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채무자가 파산재단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회생은 채무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채권자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소액 채권 만을 변제하는 개인회생이라면 공무원 인건비, 금융기관 하드디스크 유지비용도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채무를 변제하는 윤리를 끝까지 지키기 위한 의식(ritual)을 강요하고 채무자에게도 돈을 갚는다는 허위의식을 가지도록 하는 효과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코 사회적으로 남는 계산이 아니다.

지킬 재산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중산층의 경우에는 회생형 파산을 선택하는 것이 생활의 연속성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3억원의 채무자가 시가 1억원의 집을 소유하며 거주하고 있다면, 현재가치로 1억원 이상의 금액 예를 들어 2억원을 장래 순차적으로 채권자에게 상환하고 채무를 전부 면하는 것이다. 채권자의 시각에서 보면 1억원을 탕감해 주는 것이지만, 파산을 선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1억원을 더 주는 것이다. 퇴직금이 많이 쌓여 있지만, 퇴직하기 아까운 중견 직장인도 마찬가지이다.



:

Q 15년 동안 내과를 운영했습니다. 믿기 힘들시겠지만, 환자는 꽤 많이 보았으나 아직도 내집 마련을 못하고 34평 아파트 월세를 주고 삽니다. 현금 수입이 꾸준히 들어오니 골프도 치고, 해외여행도 다녔으며, 아이 유학도 보냈으니 돈을 모으지 못하고 늘 빚을 지고 이자를 내며 살았습니다. 3년 전에 5억원의 빚이 있었는데, 벌어서 해결하려고 5억원 담보대출을 끼고 병원 건물을 8억원에 사 이전하느라 빚이 15억원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빚이 많아 금융기관도 연 15%의 이자를 적용할 정도이고 사채 이자도 있어 월 이자 지급액만 2천만원 이상입니다. 인건비를 주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 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을 청산하기보다는 채무를 재조정하고 싶습니다만, 개인회생제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답답합니다. - (최명의-49세)

A 2004년 9월에 시행된 개인회생제도는 담보된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5억원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는 개인이 이용할 자격이 있습니다. 최명의 님은 병원 담보 대출 5억원을 제외하더라도 10억원의 일반채무가 있으니 개인회생제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와 같은 경우 파산 선고를 받은 후 강제화의를 제공하여 채권자 3/4의 동의를 얻어 채무를 재조정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의사 면허가 일시 취소되기에 택하기를 꺼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밖에 파산 외의 화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정리위원의 보수, 화의관재인인의 보수, 신문광고료 등 비용이 많이 들고 채권자들이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화의안에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잘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6년 4월부터 화의제도는 폐지되어 역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개인회생제도의 이용을 제한한 이유는, 채무가 큰 사람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금액이 작은 경우에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개인회생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사람은, 일반의 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06년 4월 시행된 파산법은 채무자의 회생 제도를 원칙적인 지위에 두고 개인회생

은 회생의 간소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치 파산절차도 5억원 미만인 경우 간이파산제도에 의하는데 절차상의 특례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회생은 기존의 회사정리 즉 흔히 말하는 법정관리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파산재단의 형성과 청산을 통하여 채권자들이 재산 처분대가를 나누는 청산형 파산의 대안으로 인정되는 회생은 채무의 재조정과 채권자와 주주 사이의 줄 새로 세우기를 통하여 기업을 새로 태어나게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전에는 주식회사에만 인정되던 것이 새 파산법의 제정과 함께 개인에게도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5억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재산과 수입의 엄격한 감정평가의 생략 등을 비롯하여 절차를 간소화 해 주는 개인회생 제도의 이용을 할 수 없을 뿐이며, 일반의 회생제도를 이용하여 얼마든지 재기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파산절차나 과거의 회사정리에서는 채무자는 배제되고 파산관재인과 관리인이 기업의 운영을 대행하였기에 채무자가 이것을 신청할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새 파산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관리인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debtor in possession, DIP). 물론 이 경우 채무자는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들을 위하여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스스로의 주도 하에 정리계획을 인가 받아 수행하게 되면 최명의 님은 병원을 지킬 수 있고, 얼마든지 재기하실 수 있습니다.



:

Q 중견 공무원입니다. 아버지가 15년 전 보증을 서는 바람에 조기 퇴직하여 빚을 갚았는데, 거기서 끝난게 아니라 계속 빚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도우려고 대출을 내었고, 이 대출로 인하여 남의 보증도 서게 되었습니다. 4억원 정도의 빚이 있고, 봉급압류 중입니다. 제가 여기서 공무원을 그만두어야 하는 지 아니면 공무원도 개인회생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퇴직한다고 해도 퇴직금이 2억원 남짓한데 채무 청산을 할 수 없습니다. 김충복 -42세

A 공무원에게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이 적합합니다. 보통의 공무원은 파산 선고를 받으면 퇴직하는 것으로 실무가 운용되고 있는 반면에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같은 고위직 공무원들에게는 아무런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하위직 공무원 만이 파산의 불이익을 입는다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지만, 어차피 실무는 약자에게 불리하게 운용되기 마련인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생의 대상은 장래 계속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되는 사람인데, 그 전형은 공무원일 것입니다. 법률에 의하여 신분보장을 받으며 정년까지 근무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파산의 한 변태인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파산을 선택하였을 때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수있었던 금액(‘청산가치’라고 표현합니다) 이상을 장래 변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5천만원 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면, 장래 변제할 금액의 흐름을 연 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자본화한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재 개인회생법이 최초로 도입되었을 때에는 공무원의 퇴직금을 청산가치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김충복 님의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정에 따라서는 5년 내지 8년의 기간 동안 이 금액을 갚도록 하는 것이 가혹합니다. 또 공무원 퇴직금이라는 것은 직무에 전념하고 부정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도록 국가가 철저히 보장하는 압류금지

재산인데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이런 이유로 개인회생도 포기하고 퇴직까지 봉급을 압류 당한 채 살다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퇴직금 전액 또는 연금을 수령하기를 선택하는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4월 시행되는 새 파산법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재산은 파산재단에서 제외한다는 일반 규정을 두었을 뿐 급여가 재단에 포함된다는 예외규정을 삭제하여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공무원 퇴직금은 청산가치에서 완전히 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경력을 가진 공무원의 경우 아주 유리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김충복 씨는 변제 금액이 미미하더라도 얼마든지 개인회생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차이는 노예에 대한 처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리스의 노예는 극히 드문 예외를 제외하고는 노예인 채 평생을 마칠 운명이었다. 반대로 로마의 노예에게는 해방노예라는 제도가 있었다. 저축한 돈으로 자유를 사거나 오랫동안 노예로 일한 뒤 퇴직금처럼 자유를 얻는 제도다. 해방되어 자유를 얻은 노예는 해방노예라고 불렸지만, 그 자식대에 이르면 로마의 자유민과 똑같은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 -시오노 나나미, 김석희 옮김 로마인 이야기 (1995) 128

법을 살펴 보면 채무자는 자주적으로 변제계획안을 낸다. 변제계획안은 채권자가 청산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자 사이에 공평이 확보되도록 제출한다. 특히 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 법원은 변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가가 보장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러한 경우에 통과시키지 않게 되면 채권자의 다수결에 바탕을 둔 화의를 폐지하고 회생제도를 둔 의미가 없어진다. 그리하여 채무자가 최장 5년까지 최저생활을 하기를 선택하고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가용소득’) 전체를 채권자에게 변제에 제공하면 채권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변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cram down). 채권자로서는 잃을 것이 없는 것이고, 채무자는 일정기간 내핍생활을 선택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성의를 다 한 것이니 채권자의 반대를 찍어 누를 이유가 충분히 있다.

이 최저생활비의 요건에 관하여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고 있고, 2005년 기준 부양가족이 없는 채무자 1인은 602,199원, 2인 가족은 1,002,756원, 3인 가족은 1,361,894원, 4인 가족은 1,704,498원과 같은 획일적인 기준을 설정한다. 전세/월세 사는 사람, 서울/지방 사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한편, 이것은 채권자들이 이의할 경우에 그것을 억누르고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인가하기 위한 요건일 뿐이며, 채무자는 원래 청산가치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변제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 자기 몫의 재산이 없는 사람의 경우 생계비를 넘는 금액을 모두 제시하는 개인회생은 노예생활이다. 그런데, 실무상 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지

를 기다려보지 않고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투입하는 변제계획을 요구한다. 이것은 개인회생의 유효성을 많이 감소시키고, 파산법원을 추심의 수단으로 전략시킨다.

시간의 불가역성이라는 논리적 범주에 충실한 전문가는 equity가 없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을 권하지 않는다. 지킬 것이 없는 현재를 위하여 장래 5년 동안의 노예생활을 마치고 나면 이미 인적 자본이 많이 손상된 상태가 된다. 채무자는 희망이 없는 것이다.

개인회생의 한가지 확실한 장점은 과거를 정당화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파산절차에서라면 면책 받지 못할 사유가 있어도 상관없다. 자기재산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냥 소득 범위 내에서 얼마를 갚으면 된다고 하면 되니 작성에 어려움도 없다. 그러나 이들의 개인회생은 권장되지 않는다. 파산으로 즉시 면책을 얻고 어서 자기재산을 형성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지킬 것이 있는 사람들의 개인회생은 DIY보다는 전문가를 찾기를 권한다.

나의 중산층 자기중심주의로 볼 때 위에 열거된 것들 일부에 있어서 낭비가 엄청나다. 사실에 나는 놀란다.....게일이.....데이즈인으로 옮길까 생각 중이다. 나는 깜짝 놀란다. 아니 어떻게 하루에 40달러 내지 60달러를 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사회사업가 같은 소리를 한다고 할까봐 걱정했는데, 그냥 바보 같은 소리가 되고 말았다. 게일은 불신의 눈으로 흘겨보면서, “그러면 내가 어디서 한 달 방세와 아파트의 한 달치 보증금을 마련하겠어?”라고 말한다.....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절약 비법은 없는 반면에 특별비용 지출은 엄청나게 많다. 아파트를 세내는 데 필요한 두 달치 집세를 감당할 수 없다면 방 하나에 주 단위로 엄청난 돈을 치를 수 밖에 없다. 방 하나에 요리용 철판 하나가 전부라면 콩 스투를 일주일치 만들어 냉동시켜 둘 수가 없으니, 패스트푸드나 핫도그를 먹거나 편의점에서 전자레인지에 데워먹는 스티로폼 컵에 담긴 수프를 먹는다. 건강보험에 들 돈이 없다면.....진찰도 못 받고 처방전이 필요한 약도 못 먹다가 나중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 바바라 에렌라이히 저 흥윤주 옮김, 빈곤의 경제(Nickel and Dimed) 2001, 39면 이하.



Q 중소기업의 사원으로 다니며 월 평균 300만원을 받았지만 병원비, 두 자녀 교육비 때문에 2억원까지 빚이 늘어났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큰 일이다 싶어 2004년 9월 개인회생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신청하여 월 150만원씩 60개월씩 갚아 나가는 변제계획을 인가 받아 성실하게 15개월을 납부하였습니다. 5년 뒤에는 면책을 받아 빚을 면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던 중 최근 회사가 시장 상황의 변화에 외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면서 해고되었는데, 직장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대로 이행하기 어려워져서 큰 일입니다. (박한서, 40세)

A 세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지금은 소득이 없지만 장차 취업하여 별 것을 예상하여 무리가 되더라도 개인회생계획을 이행하는 방법입니다. 즉 퇴직금 받은 것과 그밖에 약간이라도 가진 것을 처분하여 월 납입금을 내고, 취업이 되면 이것을 보태는 것입니다. 파산법원과 채권자에 대하여 약속한 바를 지킨다는 면에서 원칙적으로 바람직합니다. 다만,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서 개인회생 납입금을 내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기는 힘들 것이고 새로이 높은 이자를 부담하여 차입을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더 상황이 안 좋아집니다.

둘째, 취업을 하고 변제계획을 변경 받는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장래에도 일정한 소득이 생길 것을 전제로 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이와 같은 상황의 변화가 생기면 납입할 금액을 변경하여 달라고 원래 개인회생계획을 인가한 파산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박한서 씨가 곧 직장을 잡았는데 소득이 이전보다 못하다면 새로운 직장의 형편에 따라 변제액을 감액하여 변경신청을 할 수 있고 이것은 당연히 승인 받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소득이 이전보다 늘어나게 된다면 굳이 채무자의 입장에서 먼저 변경해 달라고 신청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셋째는 경우에 따라 바로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잃은 것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채무자가 개인회생계획으로 청산가치 이상의 금액을 변제한 경

우에는 변제계획의 이행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청산가치는 개인회생 신청 당시 채무자의 재산 예를 들어 퇴직금, 전세보증금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박한서 씨의 재산이 퇴직금 적립액 1500만원 뿐이었다면 청산가치가 1500만원이고 15개월 동안 150만원씩 2250만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한 것에 해당하니 대상이 됩니다. 이것을 특별면책이라고 하는데, 원래 채무자는 가진 것을 채권자에게 내 놓고 그 시점의 모든 계약상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이상으로 이행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인정됩니다.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죽음 뿐이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것은 변합니다. 청산가치는 과거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고정되지만, 가용소득은 변합니다.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가용소득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연히 변제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을 한 경우에는 아예 가용소득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개인회생 계획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법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파산에 의하였을 때 채권자가 변제 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 이상을 갚았던 경우라면 당연히 면책을 인정합니다. 다만, 채무자는 그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여 신청하여야 할 것이고, 또 채권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막상 채권자들의 변경이 생긴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번거로움을 취하느니 그냥 파산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증은 현명하지 못한 선택의 한 예이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으니, 엄밀하게는 또 하나의 채무자이다. 물론 민법이나 어떤 종류의 계약서나, 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자”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들은 보증이라는 것은 주채무자의 성실함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주채무자가 안 갚으면 채무가 보증인에게 넘어간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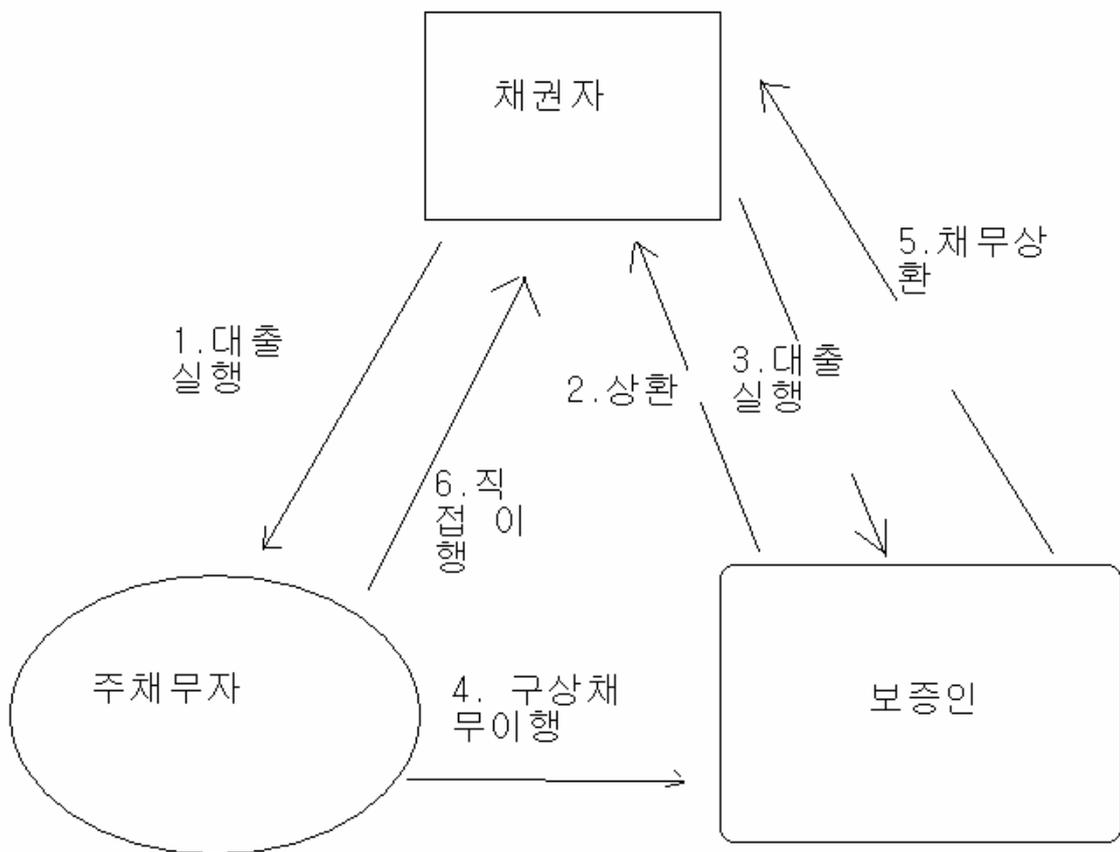
그러나 이것은 기만적이다.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별도로 독립적인 채무를 진다. 즉 채무자가 여럿 있는 경우에 불과하다. 다만, 서로 영향을 줄 뿐이다. 주채무자가 갚으면 보증인의 채무도 그 한도내에서 소멸하고, 반대로 보증인이 갚으면 주채무자의 채무도 같은 금액이 소멸하되 원칙적으로 보증인은 자신이 갚은 금액에 대하여 주채무자에게 구상채권을 가진다. 채권자로서는 누가 주채무자이고 누가 보증인인지에 관하여 큰 관심이 없고, 실제로 대출 받은 금액을 보증인이 사용하는 예가 자주 있다. 주채무자와 보증인의 관계는 그들 사이에 정하기 나름인 것이다.

따라서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관계는 그들 사이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 뿐이고, 대외적인 채권자는 보증인이든 주채무자이든 아무나 골라서 청구할 수 있다. 물론 민법에는 “보증인에게 먼저 청구, 추심해 보라” 또 “보증인의 재산을 뒤져 보고 거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해 보고 주효하지 않으면 오라”는 이른바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주채무자에게 자력이 있을 경우에는 채권자가 굳이 보증인을 추구할 이유가 없고 주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을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할 것이니 이와 같은 보증인 보호장치가 효과를 발휘하는 상황은 생기기 힘들다. 그나마 보증 문언에 “연대”라는 단어 하나만 넣으면 한편, 주채무자에 대하여 먼저 청구를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 실무상 연대보증이 오히려 보증의 일반적인 형태이다. 따라서 어설픈 법률을 아는 사람들이 말하는 “주채무자가 안 갚으면

보증인에게 넘어간다는 식의 말은 기만적"이다. "보증 서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는 말이 생겨난 것은 이것으로 패가망신한 사람이 제법 많다는 것을 뜻한다.

형식적으로 보증은 장래 주채무자의 불이행시에 이행하겠다고 하는 약속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증인이 즉시 주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금액에 상당하는 대출을 채권자로부터 받되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채권자에게 진 채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그림을 보면 다음 여섯 단계의 거래가 단 한번의 보증행위에 함축되어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1)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대출 실행

보증인이 없는 상태에서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신용거래가 성립한다.

(2) 보증인의 상환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무를 상환한다.

(3) 보증인에 대한 대출실행

막상 보증인은 당장의 변제 자력이 없거나 재산을 처분하기에 불편하다. 따라서 보증인이 (2)와 같이 상환한 것을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치기로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정한다.

(4) 주채무자의 구상채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았으므로 주채무자는 보증인에게 구상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보증인의 채무 변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서 받는 돈을 가지고 이것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 자신의 책임을 면한다.

(6) 보증인의 직접 지급

그런데, (4), (5)의 거래는 하나로 축약될 수 있다.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구상채무를 이행하고, 보증인이 자신의 채무를 채권자에게 갚는 거래는 번잡하다. 그래서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이행하여야 할 구상채무 상당 금액을 직접 채권자에게 보내는 것으로 하면 거래단계가 하나 줄어든다.

주채무자가 이자, 원금을 밀리지 않는 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돈달라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증인은 주채무자를 통하여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바로 추심행위를 하게 되는 관행이 있다면 아무도 보증을 서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보증인을 세워라”는 말은 “당장 갚아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자신의 카드빚 독촉이 무섭다고 아들과 딸을 보증 세운 사람은, 채무가 가지는 노예적 종속성을 고려한다면 현대판 심청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자들은 이러한 보증의 의미를 잘 안다. 엘지카드 사태에서 오너 일가가 채무를 보증하라는 요구를 시장경제적인 해법이 아니라며 강하게 뿌리치는 것을 보면 명백하다. 그런데 바로 그 회사에 공적 자금이 투입될 때 그들은 시장경제를 주장하지

않았다.

물론 보증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대가가 있을 필요는 없다. 보통은 보증인이 채권자로부터 받는 것이 없다. 주채무자의 불이행 사태를 담보해 줄 것을 전제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보증료를 지급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보험이 될 것이다. 그 대가관계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에서 따져야 할 것이다. 보증인이 주채무자로부터 또는 채권자로부터 일정한 출연을 받는 경우에는 보증계약은 근거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아직 주채무자의 지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인 경우에는 채권자로서도 자신의 위험을 회피할 권리가 있지만, 연체가 발생한 상황에서 친족관계에 의하여 완전히 무상으로 보증을 선 사례는 제도의 남용이다. 주채무자가 이미 연체를 하고 파산하였다면, 채권자가 가진 주채무자 발행 채권증서의 가치는 의심스럽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증을 서는 즉 주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아 주는 행위는 전적으로 채권자에게 이익이 미친다. 채권자는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돌을 빵으로 바꾸는 기적을 이루고 주채무자는 재산이 없이 빚을 부담하면 노예가 되는 손해를 입는다. 즉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돈을 건네 주는 거래가 (보증)계약의 명목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착취이다.

사유재산제도의 필연적 귀결인 계약자유 원칙은 계약 당사자 쌍방이 대등한 판단력을 가지고 공정하게 거래될 것을 요구한다. 현저히 대가의 불균형이 있는데 그것이 일방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강자는 약자를 착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보증이 남용되고 있으니 보증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젊은이들이 접착제에 들어 있는 화학물질을 남용한다고 해서 그것의 유통을 금지하자는 견해만큼이나 원시적이다. 유용하게 활용될 기회마저 봉쇄하기 때문이다. 따라 특정의 보증을 무효로 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대안인데,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으나, 일반 민법에도 근거규정이 있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흔히 문제되는 사례이다. 월급 130만원을 받는 직장인인 한가은(24세) 씨는 열심히 살며 절약하여 결혼자금을 모으고 있다. 그런데, 언니 한영은 씨(28세)는 다단계에 빠지고 남자를 알게 되면서부터 10여장의 카드를 발급 받아 돌려막기를 시행하다가 결국 모두 연체하였다. 그런데 오성카드 회사의 직원은 한영은 씨에게 지긋지긋한 전화를 하지 않는 것을 미끼로 기존의 연체된 빚을 새로 대출을 받아 갚는 것으로 정리하자고 권유하였다. 즉 한영은 씨에게 오성카드가 1500만원의 대출을 연리 20%에 실행하는데, 이 대출금은 한영은 씨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오성카드 채권 1500만원의 상환에 쓰인다는 것이다. 오성카드는 한영은 씨의 신용이 좋지 않아 이자율이 높는데, 이러한 불리한 점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니 보증인을 세우라고 집요하게 요구한다. 지친 한영은 씨는 동생인 한가은 씨에게 벌어서 언니가 반드시 갚아 주라며 대환대출의 보증인이 되기를 요청한다. 한가은 씨는 오성카드 회사에 나가 대출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을 하였고, 이 절차는 1분도 걸리지 않았다.

이것은 한가은 씨는 대가 없이 변제를 받은 대기업의 가증스러운 행위이다. 직업적인 법률가도 혼란스러워 하는 보증의 목적과 효과를 24세의 처녀인 한가은 씨가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고, 한가은 씨가 보증의 대가(代價)로 받은 것이 없으며, 주채무자인 한영은 씨나 채권자인 카드회사나 보증의 효과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던 상황이라면 보증인 한가은 씨는 궁박, 경솔, 무경험의 상태 어느 것이든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한가은 씨로서는 하나도 얻은 것이 없고, 주로 카드회사만이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있는 반면에 이미 연체에 빠진 채무자로서는 얻은 것이 전혀 없는 거래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공정하지 않은 거래는 없을 것이다. 민법 제104조의 활용은 제법 많은 보증인을 절망으로부터 구제하는 한편, 금융기관에게도 공정하고 타당한 대출관행을 확립할 유인을 제공할 것이다.

“난 나 혼자를 위해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내 자식들과 내 손자 손녀들이 제대로 대접받고 살게 하기 위해 걷는 것이니 어서 먼저 가요.”
 “그렇지만 할머니 다리 아프지 않으세요?”
 “다리는 아프지. 그렇지만 덕분에 내 영혼은 편한걸”
 -흑인을 차별하는 버스안타기 운동에 동참한 흑인 할머니와의 대화, 권태선, 위인전기 마틴루터킹 65면

파산제도는 노예상태에서 건져 줄 뿐이지, 노예상태를 결과한 근본 원인 즉 가난에 관하여는 아무런 말이 없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해 주지 않는다. 이것은 현실이다. 아무리 사회보장을 해 주어도 변함이 없다. 따라서 면책 이후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래도 갈 길이 멀다. 재산은 다 털어버렸기 때문이다.

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다시 소비자신용에 의존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과학은 과거에 물이 0도에서 열고 100도에서 끓어 넘쳤으면 앞으로 도 그럴 것이라고 논한다. 인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빛을 지지 않고 있던 어떤 사람이 과거에 이리이러한 방식으로 살았는데 결국 빛을 지고 헤어나지 못했다면, 면책 이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시 채무자가 될 것이라고 논하는 것이 과학적이다. 이 고리를 깨는 특별한 사정은 행동의 수정 밖에 없다. 적게 쓰고, 더 버는 것이다. 과거에 자본주의가 번영하였는데 이제 그 시대는 가고 이제 사회주의가 필연적으로 도래할 수 밖에 없다는 변증법은 현실적이지 않듯이 과거에 가난한 자가 파산, 면책을 겪는다고 해서 갑자기 형편이 나아진다는 것도 공상적이다.

게다가 가난한 자는 차별 받는다. 공동으로 관리되는 전산망에 파산면책을 받은 사실이 일정기간 유지된다. 상업적, 개별적인 관리가 아니라 공적, 집단적 관리는 부당한 공동행위이지만, 현실적으로 행하여진다. 한 때 이것을 이유로 보증보험회사는 취업시 요구되는 보증보험의 인수를 거부했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은 사기업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람을 차별하면 안되는 바, 파산, 면책을 겪은 사실은 사람의 재정상태 즉 부자와 가난의 차이일 뿐이므로 결코 차별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되지 못한다. 이와 같은 부당함은 채무자들의 부당한 의견입력과 여론 조성으로 시정되고 있다. 특히 다음 카페 면책자클럽 (<http://cafe.daum.net/pasanja>)의 활동은 주목할 만하다.

종종 채무자가 완전히 면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기업에서 독촉장을 보내 온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것은 형사적으로 범죄를,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근거는 사람마다 요구되는 행동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힘없는 시정의 소액 채권자와 달리 거대기업은 조직의 세가 있다. 거대기업이 보내오는 종이 한 장은 소시민의 편지와 위력이 틀리다. 타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대하여 적용되는 형법 제324조(강요죄)와 미수범을 처벌하는 형법 제324조의 5(미수범)이 그것이다.

물론 기소되지 않으면 심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검찰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입건이 되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피해자의 자료수집과 고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돈 장사에게는 돈 내라는 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억제조치로 작용한다. 따라서 면책 이후의 부당한 추심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신용정보가 중앙집중적으로 전산관리되는 상황에서 민사적으로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점을 몰랐다는 것 보다는 과실이 추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시민과 변호사 사회의 역할이 기대된다. 가난한 자라도 표는 있다.



Q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5채 샀는데, IMF 사태 때 집값은 폭락한 반면에 대출이자율은 2배로 올라 월급으로 감당이 안되어 아파트는 모두 경매되고, 그래도 빛이 남았습니다. 지금은 연체이자까지 3억원을 넘어 감당할 수 없습니다. 130만원 월급으로 세 식구 월세 내고 살기도 힘든데 파산신청을 하자니, 주위에서 파산신청은 신용상 불이익이 있으니 빛을 약간이라도 갚는 개인회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월 10만원이라도 여유 돈이 안 생기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서진식, 42세)

A 채권자 단체는 고객 금융거래나 연체 실적에 관한 정보를 전산망에 올려서 공동으로 활용합니다. 파산 신청으로 면책을 받은 사실도 채권자는 기록하고 7년 동안 유지되는 것이 현재의 실무인 듯합니다. 이것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boycott)에 해당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지될 수도 있고, 국가의 공적 자금을 받은 금융기관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차별행위로 불법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다수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기 전에는 쉽게 시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용정보에서 불이익한 취급을 받는 것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과거 금융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의 불이행이 있으면 바로 ‘신용불량자’라고 등록을 하여 이들을 차별해 왔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채무이행을 못한 사람이 파산,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자신의 신용정보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손상된 신용에 대하여 다른 분류를 적용 받는 것일 뿐 새로운 신용의 손상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파산, 면책을 받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는 신용정보상의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파산,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7년 동안 기록이 유지되지만, 이것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된 채무가 유효하게 남아 있는 한 신용정보상의 손상은 존속합니다. 채권자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방치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 채권의 유효성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이 신용 기록은 채무자가 죽을 때까지 유지됩니다. 즉, 파산, 면책

은 영구히 유지될 신용불량정보를 7년으로 단축하는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다.

또 금융채무로부터의 해방인 파산, 면책은 그 후 새로이 생기는 채무에 대한 상환 능력의 증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 자체가 신용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신용카드 회사가 면책을 받은 이후에 금융거래를 꾸준히 해 온 사람에게 새로이 신용카드 발급을 제의합니다. 파산, 면책을 받지 않으면 결코 채무자가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개인희생에 비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5년, 짧게는 3년, 길게는 8년 일부를 갚게 하는 개인희생은 이 변제기간을 경과하여 면책을 받은 후에 다시 7년 동안 신용 손상 상태가 지속됩니다. 파산보다 3년 내지 8년 더 불리한 상태가 생기는 것입니다.

미국의 파산변호사가 면책 이후 고객에게 건네주는 키트에는 공격적으로 영업하는 신용카드회사가 제공하는 신용카드발급신청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신청서 용지에는 배포처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가 적혀 있고 면책을 받은 사람이 카드를 신청하여 발행이 되면, 파산변호사는 10달러 상당의 마일리지를 받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금융기관은 돈 장사일 뿐이지 돈 갚으라는 도덕을 진작시키는 경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천만원의 빚을 지고 있으면서 '신용'을 지키려고 근근이 따라가면서 빚을 열심히 갚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우월할 지 모르지만, 앞으로 어떤 사람이 꼬드겨서 채무불이행을 하고 파산을 선택할 지 알 수 없습니다. 위험한 고객입니다. 그런데, 파산을 선택한 고객은 당장은 비난을 받을런지 몰라도(그 근거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만), 상환능력은 훨씬 좋습니다. 120만원 월급 받아 100만원 갚던 사람과 그냥 파산을 선택한 사람의 상환능력을 비교해 보면 어디가 좋을까요? 더욱이 한번 면책을 받은 이후에는 6년(우리는 7년) 동안은 이 사람이 다시 파산 제도로 들어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 회사 입장에서는 파산/면책을 받은 사람이 좋은 고객일 수 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신용회복의 길은 파산입니다.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부담해 주는 사람이 따로 있을 때 자기 것을 잘 지키지 않는 심리적 용태를 도덕적 해이라고 한다. 종합보험에 들어 있는 승용차의 시동을 켜 놓은 채 방치하거나, 화재보험에 든 사람이 집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다. 극단적인 경우 위험이 현실화될 것을 가장 잘 아는 자가 가장 먼저 보험제도로 들어오려 할 것이다. 자기 집에 일부러 불을 지르려는 자가 보험에 가입할 것이고, 난폭운전을 하는 경향이 있는 자도 마찬가지이다.

개인파산제도 및 이의 변형적인 형태로 9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주로 금융채권자 측에서 채무자를 구제해 주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사회에서 실패해도 사회보장을 해 줄 테니 개인은 재정적 실패의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무책임한 행동을 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고의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파산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것이 주장의 근거다.

그러나 화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이 상업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도덕적 해이를 걱정하는 주장이 기우임을 증명한다. 보험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에게 약간의 부담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덕적 해이를 피할 수 있고, 위험을 숨기고 보험에 든 자에게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일부러 사고를 낸 자는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파산제도의 형식을 띤 강제보험도 마찬가지이다. 채무 상황이 지체될 때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신용불량’의 낙인은 최소한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이며 사회적 비난 외에도 채무자 본인의 마음에 남는 상처가 된다. 채무자에 우호적인 파산제도를 운영하는 미국과 일본이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도덕적 해이 주장을 실증적으로 배척한다.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이 카드를 발급해 주던 회사가 있었다. 부실이 우려되었을 때 이 회사가 발행한 채권은 상당히 높은 수익을 제시했다. 인수하는 투자자는

당연히 부도의 위험을 예상했다. 하지만 막상 부도가 나자 공적 자금이 투입돼 사실상 투자자는 투자금을 상환 받았다. 당연히 이유 없이 횡재를 하게 된 사람의 도덕은 타락했다. 수천억을 주고 은행을 샀다가 부실자산을 되팔아 수조원을 챙긴 외국 사람들의 도덕도 마찬가지로 타락했다.

공적자금투입의 혜택은 부자가 받았다. 부자의 도덕은 타락시킨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과 비슷한 시기에 도입된 채권추심원이라는 사람들의 무자비한 독촉에 쫓기는 가난한 채무자의 도덕은 왜 걱정하는가. 2004-09-10 12:45 [내일신문] 김관기 파산전문 변호사

:

다음은 면책을 불허하고 일부면책을 허가한 원심에 대하여 채무자가 재항고한 사건에서 제출한 재항고이유이다. 원심 결정은 파기되어 환송되었다.

1. 원심결정의 이유 불비에 대하여

결정인 이상 이유를 자세히 설시할 필요는 없다고 할 지라도, 제1심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된 이상에는 항고심 법원으로서 제1심 결정의 정당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하여야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구체적인 사실적 근거를 적시함이 없이 그저 다만 추상적인 법률판단을 제시한 것으로 그쳤으니 ‘이유불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즉, 제1심 결정이 특히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이 사건 기록 및 파산신청사건기록, 이 법원의 파산자에 대한 심문결과에 의하면, 파산자는 사술에 의한 신용거래행위로 금원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면책을 부인한데 대하여, 원심은, “항고인이 지급불능 상태에서 사술로써 신용거래를 한 행위는 파산법 제346조 제2호 소정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된다”고 서술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원심은 “사술로써 신용거래를 한 행위”가 무엇인 지에 대하여 전혀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1심이야 재판의 신속과 간이한 판단을 위하여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고 수긍할 수 있습니다만, 항고심으로서 적어도 어떠한 행위가 ‘사술’인지 그로 인하여 어떤 채권자가 이에 속아서 처분행위를 하였는 지에 관하여 설시를 하였어야 항고를 제기한 당사자가 자신의 행위를 돌이켜 보고 불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불비는 원심의 재판을 파기할 사유라고 하겠습니다.

재판을 청구하는 국민으로서, 재판의 이유에 관하여 어느 정도는 구체적인 설시를 들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적어도 항고까지 제기한 입장에서는 어떠한 근거로 인하여 법이 부여한 권리를 잃게 되는 지를 설득력 있게 들을 기회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에게 가까이 가는 친절한 사법은 각종의 절차를 규정하고 법관과 일반직 공무원의 용태를 규제하는 가시적인 조치도 중요하겠지만, 재판의 이유를 설득력 있게 표시하는 것이 가장 본원적인 자세라고 할 것입니다.

파산법 제346조의 문면을 보면, 한정적으로 열거되어있는 면책 부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파산자는 면책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면책에 관한 재판이 원칙적으로 재량적이 아니고, 개인의 신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복권 여부)에 관한 권리를 부인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임을 뜻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 이상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인 사유에 대하여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원심결정의 법리오해에 대하여

사술을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행위 당시의 어떠한 용태가 있었는 지, 이러한 용태에 기초하여 채권자는 어떠한 판단을 하였었는 지,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 지가 명백히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심결정은 그저 채무자가 지급불능에 이른 것을 ‘사술로써 신용거래를 한 행위’라고 판단한 듯합니다. 그러나 ‘사후적으로(ex post)’ 보면 모든 이행되지 못한 신용거래는 다른 사람을 속인 것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파산법의 부인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경제생활에서 실패한 파산법의 정신을, “경제적 실패는 사술에 해당하니 면책을 부인하는” 방식으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황을 평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속이고 금융거래를 행하였다면 사술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위자 개인의 ‘주관적인 용태’입니다. 이와 같은 주관적 용태라는 것을

증명하기는 어렵기에 전통적으로 개인의 자산상태가 악화되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차재를 하는 행위를 들어 “변제할 의사와 능력없이” 처분행위를 받은 것으로 추정해 온 실무도 있었습시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의사를 객관적 사항에서 뽑아 내려는 의제(fiction)에 불과한 것이고, 달리 이에 배치되는 용태가 있었다면 이와 같은 추정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소비자신용입니다. 고리를 붙이는 채권자는 당연히 채무자의 불이행위험을 예상한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는 3%, 4%의 이자율을 붙이고, 은행도 비슷하게 기채를 합니다만, 신용카드회사는 17%, 18%의 이자를 붙이고 사채업자는 24%, 한도액인 66%의 이자를 붙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수백%의 고리도 받습니다. 정상이자율과의 차액은 채무자의 장래의 불이행위험을 예상하고 ‘원금을 미리 회수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높은 이자를 수반하는 영업적인 금융거래에서 채권자는 당연히 채무자가 불이행할 것을 예상하고 ‘대출심사’를 합니다. 대출심사를 함에 있어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여러가지 신용에 관한 사항을 개시할 것을 요구하고 그것에 의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대출심사에서 채무자가 개시한 사실이 허위라던가 한다면 물론 사술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것은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1.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은 일이 있는 지에 관한 허위진술, 2. 직장이나 가정 사정에 관한 허위진술 3. 현재의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진술이 바로 이러한 사항에 해당할 것입니다. 채무자는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바 없습니다. 이것은 ‘사술’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은 낙관적입니다. 제3자인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무망한 일도 사람은 추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예상대로 실패합니다. 20여년 전에 반도체를 개발하는 사업에 투자를 시작하였던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다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불

확실성 하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후적, 객관적으로 보아 전문가의 입장에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채무를 졌다고 평가되는 채무자는 임시변통이든 어쨌든 갚을 생각으로 대출을 받았습니 다. 이것은 채무자의 진술에 나타난 채무증대경위에도 나타나고, 채권자 우성 생명보험의 의견서(기록 93정)에 나타나 있듯이 “차주 〇〇〇는 2001. 8. 14. 당사 대출을 처음 받은 후 2003. 8. 22.까지 정상거래”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래의 불확실성이 실현된 것을 사후적으로 보기보다는 기채 당시를 기준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였는 지를 따져야 합니다. 재항고인은 실패한 자의 입장에서 할 말이 없기는 합니다만, 사실 사후적으로 보면 누구나 장래의 수익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장차 발생할 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채무를 얻었다 하면 망한 사람 모두에 해당하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불확실성은 늘 존재하기 마련이고, 확실한 것은 인간은 모두 죽는다는 제약조건 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장래를 낙관적으로 평가합니다.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망하지 않을 사람은 든든한 재산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대하여는 도대체 금융채권자가 영업을 할 일이 없습니다. 즉, 금융채권자는 재산이 없는 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가 갚지 못할 위험도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금융행위가 사술인 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는, 장래에 대한 예측을 개인이 잘못하였는 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예측을 제대로 하였다면 기업인은 파산하지 않았을 것이고, 예측을 잘 못한 경우에 한하여 파산법원으로 올 것인 지라, 사후적으로 결과만을 보고 “장래예상수입” 운운한다면, 결국 파산법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경우는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파산법의 부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상적인 영업을 하다가 화재를 만났다면 하는 불운에 대하여만 파산의 구제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파산법을 부인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이와 같은 위험은 파산법 이외의 “보험”이라는 제도로

커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금융행위에 있어서 ‘사술’이라고 하면, 그 금융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채무자의 재산상황, 당시 채무자가 인식을 하고 있었던 사업의 전망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를 적절히 개시(disclosure)하였는 지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차입을 하는 자로서는 장래의 전망에 대하여 자신을 가지고 있었으리라고 기대되며, 여신을 행하는 자로서는 채무자가 제공하는 정보 및 스스로 입수한 기초자료에 의하여 투자 여부 및 조건을 정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상황 및 자신이 인식하는 상황전망에 관하여 감히 거짓말을 하였다면 사술을 쓴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겠습니까만, 채항고인은 이에 관하여 숨긴 바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채무자 또는/및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기재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채무자가 어떠한 주장을 하였는 지, 채권자는 채무자가 어떠한 점을 속였다고 생각하는 지에 관하여 주장을 받고,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 받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제1심 법원의 조치를 시정하였어야 합니다.

원심은 면책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기간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기록 제158정 참조. 이것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어떠한 점을 속였는 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의 주장을 받기 위하여 설정한 제도입니다. 여기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출된 바 없습니다. 이러한 이의기간을 굳이 둔 이유는 면책장애사유에 대하여 쟁점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인 것이고, 채권자의 이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산법원이 제1심과 같이 그저 추상적인 이유 설시 만으로 면책을 부인할 수 있다면, 이와 같은 이의기간을 두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의기간을 굳이 두는 것은 사법자원의 낭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 파산은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법원이 행사하는 경제규제입니다.

정의를 실현하기로 기대된 법관으로서 채권을 무상으로 수용하는 형식을 지닌 면책에 관하여 직무갈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의의 실현은 주(state) 법원에 맡기

고 파산은 연방 법원이 담당하는 미합중국과는 달리 파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현재의 사법제도 하에서 통일적인 조직에 소속된 법관이 일반 민사를 담당하면서 또는 사무분담으로서 교류하면서 파산을 담당하게 되었을 때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점에서 원심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파산이라는 것은 경제규제(economic regulation)입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기로 한다면, 하도급 이자를 주지 않기로 한다면 하는 계약 자유에 간접하여 곤경에 몰린 채무자는 가진 것을 다 털어 내 놓고(없으면 할 수 없고) 갚지 못한 금융채무를 면할 수 있다는 약관이 모든 금융거래계약서에 기재된 것처럼 취급하는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파산을 이해한다면, 이것은 비록 조직법상의 체계에서 법원이 담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은 정의를 실현하는 사법작용이 아닌 등기, 호적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세칭 IMF 사태 이후 금융의 과잉 상태는 많은 기업, 가게, 그밖의 불운한 실체를 채무에서 헤어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고, 전산화된 경제 시스템에서 신용평가의 공유로 인하여 많은 재활용 가능한 젊은이들이 부랑아(pariah) 상태로 떠돌고 있습니다. 천리마처럼 열심히 일을 해도 평생 벗어날 수 없는 채무를 가진 젊은이는 정부의 과세권 범위를 벗어난 회색 영역에서 활동하여 일반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기도 하고, 빨간 샴시를 입고 할 일 없이 운동장을 찾아 다니기도 하고, 밤에는 촛불을 들고 몰려 다니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고, 집에서, PC방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티즌이라고 하면서 홍위병처럼 과격하게 정치화되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은 아무 것도 아니고 1997년 이후 몇 년간의 위기 때 보다도 더 힘들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은 이와 같이 희망이 없이 떠도는 불만세력이 고용에 흡수되지 않는 것과 충분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흑자는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도덕은 지켜야지”라는 말을 들으

면 면책에 반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채무를 갚지 못하는 순간 재정적으로 개인은 죽은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시 재기를 하겠다고 파산자로 불리기를 감수하였던 자에 대하여, 기회를 주지 않고 “너 왜 잘못했니”라고 하여 면책을 부인하는 것은 요즘 속된 말로 “두번 죽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공부 못했다고 학생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학생이 장차 산업전선에서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에 빠져버리지 않도록 정부가 규제권을 행사하는 것도 정당화됩니다. 여기서 ‘정부’는 반드시 파산법원이 아니라도 좋지만 우리 파산법의 입법자들은 이와 같은 신성한 소명을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으리라고 기대되는 우리의 법원에 맡겼습니다. 이와 같은 권한은 행사되어야 합니다.

특히 변호사법에 의하여 강하게 금지되던 비변호사의 채권추심업이 허용되고, 고리대금업이 허용되는 등 금융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모두 철회된 지금에 와서는 채무자에 대한 면책을 통하여 금융권의 대출심사 부실과 같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방향으로의 간접규제가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행사되지 않는 권한은 결국 다른 기관이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흑자는 “이와 같은 위기상황도 장기적으로는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을 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의 불가역성이라는 범주와 인생의 유한성이라는 피할 수 없는 제약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면책을 해 주지 않으면, 젊은 채무자도 재활용될 기회를 놓칠 수 밖에 없습니다. 균형을 찾아갈 때는 이미 늦은 것일 수 있습니다. 케인즈가 말했듯이 결국 우리는 모두 죽기 때문입니다.

도덕이나 법 다 중요한 말입니다. 재향고인의 대리인도 법과 도덕을 지켜야 한다고 느끼고 실천하고 있으며, 재향고인 본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의식이 족해야 예절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성리학적 질서에 투철하였던 우리의 조상들은 예절을 숭상하였고, 백성을 향약 등의 방법으로 교화하려고 했습니다. 막상 먹고 살 것이 변변치 않았던 상황에서 국난을 당한 백성은 임금이 피난 가

는 길에 돌을 던졌고, 노비문서를 보관한 장예원을 불질렀고, 함경도로 피난 간 두 왕자도 조선의 백성이 잡아다가 왜군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어떤 백성은 서로 잡아먹었고, 어떤 백성은 그냥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태는 당시 우리의 조상들이 예의를 덜 가르쳐서 발생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법, 법 하지 마라, 밥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들은 결국 정치과정으로 나오게 되고, 선거라는 합헌적인 방법을 벗어나서 집단적인 권위부정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30여년 전 홍위병 사태라는 난리를 겪은 중국에만 국한된 일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400만에 육박하는 국민이 신용불량이라고 낙인 찍혀 있으며, 인구학적 구성상 경제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였던(보통은 경제활동이 있으니까 채권자가 신용을 공여하였을 것입니다) 이들의 수요 부족은 연쇄적으로 내수 제조업, 서비스업의 부실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재기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한 사람들은 적극적인 투쟁이든 소극적인 저항이든 법치국가에서 기대되지 않는 행동을 할 우려가 많습니다. 재항고인 본인은 아무런 쓰잘데 없는 형제의 빚을 가족이라는 이유로 갚아주려고 자신을 희생한 착한 젊은이입니다. 재항고인은 취업을 하여서 조금이라도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추심으로 인하여 인생을 잃고 있습니다. 재항고인 대리인은 재항고인을 다시 이 사회에 통합하는 정책적인 판단을 바랍니다. 사실 면책을 부인하시더라도 이 여인이 채무를 갚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생존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경제활동에 통합하는 것이 다른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지 아닌 지를 따져야 할 때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표 차이로 정권이 갈리고,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정당도 생겨나 활발히 활동하는 마당에, 정의로움과 도덕에만 집착하는 결정은, (본래 의도하지 않았던 바대로겠지만) 한때는 중산층의 꿈을 가졌던 젊은이들을 자유시장경제와 반대되는 이념적 편향으로 몰 수도 있습니다. 시장경제는 불가피하게 실패자들을 양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실패자들을 다시 통합하는 파산 법원의 적극적인 구제조치가 없으면, 많은 실패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시장경제의 잘못으로 돌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래를 예측하지 못한 것을 탓하기 위하여는 ‘사회주의 모델처럼’ 장래가 정하여져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장경제주의자에 대한 정치적 차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면책을 해 주더라도 채무자의 가슴에 생긴 상처는 남습니다. 열등한 사람 취급을 받았던 기억은 지워질 수 없습니다. 재항고인은 충분히 제재를 받았습니다.

4. 지역적인 균형의 고려를 해 주시기를 감히 바랍니다.

대법원이 재판의 통일을 추구한다면, 경제규제인 파산에 관하여도 어느 정도 기준을 통일하여 주실 것이 기대됩니다. 최근 2, 3년 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면책을 부여하는 취지입니다. 원심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지방에 있는 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실무보다는 훨씬 미흡한 구제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로, 국가의 보호라고는 파산법원 밖에 기댈 곳이 없는 절망적인 채무자들이 서울로 기를 싸매고 전입하여 보호를 청원하는 사태가 계속 발생하여 왔습니다. 이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과도한 업무집중을 야기하고 지방분산이라는 국가정책에도 반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다고 법원이라고는 파산 때문에 처음 와 보는 가련한 사람들을 편법인 줄 알면서도 지방의 법원으로 내치지 못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사님들의 고충도 매우 크다고 합니다.

재항고인은 그저 법원칙을 곧이 곧대로 따라 관할법원인 ○○○지방법원에 파산 보호를 청원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원은 어디에서든 통일적인 보호를 해 줄 것이라는 기대에서였습니다. 그 기대가 배반 당하였다고 느낄 때, 재항고인을 비롯하여 지방에 거주하는 채무자들이 느낄 좌절감은 사법의 불신으로 진전됩니다. 국민에게 가까이 가는 사법부는 홍보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합당하고 통일적인 재판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지방에 있는 채무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보호를 받을 방법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경제력이 지방 보다 나올 것이 기대되는 서울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대한민국 대부분의 파산 사건을 처리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준의 통일은 예규로 할 수 있습니다. 파산이라는 것이 경제규제이고 본질적으로 사법 작용이 아닌 이상 결코 법관의 독립에 간섭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유효적절한 방법은 모델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최고 법원의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5. 경제정책

파산이나 개인회생은 속칭 populism의 표현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훌륭한 금융 규제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우호적인 파산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금융기관이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산건전성을 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박종현, 신용불량자 문제와 그 대응방향-‘채무자우호적파산제도’의정비, 응용경제5-3(2003), <http://www.kaae.or.kr/images/5-3/pjh.pdf> 참조.

속칭 IMF 사태 이전에는 개인파산/개인회생의 필요가 크지 않았습니다. 관치 금융으로 개인에 대한 대출은 억제되었고, 기업에 자금이 배분되었으며, 이자는 제한되었고, 사금융은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고리대금융은 비교적 철저히 탄압된 덕에 피해자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용정보’ 회사나 ‘자산유동화회사’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변호사법에 의하여 규제되던 소송신탁/계쟁권리의 양수금지/추심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용에 관한 정보가 유통되어 채무자의 입지는 매우 좁아졌으며, 전산화된 주민등록, 이동통신, 인터넷 정보의 유통에 따라 채무자는 숨을 곳도 없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이 400만입니다. 이것은 “계급”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와 같이 채권자를 위한 제도가 철저히 미합중국의 현상을 따라하게 된 마당에 채무자를 위한 제도도 같이 균형을 맞추지 못할 때, 부조화가 발생하게 된 것이 최근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극적으로 “이러한 사항은 입법적으로 해결할 사항”이라고 사법부는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합리적인 파산법이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어 버렸고, 그 후의 입법통과나 행정

적인 해결도 지지부진한 현 상황에서는, 기존의 파산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법원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외람된 말씀 올립니다.

1. 채권과 추심

빚을 전부 갚지 않아도 된다. 값이 떨어진 채권증서를 사들이면 된다.

채권의 가치

추심(수금)원은 외판원과 마찬가지로이다.

채권추심의 성격과 방법

그들은 채무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다만 채권을 팔려고 할 뿐이다.

추심행위의 규제와 한계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여러가지가 있다. 다만 그 효과는 의문스럽다.

민사소송과 압류 그리고 집행

지친 채권자는 아주 싼 값에 팔아 넘긴다. 채무자도 살 수 있다.

채권매각과 추심위임

2. 개인파산의 이해

파산은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다. 나쁜 의미로 쓰지 말라.

파산의 두가지 의미: 절차와 상태

금융기관과 기업이 파산의 원조이다. 빚졌다고 돌 던지지 말라

은행과 파산 그리고 예금보험

집합적 추심행위

기업파산과 개인파산

망했다고 차별하지 말라. 시대에 뒤떨어졌다.

차별과 차별금지

진정한 신용회복의 길은 파산절차로 채무를 줄이는 것이다.

신용정보

파산 이외의 해결방법은 채무자에게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

파산절차 외의 해결 1: 개별협상

파산절차 외의 해결 2: 집합적 협상

신용회복위원회

파산절차 외의 해결 3: 채권의 매각과 인수(배드뱅크)

파산은 게임을 정리하는 빚잔치. 게임의 규칙을 어기는 자만이 면책을 받지 못한다.

파산제도의 목적 및 구조

파산재단과 면제재산

파산채권과 비면책채권

면책되지 않는 경우

사해행위

낭비 또는 과소비

일부면책

빚 때먹기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공동체로 계속 존속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부와 빈곤 그리고 성공과 실패

재산의 기능과 부작용

파산제도는 노예상태를 방지하는 사회적 기술

사회보험으로서의 파산제도

인도주의

효율

사회안전망

투자장려와 내수기반

3. DIY개인파산

파산은 자신의 뇌수술을 스스로 하는 것이라지만, 당신도 스스로 할 수 있고 많이 한다.

전문가를 찾을 것인가

요구된 자료만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훨씬 쉽다.

준비할 서류

법원은 파산, 심리, 파산선고, 심리, 면책결정의 순서로 신속히 진행한다.

파산절차의 흐름

파산은 주소지에서

파산신청의 관할법원

따라해 보자

파산및면책신청서

진술서

남들도 다 비슷하다. 자신의 운명이 너무 기구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참고: 채무증대경위 작성의 전형

최종 검토를 해 보자

파산신청준비 끝

기다림의 미학에 빠질 때

접수 이후

4. 그밖의 사항

개인회생은 어느 정도 살 만한 사람에게 권한다.

회생과 개인회생: 파산의 변형된 형태

개인회생을 종종 비현실적이다.

개인회생의 실무관행

무상 보증은 착취

보증

아무리 빛을 면해 주어도 갈 길이 멀다.

면책 이후